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로

동북아역사논총

45호 2014. 9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특집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이상의 ▣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 과정과 그 특징 11

허광무 ▣ 일제말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 실태  
- 규슈[九州]지역의 미불금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47

배석만 ▣ 일본 기업재건정비 과정과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 83

최영호 ▣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111

정혜경 ▣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 147

## 논문

오대양 ▣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199

이병호 ▣ '중화인민공화국' 국호(國號) 작명 과정 고찰  
- 특히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259

정상우 ▣ 일제강점 말기 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  
- 『대구부사(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291

## 동향과 전망

홍승현 ▣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339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402

# Contents

## Special Issue Investigation into unpaid wages owed to forcefully drafted Korean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Lee Sang Euy | Characteristics of the Procedures for Deposits Conforming to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11

Hur Kwangmoo | The Unpaid Wages to Forcibly Mobilized Korean Laborers: Focusing on the Treatment of the Unpaid Wages 47

Bae Sukman | The Corporate Reconstruction Plan in Postwar Japan and the Problem of Korean Workers' Unpaid Wages 83

Choi Youngho | Chongryon's Repatriation Activities for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in Japan 111

Jeong Hyeekyung | A Micro-Analysis of Documents of the Japanese Official Deposit Related to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Mobilized in Japan 147

## Articles

Oh Daeyang |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Stone Mound Tomb Culture in the Liaoxi Area of China 199

Lee Byungho | On Nam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Question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Federation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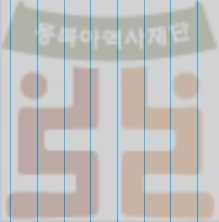
Jeong Sangwoo | Compilation of Local History and Construction of the Local in the Last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With Special Emphasis on Daegu-busa(大邱府史)(1943) 291

## Research trends and outlook

Hong Senghyun | Protection Project of the Great Wall and New Trend in Its Study 339

## 특집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서문

이번 기획논문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해 그 역사와 실태를 밝힌 것이다. 노무자 미수금 문제에 집중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전후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한·일회담과 그 후 양국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선행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해 실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일본인 귀환자로부터 압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국내 홍보와 함께 1953년부터 '반환' 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sup>1)</sup> 해방 후 조선인 귀환자로부터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회담에서 이를 은폐했고 수교 후에도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도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청구권협정의 장벽에 가려 그 실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미수금 연구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한 연구책임자로서 미수금 문제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국에서 미수금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회고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조선인 군인, 군속, 노무자의 미불임금·원호금·예금·저금·보관금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탁 조치했다. 공탁 조치는 1946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를 전후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1990년대 초까지도 계속되었다. 특히 패전 직후 일본 정부와 점령당국은 상호 결탁을 통해 공탁을 실시했다.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의 공탁은 1946년 6월 통첩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과 1946년 8월 27일자 통달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 1950년 2

1) 최근에도 나고야 세관이나 홋카이도가 일본인 귀환자의 유가증권 '반환'을 위한 안내를 실시했다. 『北海道新聞』, 2014. 7. 26; 『北海道新聞』, 2014. 8. 9; 『中日新聞』, 2014. 8. 13; 『日本經濟新聞』, 2014. 8. 13.

월 28일자 「국의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 특례에 관한 정령」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점령당국과 남한 미군정 당국도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 청구권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공탁 사실을 은폐해 왔고 1965년 수교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 존재를 부정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되어 일본에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에서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과 관련된 공탁금 자료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2005년 5월 한국의 위원회는 유골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 공탁금 자료를 공식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2007년 12월 약 11만 건에 달하는 공탁금 명부를 한국에 제공했다. 그러나 이때 인도된 공탁금 명부는 군인과 군속에 한정된 것이었고 노무자의 명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징용노무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3월 일본 민주당 정부로부터 노무자 공탁금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전달받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자료의 DB화 작업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노무자 6만 4000여 명의 공탁금액 약 3500만 엔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22만 6000여 건의 노무자를 비롯한 군인·군속·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피해를 접수받고, 2008년 하반기부터 사망·행방불명, 부상장해,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개시했다. 2013년 말까지 총 2만 7000건에 달하는 미수금 피해 신청이 접수되었고, 심사결과 1만 4000건, 458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개인의 미불금 명세서는 일본 법무성의 공탁소에 있으며 피공탁 당사자만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반면에 공탁 관련 공문서와 기업별, 지역별 공탁 현황을 담은 문서는 일본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된 일부 자료에는 공탁 기업 300여 개의 현황과 임금·원호금을 포함해 40여 종에 달하는 공탁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일본의 시민단체는 자료 발굴과 공개에 주력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한국의 한일민족문제학회 소속 회원들 가운데 전 후처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미수금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 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11년 8월 6일부터 미수금 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 전날에는 광운대학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낮에는 인천항 주변에서 일제강점기 유적을 답사하고 저녁에는 송실대학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발족 모임에 참석했다. 여기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에 관한 자료를 매월 읽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그 후 매월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임 이름을 ‘공탁금자료연구반’이라고 명명하고 연구 과정과 결과를 사이버 카페에 공지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구팀은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을 노무자 미수금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두었고, 공탁제도, 공탁 현황, 피공탁자, 관련 기업 연구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공탁금 자료를 해독해 왔다.

이어 연구팀은 2012년 초에 동북아역사재단에 소규모 연구회 지원을 신청하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쓰쿠바[筑波] 분관에 보관 중인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과 「조선인 노동자의 미불금 공탁처 일람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2012년 1월 30일의 제1회 연구회부터 2013년 1월 8일의 제8회 연구회까지 총 8차례 평균 10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미수금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해독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국내외 연구 성과를 포함한 20여 건의 목록과 논문을 복사해 회람하는 가운데, 고데라[小寺]·고쇼[古庄]·어거스틴 등의 선행 논문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규모 연구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참여자들이 미수금 문제에 관해 각각의 연구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연구팀은 미수금 자료 가운데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와 공문서철로 이루어진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을 통해 미수금의 공탁 과정에 관한 개요를 파악했다. 또한 자료 「조선인 노동자의 미불금 공탁처 일람표」를 통해 기업별·지역별 공탁 현황을 파악했

다. 우리는 두 자료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공탁자 피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선행연구를 해독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미시적 분석으로는 공탁금액과 관련 기업, 공탁 내역 등 공탁 실태에 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했으며, 거시적 분석으로는 두 자료의 상호 비교, 공문서와 법령의 해석을 통해 공탁제도 전반을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소규모 연구회 성과를 토대로, 2013년 1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 결과 그 해 2월에 지원과제로 선정되었고 각 연구자들은 개별 과제를 확정하고 논문 집필과 발표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공탁 관련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기보다는 입수 가능한 자료를 분석하고 미수금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탁금 자료와 이제까지 발굴되어 활용이 가능해진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5편의 기획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장 먼저 게재되는 이상의 연구자의 논문은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를 선행연구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허광무의 논문은 규슈지역의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배석만의 논문은 패전 후 일본의 기업재건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최영호의 논문은 해방 후 조련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혜경의 논문은 한국 정부가 인수한 공탁금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각각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를 규명한 것이다. 이 논문들은 미수금 문제의 실태와 외연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관련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미수금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과 공동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기획논문으로 발표하게 해 준 동북아역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최 영 호

#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 과정과 그 특징

이상의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1945년 8월 해방 당시 일본에는 200여 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중 125만 명 정도는 일제 지배 말기인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일본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이었다.<sup>1)</sup> 이들의 임금은 상당 부분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강제저축 등의 방식으로 지급이 보류되어 일본 정부의 전쟁비용으로 충당되거나 일본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유용되어 왔으며, 한편으로 이것은 조선인 노동자의 이탈을 막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 저금 등은 미수금이 되었고, 그것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일제 말기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양상과 규모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許粹烈, 1985, 「朝鮮人 勞動力의 強制動員의 實態－朝鮮內에서의 強制動員政策의 展開를 中心으로－」; 車基璧 역음,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이상의, 2006,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정혜경, 2011,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선인.

을 수령할 조선인 노동자는 해방 이후 조선으로 귀국했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에서는 이들의 미수금을 ‘거소불명(居所不明)’, ‘통신불능(通信不能)’을 구실로 일본 법무국에 공탁하는 과정을 밟아 나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미수금이 수령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기업의 공탁을 통해 당사자의 손을 떠난 존재로 동결되고 만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률용어 ‘공탁’을 한국근현대사 속으로 끌어들인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으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공탁물 인도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강제동원 기간 중 조선인 노동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수당·부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바 있고, 그 결과 이 기업들의 미불금 지급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 채권자인 조선인노동자는 공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공탁금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미수금이 공탁금이 된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간행된 몇 편의 논저에서는 공탁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sup>2)</sup>

2) 공탁금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저 참조. 小寺初世子, 1981, 「第二次世界大戦におけるいわゆる“朝鮮人徴用工”への未拂賃金供託事件に関する法的一考」, 『廣島平和科學』 4; 古庄正, 1986, 「在日朝鮮人労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金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討究』 31-2; 古庄正, 1991, 「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1; 古庄正, 1992,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4-2; 古庄正, 1995, 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6-4; 古庄正, 2000, 『日本企業の戦争犯罪』, 創史社; 古庄正・田中宏・佐藤健生他, 2000, 『日本企業の戦争犯罪: 強制連行の企業責任 3』, 創史社; 古庄正, 2006, 「朝鮮人戦時労働動員における民族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 36; 古庄正, 2007,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37; Matthew R. Augustine, 2011, “Restitution for Reconciliation: The US, Japan, and the Unpaid Assets of Asian Forced Mobilization Victim”,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8-1; 竹内康人,

국제법 전공자로서 일찍이 공탁금 문제에 착안한 고데라 사요코[小寺初世子]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사례로 공탁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탁금 연구의 선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낸 바 있는 고쇼 다다시[古庄正]는 일본의 패전 직후 공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미수금 피해자를 일괄해 ‘거소 불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탁금을 몰수한 점과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공탁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액수를 허위로 공탁한 점, 조선인연맹 등의 미수금 위탁 요구를 막고 공탁을 통해 미수금을 사실상 몰수하고자 공탁을 서둘렀다는 점 등을 밝혔다. 한편 매튜 어거스틴(Matthew R. Augustine)은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일본은행에 관리계정을 개설해 조선인 노동자의 미수금을 예치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공탁 조치를 묵인한 점 등을 고찰해 기존 연구를 보완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국 정부의 요구로 일본 정부에서 인도해온 「공탁서」와 「공탁명세서」를 분석한 연구가 나온 이래<sup>3)</sup> 공탁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려는 연구자들의 움직임이 있어 관련 연구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를 충실히 반영해 조선인 노동자의 미수금이 공탁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해방 후부터 연합군에 의한 일본 점령이 끝나는 시기까지 조선인 노동자의 미수금을 둘러싼 조선인의 동향과 일본 정부·기업, 그리고 GHQ의 동향을 살펴보고, 미수금이 공탁되는 과정을 고찰한다.<sup>4)</sup> 이를 통해 강제동원 당시 일제가 조선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 해방 후에도 그들의 미수금을 주지 않은 채 그들이 귀국하도록 방치하거나 방조한 문제, 귀국 이후 찾아서 전달할 수 있었으나 공탁을 하고 더욱이 아직까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조

2012, 『未解決の戦後補償』, 創史社.

3) 表永洙·吳日煥·金明玉·金暖英, 2008, 「朝鮮人 軍人·軍屬 關聯 ‘供託書’·‘供託明細書’ 基礎分析」, 『韓日民族問題研究』 14.

4) 이 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노동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제목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논문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서술 대상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해 그 논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차 하지 않은 문제, 나아가 한일협정 과정에서 공탁금의 존재를 밝히고 전달할 수 있었는데도 끝내 은폐했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II. 재일 조선인의 미수금 청구활동과 연합국군총사령부의 대응

### 1\_ 재일 조선인의 동향과 조선인연맹의 미수금 청구

재일 조선인 노동자는 해방과 동시에 일본 전국 각지의 광산, 공장에서 해방과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폭발적인 시위는 주로 조선인 노동자가 많이 존재하면서 노무관리가 가혹하고 민족 차별이 심했던 탄광과 광산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지역별로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탄광 등 주로 동북 지역에서 거세게 지속되었다.<sup>5)</sup> 이러한 양상에 대해 당시 주일미군은 일본에서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일본이 아닌 해방된 아시아의 노동자라고 보고하였다. GHQ의 월례보고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탄광 노동자와 일본인 고용주 사이의 갈등을 심각한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패전 직후 일본 정부는 탄광이나 군수공장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와 중국인의 노동을 중지시키도록 각 기업에 지시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의 일원이었다는 애매한 위상을 이용해 많은 기업들이 전후에도 현장을 지키도록 했고, 특히 석탄 노동자의 경우는 탄광에서 계속해서 노동할 것을 강요하였다. 9월 중순 중국인 광부들이 징용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5) 古庄正, 1986. 1,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討究』 31-2, 早稻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199~202쪽.

자신들은 여전히 열악한 조건하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 분노한 조선인 광부들은 폭력적인 시위로 저항하였다.<sup>6)</sup>

조반[常磐]과 홋카이도의 광산 등에서 조선인의 파업이 지속되자 GHQ는 조선인을 귀국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해 11월 1일 귀국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조선 출신의 군인, 징용자, 이익집단 노무자 등의 우선 송송은 다음해 1월까지 거의 완료’되어 갔다. 이때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은, 1946년 2월 17일 GHQ의 지령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 등록자 64만 여 명 중 귀국 희망자 51만 여 명과 등록 시까지 이미 송환된 자 91만 여 명을 합쳐 142만 여 명에 이른다.<sup>7)</sup>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귀국은 그간 그들이 받지 못한 미수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던 조선인들에게는 귀국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인연맹이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미수금 문제를 외면한 채 조선인을 추방하고자 하였다. GHQ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만 보고 조선인 중심의 폭력적인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본 정부의 조치에 동조하였다.

미수금은 임금 뿐만 아니라 강제저금, 가족송금, 후생연금, 보험금, 퇴직수당, 조위금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저금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이는 도망자 등 중도퇴직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된 전체 인원의 7.8%에 불과한 만기퇴직자의 경우에도 여비와 약간의 수당만을 받았을 뿐이다.<sup>8)</sup> 따라서 이 시기에 귀국한 대다수의 조선인노동자에게는 어떠한 형식

6) 古庄正, 1986, 1, 위의 글, 199~206쪽;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11~15쪽.

7) 小寺初世子, 1981, 앞의 글, 20~21쪽. 한편 GHQ 문서에 의하면, 해방 당시 일본 국내에는 135만 6,379명의 조선인이 존재했고, 그 대다수는 일본 국내의 탄광 및 공장에 고용되어 있었는데, 1946년 6월 현재 이 중 88만 7,690명이 귀국하였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연합군의 일본 진주 이후 3개월 이내에 귀국하였다.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Orders Originating in Tokyo Office Federation of Koreans in Japan』, 『戰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80~83쪽.

8) 古庄正, 2006, 10, 『朝鮮人戰時勞働動員における民族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 36, 綠蔭書房, 99~100쪽.

로든 미수금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쟁 말기 홋카이도의 도요하[豊羽]광산에서는 1개월 평균 실수입이 갭 내부의 경우 85엔, 갭 외부의 경우 75엔이었는데, 그 중 가족송금액이 매월 평균 45엔, 저금액이 35엔에 달하였다. 또한 규슈[九州]의 주식회사 아소[麻生]상점에서는 1개월 평균 실수입이 72엔이었는데, 그 중 가족송금액이 월 평균 22.5엔, 저금액이 22.5엔이었다. 가족송금과 저금으로 많은 액수를 공제하고 노동자에게는 소액만을 지급했으며 나머지도 각종 명목의 저금, 송금 혹은 현금으로 공제하였다.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금의 경우 일부는 ‘애국저금’으로 회사에서 우편국에 예입했고, 나머지는 회사예금으로 회사에 예입해 연 5푼의 이자를 받도록 하였다.<sup>9)</sup> 이 저금은 급여에서 미리 공제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양쪽에서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검저축’ 혹은 ‘애국’을 명분으로 요구된 저금은 강제성을 수반하고 있었으며 예금의 인출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저금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통장일 뿐 임금의 삭감과 마찬가지로 조치였다.<sup>10)</sup>

귀국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미수금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세력은 1945년 10월 14일 설립된 재일조선인연맹이다. 조선인연맹의 초기 활동은 조선인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돕고 일본에 남아 있는 동포들을 보호하는 데 중심이 있었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추방계획에 직면한 조선인연맹은, 이들을 착취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1946년 1월 조선인연맹 중앙총본부가 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 산하의 사업주에게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미수금 위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조

9) 정태현·기광서, 2003,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동동원과 임금 탈취」, 『역사와 현실』 50, 420쪽. 예저금 통장은 회사 노무계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예금의 인출은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자율 역시 저금을 지급할 의도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무의미한 가상의 수치에 불과하였다.

10) 小寺初世子, 1981, 앞의 글, 25~29쪽.

선인연맹의 요구는 ① 노동자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② 노동자의 위자료 지급과 사상자에 대한 '특별위자료' 가산, ③ 사망자와 도망자의 임금, 퇴직수당, 예저금, 보험금 등 미수금의 조선인연맹 위탁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①은 인정했지만 ②와 ③은 거부하였다.<sup>11)</sup> 조선인연맹을 민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12)</sup>

아울러 귀국한 조선인의 미수금을 수령하는 데 조선인연맹의 영향력이 상승하는 것을 경계한 일본 정부는 개별 기업에서의 미수금 지불에 관한 합의를 막기 시작하였다. 1946년 초부터 일본 내무성은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전국적으로 조선인연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생성은 1946년 1월 10일자로 「노무자의 취직 및 종업에 관한 건」이라는 성령(省令)을 발표해 일본 정부의 고용방침을 명시하였다. 그 제1조에서는 '공장, 사업장, 기타 장소의 사업주는 사용할 노무자의 임금, 급여, 취업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에 관해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차별적 취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본인 노동자와 '비일본인' 노동자의 차별 취급을 금하도록 하였다.<sup>13)</sup> 그런데 이 성령에서 후생성의 의도는 차별의 금지보다는 오히려 재일 조선인 노동자의 배상 요구를 봉쇄하는 데 역점이 놓여 있었다. 곧 일본 정부는 배상 요구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로 성령을 활용하는 동시에, 경찰력의 집중배치, 단속의 강화로 조선인 노동자의 저항을 억누르고 있었다.<sup>14)</sup>

11) 古庄正, 1991, 6, 「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1, 駒澤大學經濟學會.

12) 후생성에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조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각 지방장관과 사업주들에게 강조하였다.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종전에 따른 조선인 노무자 해고수당 등에 관한 건」, 「조선인 기타의 외국인 노무자의 급여 등에 관한 건」, 「조선인, 대만인 및 중국인 노무자의 급여 등에 관한 건」,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62~72쪽.

13)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厚生省令 第二號」,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52~55쪽.

14) 古庄正, 1986, 1,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金家團體の對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GHQ로 하여금 조선인연맹의 다방면에 걸친 개입을 불법행위로 인식하도록 설득하였다. 이에 GHQ의 첩보부대는 조선인연맹의 지도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GHQ는 조반, 아시오[足尾] 광산에서의 조선인연맹의 움직임을 사회주의 세력의 노동운동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조선인에 대한 보상보다는 추방을 해결책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sup>15)</sup> 점령군의 입장에서 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의 추방에 합의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GHQ는 조선인연맹이 조선인의 미수금에 관한 어떤 논쟁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나아가 귀국하는 조선인에 대한 미수금 지급을 회피했던 것이다.<sup>16)</sup>

## 2. 연합국군총사령부의 관리계정 설립과 미수금 적립

일본에 진주한 GHQ는 애초에 전쟁 도중 조선과 중국에서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미지불 임금과 예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 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과 중국인의 보상 요구가 갈수록 확대되자, GHQ는 배상을 하기 위한 절차로 미수금을 집결시키는 방침을 택하였다.<sup>17)</sup>

1946년 3월 1일 GHQ는 도쿄[東京]의 일본은행에 관리계정을 설립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미지불 금액을 이 계정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더해 외국의 공공자산이나 개인 소유의 재일 자산 중 외국 송금을 위해 환전된 통화

應], 『社會科學討究』 31-2, 早稻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189~216쪽.

15) Matthew R. Augustine, 2011, "Restitution for Reconciliation: The US, Japan, and the Unpaid Assets of Asian Forced Mobilization Victim",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8-1, pp.16~17.

16)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3, 「Orders Originating in Tokyo Office Federation of Koreans in Japan」,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86~88쪽.

17)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3, 「SCAPIN 207 Payment of Savings and Allotments in Korea of Korean Laborers in Japanese Coal Mine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36쪽.

나 다른 자산을 이 계정에 예치하도록 하였다. 관리계정의 관리는 1946년 3월 8일 결성된 민간재산관리국(CPC)이 맡았다.<sup>18)</sup>

미 점령군이 강제동원 노동자의 미지불 임금, 예금, 연금을 모았던 과정은 홋카이도 지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5월 5일, 미군정 제74부대는 미8군 사령관에게 홋카이도에서 조선으로 귀국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해결되지 않은 계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다. 10만 8400명에 달했던 홋카이도 거주 조선인 중 일부는 귀국 이후의 협상이 정부 대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득하에 강제로 추방된 바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홋카이도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기업과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수한 21개의 수표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예금의 대부분은 광산과 전기 회사에서 걷은 것이고, 2개는 일본 동원해제국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골을 옮기고 장례를 치르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몇몇 기업들은 사망 보상금을 포함한 수표를 썼고, 다른 수표에는 귀국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상 보상금, 밀린 임금, 상여금이 포함되었다. 제74부대는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미수금을 지속적으로 모았고, 1947년에는 총액이 260만 엔에 이르렀다.

홋카이도 조선인의 미수금을 도쿄의 GHQ 관리계정에 예치한 이후, 1946년 5월 27일 GHQ의 맥다이아미드 중령은 예금 전송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미군정청(USAMGIK) 대표를 방문하였다. 이때 주한미군정청 재정부는 미수금 수령자의 주소와 금액 등의 내역이 홋카이도에서 도착하면 곧바로 당사자에게 조선은행권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5월 31일 GHQ는 조선인 귀국자들의 미수금을 지불하도록 미군 제24군단에 명령하였다. 제24군단은 미수금을 조선인에게 지불했을 경우 그 내용이 GHQ의 관리계정의 재무상태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연락하기로 하였다.

18) 민간재산관리국의 주요한 임무는 연합국, 적국, 그리고 일본의 전 식민국의 재산 중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해 GHQ에 조인하는 것이었는데, 이 '재산'에는 GHQ의 관리계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 GHQ의 관리계정의 재무상태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제24군단이 귀국한 조선인에게 미수금을 지불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정청이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미수금을 돌려주기를 주저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한미군정청이 홋카이도 예금을 조선인에게 지불할 경우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차원의 미수금 지불 요구가 시작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결과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 예금 그리고 연금 등은 GHQ의 관리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sup>19)</sup>

이후 GHQ는 일본 탄광회사가 조선인 노동자 몫으로 보관하고 있는 저금 및 임금의 총액을 1947년 2월 28일까지 일본은행 또는 미군사정부 기구에 예금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는 일본은행에 개설된 특별계정을 폐쇄하고 잔액은 GHQ 관리계정으로 불입하도록 하였다.<sup>20)</sup>

### Ⅲ. 일본 정부의 공탁 추진과 미국의 대일전략 변화

#### 1\_ 일본 정부와 기업의 1차 공탁 추진

주한미군정청과 GHQ가 조선인 미수금의 지불을 머뭇거리는 동안,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지역의 사례가 미수금 지불의 선례로 되는 것을 막고자 미수금을 공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미수금 공탁은 조선인연맹의 보상 요구와 미수금 위탁 요구를 의식해서 더 속행되었다. 패전 당시 880명의 조선인을

19)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19~20쪽.

20) 戦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SCAPIN 1484 Revocation of Permit 'Payment of Savings and Allotments in Korea of Korean Laborers in Japanese Coal Mine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71쪽.

고용하고 있던 아시오 구리광산의 경우 1945년 11월 4일 조선인연맹 도치기현 [栃木縣] 본부가 퇴직위로금과 사상자에 대한 특별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은 12월 5일 아시오 주둔군대장 모리스의 조정에 의해 후생성의 조정안을 기본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sup>21)</sup> 이외에도 기업들은 조선인연맹의 활동에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인연맹이 거둔 보상 요구, 미수금 위탁 요구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sup>22)</sup>

조선인연맹의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방침이 결정적으로 전환된 계기는 조선인연맹 이와테현[岩手縣] 본부의 활동에 있었다. 닛테쓰[日本製鐵株式會社] 가마이시[釜石]제철소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1945년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귀국하였다. 이에 조선인연맹 이와테현 본부장 등은 가마이시제철소를 방문해, 사망자에 대한 미불금을 연맹에 위탁할 것, 일시 귀국 미귀환자·도망자·사망자 등 중도퇴직자에 대한 미불금을 청산해 연맹에 위탁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가마이시제철소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1946년 4월 5일 이와테현 내무부장 주최로 '조선인 노무자 처우 간담회'가 열렸고, 이와테현 내무부장이 차후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6월 7일 노사 쌍방에게 조정안이 제시되었고, 이와테현 내 관계 기업들은 이 조정안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조정안의 성립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닛테쓰[日鐵] 등 자본가 단체는 배상 요구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와테현 내무부장의 조정안이 제시된 지 겨우 10일 만인 1946년 6월 17일에 후생성은 근로국장, 노정국장, 보험국장의 연명으로 각 도도부현 지사 앞으로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견」을 통첩하고, 관할 사업소에서 고용한 조선인 노동자의 본적지, 입퇴소 연월일, 퇴소 사유, 미수금액, 퇴소 시의 처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하였

21) 古庄正, 1995. 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6-4, 65쪽.

22) 1946년 10월 19일 현재 조선인연맹이 해결한 미수금 문제는 350건에 관계인원 4만 3,314만 명, 해결금액 2,687만 6,844엔에 달하였다. 朴慶植 編, 1983, 『朝鮮問題資料叢書』 9, 亞細亞問題研究所, 93쪽.

다. 이어 6월 21일 후생성은 통첩 「조선인·대만인 및 중국인 노동자의 급여 등에 관한 건」을 내놓고, ‘조선인연맹 기타의 유사단체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거나 이미 귀국한 조선인, 대만인 및 중국인을 위한 임금에 관해서 사업주와 교섭할 권한이 없으며, 또 돈을 모을 권한도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인연맹의 보상 요구, 미불금 위탁 요구를 봉쇄하고자 하였다.<sup>23)</sup>

닛테쓰 본사에서 7월 12일자로 가마이시제철소 총무부장에게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공탁제도의 건에 대한 후생차관 통첩은 이달 24일경 나올 예정으로 현의 조정 문제를 지급 보고하기 바란다’고 하고, 이와태현 내무부장의 조정안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본제철 본사는 각 제철소 앞으로 송부한 6월 21일 차관 통첩에서도 ‘노동자의 미불금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통첩으로 지시가 있을 것’이라며 공탁제도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일본 정부에 의한 공탁의 움직임을 알게 된 조선인연맹 중앙총본부는 후생성을 방문해 ‘미불금 등을 사업주 측이 보관하면 시일이 경과하면서 부도덕한 자본가가 증거인멸을 꾀하는 등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선인연맹에 공탁하게 하고, 연맹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본인에게 전하며 결코 정치운동이나 기타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불금 위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후생성은 이를 거부하였다. 공탁의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선인연맹 중앙총본부는 미불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두어 연맹과 사업주 측이 반반씩 참가하게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후생성은 ‘연맹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도 거부하였다. 연맹 중앙총본부는 끝으로 ‘결정에 입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생성은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마저 거부하였다.<sup>24)</sup>

23)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朝鮮人, 臺灣人及び中國人労働者の給與等に關する件」,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66~69쪽.

24) 古庄正, 1993, 6,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朝鮮人勞務者關係』を主な素材として-」, 『駒澤大學經濟學論叢』 25-1, 駒澤大學經濟學會.

그런데 공탁에 관한 차관 통첩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일본제 철 본사 총무부장은 가마이시제철소장 앞으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공탁의 건을 8월 20일경 통첩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또 20일에는 ‘맥아더 사령부의 허가 지연으로 27일경 통첩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유로는 GHQ에서 미수금의 공탁을 주저해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1946년 7월 18일자로 무로란[室蘭] 진주 군사령부가 ‘일체의 조선인 관계 미불수당금은 해당 군정부에서 정산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7월 29일까지 내역 서류를 첨부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삿포로[札幌] 지방 사무국 무로란 출장소장을 통해 닛테쓰 와니시[輪西]제철소에 지령하였다. 이 군정부의 미불금 처리 방식은 ‘군정부를 거쳐 총사령부로 이 금액을 송부해 조선 진주군에 위탁함으로써 각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었다. 무로란 조선인연맹의 의뢰에 따라 나온 무로란 진주 군사령부의 이 조치도 일본 정부로 하여금 공탁을 서두르게 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GHQ는 ‘일본 탄광에서 일한 조선국민의 저금을 조선으로 송금하도록 허가하기 바란다’<sup>25)</sup>는 내용의 문서를 일본 정부에 재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맥아더사령부의 미수금 공탁 허가 지연은 미수금의 처리를 둘러싼 GHQ와 일본 정부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1946년 9월 6일, 이와테현 내무부장은 관계 기업과 조선인연맹의 대표를 불러 협의회를 열었다. 내무부장은 후생성 통첩의 취지에 기초해 6월 7일에 있었던 조정안을 백지화한다고 조선인연맹에 통고하였다. 현당국과 관계 기업 대표, 조선인연맹 사이에 격론이 있었지만, 결국 내무부장과 기업 측의 주장에 따라 조정안은 백지화되었다. 이와테현에서의 배상 요구의 좌절은 곧 조선인 노동자의 배상 요구의 좌절을 의미하였다.<sup>26)</sup>

25) 戦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SCAPIN 207 Payment of Savings and Allotments in Korea of Korean Laborers in Japanese Coal Mine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36쪽.

26) 조선인연맹의 주요 활동 목표도 이를 계기로 배상 요구를 포함한 귀국 문제에서 생

그해 10월 12일 후생성은 각 지방장관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등에 대한 미불금 기타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사업주가 이들 노무자에 대해 지불할 임금, 퇴직금 또는 이들 노무자를 위해 보관한 적립금, 저금, 유가증권 등이 수취인의 거소불명, 통신불능 등의 사정에 의해 현재 아직 미불되거나 인도불능인 경우는 금후 다음(공탁의-필자 주) 방법으로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관계 사업주를 지도할 것<sup>27)</sup>이라고 명기하였다. 지방장관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의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sup>28)</sup>을 지방법무국에서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해 공탁하도록 관계 기업에 지시한 것이다.<sup>29)</sup> 일본제철 본사는 통첩에 앞서 9월 19일에 그 내용을 입수하고 각 제철소에 송부해 공탁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공탁 시행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집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GHQ의 방침 전환이 있었다.

공탁에 관한 후생성의 통첩에 의하면 공탁의 대상은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노동자이고, 공탁서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상세하게 방침을 전하였다.

활권 옹호 혹은 민족교육의 문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古庄正, 1986.1, 앞의 글, 189~216쪽.

- 27)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朝鮮人勞動者等に對する未拂金その他に關する件」,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75~81쪽.
- 28) 단, 이 통첩에서는 ‘이번 공탁은 금전과 유가증권에 한하며 노동자의 예저금을 통장에 있는 대로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통첩’한다며 예저금을 제외하였다. 이후 12월 1일 노동성 노동국장이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예저금통장에 대해서는 현상대로 각 사업주에게 보관시키고자 한다’는 방침을 각 지역 노동기독교장에게 전하고 있으므로, 이 공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예저금은 상당부분 제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朝鮮人勞務者等に對する未拂金について」,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82~83쪽.
- 29) 이에 앞서 그 해 8월 27일 사법성은 민사국장 통달로 「조선인 노동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을 제시해, 조선인 노동자 등에게 지불할 임금, 퇴직금 또는 이들을 위해 보관한 적립금, 저금, 유가증권 등을 수취인 거소불명, 통신불능 등의 사정에 의해 지불할 수 없는 것의 공탁 수속에 대해 규정하였다.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朝鮮人勞務者等に對する未拂金等の供託に關する件」,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73~74쪽.

다음 금액은 채무자인 공탁자가 별지 내역서 기재의 채권자에게 지불할 급료 및 제 수당급인 바 채권자의 거소불명 때문에 교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또는 소화 ○년 ○월 ○일의 전재에 의한 장부서류 등의 분실로 인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으므로) 변제(辨濟)를 위해 공탁

이 통첩에서는 관계 사업주에게 미불금을 공탁함과 함께 공탁 완료 시에는 공탁서의 번호, 공탁 연월일, 공탁소명, 수취인 씨명, 본적지, 고용 및 해고 시기, 해고 사유, 미불금의 내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장관에게는 ‘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보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관계자가 보고서의 기재 사항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는 실정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미불금의 공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하였다.<sup>30)</sup>

미수금 공탁의 시기는 개개의 사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일본 제철 중에도 가마이시제철소는 1946년 12월, 아하타[八幡]제철소는 1947년 1월, 오사카[大阪]제철소는 1947년 4월에 각각 공탁을 완료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예저금, 퇴직적립금, 임금, 상여금, 퇴직수당 등이 중심으로 이들 5개 항목이 전체의 약 80%였다.

각 제철소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중에서 피공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마이시제철소의 경우 중일전쟁 이래 종전 시까지 고용한 조선인 1263명 중 피공탁자는 690명으로 54.6%에 달하였다. 이렇게 미수금 수령 대상자가 많은 것은 도망자와 사망자에 대해서는 물론,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자, 병이 치료되지 않아 본인의 뜻에 따라 퇴직 귀국한 자, 가사형편으로 계약기간 중에 의원 퇴직하고 귀국한 자 또는 일시 귀국했으나 가사사정상 복직이 불가능한 자, 해고되어 송환된 자 또는 전쟁 종결에 의해 귀국한 종전귀국자에 대해서까지, 귀국 시에 미불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31)</sup>

30) 戦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朝鮮人労働者等に對する未拂金その他に關する件」, 『戦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75~81쪽.

31) 가마이시제철소의 경우 유족부조료, 조의금, 보험금, 건강보험, 매장료, 제3자 조

공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미수금을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예금계좌가 생기자 마지못해 그 방침에 따랐다. 이 기업들의 반발은 그들 자신을 일본의 전쟁 수행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였다.<sup>32)</sup>

이렇게 미지불 자산을 지역 은행계좌로 분산시킴으로써, 후생성은 궁극적으로 이 예금이 조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HQ 관리계정에 집중되지 않도록 막았다. 일본 정부의 예금 프로그램은 GHQ의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GHQ 관리계정의 조선인 미수금은 260만 엔에 머물렀지만, 일본 지방정부의 예금은 9600만 엔을 넘어섰다. 그런데 후생성은 이 미수금의 공탁에 즈음해 채권자인 조선인 노동자 내지 유가족에게 공탁에 관한 어떤 통지도 한 바가 없다.<sup>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 후 10년이 경과되자 시효가 다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했다.<sup>34)</sup>

의금 등이 공탁금액의 50%를 넘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25명과 기타 사망자 17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당 공탁금액도 오사카제철소 120엔, 야하타제철소 88엔이었던 데 비해 가마이시제철소는 182엔으로 두드러지게 많았다. 古庄正, 1993, 6, 앞의 글, 55~64쪽.

32) 패전 후 석탄광업연합회, 광산협회, 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 등은 조선인·중국인을 고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며 그 손실 보상을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194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이입 중국인 및 조선인 노무자의 취급에 관한 건」을 각의 결정하고, 이에 기초해 후생성은 각 도도부현을 통해 해당 부담액을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 1946년 3월 5,600만 엔에 달하는 거액의 국가적 보상을 중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한 35개 기업에 행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마련한 자산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GHQ는 8월 이 배상을 금지시켰다. 古庄正, 1993, 6, 위의 글, 64~65쪽;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33) 古庄正, 2006, 10, 앞의 글, 79~100쪽.

34) 공탁기간은 10년이었으므로 적어도 공탁기간이 끝나는 1956년경까지는 공탁금이 각지의 공탁국에 확실하게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고, 공탁기간 후에도 국가 간의 채권·채무를 기록한 자료를 법무국이나 공탁국이 즉시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테쓰 소속의 가마이시, 야하타, 오사카의 세 제철소가 소재지의 공탁국에 제출한 공탁보고서의 사본 이외에는 전혀 볼 수가 없다. 古庄正, 1991, 6, 앞의 글. 공탁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한다.

## 2\_ 미국의 대일전략 변화와 2차 공탁 추진

1947~1948년 일본의 전쟁배상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1947년 8월 연합국 극동위원회(FEC)에서 연합국 대표단은 연합국의 일원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한국에는 어떤 배상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극동위원회는 한국은 전쟁배상 대신 전쟁 이후 국내에 남아 있는 일본의 자산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정책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다. 1948년 3월 미 국무부 정책계획의장 조지 케넌은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배상과 재벌 일소를 특징으로 했던 GHQ의 초기 경제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른 정책을 제시하였다.<sup>35)</sup>

1949년 이후 미국은 강경한 냉전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국제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적인 동반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중요한 전제는 일본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 문제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1949년 5월 미국은 대일본 점령정책이 대소 봉쇄전략에 맞게 일본의 경제부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에 맞추어 일본의 전쟁배상 송금을 단독적으로 철회했고, 전쟁 관련 시설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남겨두었다.<sup>36)</sup>

GHQ 내에서 들었던 비밀메모에서는 일본 정부에 반하는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입장이 드러난다. 이에 의하면, 맥아더는 배상 요구가 워싱턴의 국방부로 전달되는 것을 꺼렸다. '요구한 금액이 지불될 경우 현재의 시점에서 일본의 경제 복구에 장애물이 될 것이 명확하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맥아더는 '국가적인 전쟁배상의 문제는 당연히 개인

35)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金太基, 1997,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年 -』, 勁草書房 제4장.

36) 이는 당시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부가 추진하는 재벌해체, 전범처리, 전후배상 등과 같은 정책들이 일본의 경제재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진된 변화다.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일본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다케마에 에이치 지음·송병권 옮김, 2011, 『GHQ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평사리 참조.

자산에 대한 개인적 보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한편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38)</sup> 국회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1948년 11월 「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건」과 「대일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을 가결시켰다.<sup>39)</sup> 1949년 5월에는 주일 한국공사 정한범이 GHQ에 '조선인 군속·징용 노동자의 미수금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sup>40)</sup>

1949년 5월 GHQ 민간재산관리국은 한국의 전쟁배상 요구는 거절했지만, 한국 외교사절단의 개인 보상 요구에 대한 조사 및 해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6월 7일, 민간재산관리국은 재무성으로 하여금 강제동원 노동자는 물론 일본군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재일본 자산을 자세히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sup>41)</sup> 이 문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불이 가능한 새로운 엔계정과 안전기금을 수립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해외 채권자에는 조선, 대만, 중국 등을 아우르는 과거 일본의 식민국과 점령 지역의 국민들이 포함되었다.<sup>42)</sup> GHQ는 일본 기업들이 거액의 조선인 자산을 일본 정부의 은행 계좌에 예치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이 자산이 5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지불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강제로 몰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37)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38) 『朝鮮日報』 1949년 3월 26일자, '一次 對日現物 賠償, 國務會議서 目錄 決定, 政府 東京 맥 司令部에 提出'.

39) 1948년 11월 27일 제1대 국회 제1회 115차 국회 본회의 내용.

40)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Investigation and Settlement of Claims of Korean Military Personnel and Conscripted Labor」, 『戰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137쪽.

41)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Claims from Korea」, 『戰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139쪽.

42)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SCAPIN-2030 Foreign Creditors' Yen Deposit Account」, 『戰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戰後補償問題研究會, 145쪽.

1949년 6월 19일 GHQ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외국인 채권자 엔예금 계정을 일본은행에 만들도록 지시해, 일본 내에 있는 외국인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시하에 고용했던 외국인의 미수금을 예치하고 GHQ에 매월 이 예금의 추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수차례의 회의와 보고의 결과, 민간재산관리국은 군인과 노동자로 동원된 조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약 2억 3700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노동자 분은 1억 1000만 엔, 군인·군속 분은 9000만 엔에 달하였다.<sup>43)</sup> 민간재산관리국의 내부 문서에서는 이 기금 전달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기금을 한국대표부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 드러난다. 1950년 1월 16일, 민간재산관리국은 재무성으로 하여금 즉각 이 기금을 외국인 채권자의 엔계정에 예금할 것을 지시하고, 기금의 범주, 금액, 관련 당사자의 이름, 자산의 보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다.<sup>44)</sup>

GHQ의 지시에 맞추어, 일본 정부는 군대에 동원된 식민지민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50년 2월 28일 「국외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탁의 특례에 관한 정령」(정령 제22호)과 그 시행에 관한 명령(법무성, 대장성령 제1호)을 공포하였다.<sup>45)</sup> 이에 따라 군인·군속과 징용선원 등의 미수금이 도쿄 법무국에 공탁되었다. 공탁하지 않은 민간사업소의 미불금, 지방법무국에 공탁되어 있는 것의 일부와 1946년 GHQ가 홋카이도에서 모은 미불금 등도 도쿄 법무국에 공탁했는데, 일본 정부에 의해 이미 지방에 공탁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둔 경우가 많았다. 곧 지방법무국과 도쿄 법무

43)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3, 「Funds Earmarked for Korean National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147쪽.

44) 상세한 내역은 竹内康人, 2012, 「供託と協定で奪われた未拂い金-明らかにした朝鮮人未拂い金の實態」, 『未解決の戦後補償』(田中宏, 中山武敏, 有光健 他著), 創史社, 177쪽, 표 〈朝鮮人未拂金調査〉 참조.

45)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2, 「國外居住外國人等に對する債務の辨済のためにする供託の特例に關する政令」, 『戦後補償問題資料集 7-戦後補償關係法令通達集 2』, 戦後補償問題研究会, 87~92쪽.

국, 각 지역 우편국에 지불하지 않은 임금과 저축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sup>46)</sup>

정령 제22호에서는 공탁의 취지를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등의 채권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정령에 따르면,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채무는 ‘국외 거주 외국인의 채권 전부를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공탁한 채무만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곧 미수금의 공탁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다.<sup>47)</sup>

또한 이 정령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공탁의 통지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sup>48)</sup> 이와 함께 제7조에 소멸시효의 특례에 대해 ‘이 정령의 규정에 의해 공탁된 공탁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완성되지 않는다’<sup>49)</sup>고 명시하였다.

정령 22호의 공포 이후 이에 근거해 기업들이 공탁을 시작한 지 4개월 후 대장성 재무국은 GHQ에 조선인의 미수금이 외국인 채권자 엔계정에 들어 있는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일본 육군에 징집된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배정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엔이며, 일본 해군에도 7500만 엔이 배정되었다. 이 공탁금에는 군무원의 임금 연체분과 사망자 가족에 대한 조의금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0)</sup> 보고서에서는 1950년 회계연도에는 동원해제국이 육군과 해군 관련 기금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책정할 것을 기약하였다.<sup>51)</sup> 1950년 6월 15일, 이 당국은 보고한 대로 해당 기금을 외국인 채권

46) 竹内康人, 2012, 앞의 글, 174~189쪽.

47)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2, 「國外居住外國人等に對する債務の辨濟のためにする供託の特例に關する政令梗概」, 『戦後補償問題資料集 7-戰後補償關係法令通達集 2』, 戦後補償問題研究会, 84~87쪽.

48)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2, 위의 글.

49)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2, 「國外居住外國人等に對する債務の辨濟のためにする供託の特例に關する政令」, 『戦後補償問題資料集 7-戰後補償關係法令通達集 2』, 戦後補償問題研究会, 87~92쪽.

50)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51)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3, 「Funds Earmarked for Korean National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156~159쪽.

자 엔계정으로 보냈으며, 이 과정은 완료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52)</sup>

6·25전쟁 발발 후, 한국 정부는 일본에 있는 GHQ의 외국인 채권자 엔계정을 한국의 지분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sup>53)</sup>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지연시킨 끝에 GHQ의 법무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금액은 ‘대부분 북한 거주자들의 소유이고, 나라가 다시 통일되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남한에 전한 금액이 북한 거주자들에게 전달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의 실질적 문제는 전시의 혼돈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느냐는 것이었다.<sup>54)</sup> 1950년 10월 21일 GHQ의 외교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조선인에게 배정된 2억 3700만 엔 가운데 300만 엔가량만이 외국인 채권자 엔계정에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금액을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일한 계정에 해당 자산들을 예치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sup>55)</sup>

이 시기 미국은 6·25전쟁 과정에서의 냉전 갈등에 관심을 집중해 일본은행 내의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의 미수금을 효과적으로 동결시켰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전쟁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조약을 일본과

52) 한편 노동성은 1950년에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의 노동성 조사 보고서류가 『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이고, 이 노동성 조사에서 각 도도부현의 미불금 상황을 모은 일람표가 『經濟協力 韓國一〇五勞動省調査 朝鮮人に對する賃金未拂債務調』에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자료에는 각 지방 법무국의 공탁 기업명과 공탁 항목, 건수, 금액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도쿄법무국의 『金錢供託受付簿』, 『金錢供託元帳』에서는 조선인 미수금의 공탁 경과와 공탁금액 등이 드러난다. 도쿄법무국의 공탁금 중 조선인 분은 1억 2,000만 엔 정도이고, 지방법무국 공탁분과 미불 채권을 더하면 2억 엔 정도다. 竹内康人, 2012, 앞의 글, 174~189쪽. 이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본 논총에 실린 정혜경의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53) 戦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Funds Earmarked for Korean National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170쪽.

54)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55) 戦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Letters」, 『戦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168쪽.

협상하고 있었다. 이 평화조약의 수석 협상가였던 J. F. 딜레스는 일본 정부에 대한 금전적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HQ의 민간재산관리국은 일본은행 내에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지불을 주장하지 않았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다음해 4월 발효되면서, 결국 GHQ의 관리계정과 외국인 채권자 엔계정은 모두 일본 정부로 이송되고 말았다.<sup>56)</sup>

냉전으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동결은 1952년 4월 미국 정부가 연합국의 일본 점령을 끝냄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미 국무부는 미수금은 개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GHQ의 초기 입장을 포기하면서, 조선인의 일본 내 자산에 대한 요구는 양자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결국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서 일본의 배상은 물론, 점령기에 GHQ의 묵인 혹은 동조하에 행해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공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제 모든 것은 한·일 두 나라 간의 문제가 되었다.

한·일 양국의 회담은 첫 번째부터 논쟁을 초래하였다. 한국 대표는 경제적 배상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비해, 일본 측은 일본 내 조선인 거주자들의 국적 문제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일본 우편예금에 있는 조선인 계정의 상황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sup>57)</sup>

56) 이를 통해 조선인 미수금의 공탁 과정에서 GHQ는 세 가지 실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국할 때 그들의 미수금을 돌려주는 것에 실패한 점이며, 두 번째는 이 미수금의 상당 부분을 두 개의 관리계정에 보관해 일본 정부에 넘겼다는 점이고, 마지막은 ‘정당한 반환(restitution)’과 ‘전쟁배상금(war reparation)’을 뒤섞은 결과 개인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였다는 점이다. Matthew R. Augustine, 2011, 앞의 글.

57)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재한국 일본인 재산의 보상이 가능하다면 한국 전 재산의 60~80%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제가 치명적 상황이 되도록 청구를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측의 배상 요구가 있는 한 그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응하였다.

개인적인 상환으로 초기에 계획되었던 개인적인 자산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국가 간 전쟁배상이라는 외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sup>58)</sup>

#### IV. 미수금 공탁 과정의 특징과 남은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인 노동자의 미수금 공탁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공탁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미수금 공탁 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미불금공탁보고서」에는 채권자의 씨명과 본적지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가령 채권자의 거소가 불명하다 해도 그 유가족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수속을 일절 밟지 않았다. 또한 공탁의 이유로 ‘통신불능’을 자주 거론했지만, 1947년부터는 한·일 간 통신이 재개되었으므로 이도 사실에 어긋난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미불금의 공탁은 ‘거소불명’과 ‘통신불능’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니다. 1950년 정령 제22호는 공탁의 취지를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등의 채권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진의는 조선인연맹 등의 미불금 위탁 요구를 봉쇄할 수단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있었다. 곧 미불금의 공탁은 이를 조선인 노동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공탁이라는 이름을 빌린 미불금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ROK-Japanese Negotiations and Prospects of Improved Relations」, 『戰後補償問題資料集 8-G, H, Q 關聯文書集』, 238쪽.  
58) 이와 관련해서는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 정책과 한일회담 전개 과정』, 선인.

몰수책에 불과하였다.<sup>59)</sup>

이는 나아가 당시의 공탁 자체가 ‘채권자 거소불명에 의한 지불불능’이라는 공탁 원인의 진위를 심사했는지, 곧 공탁으로서 실체상의 요건을 구비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른다. 더욱이 일본은 당시 일단 일본을 출항한 조선인에 대해 일본으로 재도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국한 조선인이 미수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기업에 대해 공탁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지시하였다.<sup>60)</sup>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주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경우가 있다.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는 조선인 노동자 3042명 중 2539명, 83.5%의 본직지를 공란으로 두었다. 2700명의 조선인을 징용한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의 경우 피징용자의 본직지를 군(郡)까지만 기재하였다. 본직지가 기재된 ‘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에서 공탁 통지서를 송부할 의지가 있다 해도 피공탁자의 특징은 불가능해진다. 일본 정부가 법적 조치로 조선인 노동자의 거소를 ‘불명’으로 만들었다면, 야하타제철소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는 조선인 노동자를 문자 그대로 ‘거소불명’으로 만들었다. 공탁금을 전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둘째, 변제공탁이 행해지면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피공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그러나 미쓰비시조선의 경우는 채권자의 거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한 것이므로, 통지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이 경우 공탁 사실을 공시하거나 관보에 기재한 적도 없었다. ‘채권자에게 통지 불능’을 전제로 공탁을 수리한 것이므로 공시에 의한 통지도 불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 결과 미쓰비시조선에 있던 조선인 징용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수금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탁금 환부 청구권은 아직 권리를 행사할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 권리의

59) 古庄正, 1993, 6, 앞의 글.

60) 小寺初世子, 1981, 앞의 글, 35~36쪽.

소멸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환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탁소에서는 실무상의 처리로 공탁일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탁금에 대한 시효 처리에 준하여 취급했을 것이다. 곧 공탁 수속을 종결시키고 세입납부 수속을 하는 것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공탁금은 일본의 국고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탁소 내부의 사무처리상 편의를 고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그 공탁에 대한 환부청구 등이 있을 경우 공탁 수속은 당연히 회복된다. 상대방의 거소가 불분명해 통지도 할 수 없었다면 상대가 남한계인지 북한계인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할 터이고, 따라서 청구권협정도 특별조치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61)</sup>

셋째, 공탁 대상의 누락으로 공탁금의 액수가 극히 적었다. 예컨대 일본제철 오사카제철소의 경우 공탁금이 2만 2371엔이었는데, 본사 총무부장의 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제철소의 미불금은 9만 7431엔에 달하였다. 미불금의 4분의 1도 공탁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불금의 64.5%를 차지하는 저금을 공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야하타제철소의 공탁금도 지나치게 적었다. 이 제철소의 미불금은 26만 4579엔이고, 공탁금은 26만 9530엔이었으므로, 미불금이 전액 공탁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공탁금에서 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0%에 불과하였다. 저금의 비율이 오사카제철소 64.5%, 가마이시제철소 79.2%, 후지코시[不二越] 강제공업주식회사가 98.2%인 것과 비교하면, 야하타제철소는 저금의 대부분을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용일자는 모두 다 1942년 1월로, 해고일자는 전원 1945년 9월 30일로 되어 있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마이시제철소의 경우 지방군정부가 조선인연맹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인지 형식 요건은 일단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공탁금액은 극히 적다. 하루당 공탁금을 계산하면 오사카제철소의 취로 2년 정도 되는 상위 11명의 평균이 0.85엔이었던 데 비해, 가마이시제철소의 근속 2년 이상인 ‘사고 귀국자’ 88명의 평

61) 小寺初世子, 1981, 앞의 글, 38~39쪽.

균은 0.14엔이었다. 이는 가족송금분을 유가족에게 보내지 않아서 원징용공 40명에게서 제소된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의 0.43엔보다도 낮다.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의 노동자들도 고용 연월일과 해고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미수금의 산정이 불가능하다.<sup>62)</sup>

넷째, 대부분의 기업이 미수금의 공탁 시기를 늦추었다. 1946년 7월 후생성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7개 현 172개 사업소 중 미불금 ‘없음’이라고 기재한 곳과 미불금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곳이 150개 사업소로 87.2%에 이른다. 그런데 이는 이들 사업소에 미불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망자 등 중도퇴직자에 대한 미불금은 원칙상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탄광, 광산 중에서도 미쓰비시광산 가미오카(神岡)광업소와 같이 90%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미불금을 갖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미불금 ‘없음’이라고 보고한 사업소와 미가입한 사업소도 이 정도의 미불금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63)</sup>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48년 9월 조선인 노동자 1951명 분의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17만 8479엔 66센을 공탁했는데, 이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91엔 48센이다. 3장에서 보았듯이 1946년 8월 사법성 민사국장의 통달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에서는 ‘이번 공탁은 금전 및 유가증권에 한하고, 노무자의 예금장을 통장 그대로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통첩할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에는 아마도 저금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이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에서 나간 때는 1945년 9월 15일이고, 민사국장의 통달이 나온 것은 1946년 8월 27일인데 미쓰비시의 변제 공탁일자는 1948년 9월 7일이다.

미수금의 공탁일자는 민사국장의 통달과는 거의 2년, 패전 및 귀국과는 3년의 시차가 있다. 그런데 이 3년간 일본의 물가지수는 매우 크게 변동하였다.

62) 古庄正, 2007, 11,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37,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63) 古庄正, 1995, 3, 앞의 글, 75쪽.

예컨대 통계국 물가지료에 의하면 1945년 9월을 100으로 볼 때 도쿄의 소비재 물가지수는 1948년 9월에 평균 744로 올랐다. 더군다나 1945년 8월과 9월 사이에는 물가가 폭등해, 1945년 패전 전의 물가와 1948년의 물가를 비교하면 계란이 62.5배로, 소주는 87.5배로 급등하였다. 결국 미쓰비시조선은 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그 변동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년 전의 미수금을 3년 전 금액 그대로 3년 후에 공탁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는 7분의 1, 많게는 7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 공탁은 법원에 의해 수리되었고, 미쓰비시조선은 조선인 징용노동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4)</sup>



지금까지 일제 지배 말기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에게 제 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저금, 각종 수당 등의 미수금이 아직까지 일본 내에 공탁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내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패전 직후 일본정부와 미 점령당국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군인, 군속, 노동자의 미불임금과 예·저금, 수당 등의 미수금을 동결시켰다. 일본에 진주한 연합국군총사령부는 해방 후 조선인과 중국인의 미수금 지불 요구가 확대되자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일본은행의 관리계정에 입금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차원의 미수금 지불요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주한미군정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귀국한 조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64) 小寺初世子, 1981, 앞의 글, 32~34쪽.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연맹의 조선인 미수금 위탁 요구와 연합국군총사령부의 미수금 집결 조치에 대응하고자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미수금을 공탁하도록 조치했다. 일본정부의 주도에 의한 공탁은 1946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를 전후하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 중 조선인노동자의 미수금 공탁은 1946년 6월 후생성의 통첩「조선인·대만인 및 중국인 노동자의 급여 등에 관한 건」과 1946년 10월 후생성 통달「조선인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기타에 관한 건」, 1950년 2월「국외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 특례에 관한 政令」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49년 6월 현재 조선인 미수금의 명목으로 일본은행에 예치된 기금은 이미 2억 3700만 엔에 달했다.

1949년 이후 미국은 강경한 냉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일정책에서 일본의 경제부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이후에는 조선인의 미수금 처리는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남쪽에서 출범한 한국정부의 경제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더욱이 1952년대부터 시작된 한일 양국의 청구권 교섭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수금의 공탁 사실을 은폐해 왔다.

일본정부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소불명’과 ‘통신불능’을 이유로 공탁을 추진했지만 공탁보고서에는 채권자, 곧 조선인의 본적지가 명기되어 있고, 1947년부터 한·일 간에는 통신이 재개되어 있었다. 둘째, 공탁을 행하면서도 조선인 노동자나 유가족에게 공탁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공탁의 소멸시효는 발효된 적이 없지만 일본정부는 공탁 후 10년이 경과되자 시효만료를 이유로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셋째, 적금을 비롯한 공탁 대상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공탁금의 액수가 실제 조선인의 미수금에 비해 극히 적다. 넷째, 물가가 급등하던 전후 시기에 대부분의 기업이 미수금 공탁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채무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탁은 결국 조선인에게 미수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탁이라는 이름으로 미수금을 몰수하

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던 조선인에게 귀국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조선인 미수금의 공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선인연맹의 세력 확대를 막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미 점령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연합국군총사령부의 경우 조선인을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아닌 치안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점령군으로서의 인식이 결국 공탁 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은 일정 금액만을 공탁한 채 미수금 등의 지불 채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70년 전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 개개인에게 공탁금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21세기 한일관계의 한 단면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戰後補償問題資料集 7-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戰後補償問題資料集 8-G,H,Q 關聯文書集』.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6, 『韓日關係資料集 第1輯』, 고려대학교출판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2008,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8-한일회담외교문서해제집』 I-II-III-V, 동북아역사재단.

高木健一 지음·최용기 옮김, 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古庄正, 1986,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討究』 31-2.

古庄正, 1991, 「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1.

古庄正, 1992,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4-2.

古庄正, 1995, 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6-4.

古庄正, 2000, 『日本企業の戰爭犯罪』, 創史社.

古庄正, 2006, 「朝鮮人戰時勞働動員における民族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 36.

古庄正, 2007,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37.

古庄正・田中宏・佐藤健生他, 2000, 『日本企業の戰爭犯罪: 強制連行の企業責任 3』, 創史社.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김민영, 2009, 「식민지 시대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과 개별 기업의 책임-메이지광업(주)의 사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金英達 著・金慶海 編, 2003,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金太基, 1997,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年』, 勁草書房.

다케마에 에이지 지음·송병권 옮김, 2011, 『GHQ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평사리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小寺初世子, 1981, 「第二次世界大戰におけるいわゆる“朝鮮人徴用工”への未拂賃金

- 供託事件に關する法的一考, 『廣島平和科學』 4.
- 우쓰미 아이코 지음 · 김정남 옮김,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 이상의, 2006,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 장박진, 2008,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1-1.
- 장박진, 2010, 「전후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의 변용-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의 수렴-」, 『아세아연구』 55-4.
-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형성과정 분석: 한일 간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이동(異同)」, 『국제 · 지역연구』 20-3,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정태현 · 기광서, 2003,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무동원과 임금 탈취」, 『역사와 현실』 50.
- 정혜경, 2011,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선인.
- 竹内康人, 2012, 『未解決の戦後補償』, 創史社.
- 표영수 · 오일환 · 김명옥 · 김난영, 2008, 「朝鮮人 軍人 · 軍屬 關聯 “供託書”, “供託明細書” 基礎分析」, 한일민족문제학회 편, 『한일민족문제연구』 14.
- 許粹烈, 1985, 「朝鮮人 勞動力의 強制動員의 實態」, 車基璧 역음, 『일제의 한국 식민 통치』, 정음사.
- Matthew R. Augustine, 2011, “Restitution for Reconciliation: The US, Japan, and the Unpaid Assets of Asian Forced Mobilization Victim”,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8-1.

## [국문 초록]

##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 과정과 그 특징

이상의

이 논문은 해방 후 일본에서 조선인의 미수금을 공탁하는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일제 지배 말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일본 국내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20만 명을 넘었다. 이들 임금의 상당 부분은 강제저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이 보류되어, 일본 정부의 전쟁비용으로 충당되거나 일본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유용되었다. 해방 후 연합국군총사령부(GHQ)와 일본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조선인이 받지 못한 미수금을 일본 법무국에 공탁하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거소불명’, ‘통신불능’을 그 이유로 제시했으나, 공탁보고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본적이 기록되어 있었고, 공탁 당시 한·일 간의 통신 역시 가능하였다. 이 공탁금의 존재는 아직까지 피공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며, 저금 등 공탁 대상의 누락으로 공탁금의 절대 액수도 실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 공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조선인연맹의 세력 확대를 막는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미 점령군의 요구도 수행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면할 수 있었다. 일본 기업 역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후 미수금의 지불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얻었다. 당시 조선인을 치안의 대상으로 보는 점령군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GHQ는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고, 일본 정부의 공탁조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70년 전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미수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고, 그 미수금은 공탁으로 인해 여전히 피해 당사자에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국문 주제어

미수금, 미불금, 공탁금, 피공탁자, 강제동원, 강제저축, 조선인연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Procedures for Deposits  
Conforming to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Lee Sang Euy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w Japan deposited the accounts due Koreans after defeat in 1945. The number of Koreans forced to mobilizeto work in Japan in the lat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exceeded one million persons. Their pay was postpon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compelled savings, and used as war expense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or as funds for Japanese companies. After defeat, the General Headquarters(GHQ) of the Allied Power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the companies deposit the accounts due Koreans in the Japanese Bureau of Judicial Affairs.

The Japanese government explained this act by citing the absence of addresses or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However, the addresses of the forced mobilization victims were recordedin the report, and communic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at that time also waspossible. The existence of this deposit has not yet been notified to the victims of the forced mobilization, and the amount of the deposit is much less compared to the scale of accounts due because of the omission of the public deposit.

Through this deposit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obstruct the expansion of Chongryo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ulfill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and avoid economic difficulties. Japanese companies also received the benefit of their unpaid debt disappearing after depositing a certain portion of the amount. The GHQ had the eyes of the occupation forces, and saw Koreans as targets of public order. It intended to use Japan actively while the United States reorganized the East Asian order in the Cold War. Thus, it permitt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deposit the accounts due Koreans. In the end, seventy years ago,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returned to Korea without receiving their accounts due paid, and the account due still remains unpaid to the victims because of this deposit.



Keywords

Account Due, Deposit, Forced Mobilization, Compelled Savings, Chongry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일제말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 실태

- 규슈(九州)지역의 미불금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

허광무<sup>1)</sup> | 대일항쟁기위원회 심사 과장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국 정부나 학계에서 구체적인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왔다. 1950년대, 6·25전쟁 전후의 혼란 속에 한국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작성에 착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sup>2)</sup> 강제동원 문제에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90년대의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최초로 관련 기록물 일부를 한국 정부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과장. 일본 근현대사회경제사 전공.  
 2) 최근까지 한국 정부가 작성한 최초의 명부라고 알려진 것은 1958년경에 생산된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였다. 그러나 이보다도 수년이 앞선 1953년에 작성된 명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기록으로 드러난 일제만행' 강제징용자 명부 最古 원본 피해자 보상심의 큰 도움 될 듯』, 『국민일보』 2013. 11. 20 외 동일자 주요 일간지 참조.

에 인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자료 부족에 부심하던 학계, 시민사회, 유족들의 기대감은 부풀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 대책 부재와 자료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는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이 제정되면서 개시되었다.<sup>3)</sup>

강제동원 진상규명은 해방 후 약 6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국내외 관련 자료의 망실과 소각, 생존자의 사망·고령화에 따른 진술 확보의 어려움 등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정부 기관의 설립은 개인 연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자료 조사와 수집,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일본 정부를 끈질기게 추궁하고 설득해 2007년 12월 해방 후 최초로 공탁금 관련 명부를 인도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총 11만 명분 9178만 4200엔의 명부로 전시기 일본제국의 격전지에 내몰려진 한인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 등에 관한 것이었다.<sup>4)</sup>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난 2010년, 일본 정부는 추가적으로 탄광, 광산, 항만, 도로, 군수공장 등에 강제동원된 노무자의 미불임금 등이 기재된 노무자 공탁금 명부를 한국 정부에 인도하였다. 이 또한 해방 후 최초로 인도된 명부였다. 이로써 조선인 군인·군속, 노무자의 물적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3)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와 피해자 지원의 노력으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운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초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기회가 있겠으나 우선 법제화운동과 정부 조직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김광열, 2008,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일제강제동원피해 규명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4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국무총리 직속)로 거듭났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영수·오일환·김명옥·김난영, 2008, 「조선인 군인·군속 관련 '공탁서'·'공탁명세서' 기초조사」,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4호를 참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인 노무자와 관련된 문서를 중심으로 강제동원의 물적 피해를 천착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불금이라 함은 기업 측이 노무자에게 마땅히 지불하였어야 할 임금 등의 채무를 의미하며, 이는 노무자 입장에서 ‘미수금’에 해당한다. 조선인 노무자와 물적 피해 문제, 즉 미불금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고쇼 다다시[古庄正]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쇼는 일본제철주식회사의 조선인 미불금 문제를 시작으로 수많은 연구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며 동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는 박경식의 연구를 시작으로 아마다 쇼지[山田昭次], 고쇼 다다시,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의 연구로 이어지면서 노무동원의 개념과 실태가 더욱 명확해졌다.<sup>6)</sup> 또한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 기타하라 미치코[北原道子] 등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회원들에 의해 그 외연이 확장되어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에 의한 지역조사는 강제동원이 일본 전역의 문제임을 자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

5) 고쇼 다다시(古庄正)의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古庄正, 1985,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討究』 第31卷 第2號; 古庄正, 1991, 「<資料>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 經濟學論集』 第23卷 第1號; 古庄正, 1992,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 經濟學論集』 第24卷 第2號; 古庄正, 1993,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一『朝鮮人勞務者關係』を主な素材として」, 『駒澤大學 經濟學論集』 第25卷 第1號; 古庄正, 1995,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駒澤大學 經濟學論集』 第26卷 第4號; 古庄正, 2002, 「未拂い金供託の問題点一日鐵強制連行事件より」, 『月刊 社會民主』 566; 古庄正, 2006, 「朝鮮人戰時勞働動員における民族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 第36號; 古庄正, 2007,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第37號; 古庄正, 2011, 「足尾銅山・朝鮮人戰時動員の企業責任一村上安正氏の批判に答える」, 『在日朝鮮人史研究』 第41號, 저작물로는 古庄正 編, 1993, 『強制連行の企業責任－徵用された朝鮮人は訴える』, 創史社; 古庄正・田中宏・佐藤健生他編, 2000, 『日本企業の戰爭犯罪』, 創史社;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2005,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古庄正, 201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創史社 등이 있다. 2012년 6월 속환으로 별세.

6) 朴慶植,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2005,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할을 수행하였다.<sup>7)</sup> 김영달의 연구 또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로 약칭함)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인 노무자의 강제동원 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피해 실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누락되었거나 혹은 부족하였던 부분, 즉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물질 피해를 가해 기업의 관리 실태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실증적인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조사결과’와 노무자 공탁금 명부이다. 본문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자는 일본 측이 생산한 자료 중 가장 많은 작업장과 인원을 수록하고 있다.<sup>8)</sup> 후자의 경우는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이

7) 일본 지역별 조사결과를 출판한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74,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記録―北海道・千島・樺太編』, 現代史出版会;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2,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四国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3,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大阪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3,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兵庫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7,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2001,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中国編』, 柏書房. 이 밖에도 九州地方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74, 『九州朝鮮人強制連行の実態』; 東北地方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75, 『東北朝鮮人強制連行の実態』; 兵庫朝鮮関係研究会, 1990, 『地下工場と朝鮮人強制連行』, 明石書店; 京都府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1・1992, 『京都府の朝鮮人強制連行』 등이 있다.

8) 사실 한국 정부는 이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조사명부를 생산하고 있었다. 1957~1958년에 생산된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가 그것인데, 군인·군속, 노무자를 총망라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사실 여부의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어 명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사실확인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후 정부가 생산한 자료로 신뢰성이 담보된 명부가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이를 승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완료한 피해신고 약 22만 6,000건이 그것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업무 개시와 동시에 각지에 생존해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실시,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문서자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강제동원의 실체가 현장의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 드러나는 바, 일독할 가치가 충분하다(총 15권).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가해기업이 자행한 미불금 피해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 II.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 명부의 내용과 특징

### 1\_ 명부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관련 기록 중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총 15권 5199장으로 구성)가 있다. 이 명부는 1991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그 사본을 인도한 것으로, 피해자 사실확인과 피해현황 파악에 활용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제출사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후생성 노동국이 조선인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나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변제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후생성 ‘근발 제337호’로 통첩된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선인을 사역한 기업이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에 명시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별 근로서(勤勞署)가 관할지역 작업장을 상대로 조선인 노동자 관리대장 원부에 기초하여, 후생성이 지정한 양식에 해당사항을 재기재한 후 제출토록 한 것이다.

각 서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호표 서식은 ‘소관부처명’, ‘공장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연도별 고용 인원 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 사업장 중 조선인 노무자를 사용한 사업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종의 총괄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제2호표 서식은 조선인 노무자 한 명 한명의 구체적인 미불금 내역을 명시하도록 구성된 명부이다. 기재 항목은 총 12개로, ① 입소경로별 ② 성명 ③ 생

〈표 1〉 제1호 표 작성양식

소관 성별	공장 사업장		연도별 고용(징용 포함) 인원수									
	명칭	소재지	昭和 12	昭和 13	昭和 14	昭和 15	昭和 16	昭和 17	昭和 18	昭和 19	昭和 20	計

〈표 2〉 제2호 표 작성양식

① 入所 経路別	② 氏名	③ 生年 月日	④ 本籍	⑤ 職種	⑥ 入所 年月日	⑦ 退所 年月日	⑧ 退所 事由	⑨ 未拂金		⑩ 退所 時の 待遇	⑪ 厚生年 金保險給 付済未済	⑫ 摘要
								種別	金額			

〈표 3〉 제3호 표 작성양식

① 年度別割當及 雇入數	② 終戦時に 於ける朝鮮 人勞務者數	③ 歸鮮せしめた る者の數	④ 終戦に依る解雇 したるものに対する 處置待遇狀況	⑤ 死亡者, 負傷者, 逃亡者の數	⑥ 徴用に 依る朝鮮人 勞務者の數

년월일 ④ 본적지 ⑤ 직종 ⑥ 입소 연월일 ⑦ 퇴소 연월일 ⑧ 퇴소사유 ⑨ 미불금 ⑩ 퇴소 시 대우 ⑪ 후생연금보험 급부 여부 ⑫ 적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식은 미불금 총액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여부와 관련된 일본 작업장 배치경위와 기간, 직종, 조선인 각각의 신원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다음으로 ‘제3호’ 표가 있다. 3호 표는 ① 연도별 할당 인원 및 고용 인원 수 ② 종전 시의 조선인 노무자 수 ③ 귀선자(歸鮮者) 수 ④ 종전으로 인해 해고당한 자를 위한 처치 대우 상황 ⑤ 사망자, 부상자, 도망자의 수 ⑥ 징용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 수의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장별 조선인 노무자의 할당 배치 현황과 귀환 등 패전 후의 조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호표 서식을 이용해 작성할 내용은 대개 ‘제2호’ 표 마지막에 ‘부기(附記)’의 형태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고, 표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드

물다.<sup>9)</sup>

‘제1호’ 표에서 ‘제3호’ 표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일독하면, 이것이 당초 목적인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현황을 넘어서는,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상세 정보까지 수록된 명부임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명부는 조선인의 송출에서 시작하여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세 개의 표에 나누어 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1990년 8월 7일 노동성 발표로 “5월 25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 시, 최호중 한국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종전(終戰) 이전의 징용자 명부 입수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던 바”<sup>10)</sup>라는 설명이 있는 후 제출된 명부라는 점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 명부를 강제동원 명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를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각 사업장이 관리·보관하던 노무관리대장을 기초로 재작성해 제출한 자료인 만큼, 해당 작업장의 조선인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아예 상당 부분의 원본이 사라지고 없어서 실제보다 매우 적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둘째, 일부 지역의 자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인 노무자가 집중적으로 동원된 탄광은 일본 규슈(九州) 지역과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 홋카이도 지역이 명부에서 완전히 결락되어 있다. 군수공장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던 게이힌(京浜) 공업지대의 도쿄도(東京

9) 김영달은 고베(神戸) 근로서장이 관내 기업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제1호’ 표와 ‘제2호’ 표 양식이 배포되고 있다고 보고 ‘제3호’ 표는 ‘제2호’ 표의 부기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제1호’ 표는 ‘할당 및 고용 상황’을 기재하는 양식이고, ‘제2호’ 표는 이 논문과 동일한 개인별 상세내역을 작성한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보듯이 ‘제1호’ 표는 작업장 총괄표와 같은 것이었고, 김영달이 지적하는 ‘제1호’ 표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제3호’ 표 중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金英達著作集, 2003,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109~112쪽.

10) 金英達, 2003, 위의 책, 103쪽.

〈표 4〉 조선인 노무자 명부의 지역별 현황

지역	A	B	비고
홋카이도[北海道]		○	
아오모리현[靑森縣]			
이와테현[岩手縣]	○	○	松尾鑛業(1035)
아키타현[秋田縣]	○		
미야기현[宮城縣]	○		
야마가타현[山形縣]			
후쿠시마현[福島縣]		○	古河鑛業(株) 好間鑛業所(1019) 常磐炭鑛(株) 磐城鑛業所(867)
도쿄도[東京都]		○	
가나가와현[神奈川縣]		○	日本鋼管(株) 淺野船渠(506)
사이타마현[埼玉縣]			
군마현[群馬縣]			
도치기현[栃木縣]	○	○	
이바라키현[茨城縣]	○	○	
지바현[千葉縣]			
나가노현[長野縣]	○		
야마나시현[山梨縣]			
시즈오카현[靜岡縣]	○	○	
기후현[岐阜縣]	○		
아이치현[愛知縣]			
니가타현[新潟縣]		○	
도야마현[富山縣]		○	일본카바이드 魚津공장(499)
이시카와현[石川縣]			
후쿠이현[福井縣]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	○	
시가현[滋賀縣]	○		
효고현[兵庫縣]	○	○	

지역	A	B	비고
나라현[奈良縣]	○		
와카야마현[和歌山縣]		○	
미에현[三重縣]	○		
오카야마현[岡山縣]		○	三菱鑛業(株) 直島製鍊所(508)
히로시마현[廣島縣]		○	三菱重工業 廣島造船所(1903)
야마구치현[山口縣]			
돗토리현[鳥取縣]			
시마네현[島根縣]			
도쿠시마현[德島縣]			
가가와현[香川縣]			
에히메현[愛媛縣]			
고치현[高知縣]			
후쿠오카현[福岡縣]	○	○	貝島炭鑛(株) 大之浦鑛業所(9479) 古河鑛業(株) 大峰鑛業所(1579) 三井鑛山(株) 田川鑛業所(1404) 明治鑛業(株) 赤池鑛業所(1182), 豊國炭鑛(575) 三菱鑛業(株) 勝田鑛業所(727)
사가현[佐賀縣]	○	○	山口鑛業(株) 小城炭鑛(1509) 杵島炭鑛(726)
나가사키현[長崎縣]	○	○	中島鑛業(株) 江口炭鑛(1213)
오이타현[大分縣]			
구마모토현[熊本縣]			
미야자키현[宮崎縣]		○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오키나와현[沖繩縣]			
지역총수	16	19	
수록인원	6만 9766	6만 4279	

주) 1. A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B는 『노무자 공탁금 명부』.  
 2. 비교란의 작업장은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지 않는 작업장으로 인원 건수 상위 20위에 해당 하는 기업을 의미함. 단, 괄호안 숫자는 건수임.

郡]와 가나가와현[神奈川縣]도 결합되어 있다.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의 노무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야마현[富山縣]과 아이치현[愛知縣]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460개 작업장, 총 6만 9766명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인 노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조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문서 제작이 일본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도(都) 1도(道) 1부(府) 28현(縣)에 대한 조사·수집이 시급하다.

〈표 4〉는 일본 지역별 명부의 작성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A와 자료 B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쪽만 존재하는 지역도 있다.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는 교차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실태파악에 도움이 되며, 한쪽만 존재하는 지역은 결락된 강제동원 작업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비교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작업장이 신규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 자료 모두 조선인 노무자의 개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부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 2\_ 일명 『노무자 공탁금 명부』

지난 2010년 4월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에 관한 공탁금 명부』(이하 ‘공탁금 명부’) 부분이 한국 정부에 인도되었다. 한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인도된 명부의

11) 수록 인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next/main.do>)에 소개된 자료에는 ‘조사결과’ 수록 인원을 6만 9,766명이라고 하고 있으나, 김영달은 6만 6,990명(1990년 8월 7일 일본 정부 발표 시 6만 6,941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수록 인원을 두고 이와 같이 편차가 발생한 데는 ① 명부가 중복 기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② ‘제1호’ 표상의 인원과 ‘제2호’ 명부에 수록된 인원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계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국가기록원의 숫자를 수용하였다.

수록 규모는 총 215개 파일, 공탁서 1318건, 공탁금액 1억 2800만 엔, 조선인 총 17만 5000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공된 문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미 인도된 군인·군무원 명부가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제하고 다시 집계하면, 조선인 노무자는 6만 4279건, 금액은 3500만 엔이다.<sup>12)</sup>

‘공탁금 명부’는 ① 공탁카드 + ② 공탁서 + ③ 위임자 + ④ 등기부초본 + ⑤ 공탁서표지 + ⑥ 공탁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② + ⑥이 다수를 차지한다.

‘공탁금 명부’도 강제동원 가해기업과 조선인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조사결과’에서 결락된 10개 지역의 작업장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조사결과’에 있는 지역이라도 새로운 작업장이 확인되고 있어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추가된 지역의 새 작업장을 일례로 들자면,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로 소녀 노동력을 동원한 도야마현 소재 후지코시[不二越] 강제주식회사, 시즈오카현 [靜岡縣] 소재 도쿄 아사이토[麻絲] 방직주식회사가 있으며, 원폭피해로 유명한 히로시마시[廣島市] 소재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가 있다. 이들 작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하였거나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공탁금 명부’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이것이 전시기 일본 소재 작업장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공탁 명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 명부는 일본이 조선인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미불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조선인 노무자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미불금액으로 보자면 노무자 외 채권자가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sup>13)</sup>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명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발표(「일제 징용 노무자 평균 지원금은 110만 원」, 『연합뉴스』, 2010. 12. 8). 이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약칭함.

13) 노무자 공탁금 명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혜경, 2014,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 『동북아역사논총』을 참조하기 바란다.

도의 비중이다.<sup>14)</sup>

둘째로 강제동원 관련 작업장과 조선인 미불금 내역이 있다고 곧바로 ‘조사결과’와 대조·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사결과’의 미불금 내역과 공탁금 내역을 비교하며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노무자 개별 기록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sup>15)</sup>

셋째로 ‘공탁금 명부’에 조선인 노무자의 개별 명세서가 수록되어 있어도 대개 ‘조사결과’보다 인원수가 적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도 자세히 살펴 보겠으나, 은폐·왜곡 등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며 ‘조사결과’와 ‘공탁금 명부’ 자료를 분석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물적 피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 Ⅲ. 조선인 미불금 피해 실태의 유형: 기업의 미불금 관리형태

이 장에서는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문제에 대해 가해기업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상지역으로는 규슈지역을 선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일본 최대의 탄광지역 중 하나이자 조선인 노무자의 대표적인 동원지역이기도 하며, 아울러 관련 기록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수록 인원 수에서는 조선인 노무자가 전체의 약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5) ‘조사결과’를 보면, 후쿠오카현 일본강업(주)나 야하타[八幡]제철소와 같이, 명부 소실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 1\_ 미불금을 공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기업: 공탁금도 없고 미공탁금도 확인되지 않는 기업

일본 최대 재벌기업의 하나인 미쓰비시가 독점적 지위의 광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6)</sup> 그 중 미쓰비시광업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대표적인 탄광 중의 하나가 나가사키시[長崎市]에 소재한 다카시마[高島]탄광이었다. 다카시마탄광은 ‘나야[納屋]제도’라고 하는 혹독한 노무관리로 유명하였다.<sup>17)</sup> 다른 재벌기업계 탄광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였으나, 다카시마탄광은 노예와 같은 봉건적인 지배체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이곳에도 한반도로부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sup>18)</sup> 당시 조선인 노무자를 관리하던 일본인 현장감독에 의하면, 일명 ‘조선나야[朝鮮納屋]’로 불리던 숙소에 조선인이 상시 3000~3500명이 기거하고 있었다고 한다.<sup>19)</sup> 그들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인 1942년에 모두 관 알선(官斡旋, 조선총독부 알선)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로, 하루 2교대의 작업편성 아래 갱내 노동에 배치되었다.

니반가따[二番方]는 뭐냐면 시굴(試掘)이라고 …… 굴 뚫는 사람들이  
니반가따야. 열흘마다 교대를 해요. 이찌반가따[一番方] 열흘 다니면  
니반가따 열흘 다니고.<sup>20)</sup>

16) 광업은 일반 공업분야와 달리 타 자본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연적 독점으로 재벌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산업이었다. 1890년대 지쿠호[筑豊]탄전에 진출하기 시작한 미쓰비시는 1900년대 초 광산업 최대의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石井寬治, 1991, 『日本經濟史』, 東京大學出版會, 224~225쪽.

17) 일본을 대표하는 탄광지대인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규슈지역과 같은 봉건적인 노무관리를 ‘다코베야[タコ部屋]’라고 한다.

18) 다카시마와 조선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編, 1983, 『原爆と朝鮮人』 第2集을 참조 바란다.

19)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編, 1983, 위의 책, 64~65쪽. 조선인 노무자를 감독하던 일본인 土居一夫의 진술에 의함.

20) 김○봉의 진술기록, 2006. 3. 2, 지원위원회 소장.

〈표 5〉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 내역

종별		금액(엔)	비고
미불금		-	-
거 치 금	임금잔액	1만 7452.57	광업소 보관
	퇴직위로금	4만 7128.50	광업소 보관
	채권(액면)	1만 5070.00	광업소 보관
	소계	7만 9651.07	광업소 보관
가족수당		6만 2295.00	광업소 보관
기본보급		2만 3736.03	통제회 부담
별거수당		1만 8000.00	통제회 부담
기간연장수당		5400.00	통제회 부담
기간재연장수당		-	-
가족위문금		2만 1600.00	통제회 부담
통제회지급 특별수당		1만 3530.00	통제회 부담
일반원호금		550.00	통제회 부담
합계		22만 4862.10	

출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나가사키현, 275쪽.

주: 합산 총액이 맞지 않으나 원자료대로 표기하였다.

다카시마탄광은 ‘조사결과’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 명부 속에는 다카시마와 인접한 미쓰비시광업 하시마[端島]탄광의 것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단, 실제 명부에는 작업장명이 다카시마탄광이나 하시마탄광이 아닌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三菱長崎造船所]’로 수기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확하게 작업장명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 명부는 그 후 생존 피해자의 진술로 미쓰비시광업 다카시마탄광과 하시마탄광의 조선인 노무자 명부임이 확인되었다.<sup>21)</sup> 한편 편철 오류로 판단되는 서식 ‘제1호’표가 다른 작업장 명부 속

21)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나가사키현, 하시마탄광으로 동일된 박○구의 기록이 같은 명부에서 확인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것을 ‘삼릉광업주식회사 기호광업소 조선인 노무자 해고 상황조’ 2,311명분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오류다. 이

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다카시마탄광 총 129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2)</sup>

이 명부에는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다카시마탄광의 총 미불금액은 22만 4862엔 10센으로, 조선인 노무자 1인당 약 173엔이다. 실제로 다카시마탄광 명부상에도 1299명 전원의 미불금이 기재되어 있다. 내역이 미불금이니만큼 이것은 조선인 노무자 개개인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조선인 노무자에게 지불되지 못한 이 미불금은 공탁된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공문서관에 보관 중인 공탁금 일람표를 점검한 바, 다카시마탄광의 미불금이 공탁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sup>23)</sup>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표 5>의 '비고'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업소가 보관 중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인 노무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미불금이 미제로 남아 있을 경우, 흔히 법무국에 공탁의 형태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광업소 보관'이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침 명부 속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소개하자면, 첫째, 임금잔액의 경우는 “중전 후 집단적으로 귀선(歸鮮)하거나 귀선을 서두른 탓에 임금은 개산(概算)해 지불하는 바람에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다”

---

명부는 각기 다른 두 광업소의 것을 편철한 것으로, 명부의 앞부분(163~204쪽)은 미쓰비시광업(주)이고, 뒷부분(205~259쪽)은 日鐵광업(주) 시카마치[鹿町]탄광의 것이다.

- 22)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나가사키현. 三菱鑛業株式會社 高島鑛業所 사업장명의 '제1호' 표에 의하면, 1942년에 314명, 1943년에 516명, 1944년에 241명, 1945년에 228명 등 총 4회에 걸쳐 1,299명의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 세부적으로 보면 명부 중 일부(34명)가 중복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1,265명이 된다.
- 23) 공탁금, 미공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일본 공문서관 쓰쿠바[筑波] 분관 소장 『경제협력 한국 501』 문서에 대한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의 기록에 의함. 竹内康人, 2012, 『戰時朝鮮人強制勞働調査資料集2-名簿・未拂い金・動員數・遺骨・過去清算一』,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표 6〉 조선인 노무자 예치금 명세

종별	예금액(엔)	비고
저금	8만2615.36	도주자 547명분
미불임금	4538.06	도주자 204명분
퇴직수당금	6347.50	도주자 113명분
채권	2275.00	도주자 151명분
건강보험□□수당금	667.78	도주자 51명분
징용자 □□금	9596.63	
징용자 별거수당금	5100.00	
회사 및 구원회 조위금	3181.95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	본인 귀환 시 청구서 교부
장해수당금	-	
계	11만4422.28	

출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나가사키현

주: 일부 판독이 어려운 문자는 □으로 표기하였다.

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퇴직위로금의 경우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해 산출 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거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채권은 “은행에 위탁보관 중이었기에 귀선(歸鮮) 시 교부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가족수당은 “보급금과 함께 조선 각 군청 앞으로(군 출신자분 일괄) 송금 중인데, 7월분 이후 송금이 불가능해 광업소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sup>24)</sup> 이유가 무엇이든

24) 고쇼 다다시는 “다치바나[立花範治] 소장 이하 간부들은 당면한 복구상황, 자금운영, 식량사정 등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대폭 삭감으로 연명하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치안상 외국인 노동자는 조기에 귀환시키는 것이 조미의 급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신규 징용자, 공장 전환배치자, 조선인 노동자를 조기에 귀국시키는 것으로 하고, 전자는 전원(383명) 8월 중에, 조선인 노동자는 유송 관계로 점차적으로 돌려보내 10월 말까지는 전원 귀환시켰다”는 탄광 측 자료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의 조기 귀환은 미불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았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탄광측 직원 및 광부로부터 들은 미불금 지급이 없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들고 있다(古庄正, 2006, 『朝鮮人戰時勞働員における民族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 第36號, 89~90쪽).

조선인 노무자에게 이 미불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미불금은 현재도 미쓰비시광업 측이 보관 중인 셈이다.

한편 다카시마탄광의 경우 미불금과는 별도로 <표 6>과 같이 예치금도 발견된다.

예치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금이다. 당시 노무자들은 월급에서 애국저축, 보국저축 등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이 강제로 공제되어 저축으로 돌려졌다. 대개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해 고향으로 귀환할 때 목돈을 쥐어 주기 위함이라는 그럴듯한 설명이 수반되었으나, 실제로는 모자라는 전비(戰費)를 충족하고 나아가 조선인 노무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sup>25)</sup>

월급은 처음에는 줬는데 나중엔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 뭐. 안 줘, 돈 안 줘. 한 달에 일하면 3원. …… 돈 많이 주면 그 돈 가지고 노름한 다고……. 그래 돈을 안 줘.<sup>26)</sup>

폼샐은 쥐요. 그것도 즈그들 주구 싫은 대로야. …… 저금을 ○○○적금, 노무적금, 사무실 적금, 이렇게 세 군데 떼고 나면 용돈도 모지래요. 용돈도, 자유가 없어가지고, …… 자유가 있어야 돈을 쓰지.<sup>27)</sup>

25) 강제저축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보자면, 다음의 자료가 유익하다. 朝鮮總督府, 1942, 「朝鮮人内地移入斡旋要項」의 '第三,除の編成及び指導'를 보면, “임금은 생활비에 필요한 액수 이외는 저축시킬 것(賃金は生活費に必要な額以外は貯蓄すべきこと)”으로 되어 있으며, 厚生省勤勞局長·厚生省生活局長 연명의 통첩 厚生省 勤勞 194號 「出勤勞務者訓練服務心得準則」 第14條에는 “노무자는 저축보국의 결실을 맺도록 저축조합에 가입, 필요로 하는 송금 및 생활비 이외는 가능한 한 저금할 것이며, 저금통장은 당 공장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함(勞務者は貯蓄報國の實をあげる爲貯蓄組合に加入し必要な送金及び生活費以外は成るべく貯金することとし, 貯金通帳は當工場事業場に於て保管するものとす)”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저축에 대한 지역별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앞의 고쇼 다다시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古庄正, 2006, 앞의 글, 83~85쪽.

26)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서정만의 진술 중 일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9,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 145쪽. 이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약칭함.

27) 후쿠오카현(福岡縣)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업 호쵸[方城]탄광에 강제동원된 조용

홋카이도 소재 미쓰비시광업 오유바리[大夕張]탄광에 강제동원된 서정만과, 후쿠오카현 소재 미쓰비시광업 호쵸[方城]탄광에 강제동원된 조용섭은 위와 같이 증언한다. 어느 경우든 조선인 노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저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가현[佐賀縣] 소재 메이지[明治]광업 다테야마[立山]탄광으로 강제동원된 김상태는 “돈은 못 받았어. 안 줘. 뭐 집으로 부쳐준다 어쩐다 말로는 해도, 하나도 안 부쳤지만. 부쳐주지도 않고, 용돈도 없어”라며 탄식하였다.<sup>28)</sup>

다음의 김기옥의 분노는 이를 대변해 주는 듯하다.

하루에 1원이면 얼마야. 30원? 30원이지. 그래 그것도 주냐? 말만 그렇지. …… 그래서 강제노동이라고. 지금까지 보상받는다 고 애쓰는 거지. 월급 받아 할 것 같으면 왜 보상 받으려고 하겠어?<sup>29)</sup>

미쓰비시광업 다카시마탄광도 이상의 사례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품삯은 뭐 그런 걸 시방같이 이렇게 같이 줬나? 그때 몇 푼씩 줬어. 몇 푼씩 주기는 줬어.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콩 볶아 놓은 거 사먹고, 고구마도 찌어 놓은 거 사먹고 그랬지. 용돈도 안되어.<sup>30)</sup>

다카시마탄광으로 강제동원된 김○봉은 월급이 용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송금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시마탄광으로 강제동원된 박○구도 마찬가지였다. “월급이 어디가 있어? 월급이 …… 돈이 어디가 있어?”라며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sup>31)</sup>

섭의 진술. 진상규명위원회, 2005, 『당꼬라고요?』, 58쪽.

28) 진상규명위원회, 2006, 『뚝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될 뻔하였네』, 103쪽.

29) 규슈 오이타현[大分縣] 소재 사가노세키[佐賀關]제련소에 강제동원된 김기옥의 진술. 진상규명위원회, 2006, 위의 책, 228~229쪽.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 田豊]는 강제저축과 인출 억제, 소액의 임금 지급 등은 실질적으로는 임금 수탈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西成田豊, 2009, 『勞働力動員と強制連行』, 山川出版社, 48~49쪽.

30) 김○봉의 진술기록, 2006. 3. 2. 지원위원회 소장.

그런데 미쓰비시광업의 조선인 노무자 전체 예치금의 72%에 육박하는 저금은 그 후 행방이 묘연하다. 노무자 공탁금 목록에 의하면 미쓰비시광업 다카시마탄광은 공탁 목록, 미공탁 목록 양자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다카시마탄광의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을 광업소 측에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과 공탁금 및 미공탁금 목록에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예치금도 광업소 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금 ‘비고’란에 ‘도주자 547명분’을 시작으로 항목별로 ‘도주자’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치금은 <표 5>의 미불금과 별도로 관리하는 미불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의 비고란에 ‘도주자’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당시 강제동원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현지에 도착한 후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와는 달리 일본 패전 후 작업장의 조업이 중단되자 개별적인 판단하에 귀환길에 오른 조선인들도 많았다. 일명 ‘야매배(밀선)’라고 하는 목선을 자비로 조달해 귀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sup>32)</sup>

어서 나가자고 야매배를 탈라고, 인제 뭇 배든지 탈라고, 그래서 알선을 막 하였어. 뭇 배라도 타고 나갈라고 한꺼로 목선을 가지고 왔더만. 목선, 나무배라 그 말이여, 기계 큰 배가 아니고, 배 운전수, 선장 이 아 염려 말고 나갑시다. 아 이런 배를, 목선을 타고 어디를 가요? 그러니께 저, 러시아, 러시아도 갔다 왔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또 오다가 바람이 세갔고, 어디서 하루저녁 자고 나왔어.<sup>33)</sup>

31) 박○구의 진술기록, 2006. 3. 3. 지원위원회 소장.

32) 귀환을 서두르다가 선박이 난파 혹은 좌초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히로시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이 해방 후 귀환선에 올랐다가 도중 태풍을 만나 좌초한 사건이 있는데, 최근 정부 조사에 의해 그 실태가 밝혀졌다. 진상규명위원회, 2009, 『해방직후 이끼·대마도 지역의 귀국 조선인 해난사고 및 희생자 유골문제 진상조사』.

33) 나가사키시 소재 미쓰비시광업 하시마탄광에 강제동원된 피해 생존자 박○구의 진술기록. 지원위원회, 2012, 『사망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 32쪽. 이 기초조사에 의하면 하시마탄광 피해 생존자 43명 중 귀국조치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불과 2~3명에 지나지 않았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래 저 자유로이 고향에 가라 그러더만. 일본 사람들  
들은 그 자리에 에~ 뭐 별로 없었고, 거기 저 사무실에 그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래 저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느그 나라로 가라고, ……  
고마 밀선을 탔어요, 밀선을 70명 타는 밀선을 갔다가 탔는데,<sup>34)</sup>

이러한 상황은 당시 명부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서 “종전 후 회사의 알  
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유롭게 귀국하는 자는……”이라는 기록과 같이, 패전 후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단독으로 귀환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sup>35)</sup>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포함해 명부 작성 당시 ‘도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이동을 반복하는 토목공사장의 성격상 조선인의 소재를 파악하  
기가 어려워 ‘도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터널  
조성 등 토목공사장이 많았던 나가노현[長野縣]의 경우를 보면, 조선인의 소재  
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본 현의 조선인 노무자가 취로하는 곳은 주로 토목건축 등 토공 운반작  
업인데, 공사 종료, 완성, 기타 사정에 의해 항상 노무자의 이동이 있으  
며 또한 고용관계도 여러 종류가 있다. 대별하자면 공사 사업장과 직접  
고용계약에 있는 자, 하청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공장 사업장이 대부분 이와 같은 실태에 있는 바, …… 종  
전과 동시에 혹은 종전 후 그 공사사업의 중지, 자연적인 작업중단에  
의해 소속 노무자가 해산하거나, 계획수송에 의해 조선인 노무자가 귀  
국하는 등<sup>36)</sup>

다고 한다.

34) 아소광업에 강제동원된 피해 생존자 정원섭에 의한 진술. 지원위원회 <책임조사자  
심재욱>, 2011, 『전시체제기 규슈[九州]지역 ‘아소[麻生]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  
에 대한 진상조사』, 69~71쪽.

35) 아소광업 구바라탄광의 사례,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후쿠오카현.

36)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건’에 의해 나가노현[長野縣] 지사 명의로 제출된 보고서 상  
에 명시된 내용.

이상의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선인 노무자를 일괄적으로 '도주'로 간주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sup>37)</sup>

## 2\_ 미불금을 축소·왜곡하여 공탁하는 기업

경기도 평택 출신의 김민경은 1944년 10월부터 해방 시까지 약 1년 가까이 일본 히로시마시에 소재한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에서 징용공의 신분으로 지내야 하였다.

월급? 인자 월급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월급은 다 같은 게 아니야. 약간의 청년들 23살 적이니까, 사회 나와서 기술 배운 애들도 있었고, 별별 애들이 다 있었지. 기술 방면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월급이 한 달에 한 50~60원씩 탔어요. 그때도. 그리고 보통 평민(기술이 없는 사람-인용자주)으로는 월급이 내가 38원이가 40원인가? 그렇게 탔다구. 근데 첨에 들어가서는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그 월급을 줬는데, 나중부터는 반을 주고서 '50%는 주고 50%는 너희 고향의 부모처지를 위해서 보내줄 테니까, 50%만 너희가 쓰고 50%는 여기서 저장해 두고서, 우리가 보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였던 거라.<sup>38)</sup>

김민경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한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급의 반은 회사 측에 보관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조선소의 공탁금 기록에 의하면 김민경의 미불금은 56엔 57센에 불과하다. 회사 측에서 저축으로 돌렸다고 하는 임금 부분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히로시마조선소의 조선인 노무자들은 '미쓰비시징용공 동지회'를 결성, 회사 측을

37) 참고로 조선인 강제동원과 혹독한 노무관리로 유명한 미쓰비시광업 하시마탄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일본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징용의恨 서린 11곳, 日 “세계적인 문화유산”」, 『동아일보』 2013. 11. 5.

38)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 생존자 김민경의 진술. 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70쪽.

〈표 7〉 아소광업의 조선인 노무자 연도별 현황

지역	광업소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계
후쿠오카현	아소탄광	827	1235	2095	2126	1864	1804	672	1만 623
사가현	구바라탄광	—	—	—	—	11	106	81	198

- 주: 1. 이 표는 『전시체제기 규슈(九州)지역 '아소(麻生)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표 15〉를 참조해 작성하였다.  
 2. 원 자료는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결과』, 후쿠오카현.  
 3. 구바라탄광 1945년도 조선인 수 합계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기입하였다.

상대로 미불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나섰다.<sup>39)</sup>

다른 지역의 경우도 사정은 거의 동일하다. 이번에는 '조사결과'와 '노무자 공탁금 명부'에서 모두 기록이 확인되는 작업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가현에 소재한 아소광업(주) 구바라[久原]탄광은 기타큐슈[北九州]에 군립하던 8개의 아소광업 중 유일하게 사가현에 소재한 탄광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바라탄광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노무자 각각 100명, 150명, 30명 등 총 280명의 할당을 일본 정부에 요청해 각각 91명, 126명, 21명의 총 238명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등재된 인원 수는 이보다도 적은 198명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3년 11명, 1944년 106명, 1945년 81명이 각각 동원되었다. 198명 중 '징용'에 의한 사람은 112명(56.6%)이며, '관 알선'에 의한 사람은 86명이었다.

그런데 〈표 7〉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바라탄광은 조선인 노무자의 비중이 아소광업 전체의 약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탄광에 속한다. 아소광업이 규슈지역 주요 탄광 중 조선인 노무자 규모가 상위 7위에 속할 정도로 조선인 노무자의 강제동원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구바라탄광의 동원

39) 2013. 7. 30. 부산고법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와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되어 원폭피폭을 당한 홍순의 외 4명에게 각각 8,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연합뉴스』 2013. 7. 30.

규모는 너무 적다.<sup>40)</sup>

조선인 노무자의 주요 출신지역은 강원도 71명을 필두로 경남(45명), 경기(38명), 황해(27)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강원, 경기 이북지역에서 조선인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198명 중 156명 이상이 작업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갭내 작업장에 배치되었다.<sup>41)</sup>

이들 198명 전원에게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불금이 존재한다. 이 미불금을 구바라탄광은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구바라탄광은 이들의 미불금을 공탁소에 예탁하였다. 다만 조선인 전원이 아닌 그 일부만이다. 즉 구바라탄광은 ‘조사결과’에 나타난 조선인 노무자 198명 중 140명(70.7%)에 대해서만 사가공탁국 이마리(伊萬里)출장소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왜 전원의 미불금이 아닌, 140명의 미불금만 공탁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조사결과’상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내역은 1946년 7월 17일에 보고되는데, 실제 미불금이 공탁되는 것은 이듬해인 1947년 4월 16일이므로 그 사이에 상당 기간의 공백이 있다. 이 기간 중에 실제 공탁에서 누락된 58명은 공탁 사유가 해소된 것인지, 다른 방도가 강구된 것인지, 이 괴리의 실체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구바라탄광의 공탁 내역이다. 탄광 측이 공탁한 금액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조사결과’상의 미불금과 공탁소에 예탁된 공탁금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이 발견된다.

〈표 8〉을 보면, ‘조사결과’상의 미불금액과 공탁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단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3건 중 121건은 모두 공탁금액이 적다. 미불금보다도 20엔 적게 공탁된 경우가 56건이며, 30엔 적은 경우는 48건, 40엔 적은 경우도 17건으로, 140건의 공탁금 중 무려 86%에 해당하는 건수에서 미불금보다 적은 액수가 공탁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그 액수가 20엔,

40) 지원위원회, 2011, 『전시체제기 규슈(九州)지역 ‘아소(麻生)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32~33쪽.

41) 지원위원회, 2011, 앞의 책, 39쪽.

〈표 8〉 ‘조사결과’상 미불금액을 기준으로 본 공탁금액의 편차

공탁금액의 편차	+ 20	+ 10	0	- 10	- 20	- 30	- 40
해당 진수	1	1	17	-	56	48	17

30엔, 40엔으로 10 단위에서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공제’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보면, ‘조사결과’상의 조선인 노무자 198명 중 미불금이 공탁된 자가 140명으로 10 단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의문을 해소시킬 만한 유용한 자료는 현재 없으나, “강제동원한 조선인 수가 소규모인 구바라탄광 관련 자료들만 제출하고, 다수의 조선인을 동원한 ‘아소탄광’(의 다른 작업장-인용자주) 관련 자료는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정부 조사보고서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42)</sup> 다시 말해서 조선인 사용규모나 공탁금액 ‘공제’의 규칙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소광업은 의도적으로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을 축소·왜곡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사용규모 제7위의 아소가 전후처리 과정에서 부과되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미불금을 모두 공개하고 공탁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그중 가장 규모가 작은 구바라탄광을 ‘면책’용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sup>43)</sup>

### 3\_ 미불금의 공탁과 직접관리를 병행하는 기업

나가사키시 소재 나가사키항운 주식회사는 1944년과 1945년 두 해에 걸쳐 각각 조선인 노무자 100명씩을 할당해 주도록 요청해 각각 78명과 34명, 계 112명의 조선인을 확보하였다.<sup>44)</sup> 그런데 실제 ‘제2호’ 표에 등재된 조선인은 총 113명으로 이 회사 측의 자료설명과는 1명의 차가 있다.

42) 지원위원회, 2011, 앞의 책, 43쪽.

43) 구바라탄광의 미불금과 공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정혜경 박사로부터 중요한 교시가 있었다.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44)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나가사키현.

〈표 9〉 나카사키항운 주식회사 조선인 노무자 출신지역

출신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평남	경기	기타
인원 수	58	4	1	35	1	4	2	1	7

이들 113명의 조선인은 주로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출신의 20대 청장년층이었다.

70명이 잡혀갔는데 연기군에서 …… 거기에 이제 전라도 사람도 끼었는데 …… 전라도 사람이 또 한 30명 왔었거든.<sup>45)</sup>

당시 연기군에서 강제동원된 김종구는 위와 같이 조선인 노무자의 출신지역에 대해 진술하며 강제동원된 인원이 대략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의 진술대로 연기군을 포함한 충청 지역에서 약 62명, 전라도 지역에서 36명이 동원되어 있었다.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뭘 일을 하느냐 하면, 가대기(쌀가마니 따위의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찍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라는 것을 이제 별로 해보지 않은 거지. …… 이제 배가 들어오면은 크레인으로 풀어놓으면은 이걸 메고서 창고에 쌓는 거라. …… 뭐냐하면 알기 쉽게 말하자면, 풀어주고 실어주고 하는 일이야, 직업이 그거니까.<sup>46)</sup>

주된 업무가 화물선으로부터 화물을 운반하는 하역(荷役)작업이었다. 연기군에서 동원된 동료들은 같은 숙소에 배정되어 감독관 2명의 감시를 받았다. 작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으며, 일당 4엔 30센을 받았는데, 여러 명목의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매월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45) 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439, 442쪽.

46) 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440, 442쪽.

하루 나가는 게 이제 4원 30전에, 밥값 떼고 병원 치료비 떼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준다고, 한 달 ‘간조(勘定: 계산)’를 해줘요. 조금 주시.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은 몇 푼 되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시원치 않죠 뭐. 객지 나가서 나 하나 몸뚱이만 잘 살면 그만이지 뭐. 그 힘으로 참고 지내는 거죠.<sup>47)</sup>

김중구도 많은 다른 조선인들이 그러하였듯이 귀환 당시 자비(自費)로 ‘밀선’을 이용해 돌아왔는데, 지불할 여윌돈이 없어서 집에서 부친 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김중구의 진술처럼 회사에서 공제한 부분 중 미불금은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 김중구는 1945년 9월 30일에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불금은 전무(全無)이고, ‘퇴직 시의 대우’나 ‘후생연금보험 지급현황’도 적요란에 ‘불명’이라는 기재 내용과 함께 공란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조선인 노무자들도 김중구처럼 미불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미불금은 35명분 총 1472엔 91센이 존재하며, 이를 조합저축으로 예치해 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48)</sup> 이는 1인당 42엔 정도의 금액이며, 김중구의 진술대로라면 약 10일분의 임금이다. 김중구의 진술에 나타난 월급에서 공제한 각종 공제금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에 관한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35명분의 미불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된 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노무자 공탁금 명부에서도 나가사키항운의 미불금과 그 공탁금 내역이 확인되는데, 다만 35명 중 단 4명분뿐이다. 총액은 248엔 79센이다.

정리하자면, 미불금이 존재하는 35명 중 4명은 공탁, 나머지 31명분은 은

47) 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446쪽.

48)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나가사키현. 이 기록은 “미불금 총액 1,472엔 91센은 \*\*은행 나가사키지점 예입. 당사 조합저축으로 예입해 본인 청구가 없으면 지불될 수 없는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다.

행 계좌에 예치하였다는 결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협력 105』 자료 중 미공탁금 리스트에서 확인된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액은 총 30명분 1124엔 12센이라고 한다. 앞의

〈표 10〉 나가사키항운의 미불금·공탁금 현황

미불금					
35명(1472,91엔)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공탁금</th> </tr> <tr> <td colspan="2">4명(248,79엔)</td> </tr> </table>		공탁금		4명(248,79엔)	
공탁금					
4명(248,79엔)					

35명 총 1472엔 91센에서 4명의 공탁금 248엔 79센을 제한 1224엔 12센보다 100엔이 적다. 이 차액은 나가사키항운 측 설명의 112명과 실제 명부 인원 113명의 편차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나가사키항운이 35명의 미불금을 전액 공탁하지 않고 왜 4명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나가사키항운은 미불금을 공탁과 미공탁으로 관리하는 경우, 미공탁금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이 장에서는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을 기업이 어떻게 관리·운용해 왔는지, 상정할 수 있는 세 개의 유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전혀 외부에 공탁·관리하지 않고 사내에 보관·관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전액 공탁·관리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공탁과 예치를 병행하는 경우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을 관리하는 행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괄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미불금의 은폐·축소이다. 다시 말해서 각 유형의 기업들은 미불금의 채무 변제에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불내역을 왜곡, 누락시키거나 축소한 것이다.<sup>49)</sup>

그나마도 이 글에서 취급한 재벌기업이나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

49) 물론 미불금을 감액없이 전액 공탁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임금대장 원부와의 대조가 필수불가결한데 기업이 소장하고 있을 법한 임금대장 원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면에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수면 밑에 숨어 있는 방대한 규모의 군소(群小) 기업군이다. 재벌기업의 계열이나 협력업체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 기업의 관련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함바[飯場]’ 단위로 조직되는 토목건축, 건설, 탄광 등의 업종의 경우, 이동의 빈번함과 이합집산, 하청과 하도급이 통상적이어서 관련 자료 입수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를 대표적인 미불금 관련 명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세 유형을 통해 설명하였던 바 증언부언이 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이 연구의 과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필자가 사용한 자료는 공탁금 관련 자료 중 노무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명부류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약관화하게 명시한 장부인 것이다. 그런데 지불해야 한다고 명기한 장부가 있고, 실제로 그 지불을 유예해 법무국에 공탁한 장부가 각각 존재하여 미불금 처리 내역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양자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양자 간에 괴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괴리를 추적한 결과, 미불금에 대해 가능한 한 지불을 자체 관리로 유예하거나, 또는 실제보다 적은 액수의 지급으로 무마하고자 한 기업의 행태와 조우하였다. 이 연구는 그 괴리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미불금 처리는 일본의 전후처리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학계에서는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생경해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 향후 새로 발

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로,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자.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조사·진상조사를 개시한 후 2008년부터 그 업무를 확대해 피해사실에 따른 지원업무도 시작하였다.<sup>50)</sup> 이에 의하면 피해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이 생존하는 동안 지원되며, 현지에서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에게 2000만 원의 위로금을, 강제동원에 의해 부상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최고 2000만 원, 최하 300만 원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 '미수금'<sup>51)</sup>을 액면가의 200배로 환산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까지의 처리 현황을 보면 <표 11>과 같다.

'미수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라면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표 11> 지원금 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2013. 8)<sup>52)</sup>

	전체	사망·행불	부상장해	미수금	생존
신청	9만 5401	1만 9111	2만 5358	2만 5841	2만 5091
지급결정	6만 7045	1만 7967	9603	1만 5077	2만 4398
인용률	70.28%	94.01%	37.87%	58.35%	97.24%

50) 지원금 업무는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 2007. 12. 10)의 제정으로 개시되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으로 해소되어 폐지된다.

51) '미수금'이라 함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각종 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아직도 지불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채무의 의미로서 '미불금'으로 표현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지불해야 할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기에 미불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52) 심재욱, 2013. 11. 12, 「일제 강제동원 피해규모 및 지원액 추산」(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평화 문제 간담회」 프로시딩), 47쪽, <표 9>에 의한.

또한 사망·행불, 부상장해의 지원금 지급과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다만 ‘미수금’의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전제된다. <표 11>에 의하면 ‘미수금’ 수급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한국 정부가 조사를 완료한 22만 6000여 명의 6.7%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와 더불어 생각해 보면, 이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미수금’ 수급자들은 그마저도 축소·왜곡된 ‘미수금’을 수급한 셈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보관 중인 원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일본 정부 및 가해기업의 행태로 보아, 이는 극히 지난하고 요원한 일이다.<sup>53)</sup> 그간 한·일 강제동원 전문가, 운동가, 시민단체 등 양식 있는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이 행해져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끊임없는 진실규명 추구하고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울러 한국 정부는 공탁금(미공탁금) 자료의 추가 확보와 더불어 우편저금, 후생연금보험 등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자료의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탁하지 않은 회사가 보관 중인 ‘미수금’이 그 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행방을 찾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가 이러한 연구 활동을 더욱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다.<sup>54)</sup>

53) 2013년 들어 연일 계속되는 아베[安部] 정권의 우경화, 군국주의화 노선(「日, 자위권 넘어 敵기지 선제타격」까지 거론), 『문화일보』 2013. 11. 12)과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가 시장의 잇단 망언에서 보이는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부정(「위안부 부정도 모자라……하시모토의 일본유신회, 위안부 검증팀 만들기로」, 『조선일보』 2013. 11. 9),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재계의 인식(「日재계 “강제징용 배상, 對韓투자 막아” 압력」, 『동아일보』 2013. 11. 7) 등이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54) 강제동원 피해는 물적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적 피해, 특히 현지에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의 발굴·수습·봉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원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해 일정의 성과를 낸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 최초로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한인 희생자의 유골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해방 후 67년 만의 귀환이다. 「사할린 원혼 67년 만에 고국 품으로」, 『한겨레』, 2013. 8. 30.

## 참고문헌

- 古庄正, 1985, 「在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金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討究』第31卷 第2號.
- 古庄正, 1991, 「<資料>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 經濟學論集』第23卷 第1號.
- 古庄正, 1992,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 經濟學論集』第24卷 第2號.
- 古庄正, 1993,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一『朝鮮人勞務者關係』を主な素材として一」, 『駒澤大學 經濟學論集』第25卷 第1號.
- 古庄正, 1995,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駒澤大學 經濟學論集』第26卷 第4號.
- 古庄正, 2002, 「未拂金供託の問題点一鐵強制連行事件より一」, 『月刊 社會民主』566.
- 古庄正, 2006, 「朝鮮人戰時勞働動員における民族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第36號.
- 古庄正, 2007,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第37號.
- 古庄正, 2011, 「足尾銅山・朝鮮人戰時動員の企業責任一村上安正氏の批判に答える一」, 『在日朝鮮人史研究』第41號.
- 古庄正, 201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創史社.
- 김광열, 2008,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 - 일제강제동원피해 규명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4호.
- 표영수 · 오일환 · 김명옥 · 김난영, 2008, 「조선인 군인 · 군속 관련 ‘공탁서’ · ‘공탁명세서’ 기초조사」,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4호.
- 심재욱, 2013. 11. 12, 「일제 강제동원 피해규모 및 지원액 추산」(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평화 문제 간담회」 프로시딩).
- 朴慶植,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 古庄正 編, 1993, 『強制連行の企業責任一徵用された朝鮮人は訴える』, 創史社.
- 古庄正 · 田中宏 · 佐藤健生他 編, 2000, 『日本企業の戰爭犯罪』, 創史社.
- 山田昭次 · 古庄正 · 樋口雄一, 2005,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74, 『朝鮮人強制連行・強制勞働の記録一北海道・千

- 島・樺太編』, 現代史出版會.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2,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四國編』, 柏書房.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3,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大阪編』, 柏書房.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3,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兵庫編』, 柏書房.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7,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2001,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中國編』, 柏書房.
-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編, 1983, 『原爆と朝鮮人』第2集.
- 石井寛治, 1991, 『日本經濟史』, 東京大學出版會.
- 金英達著作集, 2003,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 西成田豊, 2009, 『勞働力動員と強制連行』, 山川出版社.
- 竹内康人, 2012, 『戰時朝鮮人強制勞働調査資料集2—名簿・未拂い金・動員數・遺骨・過去清算—』,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 김○봉의 진술기록(2006. 3.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소장.
- 박○구의 진술기록(2006. 3.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소장.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5, 『당포라고요?』.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6,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될 뻔 하였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9,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책임조사자 심재욱>, 2011, 『전시체제기 규슈[九州]지역 '아소[麻生]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2012, 『사망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

## [국문 초록]

### 일제말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 실태 - 규슈(九州)지역의 미불금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

허광무

이 연구의 과제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물적 피해를 가해 기업의 미불금 관리 형태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와 일명 ‘노무자 공탁금 명부’이다. 두 자료는 조선인 노무자의 개별 내용이 수록된 ‘명부’로 이들의 미불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미불금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미불금을 공탁하지 않고 사측에서 보관하는 경우,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다카시마탄광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미불금을 공탁하고 있는 경우, 아소광업주식회사 구바라탄광이 이에 해당한다. 단, 구바라탄광은 아소광업의 8개 탄광 중 유일하게 공탁된 경우인데 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이 탄광만이 공탁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셋째, 공탁과 사측 보관을 병행하는 경우, 나가사키항운 주식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며, 극히 일부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상의 세 유형과 같이 관리 형태는 각각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미불금을 ‘은폐’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작업장에 강제동원된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체납 임금 및 강제저축 등 미불금 존재가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고된 미불금 금액보다도 대부분 적은 금액이 공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문 주제어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 미불금 관리, 구바라탄광, 아소, 미쓰비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Unpaid Wages to Forcibly Mobilized Korean Laborers:  
Focusing on the Treatment of the Unpaid Wages

Hur Kwangmoo

This paper focuses on how Japanese companies handled the unpaid wages due Korean laborers after the conclusion of World War II. For this research, the materials Report for the Korean Laborers and List of Laborers Deposits were analyzed. Through cross-checking these materials, I found that Korean laborers' unpaid wages have been treated in the three manners below.

First, Japanese companies, such as the Mitsubishi Mining Corporation, kept the unpaid wages of Korean laborers in the company's account or in a safe.

Second, some Japanese companies, such as Kubara Mining, which was part of the Aso Mining Corporation, deposited the unpaid wages to the deposit office. It remains unclear why only Kubara Mining, a small company compared to other companies in the Aso Mining Corporation, deposited the unpaid wages to the deposit office. The other companies in the Aso Mining Corporation did not deposit the unpaid wages.

Third, some companies, such as the Nagasaki Port Transportation Company, chose both of the two approaches above. This company deposited some of the unpaid wages, and also kept the rest of these wages in its own accounts.

Though there were several approaches, most Japanese companies instead hid and reduced the unpaid wages and original deposits rather

than deposit them in the deposit office. Korean survivors who were in Nagasaki say that they had much savings, but no one was paid. I strongly wonder why the Japanese companies have hidden their unpaid wages and held some deposits until now.

Keywords

Korean labor, unpaid wages, the treatment of unpaid wages, Kubara Mining, Aso Mining Corporation, Mitsubishi Mining Corpor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일본 기업재건정비 과정과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

배석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전후 일본은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다가 돌아가는 조선인 노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sup>1)</sup>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46년 10월 후생성 통첩으로 공탁을 지시했고, 해당 기업은 불성실하게나마 따랐다. 기업이 공탁한 미불금은 실제 조선인 노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있었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불금을 은폐·축소했기 때문이다. 공탁 대상의 미불금 규모는 해당 기업이 알아서 책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었고, 미불금이 없다고 해도 규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지불되어야 하는 미불금의 공탁이 국가권력에 의해 지시되고, 기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불금'이다. 이하에서는 주어가 조선인 노무자인 경우는 미수금으로, 기업인 경우에는 미불금으로 쓴다. 혼동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것은 기업이 주체가 될 경우 미수금과 미불금이 회계상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업이 마지못해 축소된 액수를 공탁하거나 아예 은폐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일반적으로 공탁은 해당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또 해당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행위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한 법적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조선인 미수금 문제는 기존 연구를 통해 명확해졌듯이 사실 당시 일본 정부의 일정한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 대응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제일 조선인 단체들의 움직임 같은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 힘들고, 공탁의 근거인 ‘거소불명’의 경우도 당시 해당 조선인 노무자들과 교신이 가능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기업의 입장에서라도 미불금 청산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미불금의 규모가 ‘전시보상특별세’나 재외자산 손실처럼 기업 존속의 사활이 걸릴 만큼 크지 않은 반면, 제일 조선인 단체의 움직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어 가뜩이나 패전 직후 혼란한 작업장을 보다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패전 직후에는 개별 기업, 사업장 별로 미불 임금 등이 지불되거나, 제3자에게 인도되는 경우가 있었다.<sup>3)</sup> 가마이시[釜石]제철소의 사례<sup>4)</sup>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왜 일본 정부와 미불금을 가지고 있던 일본 기업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공탁이라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초기 미불금 지불에 그다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던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공탁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그리고 그나마도 축소해 공탁하거나 아예 은폐를 자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미불금 문제를 없애려고 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해 전후 일본의 기업재건정비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

2) 당시에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조선인연맹 등 제일 조선인 단체의 미수금 위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정과 일본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저지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古庄正, 2000, 『日本企業の戦争犯罪』, 創史社.

3) 정혜경, 2013,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자료의 미시적분석」, 第6回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日·韓合同研究會 발표문.

4) 古庄正, 2000, 위의 책.

연구가 기업재건정비 과정과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를 연계시키는 이유는 기업재건정비법을 축으로 한 일본 정부의 기업재건정비정책의 추진 과정을 미수금의 미지불, 은폐·축소, 공탁 문제를 발생시킨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철저한 청산보다는 ‘빠른 청산’을 통한 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했던 일본 정부의 재건정비정책이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은폐·축소, 공탁의 여지를 만들었고, 기업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인 노무자의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졌던 하리마[播磨]조선소의 사례를 통해 주장을 보다 구체화시켜 볼 것이다.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전후 일본 기업재건정비 과정에 주목한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직 없다. 주지하듯이 미수금 문제는 그 실태 규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일정하게 이루어졌고<sup>5)</sup>, 기업재건정비의 경우도 일본경제사 영역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았던 주제이다.<sup>6)</sup> 이 연구는 이들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기업재건정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에 크게 의존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자료의 제약 등으로 추론한 부분이 많아서 ‘시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도 지적해 둔다.

5) 古庄正, 1986, 「在日朝鮮人労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金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研究』 31-2; 古庄正, 1991, 「[資料]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1; 古庄正, 1992,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4-2; 古庄正, 1993,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朝鮮人勞務者關係’を主な素材として」,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5-1; 古庄正, 1995,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戰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6-4; 古庄正, 2007,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37; 竹內康人, 2012, 「供託と協定で奪われた未拂い金: 明らかになった朝鮮人未拂い金の實態」, 田中宏・中山武敏・有光健 他著, 『未解決の戰後補償』, 創史社.

6) 植草益, 1979, 「占領下の企業分割」, 中村隆英 編, 『占領期日本の經濟と政治』, 東京大學出版會; 宮崎正康 外, 1982, 「占領期の企業再編成」, 『年報 近代日本研究』 4, 山川出版社; 麻島昭一, 2002, 「昭和電工の企業再建整備の考察」, 『専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474; 呂寅滿, 2007, 「企業再建—再建整備の實施とその意義」, 武田晴人 編, 『日本經濟の戰後復興—未完の構造轉換』, 有斐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정책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일정 부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일본 정부의 전후 기업재건 구상: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 1\_ 전시채무 보상의 좌절

모든 시작은 패전 직후 곧바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전후 부흥정책에 있었다. 패전 직후 일본 경제는 생산 감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시데하라[幣原]내각은 정체와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업재건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입안한 정책이 '전시채무(戰時債務)'의 보상 추진과 전시기업의 '신(新)·구(舊) 회사 분리' 구상이다.

전시채무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가 명령 또는 계약의 형태로 지불 보증한 대금이나 전쟁보험금 등을 지칭하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채무다. 주로 군수품의 미불금, 국가에 의해 징발되어 격침된 선박 보상, 공장의 소개(疏開) 경비 등이었다. 전시채무 보상정책에 호응해 관련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청구한 규모는 총 건수 137만 5510건, 금액 809억 엔에 달하였다.<sup>7)</sup> 일본 정부는 이 전시채무를 기업에 보상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해 기업정비재건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땅히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었으며, 만약 받지 못할 경우는 모두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7) 大藏省財政史室, 1983,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第13卷, 699쪽.

수 있었다.

한편 신·구 회사 분리는 기업이 패전으로 불필요해지거나 배상의 대상이 되는 군수생산설비 자산을 제외하고 민수전환이 가능한 설비, 자재, 필요인원을 적당한 방법으로 분리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런 조치의 목적은 물론 신속히 생산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회사의 분리로 불필요한 설비만을 보유하게 된 구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구상 중 우선 전시채무 보상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재벌 해체, 배상 지정 등을 통해 경제비군사화·민주화정책을 추진하던 GHQ의 입장에서는 전시채무 보상이라는 일본 정부의 구상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저항했지만, 결국 GHQ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시채무 보상은 정부가 기업에 보상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 100% 과세하는 형식을 통해(전시보상특별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업의 손실로 남았다.<sup>8)</sup> 반면에 신·구 회사 분리 구상은 1946년 8월 ‘회사경리응급조치법(법률 제7호)’과 같은 해 10월 ‘기업재건정비법(법률 제40호)’으로 현실화되었다. 경제비군사화를 명분으로 전쟁채무의 보상을 저지한 GHQ와 전후 경제혼란의 극복을 명분으로 한 일본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 2\_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전쟁채무의 봉쇄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기업 재무회계 경리에서 신·구 계정을 분리한 후, 신계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구 계정의 채권채무 결제를 정지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본금 20만 엔 이상 전시채무의 대정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 이들은 ‘특별경리

8) GHQ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일제의 전쟁 수행에 기업이 동조한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회사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동법은 정부의 전시채무 보상이 좌절된 것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GHQ의 반대로 전쟁채무 보상이 좌절되자, 동 채무의 결제를 구 계정으로 분리한 후 정지시켜 해당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GHQ와 일본 정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1948년 11월까지 특별경리회사로 취급된 회사는 8373개에 달하였다.<sup>9)</sup>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경리회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금 20만 엔 이상의 회사로 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이미 전시보상금 등의 교부를 받았거나 혹은 아직 교부를 받지 않았지만 청구권이 있는 회사, 또는 재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 회사들은 자동적으로 특별경리회사에 해당한다(제1조).
- 특별경리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결산을 행하고, 이후에는 경리를 신 계정과 구 계정으로 분리해, 동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戰後) 산업의 회복 진흥에 필요한 자산을 특별관리인의 결정에 기초해 신 계정에 소속시키고, 이후 생산 활동은 신 계정에서 행한다. 그 외의 자산은 구 계정에 소속시킨다(제5조).
- 특별경리회사의 재산, 특히 구 계정에 속하는 재산은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특별관리인을 선정해 그 임무를 맡긴다(제6조). 특별관리인으로는 취체역, 기타 회사 임원에서 2명, 구 채권자에서 2명, 총 4명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7조 1항). 특별관리인의 등기사항은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7조 5항).
- 구 채권의 변제나 소멸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 채권은 원칙적으로 보류시킨다(제14조).
- 특별경리회사는 파산선고를 하지 못한다. 특별경리회사의 재산에 대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 가차압, 가처분, 경매 수속은 해당 회사

9) 大藏省財政史室, 1983, 앞의 책, 736·752쪽.

가 특별정리회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 중지한다. 또 동 자산이 신 계정에 소속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응급조치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위의 수속은 효력을 상실한다(제15조).

- 특별정리회사의 해산, 합병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기업재건정비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손실을 계산하고, 기업정비계획을 작성해 주무대신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회사가 해산, 합병, 조직 변경 또는 자본의 증감을 단행하는 것은 재건정비의 실행상 지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정리회사는 원칙적으로 해산, 합병, 조직 변경, 자본의 증감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에 관한 모든 사원의 동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5조).

### 3\_ 기업재건정비법

회사정리응급조치법이 전쟁에 협력한 일본 주요 기업들을 특별정리회사로 지정하고 전쟁채무를 봉쇄하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생산 활동에 복귀하도록 한 법령 이름 그대로 '응급 조치'의 성격이었다면, 기업재건정비법은 이들 특별정리회사의 봉쇄된 구 계정의 전쟁채무를 정리·청산한 후 그 결과를 신 계정에 반영해(신·구 계정의 병합) 종결함으로써 재건정비를 완료하는 '근본적 조치'의 성격을 가졌다.

기업재건정비법(이하 정비법)에 의한 구 계정 전쟁채무의 정리·청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우선 해당 기업은 구 계정의 손실과 이익의 항목(이 항목도 정비법에 의해 규정됐다)을 산출해 손익을 계산하고(특별손실 계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특별손실'로 하였다. 특별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손실의 처리가 필요했는데, 그 원칙 역시 정비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처리방법은 자본금의 최대 90%,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채권의 최대 70%, 자본금의 잔액, 구 채권의 잔액 순으로 부담이 규정되었다. 즉 주주가 1순위로 손실을 부담하고 이것으로 여의치 않으면 채권자가 2순위로 부담한다는 원칙이었다. 특별손실이 발생한 회사와 그렇지 않더라도

자본금 100만 엔 이상의 회사는 구 계정의 특별손실 계산과 손실 처리 계획을 담은 '정비계획서'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출된 정비계획서가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으면 신·구 계정의 재병합을 할 수 있었다. 인가 받은 정비계획서대로 특별손실 계산, 손실 처리, 신·구 계정 재병합이 완료되면 회사정리응급조치법에 따른 특별정리회사에서 자유로워지며, 이후 경영이 국가의 간섭 없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기업재건정비법 및 동 시행규칙(1946년 10월 29일 대장성, 후 생성 등 성(省令 제1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특별손실 계산의 손실 및 이익 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제3조).  
손실 대항목은 전시보상특별세, 재외재산 손실, 제2봉쇄예금 등 손실, 종전 또는 전시보상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의해 발생한 손실, 조연(繰延)자산 손실, 특수정리회사 지정에 의한 결산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손실 및 이월 손실, 구 계정 총손금(總損金), 기타 손실(시행규칙 제2조 1항)이고, 이익 대항목은 특수정리회사 지정에 의한 결산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및 이월이익금, 적립금 중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ㄇ'으로 규정된 항목, 구 계정의 총이익금, 기타 이익(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자산재평가이익(제8조 제3항)이다.
- 손실 합계를 이익 합계로 보전(補填)하고, 이하 남은 손실을 특별손실로 한다(제4조).
- 특별손실의 부담 순위(제7조)
  1. 자본금의 10분의 9까지.
  2. 구 채권의 10분의 7까지.
  3. 자본금의 잔액
  4. 구 채권의 잔액
- 특별관리인은 정비계획의 인가 신청을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1항).
- 특별손실 계산 후, 특별정리회사의 특별관리인은 정비계획을 제출해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의무가 있는 특별정리회사는 자본금 100만 엔 이상의 회사 등이다(제5조).

- 정비계획서에는 특별손실 계산 외에도 회사의 존속, 해산, 합병, 제2회사 설립, 자산 처분, 미불입주금 불입, 자본 증감 등 19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다(제6조, 8조, 시행규칙 제7조).
- 신청하지 않는 특별경리회사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17조).
- 신청한 정비계획이 불인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한다(16조). 재신청에도 불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17조).

정비계획서의 제출 및 실시 과정을 보면 우선 1948년 말까지 전체 대상 기업 5114개 중 94%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제출 기업에 대한 주무대신의 인가, 불인가, 해산명령 등으로 처리된 것이 1948년 말까지 84%, 1949년 6월까지 94%였다. 즉 정비계획서의 제출과 여기에 대한 주무대신의 행정적 처리는 1949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인가된 계획서를 토대로 실제로 해당 기업이 정비계획을 실행한 실적은 1949년 말까지 51%, 1950년 9월까지 66%로 계획서 제출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완료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기업재건정비는 1950년 말까지 사실상 완료됐다고 평가된다.<sup>10)</sup>

### Ⅲ. 기업재건정비 과정과 미수금 문제의 상관관계

#### 1\_ 미수금 처리의 강요

패전 후 생산 감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신속하게 탈출하기

10) 呂寅滿, 2007, 앞의 글, 133쪽.

위해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태평양전쟁기 군수기업들의 생산활동 복귀에 전력을 경주했고, GHQ와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946년 8월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10월의 기업재건정비법으로 전후 청산과 경제 부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전쟁채무의 동결과 신·구 계정의 분리, 구 계정의 특수손실 계산 및 처리, 신·구 계정 재합병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과정의 핵심은 전쟁 협력기업들의 구 경리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전제였으므로 징용된 조선인 노무자들에게 기업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 퇴직적립금, 보험금 등 미불금의 처리 역시 필요하였다. 기업재건정비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과 동일한 시기에 미불금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업재건정비정책과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즉 1946년 8월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10월 기업재건정비법이 제정된 것과 동시에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民事甲 제516호, 1946년 8월 27일자)과 후생성 통첩에 의한 미불금 공탁 지시(10월 12일자)가 이루어졌다.

기업재건정비가 경리장부상의 회계 조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 축소, 신 회사 설립, 해산 등을 통해 노동자의 해고, 이동 등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환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만이 아닌 1946년 8월 시점의 구체적인 노동대책 역시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였다. 이것 역시 「보상 중지로 인한 기업 정비에 수반한 노동대책」이라는 이름으로 1946년 10월 2일자 각의 결정안이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기업 정비로 인한 노동자의 신·구 계정 재배치 및 그 외 노동자의 정리원칙, 정리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불 방침 등이 결정되었다. 퇴직금 취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1년 뒤인 1947년 10월 21일자 각의 결정으로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한 퇴직금 취급에 관한 건」이 마련되어 보다 구체화되었다.<sup>11)</sup>

결국 패전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불하지 못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은 1946년 10월의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11) 大藏省財政史室, 1983, 앞의 책, 736~744쪽.

었다. 구 계정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생산 활동을 정상화해 경제회복에 역할을 하기 바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대규모 조선인 귀환 노동자를 일일이 찾아내 미불금을 지불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탁이라는 카드를 일본 정부가 신속한 구 계정 정리·청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은 조금 복잡해졌다. 특별경리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기존 경리를 신·구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 계정 정리·청산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특별손실의 처리를 일차적으로는 자력으로 해야 하였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 여부는 궁극적으로 특별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지점이 기업이 패전 직후의 자세를 바꾸어 미불금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도록 유혹하는 출발점이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기업재건정비법 자체의 '제도적 유혹'이기도 하였다.

## 2\_ 제도적 유혹

앞서 보았지만,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전쟁 협력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정상적인 경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분리된 구 계정의 손익을 계산한 결과에 달려 있었다. '특별손실계산'이라고 하는 이 계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로 신·구 계정의 합병을 통해 특별경리회사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처리가 자본의 증자 내지 감자, 채권의 처리 등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손실의 규모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을 줄이는 이익의 대항목에 조선인 노동자의 미불금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기업재건정비법은 손실을 보전하는 이익의 대항목으로 ① 특수경리회사 지정에 의한 결산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및 이월이익금, ② 적립금 중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ㄱ'으로 규정된 항목, ③ 구 계정의 총 이익금, ④ 기타 이익(시행규칙 제2조 제2호), ⑤ 자산재평가이익(제8조 제3

항)을 규정하였다. 이 중 ②의 적립금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계상되는 적립금을 이익으로 계상하는 것 자체가 재무회계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적립금은 말 그대로 기업이 해당 분기 이익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다양한 명목이 존재할 수 있다. 특별한 용도가 아닌 단순히 장래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유동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이익 유보도 있고, 시설투자를 위한 유보, 법정적립금(연금, 퇴직금), 기업별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는 법정외적립금 등이 모두 적립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재건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ㄱ항에서는 특별손실 계산의 이익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 적립금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적립금을 명시해 놓았다. 전문을 개략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정비재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ㄱ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적립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특별경리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이익 금액 중 이익금 처분에 의해 유보한 금액, 단, 법률 제34조의 4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 및 이월된 이익금(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계상한 적립금 중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한 금액)과 구 계정 및 신 계정의 병합까지 구 계정의 지출로 지불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후생연금보험법 부칙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에 의해 적립된 퇴직적립금 및 준비적립금은 제외된다(밑줄은 필자).
2.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그 액면을 넘는 금액 내에서 적립한 금액.
3.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합병 또는 자본 감소에 의해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적립한 금액
4.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부 명령에 의해 적립한 금액, 단, 물가통제령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차익에 의해 적립한 금액은 제외한다.
5. 수선적립금, 상각적립금, 기타 여기에 준하는 것들 중에서 특별경리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익금 처분을 하지 않고 유보한 금

액, 단, 법률 제34조의 4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 및 이월된 이익금(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계상한 적립금 중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한 금액)과 구 계정 및 신 계정의 병합까지 구 계정의 지출로 지불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후생연금 보험법 부칙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에 의해 적립된 퇴직적립금 및 준비적립금은 제외된다(밑줄은 필자).

위의 기업재건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ㄱ항을 보면 특별손실 계산에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의 대종을 차지하는 퇴직금, 수당, 연금, 보험금 관련 적립금은 이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손실 계산을 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업 자체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관리인도 해당 회사 임원과 채권자로 최대한 손실 규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특별손실 계산의 결과는 정비법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에게 제출되어 인가를 받게 되어 있었지만, 주무대신이 이미 귀국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이 이익금에 섞여 있는지를 엄정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었다. 일본 정부 역시 기업의 특별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자세는 특별손실 계산의 이익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자산재평가의 기준 결정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사실 기업이 가장 큰 기대를 한 것은 자산재평가이익이었다.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전후 시가로 재평가해 이익에 계상하는 것으로, 전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그것만으로 특별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시가에 의한 재평가를 통해 특별손실을 보전하도록 주장한 데에 대해 GHQ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명분으로 장부가격으로 하도록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GHQ 간의 의견 대립은 팽팽했으며, 기업재건정비를 계획보다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가 GHQ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1947년 2월 ‘기업재건정비법에 기초한 자산의 평가환(評價換)에 대한 인가기준’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처분하는 자산은 시

가, 처분용 외의 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 포함)은 장부가격, 처분용 외의 유동 자산은 공정가격으로 하는 것이었다.<sup>12)</sup>

일본 정부와 GHQ의 조정에 의해 마련된 자산재평가 기준이 특별손실의 규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적립금 부문에 있어서의 유혹을 보다 증폭시켰을 것이다.

1946년 10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보상 중지로 인한 기업정비에 수반한 노동대책」에는 ‘종업원의 정리에 있어서 국적, 신조,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1946년 10월에 마련된 일본 정부의 기업재건정비의 제도적 틀 속에서 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정리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미불금은 당연히 조선인, 일본인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불하고 청산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거소불명’으로 지불이 곤란할 경우도 국적에 상관없이 공탁되어야 했던 것이다. 법적 장치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일본 정부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철저하고 엄정한 전쟁 청산보다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생산의 정상화에 있었고, 이를 위해 기업이 특별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 특별손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던 기업의 처지를 생각하면, 손실을 줄이는 주요 항목인 적립금에서 법에 규정한 대로 퇴직금, 수당, 연금, 보험금 관련 적립금을 제외하는 것은 생존을 도외시한 ‘양심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 특별경리회사로 지정된 기업의 처지에서 미불금의 원칙적 처리를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광범위한 미불금의 축소·은폐가 어찌면 당연해 보이는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특별경리회사로 지정된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2) 呂寅滿, 2007, 앞의 글, 131쪽.

13) 大藏省財政史室, 1983, 앞의 책, 741쪽.

#### IV. 하리마[播磨]조선소의 사례

정식 명칭 ‘주식회사 하리마조선소’는 효고현[兵庫縣]에 있는 조선소로 해방 당시 징용된 조선인 노무자가 2000명 이상 일했던 일본 주요 조선소 중 하나였다. 1929년 설립됐고, 효고현의 본사 공장 외에 마쓰노우라[松の浦]와 구레[呉]에 별도의 조선소가 있는 체제였다. 패전 당시 자본금은 6000만 엔(3750만 엔 불입)이며, 생산능력은 최대 2만 톤급(G/T)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선대(船臺)와 7만 톤급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선거(船渠)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연간 6만 2000톤의 선박 건조와 96만 톤의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sup>14)</sup> 전전(戰前) 최대 건조실적은 국가적 지원하에 전시 필요 선박 양산을 목적으로 한 ‘전시계획조선’이 정점에 달했던 1944년의 상선(商船) 25만 4489톤, 함정 2만 4278톤이었다.<sup>15)</sup>

하리마조선소는 1946년 8월 11일자로 특별정리회사로 지정되었고, 신·구 계정 분리과 구 계정 특별손실 계산, 이를 통해 발생한 특별손실금의 처리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정비계획서를 1948년 8월 14일자로 제출하였다. 산출된 특별손실액은 2257만 엔이었고, 그 처리 방법은 일차적으로 불입자본금 3750만 엔의 60%를 감자해 발생한 감자이익 2250만 엔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7만 엔은 특별손실가계정을 설정해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출된 정비계획서는 1949년 2월 15일자로 인가되어 같은 해 4월 25일 정비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비계획 시작일자로 자본금 감액이 단행되어 기존 6000만 엔의 자본금이 1500만 엔(전액 불입)으로 감자되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6월 20일 자본금 8000만 엔(전액 불입)의 증자를 하는 한편으로 신·구 계정의 합병을 단행하였다.<sup>16)</sup>

14)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9, 『株式會社播磨造船所概況書』, 4~5쪽.

15)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9, 『社債目論見書』, 8쪽.

16)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9, 『増資目論見書』, 50쪽.

〈표 1〉 하리마조선소 특별손실 계산서(단위: 엔)

손실지부	금액	이익지부	금액
전시보상특별세	33,666,130	법정적립금	1,570,000
재외자산	15,771,536	특별적립금 기타	10,015,588
은행예금	536,000	당기이익금	4,359,633
단기채권	2,409,286	仕掛品	2,939,659
매상채권	1,372,137	국채이자	22,383
주식의 손실	352,370	미정리수취계정 이자	16,012,888
미불입징수 관련 손실	190,850	기타	653,602
仕掛品	7,611,549	합계(B)	35,573,753
고정자산(배상시설)	3,298,071	특별손실액(A-B=C)	65,250,203
지불이자	7,312,365	자산재평가이익(D)	42,679,622
구계정 재산관리비용 등	1,467,000		
이월손실금	22,101,396		
기타	4,735,266		
합계(A)	100,823,956	최종 특별손실액(C-D)	22,570,581

자료: 株式會社 船體造船所, 1949, 『増資目論見書』, 50쪽에서 작성.

하리마조선소의 특별손실 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하리마조선소의 구 계정 전체 손실액은 1억 엔 정도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GHQ의 반대로 인해 좌절된 전시채무보상 결과물인 전시보상특별세로 3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이월손실금, 그리고 재외자산 손실로 이 세 항목을 합친 것이 전체 손실의 70%였다. 반면 손실을 보전할 이익 총액은 3550만 엔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정리수취계정 이자였는데 이익에 계상된 총액은 1600만 엔에 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 조선인 노동자 미수금이 섞였을지도 모르는 100만 엔의 특별적립금이었다.

하리마조선소는 특별손실 계산의 결과 6500여 만 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표 1〉의 C). 그러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이익 4270만 엔을 통해

〈표 2〉 패전 전후 대차대조표상의 적립금 변화 추이(단위: 엔)

	32기 (1944.12 -1945.6)	34기 (1946.3 -1946.6)	35기 (1946.6 -1946.8)	36기 (1946.8- 1949.6)	37기 (1949.6 -1949.12)	38기 (1949.12- 1950.6)	39기 (1950.6- 1950.12)
법정적립금	1,420,000	1,570,000	1,570,000		1,000,000	2,500,000	2,950,000
별도적립금	3,860,000	4,060,000	4,060,000		1,000,000	2,500,000	3,000,000
시설확장 유보금	2,200,000						
퇴직수당 기금	672,000	672,000	672,000				
제예치금 (諸預り金)	941,475	3,190,083	2,707,890		119,055,716	95,351,796	96,199,333
종업원 예치금 (預り金)	7,729,130						
납세충당금	4,000,000				542,559	2,777,184	2,868,420
공원퇴직수 당 적립금	2,814,773	1,467,290	1,467,290	1,303,577	1,301,859		
납세적립금	3,600,000						
배당충당 적립금						2,500,000	5,000,000
재평가 적립금							541,288,644
합계	27,237,378	10,959,373	10,477,180	1,303,577	122,900,134	105,628,980	651,306,397

자료: 株式会社番磨造船所, 1944~1950, 『營業報告書』 32~39期에서 작성.

특별손실을 보전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특별손실액은 2257만 엔이었다.

그러면 이제 1000여 만 엔의 특별적립금과 157만 엔의 법정적립금이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추적해 조선인 노동자 미수금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 〈표 2〉이다. 1945년 6월 현재의 영업보고서를 통해 패전 직전 각종 적립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후 1950년까지의 영업보고서를 통해 적립금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아쉬운 것은 패전 직

후인 1945년도 하반기 영업보고서(33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1945년 6월 현재 773만 엔이라는 거액의 종업원 예치금이 사라진 점이다. ‘아즈카리킨(あずかりきん)’은 말 그대로 맡겨둔 돈으로 예금을 의미하는 ‘요킨(よきん)’하고는 대차대조표상에서도 ‘預り金’과 ‘預金’으로 구분해 쓰고 있다. 하리마조선소 사사(社史)를 보면 종업원은 직원과 공원(工員)으로 나누고 있다. <표 2>에서도 퇴직수당 적립금이 직원(퇴직수당 기금)과 공원(공원퇴직수당 적립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 예치금은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하리마조선소에 근무한 직원, 일본인 및 조선인 노동자의 예치금임이 확실하다.<sup>17)</sup> 비록 자료의 한계로 하리마조선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종업원 예치금에 조선인 노무자에게 지불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미쓰비시[三菱]광업을 사례로 삼아 미수금 피해 실태를 연구한 허광무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sup>18)</sup>

하리마조선소 사사는 패전 당시 하리마조선소의 전체 공원 수가 1만 3811명이었고, 그 중 조선인 노무자가 87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 노무자는 1941년 1월 경상남도로부터 징용된 123명이 최초이고, 194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1710명이 징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교양 수준이 낮고 무학력자가 많아서 무단 퇴산(退散)하는 자가 속출해 패전 당시에는 872명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들 872명은 1945년 10월 6일 조선으로 송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9)</sup> 1945년 12월 현재 하리마조선소의 전체 종업원은 4889명으로 직원 1160명, 공원 3729명이었다.<sup>20)</sup> 그렇다면 종업원 예치금 773만 엔은 패전과 함께 퇴사한 직원과 공원들에게 지불됐어야 하고, 퇴사하지 않고 잔존한 종

17) 하리마조선소 社史를 보면 화공(華工)이라고 불린 중국인 노동자 400여 명도 근무하고 있었다. 播磨造船所50年史編纂室, 1960, 『播磨造船所50年史』, 149쪽.

18) 허광무, 2013,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피해 실태-조선인 노무자 명부를 중심으로」, 공탁금연구회 발표문.

19) 播磨造船所50年史編纂室, 1960, 앞의 책, 149~150쪽.

20) 播磨造船所50年史編纂室, 1960, 위의 책, 224쪽.

업원 4889명분은 남아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귀국한 조선인 노동자가 관련된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보듯이 종업원 예치금은 34기 영업보고서에서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사라진 종업원 예치금이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패전 직후의 혼란 속에서 조선소 유지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금 관련 적립금이나 시설확장유보금이 같이 사라진 것은 이런 정황을 보여준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34기 영업보고서의 1946년 6월 시점의 적립금 현황이다. 1945년 6월 2700만 엔 수준의 적립금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1000만 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을 자세히 보면 늘어난 적립금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제예치금’ 항목이 230만 엔 가까이 증가했고, 법정적립금과 별도적립금도 각각 15만 엔, 20만 엔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265만 엔 정도가 이들 항목으로 추가 적립되었다. 법정적립금은 의무 사항이라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제예치금의 급격한 증가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종업원 예치금의 미불금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들 증액된 적립금들은 <표 2>에서 보듯이 기업재건정비가 시작되는 1946년 8월을 기점으로 전부 사라진다. 이것은 <표 1>의 특별손실계산서의 이익부 적립금 항목으로 들어가서 전쟁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금액도 법정적립금은 정확히 일치하고 나머지도 900만 엔 정도로 대략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결국 종업원 예치금 중 조선인 노동자 예치금이 포함된 230만 엔이 제예치금에 합산되었고 특별손실 계산의 이익 항목에 잡혀서 하리마조선소의 전쟁 손실 보전에 사용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리마조선소의 재무회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금 처리가 은폐·축소된 정황은 확인된다고 하겠다. 실제 하리마조선소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금으로 공탁하려고 한 자금은 자료상 확인되는 것으로 우편저금 3453엔뿐이었다.<sup>21)</sup>

직원과 공원퇴직수당 적립금의 변화 양상도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21) 大藏省, 1950~1953, 『經濟協力・韓國105・朝鮮人に對する貸金未拂債務調』.

퇴직금은 앞서 보았듯이 기업재건정비법과 시행세칙에 의해 특별손실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귀환한 조선인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아서 나오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영업보고서상에 남아 있거나 공탁되어야 하였다. <표 2>를 보면 직원용으로 보이는 퇴직수당기금 67만 엔은 특별손실 계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공원퇴직적립금 281만 엔은 특별손실 계산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1950년 6월 시점에서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945년 6월 현재의 281만 엔이 1946년 6월 146만 엔으로 줄어든 것은 패전 후 퇴사한 공원들의 퇴직금 지불에 사용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머지 130만 엔의 경우 기업재건정비계획이 일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다. 130만 엔 속에 조선인 노동자의 퇴직금이 포함되었음이 확실하다고 할 때, 일본 정부가 만든 법제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공탁되어야 했지만 그런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 V. 맺음말

이 연구는 일본이 왜 조선인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일본 기업의 입장과 전후 일본 경제부흥정책의 관점을 상호 연관시켜 파악해 보려는 시도였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과제에 대한 분석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일제가 패전한 후 귀환하는 조선인이 임금,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귀환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귀환이 시작된 것은 1945년 12월부터였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때는 전후 혼란기로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경영 혼란에 직면한

기업이 제대로 이런 것을 챙길 수가 없었고, 또 일본 및 조선을 점령한 GHQ와 주한미군정의 정세판단이 작용했다는 측면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하게 혼란이 수습되어 가던 1946년에 들어서도 미수금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일본 정부의 기업재건정비정책에 있었다.

1946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일본 정부는 회사정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을 발표해 전쟁에 협조한 군수기업을 평화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미수금은 귀국한 조선인 노동자들을 찾아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거소불명’을 근거로 공탁되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미수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은 구 계정의 신속한 청산과 이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생산활동을 정상화해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하기 바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에 대규모 조선인 귀환 노동자를 일일이 찾아내 미수금을 지불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공탁이라는 카드는 신속한 구 계정 정리·청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은 국가의 기업재건정비제도의 구축과 회계정리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돈들을 공탁하라는 지령에 의해 조금 복잡해졌다. 기존 정리를 신·구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 계정 정리·청산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특별손실의 처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어서 기업의 생존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특별손실을 줄이는 데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기업이 패전 직후의 자세를 바꾸어 미불금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도록 유혹하는 출발점이었다. 왜냐하면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없었고, 이들 공탁하지 않은 돈은 적립금에 포함해 전쟁손실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구축한 기업재건정비제도는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조선인 노동자 미수금을 축소·은폐하도록 유인한 ‘제도적 유혹’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하리마조선소의 사례는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법과 제도로만 따진다면 일본 정부의 기업재건정비와 그 일환으로서의 미수금 공탁은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기업이 이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환경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특별손실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이 상호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가 광범위한 미불금의 축소·은폐였다.

그러면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축소·은폐의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별 기업의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축소·은폐 확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적립금의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영업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인 재무회계 장부 등 1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 특별경리회사가 일본 정부 주무대신에게 제출한 기업재건정비계획서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선인 미수금 공탁 문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범주의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른바 '특수청산'이라고 불렸던 재외기업(在外企業, 본점이 일본 외부에 소재한 기업)이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폐쇄기관으로 지정된 기업과 이들을 제외한 기업으로서의 '재외기업'이다.

폐쇄기관 청산 과정은 일본 국내 기업의 기업재건정비와 동일한 시기에 출발하였다. 1946년 10월 5일자로 GHQ가 폐쇄기관 청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7년 3월 공포된 '폐쇄기관령', '폐쇄기관정리위원회령'으로 구성된 폐쇄기관정리위원회가 청산에 착수하였다. 청산이 대체로 완료된 것도 기업재건정비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고, 그 결과 1952년 3월 31일부로 폐쇄기관정리위원회는 해산하였다. 한편 재외기업 총 1134개(조선 소재 기업 291개 포함)의 청산은 1949년 1월 8일 GHQ 각서에 의해 재산정리가 지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2월 4일 대장성 관리국은 '재외회사본방내점포정리요강(안)'을 발표해 재외기업의 일본 내 재산에 한정해 청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재외기업 청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청산 과정에서 역시 정리되지 않는 자금들에 대한 축소·은폐, 공탁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산 종결 후 잔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에 이관되어 관리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들을 토대로 청산 기업의 임원, 주주,

채권자 등 경영 관계자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우선 등 일제시기 조선에 본점이 소재했던 많은 기업들이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공탁 문제와 관련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후의 과제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大藏省, 1950~1953, 『經濟協力・韓國105・朝鮮人に對する貸金未拂債務調』.
- 大藏省財政史室, 1983, 『昭和財政史一終戦から講和まで』 第13卷.
- 播磨造船所50年史編纂室, 1960, 『播磨造船所50年史』.
-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9, 『社債目論見書』.
-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4~1950, 『營業報告書』 32期~39期.
-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9, 『株式會社播磨造船所概況書』.
- 株式會社播磨造船所, 1949, 『増資目論見書』.
- 정혜경, 2013,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 第6回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日・韓合同研究會 발표문.
- 허광무, 2013,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피해 실태 - 조선인 노무자 명부를 중심으로」, 공탁금연구회 발표문.
- 古庄正, 1986,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研究』 31-2.
- 古庄正, 1991, 「[資料]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1.
- 古庄正, 1992,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4-2.
- 古庄正, 1993,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朝鮮人勞務者關係'を主な素材として」,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5-1.
- 古庄正, 1995,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6-4.
- 古庄正, 2000, 『日本企業の戦争犯罪』, 創史社.
- 古庄正, 2007,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37.
- 宮崎正康 外, 1982, 「占領期の企業再編成」, 『年報 近代日本研究』 4, 山川出版社.
- 麻島昭一, 2002, 「昭和電工の企業再建整備の考察」, 『専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474.
- 呂寅滿, 2007, 「企業再建一再建整備の實施とその意義」, 武田晴人 編, 『日本經濟の戦後復興一未完の構造轉換』, 有斐閣.
- 竹内康人, 2012, 「供託と協定で奪われた未拂い金: 明らかになった朝鮮人未

拂い金の實態」, 田中宏・中山武敏・有光健 他著, 『未解決の戦後補償』, 創史社.

植草益, 1979, 「占領下の企業分割」, 中村隆英 編, 『占領期日本の經濟と政治』, 東京大學出版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국문 초록]

## 일본 기업재건정비 과정과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

배석만

이 연구는 일본이 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전후 일본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인 기업재건정비계획과 상호 연관 속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일본 정부가 기업재건정비 과정에서 조선인 미수금을 공탁하도록 한 배경은 전쟁의 ‘엄정한 청산’보다는 ‘빠른 청산’을 통해 전후 신속한 부흥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인 귀환 노무자를 일일이 찾아내 미불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일괄 공탁하는 것이 ‘빠른 청산’에 맞는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은 기업재건정비 과정에서 미불금 공탁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미불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미불금을 전쟁으로 입은 손실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리마[播磨]조선소의 사례는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 국문 주제어

기업재건정비계획,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공탁, 일본 정부, 일본 기업, 하리마[播磨]조선소

**[ABSTRACT]**The Corporate Reconstruction Plan in Postwar Japan and  
the Problem of Korean Workers' Unpaid Wages

Bae Sukman

In this study I seek to understand wh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did not solve the issue of Korean workers' unpaid wages and focused on the Corporate Reconstruction Plan (*Kigyō saiken seibi seisaku*), which was one of the economic revival policies in postwar Japan.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 deposited funds for Korean workers' unpaid wages was that the government wanted to concentrate its abilities in order to recover from the postwar depression through a "swift liquidation" rather than a "strict liquidation." A swift liquidation was the suitable choic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paying Korean workers directly was more difficult than depositing the wages due to them.

Nevertheless, Japanese companies did not attempt to deposit payments for the Korean workers in the Corporate Reconstruction Plan process. Instead they attempted to reduce the amount of the Korean workers' unpaid wages because they could thus reduce their own losses from the war. The Harima(播磨) Shipping Company is a typical case among the companies surveyed.

Keywords

Corporate Reconstruction Plan(*Kigyō saiken seibi seisaku*), Korean workers' unpaid wages, deposit,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companies, Harima(播磨) Shipping Compan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최영호 | 영산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한정해, 해방 직후 조련(재일본 조선인연맹)이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조련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직 형성사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조련의 조직적 활동을 사안별로 다루어 왔다. 지난 1989년 박경식(朴慶植) 연구자에 의해 해방 이후 재일한인 운동사에 관한 선구자적인 저서<sup>1)</sup>가 출간된 이래 수많은 관련 연구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09년에 조련에 관한 오규상(吳圭祥)의 종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고,<sup>2)</sup> 2013년 발간된 정영환(鄭榮桓)의 저서가 지난 연구서들이 깊이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박慶植, 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2) 吳圭祥, 2009,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 岩波書店; 최영호, 2009. 6, 「書評: 吳圭祥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 『한일민족문제연구』 16집.

다루지 못한 조련 자치대와 청년 일꾼의 활동 등을 언급하고 조련의 조직 논리를 파헤쳤다.<sup>3)</sup>

그러나 해방 직후 조련이 조직을 들어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여한 것은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관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자료는 물론 기존 조련 관련 연구서에서 규명한 일이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미수금 혹은 미불금, 공탁금에 관한 연구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련 자료의 부족에 따른 것이다. 조련의 경우,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중앙조직의 자료가 그런대로 발굴되었지만, 지방조직의 자료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기존에 발굴된 중앙조직 자료에서 미수금 교섭 관련 활동을 정리해 내는 작업과 함께 지방의 조련활동 자료, 언론보도 자료, 점령군 자료 등을 발굴하고 분석해 조련 지방조직의 움직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조련의 미수금 활동의 연구 단계는 도입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논문을 통해서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에 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선 각각 흩어져 존재하는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에 치중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조련의 미수금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서 연구사적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수금 문제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조련의 미수금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중앙조직 자료를 통해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차후에 일본 신문 자료나 점령군 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련 지방조직의 미수금 예탁활동 사례를 보완해 가고자 한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조련의 활동이 전체 미수금 문제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미수금이라는

3) 鄭榮桓, 2013, 『朝鮮獨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學出版局; 최영호, 2013. 6, 「書評: 朝鮮獨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재외한인연구』 30호.

용어는 ‘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본의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해방을 맞은 조선인 노무자들이 한반도에 귀환하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수를 말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작업하던 노무자에게 논의를 국한시키고, 또한 조선인 군인·군속,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미수금 문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은 일본공탁소에 공탁된 ‘공탁분’과 그렇지 않은 ‘미공탁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조련이 예탁을 받은 미수금은 ‘미공탁금’ 가운데 ‘제3자 인도분’에 해당한다. 미수금의 종류는 공탁금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장마다 각각 표기가 다르고 수많은 명목의 수당과 저금 종류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기가 어렵다. 크게 나누어 급료, 수당, 상여금, 저금, 여비, 보급금, 예치금, 유가증권, 후생연금, 연금탈퇴금, 우편저금, 생명보험금, 적립금, 보험탈퇴금, 조합탈퇴금, 퇴직적립금, 퇴직상여금, 전별금, 상해위로금, 상해부조료, 사망자위로금, 유해매장료, 유족부조료, 유골인취비, 장제료, 유족출두여비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유골인취비라고 하는 것은 화장된 유골을 납골하거나 공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미수금의 전체 규모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노무자 미수금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파악했는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筑波]분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제협력·한국 105』 자료군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4)</sup>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상을 위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군에는 일본의 각 지방정부가 미수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했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다. 특히 이 자료군 속의 후생노동성 자료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철」<sup>5)</sup>은 점령당국의 지시

4) 김경남 연구자는 2009년 『經濟協力·韓國 105』를 열람하고 분석하여 일반에 소개하였다. 金慶南, 2009, 7. 26, 「GHQ占領期における供託金の事務手続きと名簿原本の出所について: 『經濟協力·韓國105』分析を中心に」(強制連行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

5) 「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分類: 厚生労働省2009年度, 排架番號: つくば

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떻게 미수금 문제에 대응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1946년 10월에 후생성 노동국장은 각 지방에 지시<sup>6)</sup>를 내려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1947년 12월에는 노동성이 주체가 되어 공탁 현황을 포함해 미수금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방에 지시를 내렸다.<sup>7)</sup> 1948년 3월에 노동성이 점령당국(민간재산관리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 5만 701명분의 미수금 544만 3150엔이 공탁되었고, 1만 3294명분의 미수금 240만 686엔이 '위임받지 않은 적법한' 제3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8)</sup>

또한 『경제협력·한국105』 자료군 속의 대장성 자료 「조선인에 대한 임금 미불채무조사」<sup>9)</sup>를 보면 1950년대 초 일본 정부가 미수금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1950년 10월 일본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은 각 지방에 조사 지시<sup>10)</sup>를 내려 미수금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정리하였다. 이때 조사표에는 미불임금 등의 채무에 대해 기업명, 채무 종류, 채무액, 인원 수, 공탁 유무, 공탁한 공탁소, 공탁한 연월일을 기재하게 하였다.<sup>11)</sup> 노동성이 조사한 결과를 모은 자료군 가운데 노동성 노동기준국 급여과가 1953년 7월에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들을 정리한 집계표가 있다.<sup>12)</sup> 해당 집계표에 따

書庫6/ 6-91/ 1738).

- 6) 厚生省勞政局長, 地方長官宛, 1946. 10. 12, 「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金その他に關する件」(勞發572號). 이 통달문은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戰後補償問題資料集第7集: 戰後補償關係法令通達集(Ⅱ)「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戰後補償問題研究會, 75~81쪽에 실려 있다.
- 7) 勞働省勞働基準局長, 都道府縣勞働基準局長宛, 1947. 12. 1, 「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金について」(基發418號).
- 8) 勞働省給與課長, 都道府縣勞働基準局長宛, 1948. 3. 30, 「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金について」(本給發35號).
- 9) 「朝鮮人に對する賃金未拂債務調査」(分類:大藏省2000年度, 排架番號:つくば書庫5/ 5-53/ 3451).
- 10) 勞働省勞働基準局長, 都道府縣勞働基準局長宛, 1950. 10. 6, 「歸國朝鮮人に對する未拂賃金債務等に關する調査について」(基發917號).
- 11)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2011. 5,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 『역사와 책임』, 창간호, 188~191쪽.
- 12) 勞働省勞働基準局給與課, 1953. 7. 20, 「歸國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賃金債務等に關する調査集計」.

〈표 1〉 조선인 단체에 대한 미수금 인도 현황

지방별	사업장	채권자수	금액	관련 조선인 단체
宮城縣	1	643	5만 3159.17	조련 宮城縣 栗原지부
山形縣	3	466	7만 7563.34	조련 山形縣본부, 最上지부, 縣본부 총무부
茨城縣	2	221	9만 3434.40	조련 茨城縣 多賀지부, 那河지부
栃木縣	1	2751	49만 5217.72	조련 栃木縣 足尾지부
東京都	3	258	5만 4189.83	조련축진동맹多摩川지부, 조련荒川 분회, 건청본부
神奈川縣	1	1926	23만 2759.05	조련 橫濱지부 사회부
新潟縣	1	1	87.49	조련 新潟지부
石川縣	4	161	5만 8127.00	조련 石川縣본부
長野縣	4	843	15만 7224.21	조련 長野지부, 조련 大町지부
岐阜縣	2	230	14만 11.29	조련 岐阜縣 吉城지부 총무부
靜岡縣	2	921	4만 1394.08	조련 靜岡西部二俣분회
愛知縣	7	1859	33만 7956.96	조련 愛知縣본부, 조련名古屋지부, 小牧지부, 종업원대표
滋賀縣	1	3	583.20	조련 滋賀縣 醒井지부
三重縣	3	1469	48만 8530.44	조련 三重縣본부, 三瀨谷지부, 四日 市지부, 大阪住吉지부
大阪府	1	5	2150.00	조련 大阪본부
兵庫縣	7	1856	40만 3341.68	조련 兵庫縣본부, 大阪본부, 阪神지 부, 尼崎분회, 赤穂지부, 건청三田지 부,
岡山縣	1	39	2330.24	조련 岡山縣본부
廣島縣	1	100	5164.95	金田組 (대표 金田壽雄)
山口縣	2	120	4360.17	조련 船木분회, 組長
愛媛縣	2	2026	10만 5701.90	조련 四國본부 사회부, 新居浜지부,
福岡縣	2	26	4993.83	조련 東北지부 총무부, 月陰班長
長崎縣	3	740	13만 406.52	조련 長崎縣본부, 諫早지부
大分縣	3	697	7만 5190.72	조련 大分縣본부
계	57	1만 7361	296만 3878.19	

르면 ‘공탁분’ 8만 279명, 1098만 7264엔, ‘미공탁분’ 5만 1947명, 439만 2526엔 89센, ‘제3자 인도분’ 1만 7361명, 206만 3880엔 19센, 합계 14만 9587명, 1743만 8671엔 08센의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다.

이 논문은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가운데에서도 ‘제3자 인도분’, 그 중에서도 조련이 관여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성이 1950년에 지시해 정리한 자료에는 ‘제3자에 대한 인도분’이 지방별, 사업소별, 채무의 종류, 채권자 수, 금액, 비고 등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비고란에는 인도를 받은 단체의 이름과 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인도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가 조선인 단체의 예탁 결과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단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3개 지역에 있는 총 57개 사업장이 조선인 노무자 1만 7361명분의 미수금을 조련과 건청(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 그리고 조선인 노무자 대표에게 인도했다고 되어 있다.

인도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데, 이를 기재한 사업장만을 가지고 보면 야마구치[山口]현에서 1945년 9월 30일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인 노무자 조장에게 미수금을 인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련의 경우에는 도쿄 아라카와[荒川] 분회가 일찍이 1945년 11월 12일에 예탁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1946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제3자 인도’가 성행했으며, 후쿠오카[福岡]현의 경우에는 뒤늦게 1947년 3월 1일에도 인도한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지방별로 ‘제3자 인도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II. 조련의 미수금 예탁활동에 관한 연구 상황

지난 2005년 5월 한국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유골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 대해 공탁금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공식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7년 12월 약 11만 건에 달

하는 공탁금 명부를 한국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때 인도된 공탁금 명부는 군인과 군속에 한정된 것이었고 노무자의 명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sup>13)</sup>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징용노무자 관련 명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3월 일본 민주당 정부가 노무자 공탁금 관련 자료의 사본을 한국에 전달하였다. 위원회는 서둘러 관련 자료의 DB 작업에 들어갔으며 노무자 6만 4000여 명의 공탁금액, 약 3500만 엔을 확인하였다. 공탁금이란 강제동원 기간 중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수당·부조금 등을 공공기관, 특히 각 지방 공탁소에 위탁한 것을 말한다. 2008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지원위원회가 한국에 설치된 이후 2012년 12월까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기타, 모두 합해 총 22만 7000건에 달하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미수금 피해자로 총 2만 6000건에 달하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만 4000건, 458억 원가량의 지급금이 2012년 12월까지 지불되었다.<sup>14)</sup>

현재 개인의 미수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성 산하의 각 지역 공탁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피공탁 당사자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열람할 수 있다. 반면에 공탁 관련 공문서 및 기업별, 지역별 공탁 현황을 담은 문서는 일본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발굴해 공개한 자료에는 개인별 공탁 건수 13만 여 건과, 공탁을 한 기업 300여 개의 공탁 현황, 임금과 원호금을 포함해 40여 종에 달하는 공탁금부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sup>15)</sup> 최근 들어 일본의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의 발굴과 공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조차 세세한 분석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2007년에 한국 정부에 전달된 공탁자료에 관한 분석결과를, 표영수·오일환·김명옥·김난영, 2008, 6, 「조선인 군인·군속 관련 ‘공탁서’·‘공탁증명서’ 기초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14집, 293~330쪽.

14) 위원회 자료에 의함.

15) 竹内康人 編, 2012, 『戰時朝鮮人強制勞働調査資料集: 名簿・未拂い金・動員數・遺骨・過去清算』,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일본의 공탁제도는 전시에 전비(戰費)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일본 경제의 안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점령당국에 의한 기업 폐쇄조치와 맞물려 실시되었다. 일본 정부 주도에 의한 기업 공탁은 1946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를 전후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1990년대 초까지 공탁 조치가 계속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점령당국은 상호 결탁을 통해 공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의 공탁은 1946년 6월 통첩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조사의 건」과 1946년 8월 27일자 통달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民事甲 제516호), 1950년 2월 28일자 「국의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 특례에 관한 정령」(政令 제22호)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미수금을 당사자나 당사자 친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공탁 조치하였다. 일본의 점령당국과 남한의 미군정 당국도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 양국의 청구권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공탁 사실을 은폐해 왔고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 존재를 부정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 관련 위원회가 발족되어 자료 전달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부응해 일본에서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자료 발굴과 공개를 요구하면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과 관련된 공탁금 자료의 존재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조련의 미수금 예탁활동의 실태에 관해 본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이를 조사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개척한 연구자로서 단연코 고쇼 다다시[古庄正]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1981년 이후 일본제철주식회사와 아시오[足尾] 구리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탁 자료를 발굴하고 수차례에 걸쳐 연구 논문과 발표를 통해 이 문제에 조련이 관여해 왔음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sup>16)</sup> 이와

16) 古庄正, 1986. 1,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金家團體の對

함께 그는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진상조사와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는 2007년의 연구논문에서도 패전 직후 조련이 미수금 문제에 관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조련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미수금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거소불명’ 처리해 실질적으로 공탁금을 몰수했다는 것과,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공탁에 소극적으로 임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허위로 적은 액수를 공탁했던 것도 비판한 바 있다.<sup>17)</sup>

조선인 미수금을 둘러싼 일본 점령당국과 남한 미군정 당국의 대응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조련의 활동이 일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매튜 어거스틴(Matthew Augustine)의 연구결과가 괄목할 만하다. 그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일변도의 공탁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0년 7월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요포럼’ 모임에서 「패전 직후 냉전에 따른 일본의 강제동원 미불금 동결」<sup>18)</sup>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가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공탁 문제에 관한 점령당국의 정책을 연구해 온 결과를 한국에서 발표한 것이다. 그의 발표는 2011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영문 잡지에 정리되어 게재되었다.<sup>19)</sup> 그는 논문을 통해 1946년 3월 점령당국이 산하기관으로 민간재

應, 『社會科學研究』 31卷 2號, 617~644쪽; 古庄正, 1991. 6, 「[資料]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卷 1號, 79~246쪽; 古庄正, 1991. 9, 「朝鮮人強制連行名簿調査はなぜ進まないか」, 『世界』, 108~115쪽; 古庄正, 1992. 9,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4卷 2號, 1~66쪽; 古庄正, 1993. 6,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朝鮮人勞務者關係’を主な素材として」,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5卷 1號, 1~83쪽; 古庄正, 1995. 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6卷 4號, 1~95쪽.

17) 古庄正, 2007. 10,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 37號, 5~21쪽.

18) The Cold War Freeze over Forced Mobilization Funds in Early Postwar Japan.

19) Augustine, Matthew R., 2011, Restitution for Reconciliation: The US, Japan, and the Unpaid Assets of Asian Forced Mobilization Victim, *The Journal of*

산관리과(Civil Property Custodian Section)를 설치하고 일본은행에 점령당국 관리계정(Custody Account)을 개설했으며, 일본 정부를 통해 기업들에 노무자 미불금 문제에서 조련을 배제하도록 하고 일본은행 관리계정에 미불금을 예치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을 밝혔다. 또한 그는 1946년 5월 홋카이도[北海道] 노무자 미불금 지급을 위해 남한 군정청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지시한 것과, 같은 해 10월 일본 정부가 점령당국 관리계정과 별도로 후생성 계정을 개설하고 여기에 미불금을 예치하도록 한 소위 공탁 조치에 대해서 점령당국이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 일본 정부가 예치된 미불금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 보상을 한 것 등을 밝혔다. 다만 그는 공탁정책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접근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한 공탁문서 공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일본의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는 2012년 8월에 출간된 공동저서에서 해결되지 않은 전후처리 문제 가운데 하나로 미수금 문제를 다루었다.<sup>20)</sup> 여기서 그는 근래 발굴되어 연구계에 널리 나돌고 있는 1949년의 대장성(大藏省) 공탁 조서를 소개하면서 해방 직후 조련의 미수금 예약활동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 미불금(공탁금)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후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1950년을 전후해 지방법무국과 도쿄 법무국, 그리고 각 지방 우체국이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을 보관하면서 관련 명부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수교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자료나 미수금 실태를 나타내는 자료를 일체 감추고 역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미수금 피해의 증명을 요구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은 여러 미해결 전후보상 문제 가운데 미불금 문제를 대강 정리해 소개하는 수준이며 미수금 문제의 역사와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작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자의 선행노력에 따라 패전 직후 일본

*Northeast Asian History*, Volume 8, Number 1, pp. 5~37.

20) 竹内康人, 2012, 「供託と協定で奪われた未拂い金: 明らかになった朝鮮人未拂い金の實態」, 田中宏・中山武敏・有光健, 『未解決の戦後補償』, 創史社, 174~188쪽.

에서 점령당국과 일본 정부가 조련과 조선인 노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미수금 문제를 발생시킨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각 지역별로 조련이 어떻게 미수금 문제에 관여해 어느 정도의 예탁 성과를 거두었는지 대강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에 관해 일본 정부가 1946년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일본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미불금을 공탁했는지, 기업별로 어떠한 항목을 공탁했는지, 일본 정부가 공탁 예치된 금액 가운데 어느 정도를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했는지, 오늘날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아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탁 자료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증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미수금 문제에 관한 구체적 연구조사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도입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점령당국의 귀환자 지참금 통제

조련의 미수금 예탁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일조선인 귀환과 관련해 조련이 어떻게 관여했고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점령당국은 일찍부터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귀환자의 휴대화폐 금액과 반출화물 규모를 규제하였다. 연합국군은 1945년 10월 12일의 각서 「법정통화의 지정과 화폐 및 채권의 유출입 금지에 관한 고시」<sup>21)</sup>에 의거해 일본과 남한에서 금·은·유

21) SCAPIN-44, AG 091.3, ESS, 1945. 9. 22, Control over Exports and Imports of Gold, Silver, Securities and Financial Instruments; SCAPIN-127, AG 091.31, ESS, 1945. 10. 12, Supplemental Instructions Relating to Import and Export Control, 점령군의 일본에 대한 통화정책은 1945년 9월 1일의 태평양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3호와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남한에 대한 통화정책은

가증권 등의 반입과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금액을 장교의 경우 500엔까지, 하사관의 경우 200엔까지, 민간인의 경우 1000엔까지로 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나가는 비(非)일본인에 대한 경제적 규제도 병행하였다. 1945년 10월 15일의 지령각서에 의해 각 귀환자가 들고 갈 수 있는 금액을 한 사람당 1000엔으로 하고, 이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몰수하면서, 채권증서나 재산소유증서와 마찬가지로 그 수령증을 대신 교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sup>22)</sup>

이러한 휴대화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1946년 말까지 실시한 귀환계획 기간 중에 전혀 완화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다만 1946년 1월의 수출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발행한 우편저금·은행예금통장·보험증서와 일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외환어음·예금증서 등 일본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휴대가 허용된 일이 있었다.<sup>23)</sup> 그러나 그것은 당시 남한과 일본 사이에 금융거래가 일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조선인 귀환자들에게는 당장 별로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조치였다.

휴대화폐 규제는 일본에서의 강제노역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된 조국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당시 귀환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였다. 조련이 1946년 6월 귀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귀환자들에게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하물포 장비로 한 꾸러미당 500엔, 하물수송비로 한 꾸러미당 600엔, 숙박비로 1인 1박에 30엔, 선상에서의 잡비로 하루 1인당 150엔이 들었다.<sup>24)</sup> 이 가운데 선상 잡비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1000엔 가운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점령당국의 휴대화폐 규제 지시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빈털터리로 귀환하는

9월 7일의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3호를 통해 각각 실시되었다. 高石末吉, 1970, 『覺書終戰財政始末(第1卷)』, 大藏財務協會, 26~37쪽; 森田芳夫·長田かな子, 1979, 『朝鮮終戰の記録(資料篇第1卷)』, 巖南堂書店, 249~250쪽.

22) SCAPIN-142, AG 370.05. GC, 1945. 10. 15, Reception Centers in Japan for Processing Repatriates.

23) SCAPIN-532, AG 091.714. ESS/FI, 1946. 1. 2, Supplemental Instructions Relating to Import and Export Control.

24) 『민중신문』, 1946년 6월 25일.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조선인 귀환자들은 단속을 피해 밀항과 화폐 은닉 행위를 감행했으며, 반면에 점령군 당국은 이러한 조선인들을 ‘질서문란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남한에 일본인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화폐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귀환해 가면서 직접적인 화폐 교환도 곤란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교환비율이 1:1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남한에 가져 온 일본은행권의 교환비율이 낮아 귀환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 것도 사실이다. 조련 오사가 본부의 조직부장으로서 1945년 11월에 남한에 파견된 장정수(張錠壽)는 부산에서 일본 화폐를 조선 화폐로 교환하려고 하니 10대 4의 교환율밖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sup>25)</sup> 여기에서 해방 직후 남한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도 귀환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하였다. 해방 당시 남한에서 쌀 한 되의 시중 소매가격이 220원이었던 것이 일시적으로 75월까지 내렸다가 새해 들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2월에 320원, 3월에는 600원으로 치솟았다. 곡물가격이 대체로 저렴했던 1945년 12월조차도 1000엔으로는 겨우 쌀 2말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한다.<sup>26)</sup>

점령당국은 휴대화폐의 규제와 함께 반출하물의 규제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중량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귀환자가 한 번에 지고 갈 수 있는 분량까지로 하였다.<sup>27)</sup> 그러다가 1946년 3월 27일의 각서를 통해 한 사람당 250파운드(113.4 kg)까지 휴대 가능하다고 하며 하물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다.<sup>28)</sup> 이 각서에는 ‘한 번에 나를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없고 일본 정부에 대해 ‘추가분의 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250파운드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운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선인 귀환자들과 단체도 그렇게 이해하였다. 그래서 조련이 3월 중에 점령당국의 지시사

25) 張錠壽, 1989, 『在日六〇年・自立と抵抗: 在日朝鮮人運動史への證言』, 社會評論社, 145쪽.

26) 『민중신문』, 1946년 7월 25일.

27) SCAPIN-822, AG 370.05, GC, 1946. 3. 16, Repatriation, Annex 6.

28) SCAPIN-822/1, AG 370.05, GC, 1946. 3. 27, Repatriation.

향인 「집단귀환 계획 설정을 위한 귀환 희망자 조사」에 협력하는 대신 반출하물 규제의 완화를 요구해 왔던 까닭에 이 각서는 조련의 요구에 대한 회답이라고 조련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sup>29)</sup>

그런데 5월 7일의 각서에 다시 ‘한 번에 나를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다.<sup>30)</sup> 이 규정은 단지 짊어질 수 있는 하물의 중량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아무런 완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조련과 남한 군정청은 점령당국에 그 완화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7월 20일 방침이 변경되어 8월 1일부터 조선인·대만인·중국인의 하물 중에서 짊어질 수 없는 것도 선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변경된 조치에 따라 종전의 250파운드의 하물 이외에도 귀환자의 소유품인 의류·일상용품·가정용품을 250파운드 여분으로 선적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9월 2일부터는 4000파운드 이하의 기계류·공구의 선적도 가능하게 되었다.<sup>31)</sup> 또한 9월 4일 미8군 작전지령 제77호 「재일 조선인의 소유재산 제한 분량의 조선행 수송」에 따라 4000파운드 이상의 물건도 경제과학국(ESS)의 허가가 있으면 선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미 귀환한 사람의 몫까지도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4000파운드를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는 하물과 초과하는 하물에 대해 각각 다른 수송허가 신청의 수속을 정하고 하물 포장에서 운송까지의 모든 비용은 짐주인의 부담으로 하였다.<sup>32)</sup>

1946년에 들어서 점령당국은 집단귀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를 통해 조선인 귀환 희망 의사의 유무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이때 조선인 귀환 문제에 대한 점령당국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귀환자의 의사에 따라 귀환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귀환 의사가 없는 자는 일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면 일본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조선인들을 귀환시키려는 기민정책을 취했으며 ‘잔류’ 조선인에 대해

29) 『민중신문』, 1946년 3월 25일.

30) SCAPIN-927, AG 370.05, GC, 1946, 5, 7, Repatriation, Annex 6.

31) SCAPIN-927/6, AG 370.05, GC, 1946, 7, 20, Repatriation, Annex 6.

32) GHQ/SCAP RECORDS, G3-00049.

서는 교묘한 권리 제한 방식을 취해 법형식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취급하면 서도 개별적으로는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즉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 하며 일본 국민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적용하였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조선인의 민족적 감정을 이용해 될 수 있는 한 모든 조선인을 일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선인 수형자에 대 한 점령당국의 정책은 수형기간을 마치고 나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귀환시키 는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방침은 수형자에게 귀환을 조건으로 형을 보류· 면제하거나 귀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는다고 협박하기도 해서 귀환 희망자 수를 확대하였다.<sup>33)</sup>

점령당국은 1월 중순에 남한의 군정 관계자를 불러 도쿄 콘퍼런스(Tokyo Conference)를 열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수송 방침을 세웠다.<sup>34)</sup> 이에 따 라 2월 17일의 각서를 통해 조선인·대만인·중국인·류큐[琉球]인에 대한 등 록을 3월 18일까지 1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하고, 이때 귀환 희망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것과, '귀환특권'의 최후통첩임을 알리도록 해 계획통제에 따 르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조선인 귀환 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 귀향 지가 38선 이남인지 이북인지를 구별해 집계하도록 지시하였다.<sup>35)</sup> 아울러 일 본 정부 관계자와 함께 제일 조선인 단체 대표들을 사령부에 소집해 이 송출계 획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였다.<sup>36)</sup>

일본 정부는, 3월 13일 「1946년 후생·내무·법무성령(厚生·内務·司法

33) 와그너(Edward W. Wagner), 1989,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 1904年 - 1950年(復刻版)』, 龍溪書舍, 85쪽.

34) Gane, William J., 1951, *Foreign Affairs of South Korea, August 1945 to August 1950*, Northwester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 136~139.

35) SCAPIN-746, AG 053, GC, 1946, 2, 17, Registration of Koreans, Chinese, Ryukyuan and Formosans.

36) 1946년 3월 6일 오전의 설명회에는 조련에서 신흥제·이병석·이재동 등이, 건청 에서 이원유·서종실·허운용 등이, 그리고 공화신문사에서 천원(千垣)·강호달 등이 참석해 조선인 참석자만도 20명에 달하였다. アジア問題研究所, 1981, 「日本政府側立會ノ下ニ行ハレタルマ司令部ノ朝鮮人團體代表者ニ對スル對談要旨」, 『戰時強制連行華鮮勞務對策委員會活動記録』, アジア問題研究所, 155~167쪽.

省令) 제1호」와 그 시행규칙인 「1946년 후생·내무성 고시 제1호」를 통해 등록령을 공포하고, 3월 18일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조선인 거주자 등록을 개시하였다. 이 등록의 결과 집계된 조선인의 총수는 수형자 3595명을 포함해 64만 700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귀환 희망자 총수가 수형자 3373명을 포함해 51만 4060명으로 전체의 79.5%로 집계되었다. 이 중 북한으로의 귀환 희망자는 수형자 289명을 포함해 9701명으로 집계되었다.<sup>37)</sup>

이처럼 신속하게 거주자 등록이 실시되고 귀환 희망자 비율이 높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귀환 추진정책과 아울러 조련의 순응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조선인의 관리를 위해 조련을 잠정적으로 이용하였다. 본래 점령당국의 방침은 오로지 일본 후생성의 책임하에 귀환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귀환 계획이나 책임 부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조선인 단체를 이용해 조선인을 스스로 통제하게 하였다. 조련이 귀환 통제에 직접 관여하고 등록자 명부 기재의 대행을 하게 된 것은 조선인 노무자 임금교섭의 대행과 함께 조직의 확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 IV. 조련의 귀환업무 관여와 배제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귀환업무 책임부서로 1945년 11월 24일 인양원호국이 개설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우선 각 지역의 흥생회(興生會) 조직을 활용해 잔류 조선인 노무자들의 지도와 귀환 지도를 담당하게 했으며 인양원호국 개설 이후에도 조련 기구를 활용하였다.<sup>38)</sup> 지역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

37) 森田芳夫, 1955,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法務研究報告書 第43集 3號), 法務研修所, 59쪽.

났지만,<sup>39)</sup> 기본적으로 점령당국에 의해 11월 15일에 흥생회가 해산되는 시점까지는 흥생회와 조선인 단체가 귀환업무에 관여했고, 흥생회 해산 이후에는 대체로 조련이 귀환업무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초기 조련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에서 흥생회 소속원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해방 직후 9월 10일에 결성된 조련 준비위원회는 중앙흥생회 소속원이 주도했으며, 그 행동강령 가운데 하나로 「귀국동포의 편의와 질서를 기함」을 설정해 귀환원호 단체임을 분명히 했고, YMCA 관계자가 위원장에 추대된 것도 귀환원호 단체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sup>40)</sup> 일본의 신문 보도를 통해 조련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조련이 ‘질서 있는’ 귀환을 호소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도 초기 조련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sup>41)</sup> 조련은 10월 17일 전국대회와 함께 개최한 제1회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시모노세키[下關]와 하카타[博多]에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후 난립된 조선인 원호단체를 수습해 갔다.<sup>42)</sup>

일본 정부는 흥생회 해산에 즈음해 조련에 조선인 귀환에 대한 원호와 송출 업무를 위임하였다. 조련 제3차 전체대회 회의록 가운데 첨부되어 있는 『총무부 경과보고』에는 조련이 귀환자 송출업무를 위임받게 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흥생회 해산 사흘 전인 1945년 11월 12일 “후생성·운수성 대신과 강경 담판을 하여 계획수송 일체를 취급하게 되었고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수용시설 설치와 선박 배선 확대를 요구했으며 조직이 강화되어

38) 최영호, 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38~140쪽.

39) 홋카이도와 시마네현의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조련 조직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귀환원호 활동과 미수금 예탁 활동에서도 저조한 편이었다. 최영호, 1995, 앞의 책, 122~123쪽.

40) 최영호, 1995, 앞의 책, 119쪽.

41) 『新潟日報』, 1945년 9월 14일; 『山形新聞』, 1945년 9월 14일; 『佐賀新聞』, 1945년 9월 15일.

42) 시모노세키와 하카타에는 해방 직후 제일 조선인 단체와 남한에서 파견된 각종 조선인 단체가 난립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련 조직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단체를 흡수 정리하거나 지도하는 형태로 수습해 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1995, 위의 책, 120쪽.

감에 따라 그 활동이 하루하루 강력하게 전개되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도쿄 우에노[上野]와 시나가와[品川] 정거장에서 열차 배치, 귀국 상담, 정리, 환자나 영양실조 귀환자에 대한 구제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sup>43)</sup> 또한 일본 정부는 12월에 점령당국에 의해 ‘철도운임의 소급 환급’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것이 귀환자 당사자에 대한 환급을 전제로 하는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련의 환급 요구를 들어 주었고, 조련에 의한 조선인 예금 인출 요구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지불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일본 정부가 조련에 귀환원호와 송출업무를 잠정적으로 위임한 것은 조련에 조선인에 대한 일차적 통제기관이 되도록 허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조련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젊은이들에 의한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해방 이후 12월 말까지 일본 공안당국이 파악한 조선인의 불법행위는 총 13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련이 관여한 ‘퇴직위로금 부당요구’와 ‘귀환 문제를 둘러싼 불온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1946년에 들어서도 총 5336건 중에서 ‘관공서에 대한 부당요구’와 ‘철도수송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목되었다.<sup>45)</sup>

그러나 조선인 귀환을 미끼로 한 조련과 일본 정부의 애매한 공생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귀환 상황의 부진과 일본 사회의 ‘잔류’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배척으로 인해 점차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바뀌어 갔다. 특히 조련이 남한의 경제적 빈곤 실태를 귀환 희망자들에게 알리면서 귀환자 송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련의 주도권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총무부 경과보고』에 따르면 조련이 직접 관여해 귀환자들의 예정된 귀환을 주저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귀환을 주저하게 한 이유로는, 남한 미군정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친일파 관리를 등용하고 있다는 것, 물자

43) 재일본조선인연맹, 1946, 『총무부 경과보고』, 재일본조선인연맹, 30쪽; 朴慶植編, 1983, 『朝鮮問題資料叢書第九卷: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I』, アジア問題研究所, 92쪽.

44) 최영호, 1995, 앞의 책, 138쪽.

45) 坪井豊吉, 1975, 『在日同胞の動き』, 自由生活社, 231~237쪽.

부족에 따른 경제적 혼란과 식량·필수품 부족이 현실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을 꼽았다.<sup>46)</sup>

일찍이 1946년 4월 25일 인양원호국 업무과는 각 지방의 교육민생부장에게 “중래 조련이 주체가 되고 일본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온 것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련으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도록 할 것”을 지시해, 조련의 주도권을 배제하도록 하였다.<sup>47)</sup> 이어 5월 28일에는 인양원호국 업무과는 각 지방의 교육민생부장에게 「조선인 송환에 관한 연합국군최고사령부 발표의 건」(發業 제316호) 공문을 하달해, 점령당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형태로 4월 22일부터의 송출계획 실시에 조련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시켰다.<sup>48)</sup>

이와 함께 내무성 경보국은 점령당국의 지원 아래 거주자 등록 업무가 끝나자마자 3월 25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철도수송 과정에서 조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귀환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조련의 주도적인 귀환 원호활동을 지목하고, 조련을 배제함으로써 계획대로 송환을 추진할 것을 획책하였다. 내무성 경보국 공안과장은 5월 13일 「조선인의 송환 경비에 관한 건」이라는 통달을 각 지방 경찰부장에게 내려, “만약 그들의 송환이 중지되면 다수의 조선인이 국내에 잔류해 치안경비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선인 단체 등의 지도자를 활용해 지역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송환할 것, 그리고 지정 기일에 반드시 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진주군에게 협력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sup>49)</sup> 아울러 공안과장은 6월 21일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단속지령」(警保局公安發甲 제35호)을 내리고, 일본 정부의 귀환업무에 대한 조련의 조직적 ‘방해공작’에 대해서 현지 점령당국과의 협력 아래 그 책임자를 강제 송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지방에 지시하였다.

46) 재일본조선인연맹, 1946, 앞의 자료, 30~31쪽.

47) 引揚援護院援護局業務課長發, 各都道府縣教育民生部長宛, 1946, 4, 25, 「非日本人ノ送還ニ關スル件」(發業第179號); 鄭榮桓, 2013, 앞의 책, 61쪽.

48) 森田芳夫, 1955, 앞의 책, 62쪽.

49) 鄭榮桓, 2013, 위의 책, 61쪽.

## V. 조련의 미수금 예탁활동

조련 중앙조직의 미수금 예탁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일찍이 박경식이 1989년 저서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일본 패전과 함께 홋카이도 탄광을 필두로 조선인 노무자의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미수금 획득 투쟁이 10월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조련의 미수금 예탁 활동에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10월 15일의 조련 전국대회에 홋카이도 조선인 노무자 대표가 참가했으며 이들의 요구에 따라 김두용(金斗鎔) 등이 파견되어 파업 투쟁을 지도했다고 하였다.<sup>51)</sup>

고쇼 다다시도 2000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일본 정부의 공탁 과정을 비판적으로 기술하는 가운데 이를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반격에 의해 조련의 예탁활동이 '좌절'되는 전환점이 된 시점을 확인하는 가운데 조련 중앙본부의 활동을 언급하였다. 즉 조련 중앙본부가 1946년 1월에 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좌절된 일로부터 일본 정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조련의 요구에 대해 통제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으며, 나아가 미군 헌병사령부에 '자기방어 소요를 책동하는 중'이라는 정보를 보내 점령당국의 협조 아래 일본 경찰의 단속 강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sup>52)</sup>

이와 함께, 『총무부 경과보고』를 보면 조련 중앙본부가 해방 직후 일본에 있는 조선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6년 1월 6일 박성발(朴成發), 정문옥(鄭文玉), 조충기(趙忠紀), 이철(李哲)을 위원으로 하는 특수재산접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전쟁협력단체 일심회(一心會)로부터 현금 81만 9968엔 13센을 접수했으며, 종이 124연(ream,

50) 京都府警察史編纂委員會, 1980, 『京都府警察史』. 京都府警察史編纂委員會, 592~597쪽.

51) 朴慶植, 1989, 앞의 책, 46~48쪽.

52) 古庄正, 2000, 앞의 글, 49~50쪽.

500장)과 철조 457정을 인수하였다. 이외에도 1945년 12월 3일에 조선장학회를 실질적으로 접수해 이사(理事) 진용을 개편하고 과거 관변단체적인 성격에서 '학생동맹'에 의해 유지되는 재단적 성격의 단체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도쿄 흥생회로부터 건물과 현금 25만 엔을 접수하기도 하였다.<sup>53)</sup>

또한 『총무부 경과보고』에 따르면 조련 중앙본부가 각 지방의 미수금 예탁 활동을 지원하며 통일적 교섭 지침을 마련하고 조선인 노무자의 사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주선했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모든 기간을 통해 우리 조선민족의 희생을 강요한 참혹한 착취적 노무고용 조건에 의하여 노예적 곤경에 신음하던 조선 노동자는 영광스러운 연합국의 승리로 인하여 조국재건과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의 괴멸에 의하여 굴욕적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민족적 국제적 인격으로 자유평등의 권리를 탈환한 것이다.

그리하여 귀사가 사역한 조선 노동자에 관해 이 새로운 사태의 관점으로 종래의 대우와 장래의 처우 방법에 대하여 재일본조선의 일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본 연맹은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 동포 노동자의 과반수가 소박하고 무지문맹함을 기화로 삼아 열악한 노동조건, 강제와 급여금품의 부정횡령에 의하여 물질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심신을 침식하고 또 패전 후 궁핍한 기한(飢寒) 상태에 대하여 하등 성의 있는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기만적 정책이지만 그 대책 지시까지라고 노동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책임회피를 기도하는 비인도적 폭학 행위는 전쟁범죄적 밀리타리즘(militarism)의 엄연한 실례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 연맹은 포츠담선언의 원칙을 이해하는 견지에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유린을 묵시할 수 없다.

본 연맹은 귀사의 이러한 최악적 폭력상태와 배덕적 행위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보장된 조선인의 복리와 권위를 옹호하는 영광스런 권리를 재확인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맹은 귀사에 대하여 급속히 별지 조건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는 동시에 즉시 성의있는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요구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여 귀사가 인

53) 재일본조선인연맹, 1946, 앞의 자료, 20~21쪽.

54) 재일본조선인연맹, 1946, 앞의 자료, 33~35쪽.

도적·사회적·도덕적 신의를 천하에 표명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년 월 일 재일본조선인연맹 ○○○본부 노동부장 ㉠

아울러 조련 중앙본부는 조선인 노무자를 ‘강제노동자’와 ‘자유노동자’로 나누고 각각의 신분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요구조건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 지방본부 노동부장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요구조건으로는 ① 지난 5년간 노동자 사용 수, 취로기간, 현재 인원의 본적·성명·연령, 노동자 가족의 성명·연령, 급여금, 지급금, 식량·주택·위생 기타 처우에 관한 상황, 사망·상병·행방불명·귀국별로 본적·성명·연령·원인·일시·조치 기타 처우 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망자의 경우, 1인당 유족부조료 1만 엔 이상을 지급하고, 회사 소정의 각종 위로금·조위금·향화료(香花料)·위문금을 지급하며, 법정 매장료·유족연금을 지급할 것, ③ 부상자의 경우, 한쪽 팔이나 다리의 불구자에게는 1인당 5000엔 이상,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상실한 자에게는 1000엔 이상, 기타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응분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④ 귀국자에 대해서는 근속 1년당 1000엔씩 퇴직금·위로금을 지급하고, 후생연금·원천징수저금·해방 이후 하루당 8엔씩의 임금·귀국 시까지의 식량과 피복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망자·행방불명자·귀국자에 대한 지불은 조련 중앙본부에 위탁·일임해 조련으로 하여금 해당자의 유가족이나 본인에게 전달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sup>55)</sup>

조련 중앙본부가 위와 같은 통일적 교섭 지침과 요구조건 지침을 정확히 언제 마련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련이 1945년 11월 25일에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노동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sup>56)</sup>으로 보아 이 시점에 통일적인 지침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쇼는 조련 중앙본부의 결정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1946년 1월에 들어 조련이 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 소속 14개 회사에 요구조건을 제출한 것에 주목하고, 조련의 ‘과다한’ 요구가 결과적으로

55) 재일본조선인연맹, 1946, 앞의 자료, 35~39쪽.

56) 吳圭祥, 2009, 앞의 책, 322쪽.

일본 기업체의 태도를 경직하게 하고 일본 정부와 점령당국이 조련 배제 방침을 분명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조선인 노무자의 ‘유리한 상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sup>57)</sup>

다만 조련 중앙본부가 노동부를 설치하고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이전에도 각 지방에서 전개되는 미수금 교섭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오 구리광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년 11월 4일에 조련 도치기현 지방조직이 사업장에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종합 정보 등을 요구하고 ‘강제노동자’의 노동연금·예저금·의복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련 중앙본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sup>58)</sup> 이것은 이미 11월 초 이전에 조련 중앙본부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조선인의 미불임금 채무조사」의 ‘제3차 인도분’에서 조련 도쿄지방 조직이 1945년 11월 12일에 처음 예탁 교섭을 전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앙조직의 관여가 제2차 중앙위원회 이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련 지방조직의 예탁활동으로는, 고쇼의 연구에 의해 이와테[岩手]현과 아키타[秋田]현, 그리고 도치기현의 움직임이 소개되었다. 그는 일찍이 1992년 논문과 자료해설을 통해 조련 이와테현 본부가 1946년 4월 가마이시[釜石] 광업소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25만 엔 정도의 예탁금을 얻어냈으며 같은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도 예탁 사례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때 예탁 미수금은 업무상 사망자 5000엔과 업무 외 사망자 2500엔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교섭에 들어갔고 6월 초에 가마이시광업소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이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였다고 하였다.<sup>59)</sup> 이때 조련 이와테현 본부는 앞서 언급한 중앙본부의 각서를 사업장에 제시하였다.<sup>60)</sup> 또한 고쇼는 2000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조련이 해

57)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앞의 책, 128쪽.

58)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위의 책, 127~128쪽.

59) 古庄正, 1992, 9, 앞의 글, 21~22쪽;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위의 책, 129~131쪽.

60) 조련 이와테현본부 노동부는 중앙본부로부터 하달된 앞의 각서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2, 위의 책, 18~20쪽.

방 직후 하나오카[花岡]광산, 오사리자와[尾去澤]광산, 고사카[小坂]광산 등 아키타현의 광산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조선인 노무자 1명당 퇴직 위로금 1000엔과 여비 150엔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sup>61)</sup>

또한 도치기현의 예탁활동과 관련해 고쇼는 아시오 구리광산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 그는 1995년 3월의 논문에서 아시오 구리광산의 조선인 노무자 피해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자료와 지역 신문 기사를 분석해 미수금 피해와 관련해 이 지역 조련 단체가 어떻게 미수금 예탁활동을 전개했는지 밝혔다. 그는 특히 1945년 11월 초에 아시오에서 발생한 조선인 '폭동'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그는 이 폭동이 조선인 노무자 귀환자의 미수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련 지방조직의 지원 아래 일어났다는 점을 밝혔다.<sup>62)</sup> 고쇼는 그 후 조련 관련 자료를 분석해 2003년 7월 한일민족문제학회와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아시오광산이 '금일봉'으로 조련에 35만 3250엔을 인도했다고 발표하였다.<sup>63)</sup> 이 논문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인의 미불임금 채무조사」에 나오는, 조련 아시오지부에 인도했다는 49만 5217엔 72센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아시오지역의

61) 古庄正, 2000, 「強制連行・未拂金はどのように沒收されたか: 個人の財産權と國家・企業」, 古庄正・田中宏・佐藤健生他, 『日本企業の戦争犯罪: 強制連行の企業責任3』, 創史社, 49쪽.

62) 1945년 11월 3일 저녁 조선인 노무자들은 조련 栃木縣 足尾支部와 群馬縣 太田支部의 지원을 받아 아시오 광업소 소장에게 식량대책과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단체인행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후생성이 11월 10일 조정안 「古河足尾鑛業所就勞朝鮮人勞務者紛爭議調停の件」(給發第106號)을 제시하며 귀환수송 대책과 함께 퇴직위로금·저금·예금·사상자 위자료 미수금 지불을 약속했으나 조련 측은 내용이 미흡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도 했지만 조련에 아무런 지급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足尾 진주군 정부대 부대장이 12월 5일,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조선인 노무자의 예금과 협회회 자금, 그리고 분쟁의 원활한 해결에 대한 대가 2만 4000엔을 조련에 제공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분규는 수습되었다. 古庄正, 1995, 3, 앞의 글, 51~65쪽.

63) 고쇼 다다시가 2003년에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在日朝鮮人史研究』 33號, 2003년 10월, 192~194쪽에 실려 있다.

미수금 예탁 실태가 고쇼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조련의 예탁활동이 보이지 않고 남한 군정청 관계자가 예탁활동을 보였다. 여타 지역과는 달리 홋카이도에서는 조련 조직이 뒤늦게 이루어졌고 일찍부터 ‘조선민족통일동맹’이 단체교섭 움직임을 보였다.<sup>64)</sup> 그러나 삿포로 군정부대는 조선민족통일동맹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일찍부터 도쿄의 점령당국과 남한 군정청의 연락사무소와 연계해 체계적인 예탁활동을 추진하면서 조선인들의 조속한 귀환을 중용하였다.<sup>65)</sup> 체계적인 예탁은 우선 일본과 남한 사이에 송금액에 상당하는 석탄을 수송함으로써 결제하기로 하고,<sup>66)</sup> 일본은행에 점령당국의 관리 계좌를 개설해 여기에 일본 기업이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을 예치하게 하고,<sup>67)</sup> 일본의 점령당국이 남한 군정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함으로써 이 서류에 맞추어 남한 군정청이 조선인 귀환자에게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선은행권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sup>68)</sup>

1946년 3월 11일 삿포로의 제74군정부대 담당자(H. E. Pickerill)가 점령당

64) 桑原真人, 1982, 『近代北海道史研究序説』,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335쪽.

65) 西川博史, 2007, 『日本占領と軍政活動: 占領軍は北海道で何をしたか』, 現代史料出版, 100~101쪽. 홋카이도 군정부대의 체계적인 예탁과 귀환 권유에 힘입어 해방 직후 홋카이도에 있던 조선인 노무자 27만 명이 11월 셋째주에 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노무자 미수금을 둘러싸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조선인 단체는 군정부대나 미군정청 관계자에 눈에 비윤리적이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Gane, William J., 1951, *ibid.*, pp. 127~136.

66) Economic and Scientific Section Finance Division, APO-500, 1945. 10. 29, MEMORANDUM.;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戰後補償問題資料集 第8集: GHQ關連文書集(朝鮮人未拂金政策等)』, 戰後補償問題研究會, 35쪽.

67) Headquarters 74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APO 928-Sapporo, 1946. 5. 5, Funds Consisting of or Pertaining to the Unsettled Accounts of Koreans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Hokkaido;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46쪽.

68) Ltr fr Hq 74th Mil Govt, APO 928-Sapporo, File AG 122.1, 1946. 5. 5, subject: “Funds Consisting of or Pertaining to the Unsettled Accounts of Koreans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Hokkaido” to GHQ SCAP, FRS/SM/It, 1946. 6. 4;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58쪽.

국의 관리 계좌에 예치된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307만 4360엔 01센에 대한 지급을 점령당국에 요청하고, 5월 27일 경제과학국 담당자(McDiarmid)가 서울을 방문해 205만 9817엔 16센을 조선인 귀환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일이다.<sup>69)</sup> 하지만 남한 군정청이 조선인 귀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미수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1946년 6월에 일본 점령당국과 남한 군정청 사이의 의견불일치로 석탄 수송에 의한 결제 방식이 중단되었고,<sup>70)</sup> 남한 군정청은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미수금 지급 방식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sup>71)</sup> 결국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의 윤곽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와 연구를 분석해 조련이 미수금 문제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을 통해 조련 중앙본부가 일찍부터 제일 조선인 재산을 접수하고 노무자 미수금 예탁을 위한 단체교섭 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련 지방조직은 조선인 노무자 대부분이 아직 귀환하지 않고 사업장 주변에 남아있던 시기에 단체교섭을 주도하며 미수금 예탁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에 따

69) Ltr to CG, XXIV Corps, AG 131, CPC/GP, 1946. 5. 27, subject: "Funds Consisting of or Pertaining to the Unsettled Accounts of Koreans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Hokkaido";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앞의 책, 64쪽.

70) General Headquarters SCAP, 1946. 6. 24, Unsettled Accounts of Korean Miners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Hokkaido;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 1993, 위의 책, 66쪽.

71) Augustine, Matthew R., 2011, *ibid*, p. 20.

라 일본 패전부터 1945년 12월까지의 조련이 대체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체 교섭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듬해에 들어서는 점차 조선인 노무자들이 사업장을 떠나면서 점차 단체교섭이 어려워져 갔던 상황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미수금 문제의 전문가 고쇼 다다시는 조선인 노무자의 교섭 조건이 악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조련의 조직적 관여를 들고 있는데, 필자는 이와 함께 조선인 노무자가 대거 귀환해 감으로써 기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련의 내부자료 『총무부 경과보고』에 따르면 1946년 10월까지 조련 중앙본부가 파악한 각 지방의 미수금 예탁성과는 총 340건, 관계인원 4만 3314명, 해결금액 2687만 6844엔이었다.<sup>72)</sup> 이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조선인의 미불임금 채무조사」의 '제3자 인도분'에 나타난 사업장 수 57건, 채권자 수 7361명, 예탁금액 296만 3878엔 19센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조련 본부에 보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련 중앙본부가 파악한 금액이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 파악한 '제3자 인도분' 금액에 비해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해명하는 자료가 없는 까닭에 현 상황에서는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조련의 '성과' 속에는 소위 단체교섭 중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즉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이라 할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경우,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에 보고하면서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조련의 예탁 결과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4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군소 사업장에서 조선인 노무자의 단체교섭 활동이 왕성했을 때 전개된 예탁활동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련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며 노무자와 함께 단체행동에 나서자 일단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지못해 노무자 미수금의 일부와 단체교섭 알선 커미션을 조련에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다. 일본 정부가 1946년 10월 노무자 미수금에 대한 공탁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에는 조련의 이러한 단체행동 내지 단체교섭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탁 실시 시기에

72) 재일본조선인연맹, 1946, 앞의 자료, 32~33쪽.

이미 조련의 단체교섭 활동이 대체로 힘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조련의 예탁활동만이 공탁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탁의 중요한 배경은 자국 기업의 재정적 청산작업을 돕고 한반도 독립 정부와의 청구권 교섭에 대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강한 경제적 의도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본문에서 1946년 4월 하순에 일본 정부가 조련의 귀환원호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는데,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예탁 업무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아예 애초부터 조련을 공식적인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의 사업장이 조선인 노무자들의 단체행동 상황에서 조련의 예탁활동을 인정하고 해결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련의 단체교섭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찍이 1945년 11월의 아시오광산 분류에서 후생성이 제시한 조정안(給發 第106號)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노무자 미수금을 노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조련에 미수금을 예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sup>73)</sup> 1946년에 들어 후생성 관계자가 각 지방정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방침을 하달하고 조련은 노동조합법에 기초해 정식으로 승인받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것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sup>74)</sup>

이 논문을 통해 조련 중앙본부나 이와테현·도치기현·아키타현 지방조직의 미수금 예탁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나 그 밖의 지역에

73) 일본 정부가 노무자 미수금을 노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실질적으로 미수금 피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공탁조치를 하면서 미수금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보상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귀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령 당국의 통화규제가 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조선인 노무자 본인에 대한 지급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수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미룬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4) 厚生省勞政局給與課長, 1946. 3. 11, 「終戦に伴う朝鮮人勞務者解雇手當に關する件」(給發 第15號); 厚生省勞政局給與課長, 1946. 6. 11, 「朝鮮人其他の外國人勞務者の給與等に關する件」; 厚生次官, 1946. 6. 21, 「朝鮮人, 台灣人及び中國人勞務者の給與等に關する件」(厚發勞 第36號).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련 초기의 조직과 활동을 분명히 하는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조련이 결성 초기에 거두어들이는 예탁금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로 귀환한 노무자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예탁금이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화폐 교환이 금지되어 있었고 한반도에서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예탁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조련이 획득한 예탁금은 대체로 일본에서 귀환자 송출에 필요한 비용이나 조련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949년 9월에 조련은 점령당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관련 재산이 몰수되었다. 그 후 조련의 재산이 청산되는 과정에서도 결성 초기에 조련이 조선인 노무자와의 단체활동을 통해 얻은 미수금 예탁금에 대한 실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2011. 5,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 『역사와 책임』 창간호.
- 표영수 · 오일환 · 김명옥 · 김난영, 2008. 6, 「조선인 군인 · 군속 관련 ‘공탁서’ · ‘공탁 증명서’ 기초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14집.
- 최영호, 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 최영호, 2009. 6, 「書評: 吳圭祥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 『한일민족문제연구』 16집.
- 최영호, 2013. 6, 「書評: 朝鮮獨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재외한인연구』 30호.
- 『민중신문』 1946년 3월 25일.
- 『민중신문』 1946년 6월 25일.
- 『민중신문』 1946년 7월 25일.
- 金慶南, 2009. 7. 26, 「GHQ占領期における供託金の事務手続きと名簿原本の出所について: ‘經濟協力·韓國105’分析を中心に」(強制連行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
- 朴慶植 編, 1983, 『朝鮮問題資料叢書第九卷: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I』, アジア問題研究所.
- 朴慶植, 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 吳圭祥, 2009,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1945-1949』, 岩波書店.
- 張錠壽, 1989, 『在日六〇年 · 自立と抵抗: 在日朝鮮人運動史への證言』, 社會評論社.
- 鄭榮桓, 2013, 『朝鮮獨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學出版局.
- アジア問題研究所, 1981, 『戦時強制連行華鮮勞務對策委員會活動記録』, アジア問題研究所.
- 京都府警察史編纂委員會, 1980, 『京都府警察史』, 京都府警察史編纂委員會.
- 桑原真人, 1982, 『近代北海道史研究序説』,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 古庄正, 1991. 6, 「[資料]連行朝鮮人未拂い金供託報告書」,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3卷 1號.
- 古庄正, 1991. 9, 「朝鮮人強制連行名簿調査はなぜ進まないか」, 『世界』.
- 古庄正, 1992. 9, 「朝鮮人強制連行問題の企業責任」, 『駒澤大學經濟學論集』 24卷

2號.

古庄正, 1993, 6, 「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朝鮮人勞務者關係' を主な素材として」, 『駒澤大學經濟學論集』25卷 1號.

古庄正, 1995, 3, 「足尾銅山・朝鮮人強制連行と戦後處理」, 『駒澤大學經濟學論集』26卷 4號.

古庄正, 1986, 1, 「在日朝鮮人勞働者の賠償要求と政府および資本金家團體の對應」, 『社會科學研究』31卷 2號.

古庄正, 2000, 「強制連行・未拂金はどのように沒收されたか: 個人の財産權と國家・企業」, 古庄正・田中宏・佐藤健生他, 『日本企業の戰爭犯罪: 強制連行の企業責任3』, 創史社.

古庄正・田中宏・佐藤健生他, 2000, 『日本企業の戰爭犯罪: 強制連行の企業責任3』, 創史社.

古庄正, 2007, 10, 「供託をめぐ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在日朝鮮人史研究』37號.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2, 『戦後補償問題資料集第7集: 戦後補償關係法令通達集(Ⅱ)「未拂金・軍事郵便貯金」關係』, 戦後補償問題研究会.

戦後補償問題研究会 編, 1993, 『戦後補償問題資料集第8集: GHQ關連文書集(朝鮮人未拂金政策等)』, 戦後補償問題研究会.

高石末吉, 1970, 『覺書終戰財政始末(第1卷)』, 大藏財務協會.

竹内康人 編, 2012, 『戦時朝鮮人強制勞働調査資料集: 名簿・未拂い金・動員數・遺骨・過去清算』,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田中宏・中山武敏・有光健, 2012, 『未解決の戦後補償』, 創史社.

坪井豊吉, 1975, 『在日同胞の動き』, 自由生活社.

西川博史, 2007, 『日本占領と軍政活動: 占領軍は北海道で何をしたか』, 現代史料出版.

森田芳夫, 1955,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状』(法務研究報告書 第43集 3號), 法務研修所.

森田芳夫・長田かな子, 1979, 『朝鮮終戰の記録(資料篇 第1卷)』, 巖南堂書店.

厚生省勞政局給與課長, 1946. 3. 11, 「終戰に伴う朝鮮人勞務者解雇手續に關する件」(給發 第15號).

厚生省勞政局給與課長, 1946. 6. 11, 「朝鮮人其他の外國人勞務者の給與等に關する件」.

- 厚生次官, 1946. 6. 21, 「朝鮮人, 台灣人及び中國人勞務者の給與等に關する件」(厚發勞 第36號).
- 勞働省勞働基準局長, 都道府縣勞働基準局長宛, 1947. 12. 1, 「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金について」(基發 418號).
- 勞働省給與課長, 都道府縣勞働基準局長宛, 1948. 3. 30, 「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金について」(本給發 35號).
- 勞働省勞働基準局長, 都道府縣勞働基準局長宛, 1950. 10. 6, 「歸國朝鮮人に對する未拂賃金債務等に關する調査について」(基發 917號).
- 勞働省勞働基準局給與課, 1953. 7. 20, 「歸國朝鮮人勞務者に對する未拂賃金債務等に關する調査集計」.
- 引揚援護院援護局業務課長發, 各都道府縣教育民生部長宛, 1946. 4. 25, 「非日本人ノ送還ニ關スル件」(發業 第179號).
- 「朝鮮人の在日資産調査報告書綴」(分類: 厚生勞働省 2009年度, 排架番號: つくば書庫6/ 6-91/ 1738).
- 「朝鮮人に對する賃金未拂債務調査」(分類: 大藏省 2000年度, 排架番號: つくば書庫5/ 5-53/ 3451).
- 『佐賀新聞』1945年 9月 15日.
- 『新潟日報』1945年 9月 14日.
- 『山形新聞』1945年 9月 14日.
- Augustine, Matthew R., 2011(Summer), Restitution for Reconciliation: The US, Japan, and the Unpaid Assets of Asian Forced Mobilization Victim,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ume 8, Number 1.
- Edward W. Wagner, 1989,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 1904年-1950年(復刻版)』, 龍溪書舎.
- Gane, William J., 1951, *Foreign Affairs of South Korea, August 1945 to August 1950*, Northwester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SCAPIN-44, AG 091.3. ESS, 1945. 9. 22, Control over Exports and Imports of Gold, Silver, Securities and Financial Instruments.
- SCAPIN-127, AG 091.31. ESS, 1945. 10. 12, Supplemental Instructions Relating to Import and Export Control.
- SCAPIN-142, AG 370.05. GC, 1945. 10. 15, Reception Centers in Japan for

## Processing Repatriates,

SCAPIN-532, AG 091,714. ESS/FI, 1946. 1. 2, Supplemental Instructions  
Relating to Import and Export Control.

SCAPIN-746, AG 053. GC. 1946. 2. 17, Registration of Koreans, Chinese,  
Ryukyuan and Formosans.

SCAPIN-822, AG 370.05. GC, 1946. 3. 16, Repatriation. Annex 6.

SCAPIN-822/1, AG 370.05. GC, 1946. 3. 27, Repatriation.

SCAPIN-927, AG 370.05. GC, 1946. 5. 7, Repatriation. Annex 6.

SCAPIN-927/6, AG 370.05. GC, 1946. 7. 20, Repatriation. Annex 6.

GHQ/SCAP RECORDS, G3-0004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국문 초록]

##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최영호

이 논문은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한정해, 해방 직후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이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에 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조련 중앙본부는 일찍부터 제일 조선인 재산을 접수하고 노무자 미수금 예탁을 위한 단체교섭 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련 지방조직은 조선인 노무자가 아직 대거 귀환하지 않고 사업장 주변에 남아 있던 시기에 단체교섭을 주도하며 미수금 예탁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본 패전부터 1945년 12월까지의 조련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체교섭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듬해에 들어서는 점차 조선인 노무자들이 사업장을 떠나면서 점차 단체교섭이 어려워져 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을 통해 조련 중앙본부나 이와테현·도치기현·아키타현 지방조직의 미수금 예탁 과정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조련 초기의 조직과 활동 가운데 미수금 문제에 관한 일부 사례를 연구한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조련이 결성 초기에 거두어들인 예탁금의 향방을 규명하는 일도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로 귀환한 노무자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예탁금이 실제로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화폐 교환이 금지되어 있었고 한반도에서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예탁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조련이 획득한 예탁금은 대체로 귀환자 송출에 필요한 비용이나 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 국문 주제어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재일본조선인연맹, 귀환, 제3자 인도, 공탁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 Chongryon's Repatriation Activities for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in Japan

Choi Youngho

This paper clarifies how Chongryon(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involved organizationally with the unpaid wages from Japanese companies to Korean laborers mobilized to Japan, and, in particular, to coal mines during World War II. The General Headquarters(GHQ) of the Allied Powers occupying Japan sustained the poli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repatriation of and reparations to Korean laborers in Japan. However, the GHQ never recognized Chongryon as representing the Korean workers and overseeing their unpaid wages.

Chongryon had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Japanese entrepreneurs regarding the guidelines for the Korean workers. Japan revealed in reports to the third General Meeting that the government had received the results of reparation in 340 items, for 43,314 workers, for a total of 26,876,844 yen until October 1946. But the Japanese government, similar to the GHQ, never approved officially Chongryon as the legal representative in the compensation of Korean workers.

### Keywords

Korean laborers, unpaid money, Choryun, repatriation, transfer to third party, deposits

#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sup>1)</sup>

정혜경<sup>2)</sup> | 대일항쟁기위원회 조사 1과장



## I. 머리말

대일 과거청산 작업에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포함된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당시나 이후 1974~1975년에 있었던 보상(대일민간청구권에 의거)에서도 두 피해가 모두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물적 피해는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비롯해 저금이나 공채 등 다양하다.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미불금은 일본 패전 직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공탁한 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의 지급 책임과 관련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방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심사 과정을 통해 세심하게 오류를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사의를 표한다.

2)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 1과장. 한국근대사 전공.

제정해 2008년부터 일정한 비율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과 관련한 자료는 현재 3건으로 알려져 있다. 3건의 자료는 모두 일본 정부가 작성한 것이지만, 수록 내용과 성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수록 형태를 보면, 2건은 개인명부가 수록되지 않은 자료(조사표, 총괄표)이고, 1건(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자료)은 개인 명부가 첨부된 자료이다. 수록 내용 자체도 자료 3건이 동원작업장 현황에서 각기 차이를 보이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3건 가운데 2건은 자료 전체가 일본과 한국에서도 공개되어 연구가 가능하고, 1건(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자료)은 자료 개요만이 공개되었다. 연구가 가능한 2건은 모두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킹(小林久公, 김경남)가 일본 공문서관에서 수집했다. 이 가운데 1건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킹 사무국장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가 파일로 공개했고, 다른 1건은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의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gangje>)에 원문이 게시되어 있다.<sup>3)</sup>

그러나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2건의 자료 발굴에 참여한 고바야시 히사토모가 한국에서 발표한 글에 간략히 1건(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표)의 현황을 소개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제시한 통계에 대한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지면 자체가 일반 독자가 아닌 회원으로 국한한 발간물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sup>4)</sup>

이와 같이 2건의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관련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었음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다. 2건의 자료는 일본 공문서관 검색 사이트

3) 연구회는 자료 입수 직후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2010년 10월 10일)을 개최해 간략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자료 제공자인 고바야시 히사토모 사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4) 고바야시 히사토모, 201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 『역사와 책 읽』 창간호. 특히 이 글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을 주제로 삼았으나, 분석 대상으로 제시한 각종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조선인 전체’의 미수금이 포함될 것이다.

(<http://www.digital.archives.go.jp>)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은 총 20건의 파일로 구성된 문서철이고,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賃金未拂債務調)」는 4건의 파일로 구성된 문서철이다. 그러나 고바야시 히사토모가 공개한 자료에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은 20건의 파일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는 4건의 파일 가운데 3건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 자료(1건으로 추정)는 이 문서철에 편철되지 않은 성격 미상의 잡철이다.<sup>5)</sup>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여러 문서의 내용을 합한 결과이다.<sup>6)</sup> 또한 4건 가운데 2건의 자료는 모두 자료 수집자의 편의에 따라 순서가 혼재되어 있다.

그간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학계에서는 환영받는 자료가 아니었다. 이미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를 포함한 명부 자료 전반에 대해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자료도 명부자료 분석 방법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실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3년 7월 말 현재 공개된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 3건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상세히 제시하고, 한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확정한 일본지역 강제동원 작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해 2010년 4월 일본 정부가 제공한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학계가 사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작성했다. 조선인 미수금 자료 가운데, 공탁금으로 한정해 논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sup>7)</sup>

5) 고바야시 히사토모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이메일을 통해 공개한 ‘조선인 미불금 실태와 공탁 경과’에 의하면,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賃金未拂債務調)’는 2008년 11월에 열람했고, 4건의 파일을 모두 수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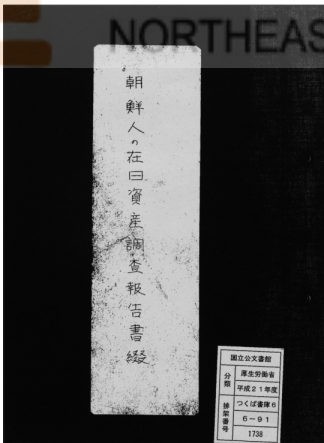
6) 일본공문서관 사이트에서는 목록만 확인할 수 있고, 자료는 분관(築波)에서 열람, 복사할 수 있다.

7) 미불금은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미수금은 채권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 II.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총 684쪽. 노동후생성 Series)에는 모두 20건의 자료가 편철되어 있는데, 자료의 성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의 총 405쪽(표지 포함 407쪽)은 문서명이 전보안(電報案)으로 되어 있는데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한 36개 도도부현별로 조사해 노동성 기준 국 급여과장 앞으로 보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각 도도부현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 공문<sup>8)</sup>과 전보)이고, 나머지 279쪽 분량은 <표 1> 2~20번 문서로 1945년 패전 이후 조선인의 미불임금채무 등에 대한 조사와 공탁에 관한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 및 각 도도부현 간의 공문서이다.



<그림 1> 문서철 표지

이 가운데 이 글의 분석 대상은 1번에 해당하는 전보안에 수록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회'(이하 '미불금조사결과'로 약칭)이다.

<표 1>의 문서를 통해 공탁의 배경 및 제3자에게 인도한 배경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문서에는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의 문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즉 16번 문서(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金について)

공탁금은 미불금 가운데 일본 정부에 공탁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정부에 공탁한 공탁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8) 공문 제목은 지역에 따라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회'에 대해 나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회' 등 차이가 있다.

〈표 1〉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 문서철 구성

순서	문서명	작성부局	작성일	공개 여부
1	電報案	勞働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5年 11月 17日	공개
2	朝鮮人其他の外国人勞務者の給与等に関する件	厚生省勞政局給与課	昭和 21年 6月 17日	공개
3	朝鮮人、台湾人及び中国人勞務者の給与等に関する件	厚生省勞政局給与課	昭和 21年 6月 21日	공개
4	朝鮮人、台湾人及び中国人勞務者の給与等に関する件	厚生省勞政局給与課	昭和 21年 7月 3日	공개
5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払金等の供託に関する件	厚生省勞政局給与課	昭和 21年 7月 31日	공개
6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払金その他に関する件	厚生省勞政局給与課	昭和 21年 10月 12日	공개
7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交付預金通帳の供託に関する件	厚生省勞政局給与課	昭和 21年 12月 2日	공개
8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払金その他について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5月 22日	공개
9	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金その他に関する件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5月 27日	공개
10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払金その他に関する件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6月 3日	공개
11	朝鮮人勞務者の給与等について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6月 13日	공개
12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返還郵便貯金通帳に関する件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7月 3日	공개
13	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金その他に関する件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7月 10日	공개
14	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金その他について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7月 11日	공개
15	電報案	厚生省勞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12月 9日	공개

순서	문서명	작성부局	작성일	공개여부
16	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金について	厚生省労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3年 5月 12日	공개
17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払金について	厚生省労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12月 1日	공개
18	帰国朝鮮人に対する未払賃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	厚生省労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5年 10月 6日	공개
19	朝鮮人勞務者の事業主に対する不当要求に関する件	厚生省労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2年 12月 15日	공개
20	朝鮮人勞務者等に対する未払金について	厚生省労働基準局給与課	昭和 23年 1月 27日	공개

에는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의 4번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이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에 비해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라 판단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_ 「미불금조사결과」 생산 배경<sup>9)</sup>

〈표 1〉의 2번부터 20번까지 문서를 통해 자료가 생산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후, 일본의 각 지역과 작업장에서 재일본조선인연맹 등이 중심이 되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임금 및 채무 등의 지불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기업과 작업장은 개별적으로 미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1946년 이후 일본건설공업통제조합을 비롯한 사업자단체 등이 개별적

9)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작성 기자회견문(대한변호사협회 공동, 2010년 10월 10일) 중 오일환 작성 내용. 공탁 과정 전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의,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과정과 그 특징」 참조.

미불임금 등의 지급을 전면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10월 GHQ는 이러한 혼란을 예상하고 일본 정부에 「일본 탄광에 고용된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저축 및 수당 지불」이라는 각서를 통해, 미불금의 내역을 조사·지불·보고하고 미불금을 일본은행에 예탁할 것 등을 지시했다. GHQ의 지시와 사업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일본 후생성은 1946년 6월 각 도도부현에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1946년 8월 27일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民事甲 제516호) 통달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귀국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을 기존의 민법에서 정한 공탁 절차(및 통달상의 특례)에 따라 공탁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노동성·대장성·법무성 등 각 성청은 조선인에 대한 채무 사항을 점검, 조사하는 한편 기존의 민법에 의한 일반적 공탁 절차만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채무 내역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적 조치로 1950년 2월 28일 「국의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 특례에 관한 정령」(政令 제22호)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정령 제22호에 따른 실제 공탁은 1951년 5월부터 본격화되는데, 그 이전인 1950년 8월과 9월 정령 제22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일본 대장성·노동성·법무성은 공탁에 필요한 기초 조사와 공탁 절차 등을 마련해야 했다.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실시의 필요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50년 2월에 제정된 정령 제22호의 실제 공탁 절차를 준비하고 동년 8월과 9월에 정령 제22호가 개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주무부서인 노동성이 각 도도부현에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는 정령 제22호가 개정된 직후인 10월 6일,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각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장에게 내려 보낸 통첩(基發 제917호)에 따라 각 도도부현별로 조사해 11월경에 보고한 내용이다.

노동성은 통첩(基發 제917호)을 통해, 정령 22호에 따라 주무부서 대신인 노동대신이 발포할 명령(勞働省令)을 준비할 목적으로 각 도도부현이 보관하고 있는, 1946년 후생성 노정국 급여과가 조사를 지시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①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가 있는 채무자명 및 소재지(채무자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할 것), ② 채무자별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정령 제22호의 실시에 앞서 실제 공탁 절차에 관한 노동성령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로, 1946년 이후 민법상의 공탁 내역뿐만 아니라 이후 미공탁 채무 및 제3자 인도분과 채무자, 즉 작업장(사업장) 등의 현황도 동시에 파악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 2. 「미불금조사결과」의 수록 내용<sup>10)</sup>

「미불금조사결과」에는 노동성 기준국 급여과가 통첩(基發 제917호)을 통해 각 도도부현 노동기준국 급여과장에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한 조사양식 ‘채무자별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이 제시되어 있다. ‘채무자별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은 채무자 관련 사항(채무자명, 채무자 소재지, 비고), 채무 관련 사항(채무의 종류, 채무액, 채권자 수, 공탁국명, 공탁 연월일, 적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문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도도부현이 보고한 조사결과는 지역에 따라 기재 형식과 항목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미불금조사결과」 중 기업 소재지가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도도부현별 현

10) 이 자료 가운데 407쪽에 달하는 「미불금조사결과」는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심재욱 박사가 입력한 엑셀 파일이다. 상세한 내역을 모두 입력해 연구회에 제공한 심재욱 박사에게 지면을 빌려 謝意를 표한다.

債券名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列子銀行株式會社國債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小田子銀行株式會社國債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列子銀行株式會社國債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小田子銀行株式會社國債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日本製鐵株式會社國債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日本製鐵株式會社國債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債券名 計 債券種類 債券金額 債券償還 債券發行 債券所在地 債券備考



〈표 2〉 일본 지역별 현황

번호	都道府縣	건수	번호	都道府縣	건수
1	福岡縣	61	19	新潟縣	6
2	山口縣	46	20	島根縣	5
3	兵庫縣	44	21	石川縣	5
4	大阪府	41	22	滋賀縣	5
5	愛知縣	24	23	静岡縣	5
6	長崎縣	23	24	秋田縣	5
7	北海道	21	25	和歌山縣	5
8	富山縣	19	26	宮崎縣	4
9	廣島縣	18	27	山形縣	4
10	佐賀縣	14	28	三重縣	4
11	東京都	11	29	岩手縣	3
12	神奈川縣	10	30	愛媛縣	3
13	茨城縣	10	31	高知縣	2
14	長野縣	10	32	熊本縣	2
15	岡山縣	9	33	宮城縣	1
16	大分縣	8	34	埼玉縣	1
17	岐阜縣	7	35	福井縣	1
18	福島縣	6	36	檜木縣	1

황을 보면, 36개 도도부현(444건)이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는 지역은 후쿠오카현이다.

「미불금조사결과」 총 407쪽에 수록된 채무내역을 보면 공탁과 미공탁, 제 3자 인도분으로 구분되어 있다.<sup>11)</sup>

11) 기재 내용에는 오기와 훼손으로 불명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공탁금 자료를 통해 수정했다.

〈표 3〉 채무 내역<sup>12)</sup>

구분	조선인 채권자 (단위: 건)		금액 (단위: 엔)		기업별/직업장 (단위: 개소)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공탁분	7만 9607	59.25%	1251만 5464.46	44.86%	164/232
미공탁분	3만 7184	27.7%	393만 5532.81	14.1%	206/239
제3자인도분	1만 5905	11.83%	1142만 5902.69	40.96%	50/59
소계	13만 4353 <sup>13)</sup>		2789만 3375.50 <sup>14)</sup>		333/448 <sup>15)</sup>

이것들을 합산(훼손분 복구)한 채권자(13만 3402건) · 금액(2787만 6899.96엔)과 위 표의 총수는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자료 자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04쪽의 미야자키[宮崎] 노동기준감독서(勞動基準監督署) 미공탁분에 기재된 항목별 내용을 보면, ‘미공탁분 1명, 미공탁금 17만 8080.00엔’이다. 그러나 집계란에는 ‘103명, 18만 7690.83엔’이라 기재되어 있다.

채무내역에서 특이한 점은 채권자와 금액 비율이다. 공탁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미공탁분과 제3자 인도분은 차이가 크다. 특히 제3자 인도분은 채권자 비율이 11.83%로 가장 적지만 금액은 40.96%로 공탁분에 버금갈 정도로 차이가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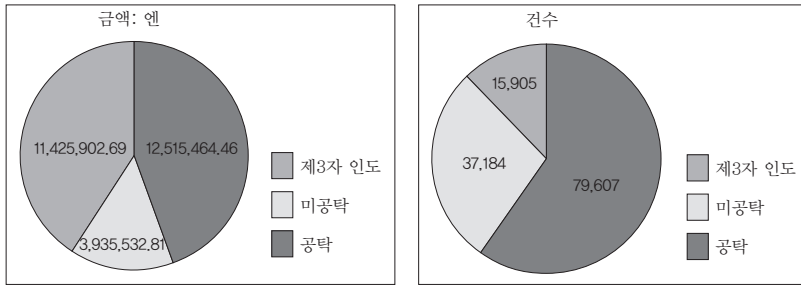
이 글 부록에 수록한 「미불금조사결과」 수록 기업별 현황’을 보면 일본통운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미쓰비시[三菱]나 스미토모[住友], 미쓰이[三井] 등 대재벌 소속 기업들은 매우 저조하다. 이 점은 3건의 공탁금 자료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12) 훼손분을 추가하고 오류를 수정한 수치.

13) 3건의 합산은 13만 3,402건.

14) 3건의 합산은 2,787만 6,899.96엔.

15) 공탁자(직업장 포함)는 공탁, 미공탁, 제3자 인도분이 중복되므로, 3건을 합산하면 420/530이다.



대기업의 공탁률이 저조한 데는 기업 자체의 공탁 의지가 약한 점도 있지만 사용한 조선인의 다수가 국민징용으로 동원되었다는 점도 있다. 국민징용령에 의한 피징용자(응징사 등)에 대한 급여 및 원호금 지불의 의무는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 Ⅲ.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

이 자료는 표지에 '노동성 조사 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표'라 기재되어 있는데, 일본 공문서관 검색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문서철명은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대장성 시리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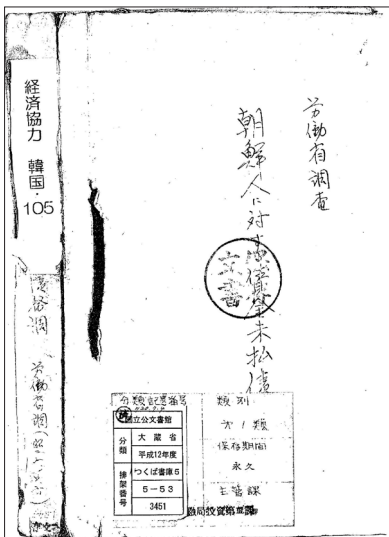
일본 공문서관에서 확인되는 4건의 문서 파일 가운데 현재 공개가 확인된 것은 2번을 제외한 3건이다. 자료를 공개한 고바야시 히사토모는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의 첫 번째 문서철(婦国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賃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集計)과 3번, 4번 문서철 사이 및 뒷부분에 '성격 미상의 다양한 메모와 문서(record)<sup>16)</sup>를 불규칙적으로 삽입해

16)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SCAP)와 한국 외교부 사절단, 경제성 간의 공문서 영문과 일역본 등.

자료의 원질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성격 미상의 다양한 메모와 문서’는 <표 4>의 2번 문서인 ‘司令部への報告に対する外務省への報告と吾が方調査との相違点調’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문서류에만 기재한 면수의 순서가 혼

<표 4>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賃金未拂債務調’ 문서철 구성

순서	문서명	작성부서	작성일	공개 여부	수집 여부
1	帰国朝鮮人労働者に対する未払賃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集計	国際金融局	昭和 25年 10月 6日	공개	수집
2	司令部への報告に対する外務省への報告と吾が方調査との相違点調	国際金融局	昭和 28年 6月 26日	공개	미상
3	本計数は労働省が吾が方を經由して司令部へ報告せるものと吾が方の調査によるものとの……	国際金融局	昭和 28年 7月 7日	공개	수집
4	朝鮮人の在日本財産について	国際金融局	昭和 28年 6月 18日	공개	수집



項目	金額	備考
未拂賃金	14	
労働者調査	14	
財産調査	27	
合計	41	

재되어 있어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외 간헐적으로 면수가 기재된 부분도 있으나, 위치로 볼 때 이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특징적인 점은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가 대장성 시리즈에 편철되어 있고, 작성부서가 국제금융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층의 하부 키워드는 ‘연합국재산·전후배상재외재산 등 관계’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자료의 1번 문서철(帰国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賃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集計)에 수록된 파일의 생산부서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과 동일하다.<sup>17)</sup> 이는 문서 용도에 따른 분류 차이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4번 문서(朝鮮人の在日本財産について)는 앞에서 분석한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 16번 문서철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잡철 가운데 고바야시 히사토모가 조선인 노무자 공탁 자료로 높이 평가하는 자료는 帰国朝鮮人勞務者に対する未払賃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集計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공탁명세서나 부속서류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집계표이고, 면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생산 배경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이하 「임금미불채무조」로 약칭)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에 비해 자료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다.

「임금미불채무조」에는 공탁분과 미공탁분, 제3자 인도분 등 3종 일람표, 조사집계표(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집계, 1950. 10. 6), 총괄표(1953. 7. 20) 등 3종이 85쪽(백면 포함, 백면 제외 76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임금미불채무조」에는 38개 도도부현의 미불내역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다.

- 공탁: 32개 도도부현(220개 작업장, 511건)
- 미공탁: 32개 도도부현(253개 작업장, 352건)
- 제3자 인도분: 23개 도도부현(49개 기업, 59건)

17)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의 계층 하부 키워드는 ‘노동기준국 관계’다.

고바야시는 「임금미불채무조」를 「조선인의 재일자산철」과 동일한 자료로 파악했다.<sup>18)</sup> 또한 이를 토대로 공탁분 8만 279건(1000만 5537.70엔), 미공탁분 5만 1947건(435만 4870.75엔), 제3자 인도분 1만 7361건(296만 3878.19엔) 등 합계 14만 9587건(1732만 4286.64엔)이라 제시했다.<sup>19)</sup> 필자가 정산한 수치도 14만 9588건, 1732만 4286.64엔으로 인원 수에서 1건의 차이를 제외하면, 고바야시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바야시가 동일한 자료라 파악하는 두 자료(「임금미불채무조」와 「조선인의 재일자산철」)는 일치하는 자료가 아니다. 「임금미불채무조」는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자 등에 관한 조사 집계. 1950. 10. 6), 총괄표(1953. 7. 20)’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공문서나 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생산 배경을 알 수 없다.

이 가운데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자 등에 관한 조사 집계. 1950. 10. 6)’는 생산 시기 자체가 「조선인의 재일자산철」에 앞서는 자료이다. 이를 볼 때,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 집계. 1950. 10. 6)’는 노동성 노무기준국 급여과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통계일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성의 통첩(基發 제917호)은, 1946년 후생성 노동국 급여과가 조사를 지시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채무자별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채무의 종류 및 채무액’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이다. 그러므로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 집계. 1950. 10. 6)’는 1946년도판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노동성 노무기준급여과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통계로 판단된다.<sup>20)</sup>

18) 이 글에서 분석하고 있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고바야시 히사토모, 201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 『역사와 책임』 창간호, 191쪽.

20) 1946년도판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관련 자료는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1)	
供託分	
80,209	10,005,537.00
	<del>10,005,537.00</del>

(2)	
未供託分	
51,949	4,372,626.89
	<del>4,372,626.89</del>

宮崎	谷口盛彦	西村 正三	1	429	00	21,112.7
1	仁永田卯助	別所手吉	31	1220	00	21,122.7
1	4	渡邊手吉	67	2,280	00	21,122.7
1	4	現金	2	23	33	
1	計		101	9,462	33	
供託分 総計				20,280	10,005,537.00	66
				80,209	10,005,537.00	

1992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조선인 노무자 조사결과」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두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연구 성과에 따르면 「조선인 노무자 조사결과」(16개 도도부현 명부)는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에 관한 자료」의 일부로 추정된다. 金英達, 2003, 『金英達著作集2-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102~118쪽.

有明社北邊造船所	"	5	465.21	
川南工業(株)	"	24	1,080.65	
"	有價証券		67.50	
	計	1899	2,548.06	2,548.06
大分 日通(株)柳川支店	現金	1	28.20	
三豐實物(株)	市民貯金	28	835.51	
(株)神戶製鋼所 中津工場	預貯金	3	240.00	
	計	32	1,103.73	
官崎 正平 兼徳	特別貯蓄金	1	58.50	
宿務労働基準局留置	建設補償金	1	177,080.00	受託者不明調査中
	薪俸料			
	計	2	178,138.50	
	支給合計	6,747	4,022,427.92	

基金第917號 (附2F.10.6)

保回朝鮮人労働者に対する米并賃金  
債務等に関する調査集計

内訳

1. 供給分	80,277	1,071,266.00
2. 未供給分	41,947	432,246.89
3. 不明分	17,361	203,878.19
總計	149,585	1,707,3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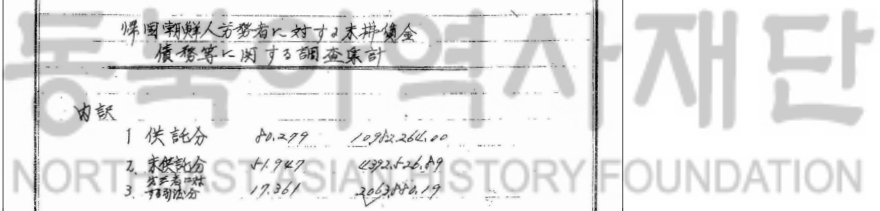
宿務労働基準局給与課 (附2F.10.20)

基金第917號 (附2F.10.6)

保回朝鮮人労働者に対する米并賃金  
債務等に関する調査集計

内訳

1. 供給分	80,277	1,071,266.00
2. 未供給分	41,947	432,246.89
3. 不明分	17,361	203,878.19
總計	149,585	1,707,391.08



또한 「임금미불채무조」 가운데 ‘총괄표(1953. 7. 20)’는 생산 시기가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집계, 1950. 10. 6)’와 3년 이상 차이를 보인다. 「조선인의 재일자산철」 작성 이후에 생산된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철」 수록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자 등에 관한 조사집계, 1950. 10. 6)’가 「조선인의 재일자산철」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라면, ‘총괄표(1953. 7. 20)’는 노동성 노무기준급여과가 여러 자료를 수합한 총괄표라고 판단된다.

즉 「임금미불채무조」는 성격이 각기 다른 2건의 문서로 구성된 자료이며, 「조선인의 재일자산철」과 동일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두 자료(「조선인의 재일자산철」과 「임금미불채무조」)는 통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자료별 수록 통계의 현황은 <부록 1> 참조).

「임금미불채무조」에 수록된 인원과 금액 문제를 살펴보자. 이 자료에는 모두 4종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통계마다 추기(追記)와 오류가 있어 항목별 소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숫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같은 자료 안에 수록된 각기 다른 수치는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4종의 자료가 담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바야시 통계 ①은 「임금미불채무조」 공탁분과 미공탁분, 제3자 인도분 총괄표의 각 표지에 수록된 수치 ②와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 총괄표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공탁분 총괄표 말미 ③에 기재한 ‘공탁분 총계’(8만 280건, 1000만 5537.67엔)와 ‘미공탁분 총계’(5만 1947건, 440만 2527.72엔), ‘제3자 인도분 총계’(1만 7361건, 296만 3880.19엔)에는 각기 다른 수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④ 기발(基發) 제917호(昭和 25. 10. 6)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집계’(편의상 A)에는 또 다른 통계(공탁분 8만 279건, 1098만 2264.00엔/미공탁분 5만 1947건, 439만 2526.89엔/제3자 인도분 1만 7361건, 206만 3880.19엔/총계 14만 9587건, 1743만 8671.08엔)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기발(基發) 제917호(昭和 25. 10. 6)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

歸化朝鮮人に対する未払總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 (総括表)  
(2F. 7. 20)

郡別	供託分		未供託分		計	
	債権者数	債務額	債権者数	債務額	債権者数	債務額
(1) 北海道	3,008	1,246,522.00	624	92,653.63		
(2) 青森		① 1,324,555.05				
(3) 岩手	2,017	283,790.57	946	21,704.87		
(4) 宮城			417	5,623.64	643	53,159.17
(5) 秋田	298	28,582.11	10	187.61		
(6) 山形	230	18,596.68	342	5,076.77	466	22,562.36
(7) 福島	2,840	① 1,898,770.98	1,250	120,662.39		
(8) 茨城	2,278	452,261.26	5,267	225,922.86	221	92,824.40
(9) 栃木	4	2,312.25			2,751	495,212.72
(10) 群馬						
(11) 埼玉	38	1,670.00				
(12) 千葉						
(13) 東京	80	8,220.80	90	① 4,113.78	258	56,189.83
(14) 神奈川	535	62,671.22	72	2,721.12	1,926	232,759.55
(15) 新潟	1,614	251,059.65	8	27,012.10	1	87.69
(16) 富山	263	253,561.86	205	24,369.32		
(17) 石川	127	1,026.08			141	68,127.00
(18) 福井						
(19) 岐阜	102	11,336.70	215	21,759.32	921	21,376.28
(20) 愛知	616	15,419.89	77	2,266.76	1,857	37,956.26
(21) 三重			33	2,765.88	1,689	289,520.84
(22) 滋賀						
(23) 京都						
(24) 大阪						
(25) 兵庫						
(26) 奈良						
(27) 和歌山	825	13,971.20	163	2,986.78		
(28) 鳥取			30	338.21		
(29) 徳島	11	254.88	188	10,169.23	181	18,042.99
(30) 香川			192	10,585.66	39	2,330.26
(31) 岡山	124	2,167.26				
(32) 広島	2,918	227,942.81	465	21,932.61	100	5,166.96
(33) 山口	2,224	88,667.48	4,926	721,878.99	120	① 2,388.19
(34) 徳島						
(35) 香川						
(36) 愛媛	4	24,973	34	227.20	2,026	105,701.90
(37) 高松			43	760.68		
(38) 岡山	2,381	2,626,161.69	7,910	4,727,209.82	26	4,993.88
(39) 広島	15,758	1,068,985.22	5,872	① 356,688.87		
(40) 山口	6,877	2,220,742.22	1,897	328,882.17	760	130,456.52
(41) 徳島	176	22,160.17				
(42) 香川	75	2,366.64	321	1,102.72	697	75,190.72
(43) 高松	101	9,652.32	2	198,738.50		
(44) 岡山						
計	80,299	10,982,266.00	51,969	8,392,526.87	17,261	2,053,892.19
備考		4,055,537.70	5,713	4,358,870.75		2,763,872.17
				500 計	149,697	17,438,671.08
						17,302,286.64

財団法人朝鮮労働者福祉基金

불입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집계(편의상 B)는 1건이 아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동일한 번호와 제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기재된 숫자가 다르다(공탁분 8만 280건, 1000만 5537.70엔/미공탁분 5만 1947건, 435만 4870.75엔/제3자 인도분 1만 7361건, 296만 3878.19엔/ 총계 14만 9587건, 1732만 4286.64엔). B는 A의 숫자에 줄을 긋고 위와 아래에 각각 수정을 한 것이다.

A와 B는 쇼와[昭和] 25년 10월 6일자 작성문서인데, 하단에 ‘노동성 노무기준국 급여과(昭和 28. 7. 20)’와 ‘노동성 노무기준국 급여과(昭和 28. 8. 20)’가 각각 기재되어 있어 1953년 7월 20일 또는 8월 20일에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A에 기재된 ‘노동성 노무기준국 급여과(昭和 28. 7. 20)’에 8. 20 표시를 하고 ‘7. 20’을 기재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A와 B에 각기 다른 작성일이 기재된 ‘노동성 노무기준국 급여과’ 자료는 B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 편철되어 있다. 문서 상단에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입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총괄표)’라 기재되어 있다. 앞에서 소개한 ‘총괄표(1953. 7. 20)’이다. 이를 편의상 C라 지칭하겠다. C는 도도부현별 집계표인데, 하단의 ‘계(計)’와 ‘비고(備考)’에 각기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항목별로 도도부현별 통계를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오기(誤記)도 나타나고 있다.<sup>21)</sup>

이와 같이 총 85쪽 분량의 자료에는 크게 4종류의 다른 수치가 수록되어 있어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4종류의 수치 가운데 정확한 통계를 채택하기 위해 항목별로 정산(精算)해보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오므로 5종이 된다. 5종의 수치를 비교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임금미불채무조」의 통계를 만들어보면,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①과 ②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②와 ③을 보면, ②는 주로 ④-B를 근거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④의 A와 B는 각각 C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A가 C의 수치 가운데 ‘計’를 채택했다면, B는 C의 수치에서 ‘비고’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21) 공탁분 항목에서 福島縣 합산은 2,841건인데, 2,840건으로 誤記.

〈표 5〉 「임금미불채무조」 수록 통계

항목	① 小林久公	② 항목별 표지	③ 항목별 합산표	④ 基發제917호(昭和 25. 10. 6)			⑤ 정산	⑥ 채택
				A	B	C		
공탁분	8만 279건/ 1000만 5537.70엔	8만 279건/ 1000만 5537.70엔	8만 280건/ 1000만 5537.67엔	8만 279건/ 1098만 2264.00엔	8만 280건/ 1000만 5537.70엔	8만 279건/ 1098만 2264.00엔 [備考1000 만 5537.70 엔]	竹内康人 入力 8만 284건/ 1000만 5533.38엔	8만 280건/ 1000만 5537.70엔
미공탁분	5만 1947건/ 435만 4870.75엔	5만 1947건/ 435만 4870.75엔	5만 1947건/ 440만 2517.72엔	5만 1947건/ 439만 2526.89엔	5만 1947건/ 435만 4870.75엔	5만 1947건/ 439만 2526.89엔 [備考 5만 1913건/ 435만 4870.75엔]	竹内康人 入力 5만 1813건/ 435만 4870.75엔	5만 1947건/ 435만 4870.75엔
제3자인도분	1만 7361건/ 296만 3878.19엔	1만 7361건/ 296만 3878.19엔	1만 7361건/ 296만 3880.19엔	1만 7361건/ 206만 3880.19엔	1만 7361건/ 296만 3878.19엔	1만 7361건/ 296만 3880.19엔 [備考296만 3878.19]	합산 1만 7361건/ 296만 3878.19엔/ 296만 3876.19엔 <sup>22)</sup>	1만 7361건/ 296만 3878.19엔
소계	14만 9587건/ 1732만 4286.64엔	14만 9587 건/ 1732만 4286.64엔		14만 9587 건/ 1743만 8671.08엔	14만 9587 건/ 1732만 4286.64엔	14만 9587 건/ 1743만 8671.08 엔[1732만 4206.64엔]		14만 9588 건/ 1732만 4286.64엔

\*  :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통계와 동일한 통계.

\*  : 채택 근거가 되는 통계.

22) 山口縣 上沖탄광 87건의 제3자 인도분에 기재된 숫자가 2,546.87엔과 2,548.87

## IV. 한국 정부 소장 노무자 공탁금 기록<sup>23)</sup>

### 1\_ 한국 정부의 자료 입수 과정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입수 과정을 보면, 위원회의 자료 입수를 위한 노력은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되어 양국 협의체 회의 및 공문을 통한 일관된 자료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바뀐 이후에 성사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었다.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4. 1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2004. 12	•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 문제를 제기, 고이즈미 총리의 협조 검토 답변
2005. 2	•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일 정부 간 협의회 발족 • 2010년 10월 현재 국장급 수석대표자회의 6회, 과장급 팀장급 실무협의 10회 개최(대표, 위원회 사무국장 vs. 외무성 심의관)
2005. 5. 25	• 제1차 한일유골문제협의회 수석대표회의 개최. - 공탁금 및 후생연금 명부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안
2005. 6. 16/9. 16	• 위원회, 자료 요구 관련 공문 발송 2회: (문서번호 조사1과-369), (문서번호 조사총괄과-467)
2005. 11. 28	• 위원회, 제3차 한일유골문제협의회 수석대표회의에서 관련자료 제공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 - 서울, 외교통상부 17층 회의실
2007. 12	• 우리측, 일본 정부로부터 군인·군속 공탁금 관련(11만 건) 자료 인수
2008. 6. 13	• 군인·군속 공탁금 관련 분석 완료, 결과보고(문서번호 조사1과-3392)
2009. 11. 5	• 한일유골문제협의회 팀장급 회의에서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부분 일제 2010년 3월까지 제공에 합의'

엔 등 2건이므로, 이를 각기 대입한 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23) 한국 정부(위원회)가 소장, 활용하고 있는 노무자 공탁금 기록은 미공개 자료이고 연구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언론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에 의거한 내용이다.

2010. 1. 8	• 공탁금 부분 획득 대비 T/F 구성(문서번호 조사 2과-111) 및 가동
2010. 4. 5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 등 위원회, 공탁금 부분 인수(3. 26. 기자회견/4. 6. 공탁금 부분 출력 및 현황표 작성 작업 개시)
2010. 4. 15	• 위원회, 노무자 공탁금 명부 분석 및 DB화 작업추진 계획 수립
2010. 6. 4~10. 12	• 분석 T/F, 명부 분석 및 현황표 수정 작업 완료

## 2. 구성 체계<sup>24)</sup>

먼저 수록 내용의 외형적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규모 및 수량: DVD 3장(5.73GB)

수록 규모: 이미지 폴더 24개 + jpg 파일 2개(공탁소 코드표, 목록)

- DVD 001: 도쿄 법무국 보관분, 이미지 폴더 1개, 597MB
- DVD 002: 요코하마~사가국 보관분, 이미지 폴더 13개, 3.70GB

〈표 6〉 수록 건수 및 군인·군무원 중복 건수 내역

구분	세부 내용	건수	금액	입수 시기
A. 군인·군속 공탁금		11만 5076	9178만 4200엔	2007년 12월
B. 노무자 등 공탁서	최초 일본 측 제시 내용	17만 3213	2억 7800만 엔	2010년 3월 26일
	일본 측 수정 내용	-	1억 2800만 엔 *1억 2661만 1925.18엔	2010년 6월 30일
	군인·군속 중복분(A)	10만 8934 (62.9%)	9144만 1311.38엔 (72.2%)	
	나머지 노무자 등	6만 4279 (37.1%)	3517만 613.80엔 (27.8%)	

\* 실제 조선인 해당 금액(※ 위 금액은 공탁서에 기재된 액수의 합산임)

24) 이 내용은 노무자 공탁금 자료분석 결과보고(2010년 11월 19일자)를 토대로 통계 수치 등을 수정한 것이다. 노무자 공탁금 자료분석 결과보고서는 당시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했다.

· DVD 003: 나가사키~다카마쓰국 보관분, 이미지 폴더 10개, 1.44GB

수록 규모에 대한 통계를 보면, 총 215개 파일에 공탁서 1318건, 공탁금액 1억 2800만 엔, 공탁내역 17만 5000건(군인·군무원 중복 10만 8921건 포함)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부 일본인·중국인 등 외국인과 섞인 경우, 이미지 판독 불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는 총 148종의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법

〈표 7〉 공탁내역 분석

조선인 노무자 공탁자료 중 공탁 내역(총 148종)	근거	구분	일본 정부가 공적으로 부여한 처우 내역
급료, 급료 기타 정산, 급여, 노무미불입금, 미불금, 미불공입, 미불급료, 미불급여, 본급, 임금, 퇴직금, 퇴직공제금(12종)		급여	기본급여, 임시급여, 실물급여 등
공임(工賃)상여, 상여, 특별상여(4종)	· 각의 결정 · 통칙	상여	근속상여, 정기상여 등
급료수당, 기간연장수당, 기간재연장수당, 기타수당, 병사휴무수당미불금, 소지품소실수당, 연장수당, 증산수당, 여비수당, 징용해제수당, 착후수당, 취로기간연장수당, 특별수당, 통제회수당, 통제회특별수당, 휴업수당(16종)	· 후생성 고시 639호 · 임금통제령(1943. 1. 26/6. 18 개정) · 제2차 임금통제령(1940. 10. 16)	수당	가족수당, 임시수당, 응소수당, 응징수당, 정근수당, 임시휴업수당, 항공근무수당, 함선준공수당, 출근장려수당, 특별작업수당, 불취업수당, 군사참회수당, 방공수당, 결전수당, 해고수당, 전광장려수당, 특별수당, 전광휴가수당, 산업보국회전별금, 학동기념수당, 기간연장수당, 통제회수당, 기타 수당 등
건강보험매장료, 급부금견반적립금, 단체생명보험금, 단체생명보험금수령액, 불입금액, 상병수당, 사망수당, 사망일시금, 상해수당, 연금보험장해수당금, 장해수당금추급금, 전쟁보험금, 계급부금, 조위금보험금, 유족보험금, 유족부조료연금, 유족일시금, 전쟁보험금, 침몰보험금, 특별퇴직위로금, 퇴직수당, 퇴직수당금, 퇴직위로금, 퇴직준비적립금, 후생연금, 후생연금 탈퇴수당(26종)	· 노동자연금보호법(1941. 3. 11. 제정. 1942. 6. 1 전면 시행) ·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1944. 2. 15 폐지. 후생연금법 의거) · 후생연금보험법(1944. 2. 15 노동자연금보호법 개정)	후생연금 (노동자보험 포함)	양로연금, 폐질(장해)연금 및 수당금, 유족연금, 후생연금 탈퇴수당, 퇴직적립금, 퇴직수당, 결혼수당, 분만비 등

조선인 노무자 공탁자료 중 공탁 내역(총 148종)	근거	구분	일본 정부가 공적으로 부여한 처우 내역
보급금, 기본보급금, 일반원호금, 가족수당, 별거수당, 가족위문금, 지도금(支度金), 부조료, 보조금, 석탄통제회원호회 추급금, 보급차액금, 사망위로금, 원호회견무금, 장의시부의, 장제로, 전제위문금, 제3자조의금, 조위금, 징용보급금, 징용원호보급금, 특별보급금(21종)	· 국민징용부조 규칙(1942. 1. 1) · 각의결정(1944. 5. 1 피징용자 등 근로원호 강화 요강) · 국민근로동원원호회 사업 실시 요강	원호	· 임금보급[기본, 특별(별거)수당] · 각종원호: 일반원호(부조 규칙 권외자 및 종료자 중 필요한 경우) · 각종 원호: 특별원호(가족수당, 支度金) · 사망조의금(일반조의금, 특별조의금) 및 상병위로금(일반상병위로금, 특별상병위로금, 피동원자이재해위로금) · 생활부조, 의료, 조산(助産), 생업부조, 임시생활부조, 매장
거치(據置)저금, 국민저금, 국민저축, 국민저축미제금, 국민저축조합예금, 국채, 국채저금, 규약저금, 광원저금, 근검예금, 대동아전쟁국고채권,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 대동아전쟁할인채권, 동극(東極)저금, 보국채권, 본인의 공장저금, 애국저금, 애국저금회사예금분, 임금예금, 임의저금, 저금지불예금, 저금통장, 저축채권, 전시보국채권, 전시저축채권, 조합예금, 지나사변할인국고채권, 직할국민저축, 채권, 채권대금, 퇴직저금, 할증금(전시채권), 회사예금, 회사저금[34종] *이자 포함		예·저금	사내예금, 광부저금, 국민저축조합저금, 우편저금, 은행저금, 절전수당 중 저금공제, 갑종저금, 을종저금, 규약예금 등
각 회사 주권불입액, 공습감투견무금(1945. 6), 근로소득세 및 식비, 보관금(현금), 보조료, 복권, 분배금, 사망당시 본인 소지금, 상환금, 송금분, 수탁보증금, 수탁미불, 식비 및 지급물품대 정산가동금, 신탁, 신탁수익자 분배금, 여비, 유가증권, 유류현금, 임전금액, 은급(이왕직 직원), 임전미도, 잔금, 잔여재산분배금, 전수금(前受金), 주식, 주식교부금, 주주분배금액, 주주배당금, 채권, 치거금, 특수재산분배금, 평동할부금미납액, 회사로부터의 부의, 후생비공제(35종)		기타	



적 근거를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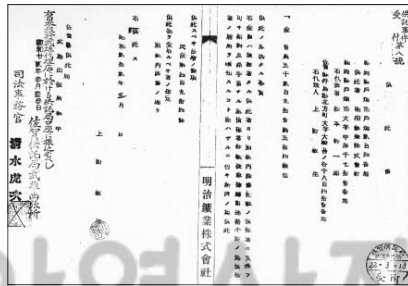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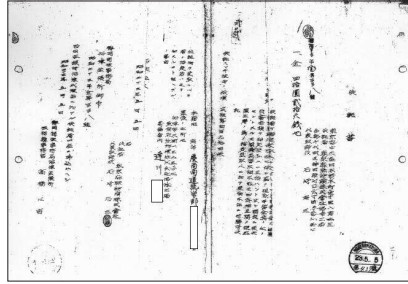
자료의 체계를 보면, ① 공탁카드 + ② 공탁서 + ③ 위임장 + ④ 등기부초본 + ⑤ 공탁서표지 + ⑥ 공탁명세서[각 개인의 공탁금 내역이 대부분 지역별(군 단위)로 기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6종의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고 '공탁서 + 공탁명세서'로 구성된 문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공탁서'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도 다수 존재한다.

개인별 공탁서 양식은 <그림 3>과 같다.

개인별 공탁서 자료의 항목은 크게 공탁서와 공탁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공탁서에는 총 11개 내역[① 공탁자(기업 대표) 및 주소 ② 대리공탁자(기업 관계자) 및 주소 ③ 금액 ④ 공탁의 원인 된 사실 ⑤ 공탁 근거(법령 조항) ⑥ 공탁물 수취자(별지 내역) ⑦ 공탁 일시(기업 공탁일) ⑧ 공탁자(주로 대리인) ⑨ 공탁국 ⑩ 공탁 수리 일시 ⑪ 공탁번호]이 기재되어 있다.

공탁명세서에는 ① 씨명 ② 본적지 ③ 고용연월 ④ 해고연월 ⑤ 해고사유 ⑥ 미불금내역(총 61종의 공탁 내역 중)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성명	본적지	고용연월	해고연월	해고사유	미불금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그림 3> 개인별 공탁서

### 3\_ 공탁 시기<sup>25)</sup>

공탁 법령 조항은 민법(民法) 제494조와 1949년 정령(政令) 제291호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방(本邦)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제28조 3), 1950년 정령 제22호 「국의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의 특례에 관한 정령」 등 3건이다. 공탁서에는 주로 “채권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이 공탁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탁서에서 공탁 시기가 확인된 총 1309건 중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1176건의 공탁 시기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탁 시기 현황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도 32건에 걸쳐 공탁이 이루어졌고, 1994년에 가장 많은 공탁금액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비노무자 공탁분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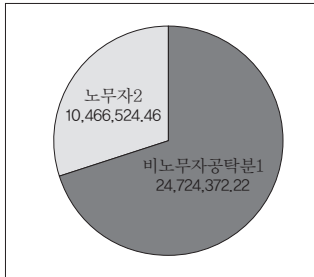
〈표 8〉 공탁 시기별 현황

공탁 시기	해당 건수	내 용
1942	1	1942. 2. 28 나가사키[長崎]광업(주)이 조선인 442명분(8만 1379엔)에 대해 나가사키공탁국에 공탁. 미불금 내역(회사저금, 가족수당, 보급금, 일반원호금, 기타)
1946	451	1946. 1. 30~12. 27 27회에 걸쳐 조선인 4900명분(54만 1204엔 45센) 공탁
1947	391	1947. 1. 6~12. 29 62회에 걸쳐 조선인 3만 714명분(347만 8945엔 56센) 공탁
1948	141	1948. 1. 7~11. 16 42회에 걸쳐 조선인 1만 851명분(143만 5188엔 94센) 공탁
1949	14	1949. 1. 25~11. 2 8회에 걸쳐 조선인 1604명분(30만 770엔 20센) 공탁

25) 노무자 공탁금 자료분석 결과보고(2010년 11월 19일자).

공탁 시기	해당 건수	내 용
1950	71	1950. 2. 4~12, 19 10회에 걸쳐 조선인 2325명분(440만 3054엔 72센) 공탁
1951	29	1951. 2. 26~10. 5 23회에 걸쳐 조선인 476명분(791만 2655엔 94센) 공탁
1952	4	1952. 8. 30~12. 17 4회에 걸쳐 조선인 559명분(5만 4769엔 97센) 공탁
1953	11	1953. 1. 29~7. 24 9회에 걸쳐 조선인 89명분(20만 6282엔 17센) 공탁
1954	3	1954. 3. 2~5. 25 3회에 걸쳐 조선인 16명분(2만 5782엔) 공탁
1955	2	1955. 5. 6~5. 23 2회에 걸쳐 조선인 31명분(3만 2461엔) 공탁
1956	5	1956. 7. 9~11. 16 5회에 걸쳐 조선인 15명분(19만 5033엔) 공탁
1957	8	1957. 2. 5~5. 15 8회에 걸쳐 조선인 2625명분(1만 983엔) 공탁
1958	1	1958. 9. 4 1회에 걸쳐 조선인 8명분(4만 3211엔) 공탁
1959	7	1959. 1. 27~10. 19 7회에 걸쳐 조선인 464명분(381만 794엔) 공탁
1960	2	1960. 7. 4~12. 12 2회에 걸쳐 조선인 5명분(4만 1540엔) 공탁
1961	1	1961. 8. 24 1회에 걸쳐 조선인 9명분(8954엔) 공탁
1962	1	1962. 12. 27 1회에 걸쳐 조선인 175명분(22만 6774엔) 공탁
1963	1	1963. 5. 21 1회에 걸쳐 조선인 3명분(4168엔) 공탁
1981	1	1981. 3. 25 1회에 걸쳐 조선인 2명분(1만 2705엔) 공탁
1986	30	1986. 8. 12 1회에 걸쳐 조선인 30명분(30만 8353엔) 공탁
1994	1	1994. 8. 23 1회에 걸쳐 조선인 349명분(1195만 5600엔) 공탁

#### 4\_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과 개인 자산(비노무자 공탁분)



〈그림 4〉 노무자와 비노무자 공탁분

일본 정부가 제공한 기록에 명기된 노무자 공탁금 3517만 613,80엔 중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자산은 무려 70.29%(2472만 4372,22엔)이고, 노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044만 6241,58엔(29.75%)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비노무자분(2209만 2924,22엔, 62.82%)으로 자산(1562만 6241,34엔)과 불명(不明) 가운데 2건(644만 6400엔)이다.<sup>26)</sup>

노무자의 미수금이 아닌 유가증권과 현금이 양국 정부가 주고받은 노무자 공탁금 기록에 포함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 없다. 그 이유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자산 기록이 포함된 노무자 공탁금 기록을 한국 정부에 제공한 일본 정부는 물론 노무자 공탁금 기록을 인수한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노무자 공탁금 기록에 개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2012년 10월 23일과 2013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이명수 의원과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간략한 공탁 내역이 국민일보의 연재기사에 실림으로써 알려졌다지만, 정부 차원의 언급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 이 점은 향후 양국 정부가 해명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sup>27)</sup>

2012년 9월 국회 이명수 의원이 위원회를 통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탁 내역은 ‘매괘금(買掛金), 배당금, 잔여재산분배금, 수익배당금, 분배금

26) 불명 3건 가운데 1건(263만 1448,00엔)은 노무자분으로 추정되지만 명단이 누락되어 구체적인 공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27) 국민일보 연재기사는 2012년 9월 국회 이명수 의원이 위원회에 요청해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했다. 이 글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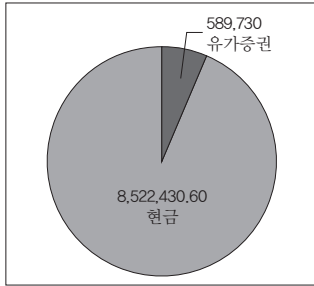
〈표 9〉 비노무자 관련 내용

구분		건수	금액	비율 (금액)	1건당 평균	비고
자산 (유가 증권, 현금)	개인	1628건	911만 2399,55엔	36.85%	5597엔	일본인 52건(46명) 한국인 1575건 중국인 1건(1명)
	회사 등	184건	651만 3841,79엔	26.34%	3만 5401엔	
不明		3건	907만 7848,00엔	36.72%	302만 5949엔	
기타(인적사항 불비, 일본인)		5종 264건	2만 282,88엔	0.082%	76,83엔	
합계		총 2,079건	2472만 4372,22엔			

\* 외국인: 48만 6290.48엔(중국인 1만 엔, 1인당 1만 131.05엔)

〈표 10〉 공탁 내역

공탁 내역	건수	공탁금	1건당	비고
매괘금(買掛金)	1	359엔 07센	359.07	
분배금, 수익배당금	2	1만 2705엔	6352.50	
수탁보증금	8	2만 7729엔	3466.12	
신탁수익자분배금	2	57엔	28.5	
신탁재산분배금	17	1만 1859엔	697.6	
보관보증금(預り保證金)	138	1만 8429엔 22센	133.55	日本出版配給 137건
유가증권	188	589,730엔	3136.86	
잔여재산분배금	272	22만 5318엔 91센	828.38	
잔여청산분배금	17	2만 3056엔 25센	1356.25	
주식교부금/주주	10	247엔 50센	24.75	西日本汽船
주식배당금, 잔여재산분배금(2종)	10	2600엔	260.00	西日本汽船 9건
주주(株主)	195	64만 2666엔 60센	3295.73	
주주배당금	11	2만 386엔 50센	1853.32	
주주분배금	755	7537,126엔	9982.95	
채무금	2	165엔 50센	82.75	
총합계	1628	911만 2160엔 60센		



〈그림 5〉 개인자산 공탁금액

(주주), 수탁보증금, 신탁재산분배금, 보관보증금(預り保證金<sup>28)</sup>, 잔여청산분배금, 주식교부금, 채무금, 유가증권,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대별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내역은 현금에 포함해 분류했다. 유가증권은 6.5%에 불과한 데 비해 현금 비율은 93.5%에 달한다.

이들 공탁 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탁 시기이다. 〈표 12〉에 의하면,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217건) 및 1965년 한일협정 이후(343건)가 다수를 차지한다. 1952년 4월 이전에는 광산과 제조업 등 강제동원 작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1952년 4월 이후에는 금융주, 상사, 토지 관련 기업이 대부분이다.

둘째, ‘불명’으로 기재된 3건의 금액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3건 중 1건은 문제의 훗카이도 기록이다. 자료에는 ‘1. 공탁 원인: 당해 채무는 1951년 12월 19일부 SCAPIN 7486-A의 각서에 의해 연합국군최고사령부로부터 배상청(賠償廳)에 이관되었고, 1952년 4월 28일 동청 폐지(「총리부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昭和 27년 법률 제116호)에 따라 대장성에 인계됨. 공탁자인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分任歳入歳出外現金出納官吏)가 보관금으로 관리를 계속해 온 것이 있는데, 당해 채무는 1959년 9월 8일부로 「국외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의한 공탁의 특례에 관한 정령」(昭和 25년 정령 제22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령의 적용을 받아 채무자인 대장대신의 인정에 의해 공탁되었다는 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일(1952. 4. 28)에 배상청에서 대장성으로 금액을 이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자료 이관 과정에서 명단이 사라진 점’은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다.

28) 기업회계상 대차대조표에서 사용되는 감정(勘定)과목 중 유동부채의 하나.

〈표 11〉 1952년 4월 이전 공탁분 407건

공탁기업	공탁건수	공탁시기	강제동원작업장
니혼고주파[日本高周波]중공업(주)	128	1951. 2. 26	해당
고바야시[小林]광업(鑛業)(주)	14	1951. 2. 27	해당
닛토[日糖]흥업(興業)(주)	1	1951. 3. 26	
(주)조지야[丁子屋]상점	8	1951. 3. 27	
니시니혼[西日本]기선(汽船)(주)	20	1951. 4. 6	
닛코[日硬]산업(産業)(주)	1	1951. 4. 6	
조선맥주(朝鮮麥酒)(주)	12	1951. 4. 10	
울산(蔚山)건설(주)	4	1951. 5. 11	
주카[中華]연초석탄공업(주)	24	1951. 6. 8	
조선방직(주)	2	1951. 6. 18	해당
폐쇄기관 도요[東洋]척식(拓殖)(주)	11	1951. 6. 18	해당
조선자전거제조(주)	26	1951. 7. 4	
만주(滿洲)펄프공업(주)	1	1951. 7. 7	
조선제유(製油)(주)	1	1951. 7. 7	해당
후쿠오카현[福岡縣]주류(酒類)판매(주)	1	1951. 7. 7	
도호[東邦]광업(鑛業)(주)	5	1951. 8. 6	해당
조선석유(주)	116	1951. 8. 10	해당
(주)쓰지모토[辻本]상점	3	1951. 9. 4	
조선전업(朝鮮電業)(주)	27	1951. 9. 13	해당
성환(成歡)광업(주)	2	1951. 10. 5	해당
총합계	407		

3건 중 2건은 조선식량영단이 발행한 채권판매 금액으로 생각된다. 영단은 조선에서 1945년 10월 폐쇄되었다.<sup>29)</sup>

29) 조선식량영단은 8·15 해방 후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적산(敵産)으로 미군에게 접수되었다. 1946년 2월 조선생활품영단(朝鮮生活品營團)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국 통계기관으로 존속했다. 1948년 11월 대한식량공사로 개편되었다가 1949년 11월

〈표 12〉 1952년 4월 이후 공탁분 1217건

공탁 기업	공탁 건수	공탁시기	강제동원 작업장	비고
폐쇄기관 효고현[兵庫縣]섬유제품(주)	2	1952. 10. 16		
폐쇄기관 일본출판배급(주)	139	1952. 10. 17		
(주)만주증권취인소(滿洲證券取引所)	57	1953. 1. 29		
폐쇄기관 효고현[兵庫縣]주류판매(주)	1	1953. 2. 17		
조선미곡창고(朝鮮米穀倉庫)(주)	17	1953. 4. 3		
폐쇄기관 도카이석탄판매[東海石炭販賣](주)	1	1953. 7. 24		
폐쇄기관 니혼해운협회[日本海運協會]	1	1954. 4. 9		
조선피혁(朝鮮皮革)(주)	1	1954. 4. 24	해당	
신니시니혼기선[新西日本汽船]	10	1954. 5. 25		
야스다신탁은행[安田信託銀行](주)	17	1955. 5. 6		
다이이치신탁은행[第一信託銀行](주)	169	1956. 8. 10(1건) 1962. 11. 27		2회
스미토모신탁은행[住友信託銀行](주)	1	1956. 8. 24		
니혼신탁은행[日本信託銀行](주)	1	1956. 10. 17		
조선방직(朝鮮紡織)(주)	2	1957. 2. 5	해당	2회 (52년 이전)
도호[東邦]광업(鑛業)(주)	5	1957. 3. 19	해당	2회 (52년 이전)
(주)기요미즈[清水]정미소(精米所)	4	1957. 4. 10		
재외금융기관 (주) 조선저축은행	23	1959. 4. 30		

정부관리양곡업무를 금융조합연합회에 인계한 뒤 1950년 1월 해체되었다.

공탁 기업	공탁 건수	공탁시기	강제동원 작업장	비고
부산수산(釜山水産)㈜	5	1959. 6. 2		
재외금융기관(株) 조선상업은행	245	1959. 10. 19		
재외금융기관(株) 조흥은행	170	1960. 1. 27		
재외회사 고쿠산[國産]자동차(株)	1	1960. 7. 4		
하사마[迫間]흥업(興業)(株)	2	1960. 12. 12		
(株)니치보신[日貿信]	2	1981. 3. 25		
(구)미쓰이[三井]물산(株)	8	1986. 8. 12		
(株)조흥사(朝興社)	333	1994. 8. 23		
총합계	1217			

〈표 13〉 ‘불명’ 기록의 내역

건명	피공탁자 이름	본적	공탁번호	공탁일시	비고	합계
朝鮮食糧營團	불명	불명	昭和 26年 特金 第205號	1951. 8. 29	殘餘財産 分配金	608만 6633엔
朝鮮食糧營團	불명	불명	昭和 31年 特金 第22號	1957. 1. 16	殘餘財産 分配金	35만 9767엔
大藏省 管財 局 總務課 分 任 歳入 歳出 外 現金 出納 官吏	불명	불명	昭和34年 度 特金 第8號	1959. 9. 16	北海道로 부터 歸還 한 朝鮮人 의 미결산 勘定資金	263만 1448엔

셋째, 본적지 기재의 성격 문제이다. 기재 내용 중 본적지는 주소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경성부인 경우는 경기도 경성부로 하부 단위가 표기되어 있으나 경성부가 아닌 경우는 ‘경기도’만 표기되어 있다.

개인 1628건은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명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1628건 가운데 인적 사항(이름, 주소, 보유 자산의 성격)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각종 인명사전류, 관련 문헌과 비교 분석해 확인한 699건(553명)의 내역을 토대로 계층을 분류하면 <표 14>와 같다.<sup>30)</sup>

<표 14>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은 기업인과 적극협력자이다. 특징

<표 14> 피공탁자 계층 분류

구분 <sup>31)</sup>	건수	인원	자산 총액	
공직자 <sup>32)</sup>	38건	36명	5만 5306엔 81센 / 1536엔 3센(1인당)	
적극협력자 <sup>33)</sup>	157건	104명	203만 2480엔 78센 / 1만 9543엔 08센(1인당)	
외국인	53건	51명	42만 8570엔 48센(일본인), 8571엔(1인당) / 1만 엔(중국인)	
항일협력자 <sup>34)</sup>	16건	14명	3882엔 68센 / 277엔(1인당)	
전문직 <sup>35)</sup>	36건	30명	10만 6725엔 29센 / 3557엔(1인당)	
교육자 <sup>36)</sup>	9건	7명	8만 1641엔 / 1만 1663엔(1인당)	
경제 활동 자	기업인 <sup>37)</sup>	224건	167명	90만 7544엔 95센 / 5434엔 40센(1인당)
	지역유지 <sup>38)</sup>	82건	76명	27만 8091엔 / 3659엔(1인당)
	금융인 <sup>39)</sup>	44건	37명	7만 5405엔 10센 / 2038엔(1인당)
	자산가 <sup>40)</sup>	24건	22명	20만 6416엔 22센 / 9382엔(1인당)

30) 인적 사항 확인 작업 과정에서 국민일보 이성규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31) 해방 이전 경력 기준. 여러 계층이 중복될 경우에는 적극협력자를 우선 적용하고, 계층 간 중복 적용을 하지 않았다.

32) 중추원이나 총독부 등 공직에 근무한 인물. 교사, 서기나 우체부 등 하급직 포함.

33)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인명사전, 국회 김희선 의원실 인명록, 중추원 의관 명단 등에 이름이 등재된 인물.

34) 독립유공자로 등재되었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된 인물.

35) 언론인, 예술인 등.

36) 학교 설립자 및 운영자.

37) 직접 기업을 경영하거나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

38) 기업을 경영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토지 및 광산을 소유한 인물.

39) 금융기관 경영자이거나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형성의 배경이다. 자산 형성의 배경은 투자 목적과 적극협력의 의지 표명, 할당 등 세 종류로 판단된다. 일본출판배급의 경우와 같이 하급관리들이 소액을 보유한 사례는 할당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전업이나 출판배급 등은 할당 가능성(관공리나 교사가 대부분)이 크고, 금융주와 강제동원 관련 회사는 투자 목적, 당국과 유착 의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외국인이다. 자료에는 모두 '조선인'이라 기재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외국인이 53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기재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출신지역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가다 나오지[賀田直治]이다. 가다 나오지의 조선 자본 장악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할 정도로 경제사에서 주목하는 인물이다.<sup>41)</sup>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의 가다 나오지(1877년 출생, 조선피혁주식회사의 주주배당금 1만 5750엔 공탁)는 양부(賀田金三郎)와 같이 조선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을 경영한 대표적인 일본인이다. 가다 나오지는 도쿄제국대학 농대를 졸업(1902)한 후 대만총독부 소속 직임 기사로 근무하다가 1917년 조선에 건너왔다. 대만총독부 근무 시절에 유럽과 미국의 식림업을 시찰해 익힌 지식을 한반도 침탈에 사용했다. 그는 전남 장흥군과 함북 부령군, 명천군에 각각 대규모 토지를 대부분아 식림사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농림업, 광산업, 공업, 철도, 자동차회사 등 돈이 되는 분야에 진출해 재력을 축적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조선피혁회사 사장과 동양축산공업회사 사장, 서선식산철도회사 전무로서 전쟁 특수를 누렸고, 이후에도 조선실업은행(주) 이사, 서선식산철도(주) 주주, 조선요업(주) 상담, 조선인촌(주) 대주주, 조선피혁(주) 사장(1921), 용산공작(주) 주주(1927), 조철자동차공업(주) 감사, 조선석유(주) 감사(1937), 조선교통공업(주) 감사, 조선임업개발

40) 공직자는 아니지만 전국에 막대한 토지와 자산을 보유하고 중앙에서 재력을 인정 받은 인물.

41) 김명수, 2009, 「한말 일제하 賀田家の 자본축적과 기업 경영」,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연구소.

(주) 감사(1939), (주)가다구미[賀田組] 이사 및 감사, 조선철도(주) 이사, 동양 축산농업(주) 이사, 조선권업(주) 사장, 조산자동차(주) 감사, 공영자동차(주) 감사, 조선축산(주) 이사, 대흥무역(주) 사장, 북선척식철도(주) 감사(1942 기준) 등 중요한 기업의 사장과 임원을 독점했다. 또한 조선상공회의소 대표(1935)로서 조선 재계를 장악했다. 그가 한반도에서 운영한 강제동원 기업은 무려 10여 개에 달한다.<sup>42)</sup>

인적 사항을 확인한 유일한 중국인은 화교인 주신구(周慎九)이다. 그가 언제 조선에 건너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역회사 ‘유풍덕(裕豐德), 군산과 경성’을 경영하며, 화상(華商)총회 주석(1939)으로 활동하는 등 조선에서 거물 중국인이었다. 전쟁 말기에 중국으로 돌아가 조선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직후 신문 기사에는 ‘중국국민대회에서 韓國區 代表로 참석하여 조선 문제에 대하여 조선이 자주독립함에 최대의 협력을 하자는 열렬한 부르짖음으로써 전 중국국민에게 조선 독립의 자주성을 더 한층 고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해방 후 1947년 다시 입국해 ‘유풍덕(裕豐德)’을 경영하며 화교학교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sup>43)</sup>

셋째, 피공탁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공탁한 경우이다. 김용주(金龍周), 박흥식(朴興植), 신용옥(愼鏞瑱), 박승직(朴承稷), 설경동(薛卿東) 등 명망가와 기업가들은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활발한 공직 활동을 했다. 일부만 해방 직후에 사망(尹致昊)하거나 납북(閔圭植)되었을 뿐이다. 최근 일본에서 공개된 한일청구권협정문서(일본측 공개문서)에 의하면, 1961년에 화신 사

42) 朝鮮總督府 官房庶務部, 『朝鮮』 제345호, 1944. 2; 東洋經濟新報社, 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년판』; 東洋經濟新報社, 1927, 『朝鮮銀行會社要錄 1927년판』; 東洋經濟新報社, 1929, 『朝鮮銀行會社要錄 1929년판』; 東洋經濟新報社, 1937, 『朝鮮銀行會社要錄 1937년판』; 東洋經濟新報社, 1939, 『朝鮮銀行會社要錄 1939년판』; 東洋經濟新報社, 1942, 『朝鮮銀行會社要錄 1942년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

43) 『동아일보』, 1947년 5월 6일자, 조선독립의 협력자 화교 周慎九 來朝;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장이었던 박홍식은 방일해 사업 및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유력자들과 협의했다.<sup>44)</sup> 박홍식의 개인 자산은 사망하던 해인 1994년에 공탁되었다. 신용욱도 일제시기에 3000엔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951년에 공탁되었고, 1961년 운영난으로 자살했다. 그는 해방 후에 제2대와 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대한국민항공사(대한항공의 전신)를 설립하는 등 공적인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유가증권과 현금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공탁되었다.<sup>45)</sup>

최창학(崔昌學, 1959년 사망, 1962년 공탁), 민규식(1950년 납북, 1951년과 1994년 공탁), 윤치호(1945년 사망, 1962년 공탁) 등과 같이 피공탁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이후 채권자의 가족들이 생존하고 있었으나 교부하지 않고 공탁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일본인 52명도 모두 일본으로 귀환했으나 그 이후에 공탁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본이 당사자에게 재산권에 대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음은 물론, “채권자의 주소 불명 등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공탁한다는 공탁의 법적 규정(민법 제494조와 1949년 정령 제291호, 1950년 정령 제22호)을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강제동원 기업 관련이다. 이들 가운데 61명(77건)이 강제동원 기업에 관여했거나 광산을 소유했다. 이 가운데 적극협력자의 비율이 3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기업인(27.3%)이 잇는다. 외국인(10건)도 높은 비율이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준호(玄俊鎬)와 가족(현준호의 장남, 배우자), 한상룡(韓相龍), 장직상(張稷相), 신용욱, 김태석(金泰錫)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계층별 1인당 금액의 특징이다. 계층별 1인당 금액을 추산해보면,

44) 日韓會談文書(일본측), 韓國朴興植氏と會談の件(1961년 4월 5일자 문서, 문서번호 354) 日韓會談全面公開を求める會(<http://www.f8.wx301.smilestart.ne.jp/index.html>), 2008년 11월 16일 제6차 공개문서

45)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대통령 소속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총 25권(DVD 총 2장), 200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적극협력자(1만 9543.08엔)가 가장 많고, 그 뒤를 교육자(1만 1663엔)가 따르고 있다. 특히 경제 정보가 많고, 전문성을 가진 금융인들의 1인당 금액(2038엔)보다 적극협력자의 1인당 금액(1만 9543.08엔)이 훨씬 크다. 이를 통해 투자 목적 외의 다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완결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료 생산 과정 자체가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전수 조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존에 생산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합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앞에서 소개한 3건의 자료 중 2건(개인 명세서가 없는 현황표나 총괄표)은 성격이 유사하지만 수록 내용(건수 및 금액)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1건의 경우에는 노무자의 공탁금이 일부이고, 노무자의 공탁금이 아닌 개인자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현황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료의 이관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노무자들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나 개인자산의 공탁자료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도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같이 공탁금 자료가 갖는 한계로 인해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공탁금과 관련한 추가 자료 발굴이다. 현재 공개된 3건 외에 유사한 성격의 자료를 발굴해 미시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부록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별 공탁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역의 차이는 매우 크다.

둘째, 공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자료는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탁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공탁분과 미공탁분, 제3자 인도분의 원인 및 관계 규명이다. 「재일자 산철」과 「임금미불채무조」는 한국 정부가 확보한 명부에 비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자는 공탁분 외에 미공탁분과 제3자 인도분이 포함된 숫자이다. 일본 정부는 공탁제도를 만들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탁을 했다. 그럼에도 공탁하지 않은 경우와 제3자 인도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일본 정부가 공탁제도를 마련했음에도 공탁하지 않은 배경과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 소장 자료 중 비노무자분 자료 분석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다. 이와 관련한 추후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공탁자 및 피공탁 기업 분석이 요구된다. 피공탁 기업의 현존 기업과 관련성은 물론, 이왕직이나 궁내청 등 피공탁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② 한일협정문서(일본 측 문서)를 통한 개인 재산 환수 논의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③ 이미 폐쇄된 기관이 공탁을 할 수 있었던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공탁자의 주소는 특정 지역(미쓰이 빌딩)이거나 다른 기업의 사무소로 확인된다. 이는 1952년 폐쇄기관정리위원회의 업무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리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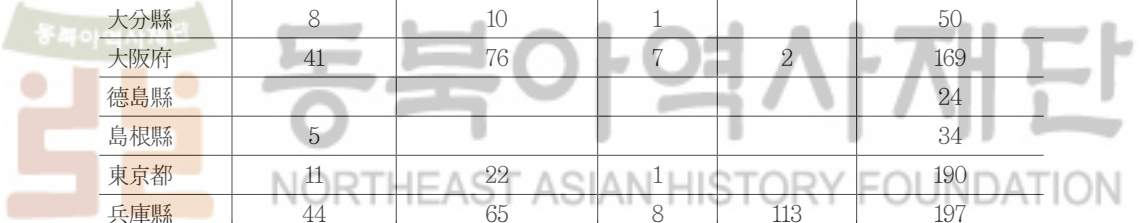
다섯째, 피공탁자(개인)가 1975년 청구권 보상 당시 보상(물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탁 시기와 당시 한·일 정부의 자금 융통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부록 1〉 공탁금 자료 3건의 현황

	㉠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철	㉡ 경제협력·한국 105·조선 인에 대한 賃金未拂債務調 인에 대한	㉢ 한국 정부 인수 기록 (일본 정부 제공)
생산 시기	1946. 6~1950. 11	1950. 10~1953. 7	1942~1994년
소장처	일본공문서관 쓰쿠바[筑波] 분관	일본공문서관 쓰쿠바[筑波] 분관	일본 법무성
구성	표제: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 서철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 채 무 등에 관한 조사」와 공문서 등 2 종	표제: 경제협력 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 공탁분과 미공탁분, 제3자 인도분 등 3종의 일람표, 조사집계표(1950. 10. 6), 총괄표(1953. 7. 20)와 공문서 등	① 공탁카드 + ② 공탁서 + ③ 위 임장 + ④ 등기부초본 + ⑤ 공탁 서표지 + ⑥ 공탁명세서
규모	· 총 684쪽 · 귀국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 채 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 407쪽 (표지 포함) - ·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 / 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 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 業報國會) 및 각 도도부현 간공 문서: 277쪽	- 일람표 및 집계표: 85쪽 기타 문서 및 잡철	5698쪽(DVD 3개 분량)
수록 내역	· 채무자(작업장·기업) 총수: 317개 기업, 445개 작업장 · 채권자(조선인 노무자) 총수: 약 13만 3354건(공탁 7만 9607 건, 미공탁 3만 7184건, 제3자인도 1만 5905건) · 채무 총액: 2798만 1050.18엔 (1인당 평균 209.51엔 (공탁 1251만 5464.46엔, 미공 탁 393만 5532.81엔, 제3자 인 도 1142만 5902.69엔)	· 채무자(작업장·기업) 총수: 공탁(511개), 미공탁(352개), 제3자 인도(23개) 등 886개 기 업, 922개 작업장 목록 · 채권자(조선인노무자): 14만 9588건(공탁 8만 280건, 미공탁 5만 1947건, 제3자 인도 1만 7361건) · 채무총액: 1732만 4286.64엔 (공탁 1000만 5537.70엔, 미공탁 435만 4870.75엔, 제3자인도 296만 3878.19엔)	· 채무자(작업장·기업) 총수: 247 개 기업 · 채권자(주주 포함): 6만 4279건 · 채무 총액: 3517만 613.80엔 ※ 1건당 평균액은 547.17엔으로 높 지만 유가증권 등 노무자 무관 한 금액과 이름 불명 등 지급이 불가능한 2472만 4372.22엔을 제외한 노무자 해당 금액 1044 만 6241.58엔의 1건당 금액은 162.516엔
인수 시기	2011. 8	2009. 3	2010. 4
자료 제공자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	일본 법무성

〈부록 2〉 일본 도도부현별 공탁금 내역 수록 현황

	㉠ 재일자산철 <sup>46)</sup>	㉡ 임금미불채무조 <sup>47)</sup>	㉢ 한국정부	㉣ 조사결과 <sup>48)</sup>	㉤ 작업장 목록 <sup>49)</sup>
岡山縣	9	15	3		63
京都府				1	49
高知縣	2	4	1		44
廣島縣	18	36	10		171
群馬縣					41
宮崎縣	4	6	1		37
宮城縣	1	2		36	74
岐阜縣	7	17	1	8	60
埼玉縣	1	1			50
奈良縣				34	52
鹿兒島縣					59
大分縣	8	10	1		50
大阪府	41	76	7	2	169
德島縣					24
島根縣	5				34
東京都	11	22	1		190
兵庫縣	44	65	8	113	197
福岡縣	61	120	29	27	227
福島縣	6	8	6		86
福井縣	1	1			32
富山縣	19	47	18		55
北海道	21	74	4		379
山口縣	46	66	1		160
山梨縣					16
山形縣	4	13			31
三重縣	4	5		2	44
石川縣	5	5			26
神奈川縣	10	10	6		221
新潟縣	6	23	1		70
岩手縣	3	23	5	2	38
愛媛縣	3	5			52
愛知縣	24	53			132



	㉠재일자산철	㉡임금미불채무조	㉢한국정부	㉣조사결과	㉤작업장 목록
熊本縣	2	11	1	1	44
茨城縣	10	17	1	6	66
滋賀縣	5	11		3	17
長崎縣	23	28	21	22	150
長野縣	10	10		44	110
靜岡縣	5	13	1	28	110
鳥取縣		2			22
佐賀縣	14	89	11	47	76
千葉縣					53
青森縣					57
秋田縣	5	11		26	80
沖繩縣					48
香川縣			1	1	16
和歌山縣	5	10	2		31
栃木縣	1	3	1	12	64
船舶會社			65		67
불상, 기타			1	3	4 (기타1: 남양군도)
	445건 (공탁 232건)	922건(공탁 511건)	208건	418건	3948개소

46) 공탁, 미공탁, 제3자 인도분 포함.

47) 공탁, 미공탁, 제3자 인도분 포함.

48)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일본 정부가 1992년에 한국 정부에 제공한 명부로 미수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음).

49) 2013년 8월 말 현재 위원회가 확정된 일본 지역 노무동원 작업장 목록 기준, 동원 기업명이 확인되지 않는 작업장 1,096개소 포함.

##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대통령 소속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총25권(DVD 총 2장)].
- 金英達, 2003, 『金英達著作集2-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노무자공탁금 자료분석 결과보고(2010. 11. 19).
- 고바야시 히사토모, 201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 『역사와 책임』 창간호.

<http://cafe.naver.com/gangje>(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카페).

<http://www.digital.archives.go.jp>(일본공문서관 검색 사이트).

<http://www.f8.wx301.smilestart.ne.jp/index.html>(日韓會談全面公開を求める會 검색 사이트).

<http://www.koreanhistory.or.kr>(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근현대인물자료).

## [국문 초록]

##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

정혜경

대일 과거청산 작업에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물적 피해는 임금 등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비롯해 저금이나 공채 등 다양하다.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미불금은 일본 패전 직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공탁한 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의 지급 책임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방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일정한 비율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과 관련한 자료는 현재 3건으로 알려져 있다. 3건의 자료는 모두 일본 정부가 작성한 자료이지만, 수록 내용과 성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수록 형태를 보면, 2건은 개인명부가 수록되지 않은 자료(조사표, 총괄표)이고, 1건(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자료)은 개인 명부가 첨부된 자료이다. 수록 내용 자체도 동일한 작업장의 자료 3건이 각기 차이를 보이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학계에서 환영받는 자료가 아니었다. 이미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를 포함한 명부 자료 전반에 대해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자료도 명부 자료 분석 방법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실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말 현재 공개된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 3건의 미시적 분석

을 통해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자료는 완결성을 가진 자료가 아니며 한계가 많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료 생산 과정 자체가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전수 조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존에 생산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합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의 현황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분석 작업을 통해 공탁금 자료 전반의 실체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국문 주제어  
공탁금, 미불금, 일본 정부, 일본 기업, 자료

**[ABSTRACT]**

A Micro-Analysis of Documents of the Japanese Official  
Deposit Related to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Mobilized in Japan

Jeong Hyekyung

It is said that there are now three resources relating to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mobilized during World War II. These were all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y have different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fice. Two resources have no individual lists, or the so-called Inspection Index or General Index, and the third resource has individual data. The manuscript of the individual data was handed over to the Korean government by Japan. Micro-analysis was need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mong these three resources because they contain dissimilarities regarding the same company.

I can conclude after micro-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files that the three resources have limitations because the final policy data was not completed. In the procedures for preparing these resources, entrepreneurs relevant to a Korean worker's wage had not properly investigated the worker and reported incomplete informa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y had no duty to bring forward accurate data.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pay positive attention to inspecting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repatriates, thus it lacke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unpaid wages and of other matters relating to Korean workers. Furth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eview the integrated data from entrepreneurs.

In conclus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fficial deposit lists of Korean workers. In other words, Japan imposed too many tasks for excavating and analyzing the new resources of official deposits relating to the unpaid wages of Koreans mobilized during World War II.

#### Keywords

Unpaid wages, official deposit, entrepreneurs, Japanese government, Korean repatr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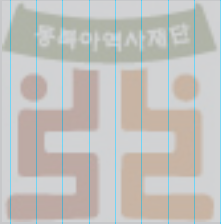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오대양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 조교수



## I.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중국 요서지역에는 단(壇)·묘(廟)·총(塚)을 조합으로 한 대규모의 적석총문화가 발달했다. 발굴을 통해 밝혀진 당시 고고학문화의 내용들은 적석총 축조인들이 이미 초보적인 수준의 문명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주장하는 요하문명론은 이러한 적석총문화를 근간으로 한다.

적석총문화의 주인공은 홍산문화 사람들이었다. 홍산문화란 약 6700~5000년 전<sup>1)</sup> 사이의 요서지역 일대 신석기시대 문화로, 1935년 내몽고자치구

※ 투고일: 2014년 5월 20일, 심사일: 2014년 8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2009년도 차세대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홍산문화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통해 요서지역 신석기시대의 분기와 편년을 다룬 場虎의 논문(1994, 「遼西地區新石器-銅石並用時代考古文化序列與分期」, 『文物』 5)을 참고했다.

(內蒙古自治區) 적봉시(赤峰市) 홍산후(紅山后) 유적 발굴을 통해 명명됐다. 주요 특징은 제단과 신전·적석총으로 구성되는 제의시설과 무덤 유적의 복합체, 무덤에 부장된 옥기, 발달된 농경문화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홍산문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고대사와의 관련성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하유역 일대의 선사문화는 줄곧 우리 민족의 시원지로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체가 없이 막연하게 추론만 했던 고조선 및 그 이전 시기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볼 수 있겠다. 특히 고조선의 무덤양식인 고인돌과 석관묘는 그 구조적 측면에서 홍산문화의 적석총과 일부 유사성이 발견된다. 또한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 적석총 유적들은 구조와 형식은 물론 외형적인 모습까지 유사하다. 비록 아직까지 이들 간의 연관성 및 기원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sup>2)</sup>

이 글은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글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옛무덤은 당시 사회에서 행해지던 장례 습속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특히 사회가 점차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기 위한 자료로서 그 시대 사람들이 축조한 무덤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sup>3)</sup> 그렇기에 수천년 이상 그 전통이 유지되어 내려온 적석총문화의 흔적들은 우리의 고대사를 조명하고 뿌리를 찾는 데 있어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조선과 홍산문화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만약 적

2) 蘭豐實, 2006, 「論遼西與遼東南部史前時期的積石塚」, 『紅山文化研究－2004年紅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王嗣洲, 2011, 「遼東半島積石塚研究」, 『大連考古文集』 1; 張志成, 2011, 「大連地區積石墓淺見」, 『大連考古文集』 1; 하문식, 2013, 「遼南지역의 돌무지무덤연구」, 『先史와 古代』 38호, 한국고대학회.

3) 하문식, 2013, 위의 글, 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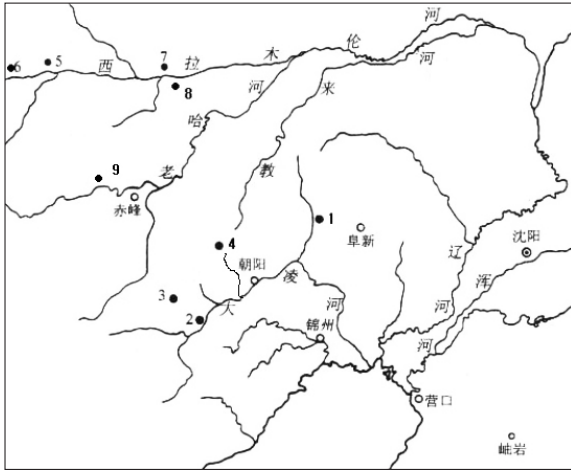
4) 홍산문화와 고조선의 연관성 혹은 계승성에 관한 결론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글은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연구대상을 적석총 유적으로 한정한다. 적석총은 고조선을 거쳐 고구려, 백제까지 전승된 한민족의 대표적인 무덤양식 중 하나이며, 최근 그 기원과 관련해 홍산문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요동지역 일대 적석총 유적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석총을 고조선의 한 무덤양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원과 선행문화에 대한 검토는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 II. 조사 및 연구 현황

요서지역 적석총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학계는 요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문물조사를 실시 하던 중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내몽고 적봉시, 오한기, 부신, 객좌, 능원, 건평 등 지역에서 많은 수의 적석총 유적을 발견했다. 주요 유적으로는 대릉하(大凌河) 유역의 부신현(阜新縣) 호두구(胡頭溝), 객좌현(喀左縣) 동산취(東山嘴), 능원·건평현(凌源·建平縣) 우하량(牛河梁), 내몽고(內蒙古) 오한기(敖漢旗) 초모산(草帽山) 유적,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 유역의 임서현(林西縣) 백음장한(白音長汗), 극십극등기(克什克騰旗) 남태자(南台子), 홍격력도(洪格力圖), 웅우특기(翁牛特旗) 해랍소진(海拉蘇鎮), 적봉시(赤峰市) 강가만(康家灣) 유적 등이 있다.

상당수 진행되었다. 반면 요서지역은 이제 막 시작단계로, 특히 양 지역의 비교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 적석총 유적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초 3 단계에 걸친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둘째,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특징과 성격-홍산문화를 중심으로, 셋째,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적석총문화의 특징과 성격-홍산문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등이다. 현재 첫째와 둘째 사항은 이미 연구가 종료되어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차세대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됐으며, 셋째 사항은 2014년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관련 자유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지면상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첫째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하며, 나머지 주제의 연구결과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도 1〉 홍산문화 적석총 유적 분포도

1. 胡头溝 / 2. 東山嘴 / 3. 牛河梁 / 4. 草帽山 / 5. 白音長汗 / 6. 南台子 / 7. 洪格力圖  
8. 海拉所鎮 / 9. 康家灣

## 1\_ 조사성과 검토

호두구 유적은 1973년과 1993년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5)</sup> 1차 조사에서는 홍산문화의 옥기가 부장된 석관묘(1·3호)와 이를 둘러싸는 원형 돌담 시설[石圈] 그리고 이 돌담을 따라 순서 있게 배열된 채도통형기군(彩陶筒形器群)이 확인됐다. 또한 그 상층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춘추시대의 토광묘가 발견되기도 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적석총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20m, 너비 8.5m 정도이며 중심대묘와 그 남쪽으로 배열된 3기의 석관묘로 구성된다.

동산취 유적은 1979년 발견되어 1982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됐다.<sup>6)</sup> 유적

5) 方殿春, 1984, 「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玉器墓的發掘」, 『文物』 6; 方殿春·劉曉鴻, 2005, 「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積石塚的再一次調查與發掘」, 『北方文物』 2.

내에서는 홍산문화 중·후기의 제단 시설과 주거지가 확인되어,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된 제일 이른 시기의 제사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우하량 유적은 1981년 발견되어 1983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 약 50km<sup>2</sup> 범위 내에서 20여 곳의 유적이 확인됐다. 이 중 16개 지점에 대해 번호가 부여됐고 발굴된 주요 유적은 1·2·3·5·16지점 등이다.<sup>7)</sup> 유적군 내에는 여신묘, 제단, 적석총군 등이 규칙적인 분포양상을 보이며 주변지역 반경 50km 내에서 취락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홍산문화의 성지(聖地)로 해석된다.

초모산 유적은 1983년 발견됐다. 유적은 모두 3개 지점으로 구획되며 이 중 제2지점이 2001년 발굴됐다.<sup>8)</sup> 보존상태가 매우 좋은 단(壇)과 총(塚)이 결합된 구조물로, 홍산문화 초기의 적석총과 제단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모산 유적이 위치한 대릉하 상류의 노호산하(老虎山河) 유역 일대에서는 우하량 유적군과 유사한 양상의 적석총 유적군이 확인되어 주목된다.<sup>9)</sup> 유적은 노호산하 상류의 약 10km 범위 내에 집중되며 약 8개 지점에서 적석총과 제단 시설 및 유물 산포지가 발견됐다.

6) 郭大順·張克舉, 1984, 「遼寧省喀左縣東山嘴紅山文化建築群址發掘簡報」, 『文物』 11.

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6,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墓與積石塚群發掘簡報」, 『文物』 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a, 「遼寧牛河梁2地點1號塚21號墓發掘簡報」, 『文物』 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8a, 「牛河梁紅山文化2地點1號塚石棺墓的發掘」, 『文物』 10; 魏凡, 1994, 「牛河梁紅山文化第三地點積石塚石棺墓」, 『遼海文物學刊』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b, 「遼寧牛河梁第五地點一號塚中心大墓(M1)發掘簡報」, 『文物』 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遼寧凌源市牛河梁遺址第五地點 1998~1999年度的發掘」, 『考古』 8; 李恭篤, 1986,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遺址試掘報告書」, 『考古』 6; 國家文物局, 2003, 「牛河梁紅山文化遺址群」, 『2003中國重要考古發見』; 馮文學, 2007, 「對牛河梁紅山遺址第十六地點的考古發見與認識」,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報)』 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8b, 「牛河梁第十六地點紅山文化積石塚中心大墓發掘簡報」, 『文物』 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 文物出版社.

8) 邵國田, 2004, 「草帽山祭祀遺址群」, 『敖漢文物精華』, 內蒙古文化出版社.

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內蒙古自治區敖漢旗博物館, 2005, 「內蒙古敖漢旗蛙河, 老虎山河流域新石器時代遺址調查簡報」, 『考古』 3.

백음장한 유적은 1986년 발견되어 1988·1989·1991년 3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10)</sup> 유적 내에서는 홍산 시기 무덤 6기와 함께 홍룡와문화기의 적석묘가 발견되어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계승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남태자 유적은 1991년 발굴되어<sup>11)</sup>, 홍산문화 주거지 1동과 회갱(灰坑) 유구 30개, 무덤 13기를 확인했다. 남태자 유적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홍산문화 전기 무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밝혀졌다.

홍격력도 유적은 1997년에 조사되어 많은 수의 옥기들이 보고됐다.<sup>12)</sup> 본래 이 지역 일대에는 여러 기의 적석총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굴 당시 이미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다. 출토된 옥기를 분석한 결과 우하량보다 이른 시기의 적석총으로 밝혀졌다.

강가만 유적은 2005년 조사됐다.<sup>13)</sup> 유적은 모두 네 지점으로 구분되며 이중 2개 지점에서 적석총을 비롯한 100기 이상의 석관묘를 찾았다. 또한 유적 인근으로 흐르는 음하(陰河) 연안 일대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 유적과 고대의 암각화 유적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외에 내몽고 옹우특기 해랍소진 일대에서는 모두 세 개 지점에서 100기에 가까운 적석총이 보고된 바 있다.<sup>14)</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적석총 유적은 단일 묘역 내부에 여러 개의 묘실이 들어선 집체묘적 성격을 가진다.<sup>15)</sup> 묘역 상부에는 방형 혹은 원형의 계단

10)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1993, 「內蒙古林西縣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7; 索秀芬, 郭治中, 2004, 「白音長汗遺址紅山文化遺存分期探索」, 『內蒙古文物考古』 1;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4, 『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書』, 科學出版社.

11)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克什克騰旗南台子遺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 第1輯; 1997, 「克什克騰旗南台子遺址」, 『內蒙古文物考古文集』 第2輯.

12) 蘇布德, 2000, 「洪格力圖紅山文化墓葬」, 『內蒙古文物考古—巴林右旗專輯』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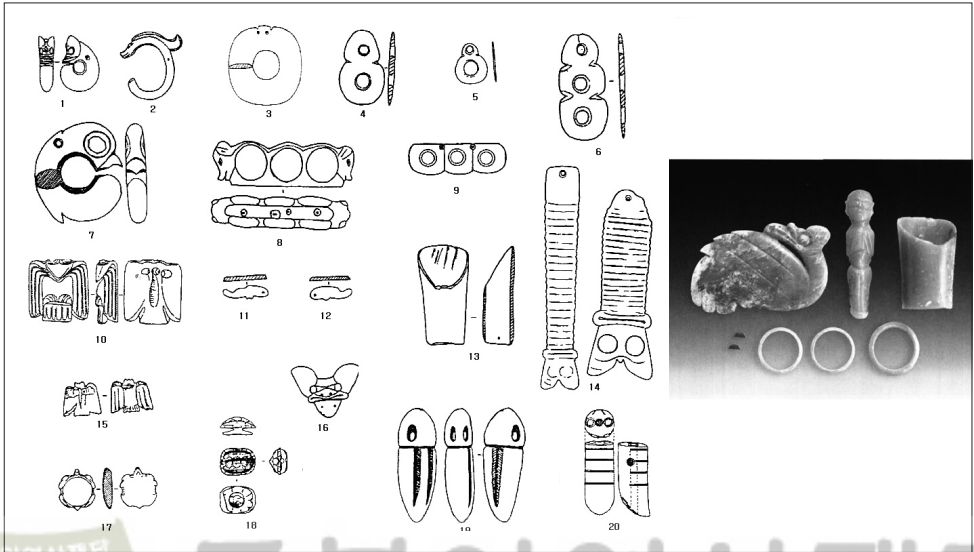
13) 席永傑·張國強, 2006, 「內蒙古赤峰市康家灣紅山文化及相關遺址調查報告」, 『赤峰學院學報』 3.

14) 王德璋, 2008, 「赤峰海拉蘇鎮古代遺存的普查與初步認識」, 『東北史地』 1.

식 석축을 하며 하부에는 석판을 쌓거나 세워서 묘실을 조성했는데 주로 앙신 직지장(仰身直肢葬) 위주이며, 대형묘는 총의 중앙부에 위치한 특징을 보인다. 수장품은 옥기를 다량으로 부장하며 토기와 석기가 공반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특징들은 홍산문화 후기 적석총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으로 우하량 유적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우하량 16개 지점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20기 이상의 적석총이 발견됐고 이외에 여신묘와 함께 제의 관련 시설도 확인됐다. 우하량의 적석총은 모두 명확한 형태의 묘역을 가지며 그 변계(邊界)에는 1중 혹은 다중의 석벽을 쌓는다. 그리고 석벽 옆을 따라 무저통형기(無底筒形器)를 일렬로 배열한 공통성을 보인다. 적석총 내부에 존재하는 석관들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부장품도 적으며 제작방법이 간단하거나 2차장이 증가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총 중심부에는 다량의 옥기가 부장된 대형 석관이 위치하고 그 남쪽 혹은 주변둘레로는 소형 석관들이 분포하는 규칙성이 관찰된다. 무덤의 발전단계에 따라 장법과 두향도 함께 변하며 동일단계 같은 형식의 무덤

- 15) 적석총은 석재를 쌓아 만든 특수한 형태의 무덤양식으로 내부에는 다수의 묘실이 존재한다. 내부 묘실은 積石墓, 石板墓, 石棺墓, 石砌墓, 豎穴土壙墓, 土坑豎穴石棺墓, 積石石棺墓 등으로 구분되며 구조는 그 명칭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재 중국학계에서 통용되는 홍산문화 시기 적석총의 형식 분류는 먼저 외관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적석묘와 적석총으로 구분하며 다시 묘실의 내부구조 차이에 따라 토갱수혈묘, 토갱수혈석관묘, 적석석관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적석묘와 적석총을 구분하는 기준과 설명은 명확하지 않은데, 다만 다수의 무덤이 집합되어 있는 점을 적석총의 특징으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華玉冰·楊榮昌, 1998, 「紅山文化墓葬剖析」, 『靑果集-吉林大學考古學系十周年紀念文集』吉林大學考古系編, 知識出版社, 35~36쪽) 적석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소규모의 무덤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지칭하는 적석묘는 무덤 상부에 단독의 적석묘역 혹은 적석퇴를 가지며 그 하부에 1개의 묘실만 있는 것을 말한다. 적석총은 하나의 묘역 내에 다수의 묘실이 집합된 대형 무덤을 지칭하기로 한다. 또한 적석묘 혹은 적석총 내부의 묘실은 구조와 축조방법에 따라 구덩식의 묘실만 있는 토갱형, 판석을 쌓거나 세운 석관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정리했으며, 이 글에서는 지면상의 한계 및 원보고서와의 내용 혼동을 고려해, 보고서의 기술방식 및 명칭을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다.



〈그림 1〉 홍산문화 옥기(1·3~5·7·8·13·16~18. 우하량 / 2. 삼성타랍 / 6·11·12. 호두구 / 7·9·10·19·20. 나사태 / 14. 요녕성박물관 소장 / 15. 동산취 / 21. 우하량 16지점 4호

들은 장법과 두향이 같다. 총 내 중심부에는 대형의 무덤을 안치하며 중·소형 무덤들은 주변부 혹은 지세가 낮은 곳에 배치됐다.<sup>16)</sup>

적석총 상부구조의 변화 과정을 보면 평면 형태가 원형에서 방형으로, 소형에서 대형, 채도통형기(彩陶筒形器)를 무덤 외곽에 둘러놓은 형태에서 석재를 쌓아 올리는 석벽 형태로 변화된다. 총 내부의 석관 역시 토광벽에 석재를 둘러세우는 간단한 구조에서 다듬어진 석재를 규칙적으로 쌓아올리는 형태로 변화한다. 대형 석관들은 대부분 묘광을 깊이 파고 지하에 조성하는데 중심묘의 경우 묘광벽면으로 계단식의 대를 설치했다. 바닥은 맨바닥에서 석관을 까는 형태로 발전되며, 부장품 역시 소량에서 대량으로, 토기·석기 혹은 석기와 옥기가 공반되던 것이 ‘유옥위장(唯玉爲葬)’의 특징으로 변화한다.<sup>17)</sup>

옥기는 적석총에서 출토되는 가장 특징적인 유물이다. 대부분의 후기단계

16) 郭大順, 2005, 『紅山文化』, 文物出版社, 54쪽.

17) 華玉冰·楊榮昌, 1998, 앞의 책, 37쪽.

〈표 1〉 흥산문화 적석총 단계별 출토 유물

구분	유적	토기	석기	옥기	기타
토광묘	남태자M1	'之'자문관 2, '之'자문관편 1	석부 1, 석분 1, 삼각형마제석기 1		뼈송곳 2 개 이상
	남M13	'之'자문관 3, 관 1, 발 1	석부 1, 석산 1, 갈판·갈돌 1		뼈송곳 1
단계	백음장한M22	토기편 1			
	백M23	채도편 1			
적석묘	백M15	삼죽기 1			
	남M7		석착1	옥걸2	패각
	우하량 2Z4M5	쌍이채도관 1			
	우2Z4M6	쌍이채도관 1			
	우2Z4M7	쌍이채도관 1, 발 1			
	우2Z4M8	홍도관 1, 흑도절복반 1		마제형옥통기(고형기) 1	
	우2Z4M9			마제형옥통기(고형기) 1	
	우5ZCZ1M7			옥탁 1	
	우16하2M1			삼련벽 1, 쌍련벽 1, 옥벽 1, 옥환 2	
적석총	홍격력도		석걸 1, 석관 3, 석부 1, 석관형식 2	옥걸 8, 옥비 1, 옥부 1, 옥석료 1	토제인 면식 2
	우2Z1M4			옥고 1, 옥조룡 2	
	우2Z1M7			옥환 2, 옥벽 2	
	우2Z1M11			옥환 1, 옥봉형기 1, 방형옥식(벽) 1	
	우2Z1M14			구운형기 1, 옥환 2	
	우2Z1M15			옥고 1, 옥환 3, 옥벽 1	
	우2Z1M17			쌍인수삼공옥식 1	
	우2Z1M21			능형식 1, 구운형옥패 1, 쌍련벽 2, 옥고 1, 옥귀 1, 죽절상기 1, 수면옥패 1, 옥탁 1, 옥벽 10	
우2Z1M22			옥고 1, 수면옥패 1, 옥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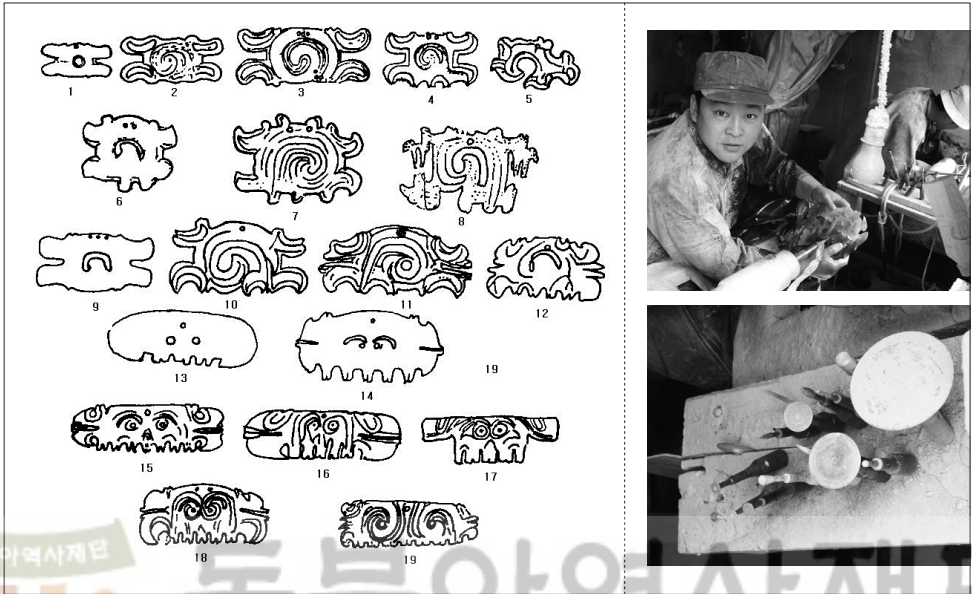
구분	유적	토기	석기	옥기	기타
적석총 단계	우2Z1M23			녹송석추식 1, 옥월 1, 조수문옥패 1, 옥탁 1	
	우2Z1M24			복실(여): 옥탁 1, 구운형옥패 1 남실(남): 옥탁 1	
	우2Z1M25			옥주 2, 옥고 2, 옥탁 2, 사구관상식 1	
	우2Z1M26			사구관상식 1, 쌍효옥패 1, 옥탁 1, 옥식 1	
	우2Z2M1				인골, 돼지 · 소뼈
	우2Z2M2			옥탁 1	
	우2Z4M14			옥환 2	
	우2Z4M15			마제형옥통기(옥고형기) 2, 옥환 2, 마제형옥괴 1	
	우3M3			옥벽 1, 옥환 1, 옥탁 2	
	우3M7			옥고형기 1, 옥탁 1, 관주 1,	
	우3M9			옥탁 1, 철현문옥식 1	
	우5Z1M1			옥벽 2, 고형고 1, 구운형옥패 1, 옥탁 1, 옥귀 2	
	우5Z2M2	채도관 1점		옥추식 1, 옥탁 2	
	우5Z2M3			옥탁 1	
	우5ZM9			옥괏 1	
우16M1(79)		석추형기 3	저두형옥식 1		
우16M2(79)			구운형옥패 1, 옥환 3, 마제형옥고 1, 옥월 2, 죽절상옥식 1, 옥조 1		
우16M4			옥봉 1, 사구통형기(고형기)1, 옥탁 1, 옥인 1, 옥환 2, 녹송석추식 2		
우16M14		편조상세석기 1	옥저륜, 옥탁, 옥벽, 옥환, 사구통형기 등 7점		
우16M15			옥환 1, 옥결 1, 수면옥패 1		

구분	유적	토기	석기	옥기	기타
적석총	호두구M1(73)			구운형패식 1, 옥귀 2, 옥효 2, 옥조 1, 옥벽 1, 옥환 1, 옥주 3, 봉형옥 4	
	호M3-3			어형추 1	
	호M3-4			삼련벽옥 1	
단계	호M3-5			어형추 1	
	호M7(93)			옥환 1	
	초모산제단				석상
	초M1		석환	옥벽 1	
	초M7			옥환 1	뼈피리 1

무덤에서는 토기와 석기를 부장하지 않으며, 옥기만 부장한 경우가 많다. 토기와 석기가 확인되는 무덤들은 대부분 전기단계의 무덤들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서이다. 이러한 현상은 홍산문화의 유옥위장이라는 특수한 장속(葬俗)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적석총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적석총에서 출토된 옥기의 종류에는 옥저룡(玉猪龍), 옥조(玉鳥), 옥효(玉珧), 구운형기(勾雲形器), 고행기(箍形器), 옥환(玉環), 옥탁(玉鐲), 옥결(玉玦), 옥벽(玉璧)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우하량 2지점 1호총 21호묘에서는 모두 20점의 옥기가 출토되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많다. 옥기의 종류와 위치를 보면, 정수리 위쪽에서 능형식 1점, 왼쪽 어깨 부근에서 구운형옥패 1점, 오른쪽 어깨 부근에서 관고상기 1점, 쌍련벽 2점, 정수리 부근에서 고행기 1점, 흉부 오른쪽에서 옥귀 1점, 하복부에서 죽절상기 1점, 복부 정중앙부에서 수면옥패(獸面玉佩) 1점, 오른쪽 팔목에서 옥탁 1점, 발과 양손, 귀 등에서 옥벽 10점 등이 출토됐다.

우하량 2지점 4호총 8~9호에서는 옥고행기 1점씩이 출토됐다. 이외에 7호에서는 통형기 상부에 발이 덮여진 채로 발견됐고, 8호에서는 옥고행기 1점과 함께 홍도관, 흑도 절복반 등이 확인됐다. 우하량 2지점 4호총 8호는 지금까지 조사된 홍산문화기 무덤 중 완형의 토기와 함께 옥기가 출토된 유일한 예에 해



〈그림 2〉 홍산문화 구운형 옥기(좌)와 옥가공 도구(우상,하)

당한다.

우하량 16지점 4호(중심대묘)에서는 옥봉 1점, 고휘기 1점, 옥탁 1점, 옥무인(玉巫人) 1점, 옥환 2점, 녹송석추식 2점이 출토됐다. 이 중 옥무인은 길이 18.5cm, 두께 2.34cm 정도로 두 손을 들어 가슴에 대고 있다. 이 옥기는 홍산문화의 샤먼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무속계층의 존재를 유추하고 있다.<sup>18)</sup>

옥기는 생김새와 부장 위치에 따라 용도 및 상징성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 옥무인과 봉형옥 등은 그 생김새만 보아도 일반 장식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와 구름을 형상화한 모양의 구운형패식은 주로 머리나 가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고대 샤머니즘과 관련된 신기(神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권과 왕권의 결합된 신물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9)</sup> 지금까지

1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8b, 앞의 글, 10~12쪽.

발견된 구운형패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0)</sup> 첫 번째는 중앙에 원형으로 돌아가는 구운(勾雲)이 존재하고 사변으로 고리가 뺀어나온 형식이다. 두 번째는 중앙에 올빼미의 얼굴을 닮은 모양으로 조각하고 양변에는 날개를 형상화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형식 간에는 발전·변화 양상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구운형에서 중앙 하부에 몇 개의 돌기가 생기며, 양변의 고리들이 점차 새의 날개를 닮은 형태로 변화해 간다. 마치 올빼미가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러한 형태는 크기가 작은 새 모양의 장식품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결국 해와 구름, 새 등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늘을 상징하는 해와 구름 그리고 사자(死者)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모셔가는 사자(使者)로서의 새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견되는 옥기들은 모두 투섬석연옥(透閃石軟玉)으로 요동반도 남부의 수암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질과 같다. 현재 수암지역은 현(縣) 전체가 옥기 생산을 주산업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옥기의 생산 및 유통이 발달해 있다. 수암의 옥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든 매장량 및 품질, 예술성 등에 있어 최고로 평가받을 정도로 우수하다. 수암지역을 답사할 당시 현지의 전문 옥장인들이 옥기를 가공하는 과정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옥기 가공 과정에는 상당한 정성과 시간이 소요됐다. 홍산 옥기의 고운 자태와 빛깔은 당시에 이미 옥기 가공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전문 장인이 존재했음을 전해준다.

옥기 중심의 부장 양상은 우하량을 비롯한 홍산문화 후기단계 적석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묘실에 부장된 옥기의 수량과 질적 등급은 해당 무덤의 등급화를 결정짓는 주요한 지표

19) 唐玉萍, 2006, 「紅山文化特殊類玉器的宗教內涵探析」, 『紅山文化研究』, 316쪽.

20) 呂軍, 1998, 「紅山文化玉器研究」, 『青果集 - 吉林大學考古系建系十周年紀念文集』, 知識出版社, 58쪽.

로 작용하며, 여기에는 피장자의 생전 사회적 지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옥기 부장은 최상급이지만 무덤의 구조나 규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덤의 구조와 부장 옥기의 등급이 피장자의 정체성(신분 혹은 직업)과 관련해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참고할 수 있다.<sup>22)</sup> 더불어 무덤의 규모와 옥기 등급의 대응관계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구축한다면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계층화 현상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23)</sup>

홍산문화의 제단 및 제의 관련 유적으로는 동산취 유적과 우하량 13지점의 대형 건축물, 우하량 2지점의 원형 제단(3호), 우하량 5지점의 방형 제단 및 우하량 1지점의 여신묘 등이 대표적이다. 동산취 유적의 원형 제단에서는 약 80cm 깊이의 붉은색 소토면(燒土面)상에서 인골 한 구가 발견됐다. 인골은 두 개골과 다리뼈 양쪽이 두 개의 석판 위에서 발견됐는데, 명확한 묘광이 없었다. 인골의 가슴과 복부에는 붉은색과 검은색의 토기편이 덮여 있었고 복원된 1점은 흑색의 발(鉢)이었다. 우하량 2지점의 원형 제단에서는 상부의 표층 적석 내부에서 부장품 없이 인골 3구가 발견됐다. 또한 우하량 5지점의 방형 제단에는 간골장된 인골 4구가 있었다. 역시 부장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하량 13지점에는 지름이 100m가량 되는 대형의 제단식 제단이 발견됐다. 중심부인 향토구릉의 지름만 60m가량 되는데, 그 상층부에서 인골이 출토됐고 부장품과 묘광의 흔적이 없었다. 1지점의 여신묘는 13지점의 대형 건축물과 직선상으로 마주본다. 여신묘야말로 제의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사·종교의례의 대표적 장소이다. 여신묘는 주실과 부실로 나뉘며 내부에서는 인물 소상과 동물 조각상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인물 및 동물 소상들은 여신묘 외에 기타

21) 華玉冰·楊榮昌, 1998, 앞의 글; 郭大順, 2005, 『紅山文化』, 文物出版社; 熊增龍, 2005, 『紅山文化墓葬制度及相關問題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張興德, 200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2) 이청규, 2010,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요서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72~77쪽.

23) 이청규, 2010, 위의 글, 77쪽.

제단 유적에서도 발견되는데, 동산취와 여신묘에서는 실제 사람 크기 및 3배 이상이 되는 것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임신한 여성의 특징을 부각시킨 조각상은 대부분 목이 없는 상태로 출토됐고, 초모산 2지점의 방형 제단에서는 남자의 얼굴을 묘사한 석재조각 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상 제단 및 제의 관련 시설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장구(無葬具), 무부장품(無副葬品)의 인골과 인물 및 동물 소조상 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골의 경우 인근에 묻혀 있는 적석총의 주인들과는 다르게 매우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적석총의 주인들을 당시 사회의 특수한 신분, 높은 계층의 사람들로 해석한다면, 이처럼 제단 시설 하부에 간단하게 매장된 인골들은 아마도 당시 사회의 제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당시 사회는 이미 적석총과 같이 거대한 무덤에 진귀한 옥장식품을 함께 부장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반면 제의행사에 희생되는 하급계층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2\_ 연구성과 검토

요서지역 적석총에 관한 전문연구는 1970년대 초 발견된 호두구 유적을 통해 시작됐다. 연구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보고서 후미에 유적의 간략한 특징과 성격을 언급하는 데 그쳤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 지역 적석총의 구조와 특징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다. 가오메이쉬안[高美璇], 귀다이순[郭大順], 화위빙[華玉冰], 양룽창[楊榮昌] 등은 초기 연구의 대표자들이다.

1989년 발표된 가오메이쉬안의 「시론홍산문화묘장(試論紅山文化墓葬)」<sup>24)</sup>에서는 홍산문화의 무덤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당시까지 발표된 호두구, 우하량, 동산취 유적 등의 자료를 종합해 형식과 구조, 장식과 장속 방면의 몇 가지 특징을 시론적으로 분석했다.

1990년대 말 연이어 발표된 귀다이순과 화위빙, 양룽창 등의 논문은 이후

24) 高美璇, 1989, 「試論紅山文化墓葬」, 『北方文物』 8.

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 영향을 준다. 특히 귀다이순은 동산취와 우하량 유적을 발굴한 당사자로서 발굴자료를 근거로 무덤의 규모·위치·구조·부장품 종류와 수량 등을 기준삼아 무덤의 등급을 중심대묘(中心大墓), 대계식묘(臺階式墓), 갑류석관묘(甲類石棺墓), 을류석관묘(乙類石棺墓), 부속묘(附屬墓) 등 5개로 구분했다.<sup>25)</sup> 중심대묘는 각 적석총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묘광이 깊고 사방으로 계단식 대(臺)가 존재한다. 석관의 규모가 가장 크며 부장된 옥기의 종류가 많고 고급품종이다(우하량 2지점 2호총 1호묘). 대계식묘는 중심대묘 다음 등급으로 묘광의 한쪽에만 대계(臺階)를 설치한다(우하량 2지점 1호총 25·26호묘). 갑류석관묘는 옥기가 수장된 중·소형 석관묘로 옥기 수장 정도에 따라 다시 3등급으로 나뉜다. 을류석관묘는 옥기는 없으나 석관을 신경 써서 만든 경우이며 부속묘는 총 혹은 제단 정상부, 총 바깥쪽에 소형의 토갱묘를 두는 것으로 대부분 부장품이 없다.

적석총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분류는 화위빙과 양룽창의 연구<sup>26)</sup>에서 보다 체계화된다. 먼저 무덤 간 조합방식, 통형기(筒形器)와 묘·제(墓祭)의 변화관계 등을 분석해 분기와 등급을 나누었다. 특히 외관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적석묘와 적석총으로 구분했고 내부구조의 차이에 따라 토갱묘와 석관묘로 다시 구분했다. 또한 적석총의 구조는 다시 무덤시설(墓)과 제사 시설(祭)로 구분하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묘·제의 내용과 축조방식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각 무덤들 간 시설물이 서로 중복 교차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시설물들은 무덤 본래의 구조물에서 벗어나 제단적 성격을 가진 묘·제 시설로 발전한다. 적석총의 묘·제 시설은 전체 묘역의 범위를 나타내며 사자(死者)의 특수한 신분을 말해주는데 모두 4식으로 구분한다. 1식은 원형의 석권(石圈) 구조이며 제사와 관련된 시설로 남태자 7호와 백음장한 5호<sup>27)</sup>

25) 郭大順, 1997, 「紅山文化的唯玉爲葬與遼河文明起源特征再認識」, 『文物』 8.

26) 華玉冰·楊榮昌, 1998, 앞의 책.

27) 백음장한 5호의 경우 발굴보고서가 출간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홍산문화 전기의 적석총 유적으로 인식됐으나, 보고서 출간을 통해 홍룡와문화기의 무덤으로 밝혀졌다(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4, 『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

를 대표로 한다. 2식은 통형기권(筒形器圈)이며 우하량 2지점 4호층의 하층 남부에 위치한 무덤들이 대표적이다<sup>28)</sup>. 3식은 원형 석단(石壇)과 그 상부에 배열된 통형기권의 조합으로 우하량 2지점 3호층과 호두구 1호묘 상부의 돌담 시설과 통형기권을 대표로 한다. 4식은 방형의 묘계(方形石框墓界)와 방형 제단으로 우하량 2지점 1호·2호·4호층 등에서 확인된다. 위에서 분류된 4형식의 제사 시설은 순차적으로 발전 관계를 가지며 1식 석권형(石圈型) - 2식 통형기권 - 3식 원형석단 - 4식 방형묘계 등의 순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고 새롭게 발표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는 정도이다.

2000년대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적석총 관련 연구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됐다. 특히 홍산시기의 무덤구조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발표됐고 나아가 요동반도와의 연관성과 계승관계를 다룬 시론적 연구가 등장했다.

뤼쉐밍[呂學明]과 쑹펑룽[熊增瓏]은 홍산문화의 무덤구조를 주제로 하여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길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다. 뤼쉐밍<sup>29)</sup>은 귀다이순과 화위빙 등의 분류방안을 기초로 홍산시기 적석총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1 유형은 남태자, 백음장한 유적을 대표로 하며 대부분 부장품이 없고 일부 소량의 일상용기와 소형 장식품 등이 확인된다. 제2 유형은 우하량 유적을 대표로 하며 모두 수장급 이상의 무덤으로 해석했다. 또한 무덤과 제사 시설의 변천 과정에 대해 3단계의 발전 과정을 제시했고 이를 사회계층의 등급화 과정으로 보았다. 1단계는 1유형에 해당하며 기본 묘제는 토갱묘와 토갱석관묘 등이 있다. 이 단계의 제사 시설은 자연 언덕이나 무덤 상부에 퇴

發掘報告書』, 科學出版社, 7~15쪽).

28) 高美璇은 우하량 16지점의 무덤들 중 1979년에 조사된 3기 무덤 상부에 1층의 燒土층이 있고 그 상부로 통형기 잔편이 대량 산포되어 있는 점, 호두구 유적의 원형 돌담 시설부 중앙 아래에 깔려 있는 1층의 통형기 잔편층 등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보았다(高美璇, 1989, 앞의 글; 華玉冰·楊榮昌, 1998, 위의 글, 38쪽).

29) 呂學明, 2000, 『紅山文化墓葬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적된 석재 혹은 원형의 돌담 시설 등이 확인된다. 2단계는 제2 유형의 우하량 1단계이며 우하량 2지점 4호층 하층 남부의 통형기묘와 우하량 5지점 중층무덤 등을 대표로 한다. 제사 시설은 제사갱(祭祀坑)과 통형기권으로 나타난다. 3단계는 제2유형의 우하량 2단계로 각 지점의 대형 적석총과 제단 시설을 대표로 한다. 이에 이르면 제사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제단과 신묘(神廟)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제사의기가 출현하고 단·묘·총 결합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중심무덤의 등장으로 일인 독존현상이 나타나며 여신묘와 거대 적석총 그리고 중심무덤의 존재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총괄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승정룡<sup>30)</sup>은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발표되는 자료를 분석해 뤼쉐밍의 연구를 한층 더 진전시켰다. 그는 홍산문화 무덤양식의 기원에 대해 홍릉와문화기 백음장한 유적의 적석석관묘로 보았고 기존 연구에서 홍산문화기 무덤으로 분류하던 백음장한 5호를 홍릉와문화기로 재설정했다. 무덤의 유형 및 구조에 대해서는 화위빙과 뤼쉐밍의 분류안을 수정 보완한 정도이다. 무덤의 분기에 대해서는 2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전기는 남태자, 백음장한 유적의 토갱묘와 적석석관묘를 대표로 하며 이는 다시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에는 무덤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2단계에 토갱묘가 등장하며, 3단계에 들어서 적석석관묘(적석총)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기는 다시 2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는 뤼쉐밍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텐광린[田廣林]과 쉬쯔핑[徐子峰]은 우하량 유적의 성격에 대해 비교적 심도 깊게 분석했다. 먼저 텐광린<sup>31)</sup>은 우하량 유적의 성격을 문화공동체 공동의 조상을 숭배하는 성지로 보았다. 적석총이 일반적으로 산이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것은 신성한 산은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천신과 산신, 조상신의 개념이 모두 부과된 통일화된 합일체가 바로 여신묘라고 설명했다.

30) 熊增龍, 2005, 『紅山文化墓葬制度及相關問題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31) 田廣林, 2004, 「紅山文化“壇·廟·塚”與中國古代宗廟·陵寢的起源」, 『史學集刊』 2.

쉬쯔펑은 홍산문화의 사회는 이미 계급화됐으며 왕급 존재의 출현을 제기했다.<sup>32)</sup> 홍산문화는 자연숭배 색채의 제의 시설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시설은 홍산문화 당시의 농업 발달 정도를 표현하며 그 증거로 발달된 농구류의 출토를 제시했다. 또한 원시농업의 존재와 발전, 천지의 은사(恩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우하량 일대의 건조하고 부족한 강수량 등의 자연조건은 농업에 불리했다. 비를 바라고 농사의 풍요를 비는 제사활동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 유적이 산정부에 위치하고 방·원 형태인 것은 제천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우하량 유적은 서로 다른 씨족들 간의 공동 제사활동 지역 이기에 무덤에서 확인되는 묘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 란펑수[蘭豐實]<sup>33)</sup>는 요서와 요동지역 적석총의 특징과 구조, 연대 등을 비교 분석해 요동반도의 적석총은 입지, 형태와 배열방식, 내외 구조 방면에서 요서지역과 유사점이 발견되어 전승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홍산시기 적석총 내부에 존재하는 석관 구조는 단계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요동지역 적석총에 계승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의 주된 견해는 홍산문화의 적석총이 유행한 시기는 약 5500~5000년 전 사이이며 요동반도의 적석총은 약 4600년 전에 시작된다. 현재 요동반도의 적석총은 해당 지역에서 기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원을 요서지역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요서지역의 적석총 연구는 대부분 홍산시기 무덤의 구조 및 당시의 사회성격을 추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 이 지역에서 적석총문화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나 그 기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아마도 초기단계의 유적이 발굴된 사례가 매우 드문데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관련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한편 그동안 중국학계에서는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출현 시점을

32) 徐子峰, 2005, 「牛河梁紅山文化積石塚探析」, 『中央民族大學學報』 2.

33) 蘭豐實, 2006, 「論遼西與遼東南部史前時期的積石塚」, 『紅山文化研究－2004年紅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홍산문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백음장한 유적 발굴 보고서를 통해 이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이 홍룡와문화에 있음이 밝혀졌으며 그 상한연대는 약 8000년 전 이상으로 측정됐다.<sup>34)</sup> 주목되는 것은 백음장한 유적에서 발굴된 홍룡와문화기 적석묘(총)의 기본구조는 홍산문화 전기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양자 간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함을 상기할 때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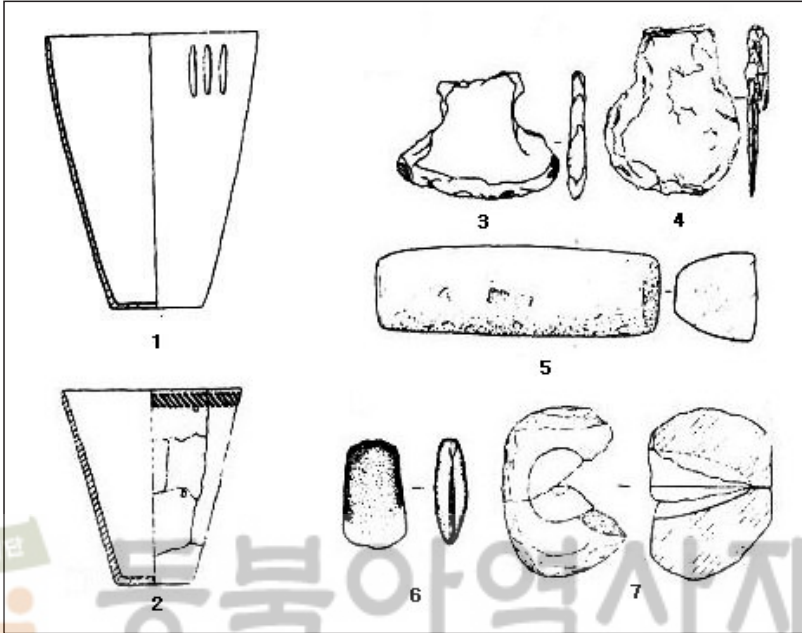
### Ⅲ. 기원과 출현 배경

중국 동북지역에서 적석총문화가 꽃피울 당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거석기념물이 출현한다. 거석문화로 총칭되는 이들 적석총·고인돌·석관묘·선돌 등은 모두 자연 상태의 돌을 인공적으로 가공해 축조한 원시 형태의 석조건축물을 말한다. 거대한 규모의 석조건축물을 축조하는 과정에는 상당수의 노동력과 경제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쉽지 않은 대역사(大役事)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출현 배경에 대해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정착민들이 외부세력들과의 문화적 대응 과정에서 단위 사회집단의 영역 표시 일환으로 거석묘를 세웠다는 견해가 있어 참고할 수 있다.<sup>35)</sup>

이 장에서는 요서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 유행한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출현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과 그러한 사유체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시론적 검토이다.

34)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4, 앞의 책, 15~18쪽.

35) Renfrew, C., 1976, Megaliths, territories and population, In de Laet, S. J. (ed) *Aculturation and Continuity in Atlantic Europe*, Dissertiones Archaeologicae Gandenses X VI, pp. 298~320; Kinnes, I. A., 1982, Les Fouaillages and megalithic origins, *Antiquity* 56, 24~30; 이성주, 2000, 「거석묘: 농경사회의 기념물」, 『韓國 支石墓 研究 理論과 方法-階層社會의 發生-』, 주류성, 160~161.



〈그림 3〉 소하서문화 토기 및 석기류

1·5·7. 백음장한 유적, 2·3·4·6. 사해 유적

## 1\_ 요서지역의 신석기문화

요서지역 고고학문화의 범위는 서요하(西遼河)와 대릉하(大凌河), 연산(燕山) 및 그 남쪽에서 발해만(渤海灣)까지를 포함하며 행정구역상 내몽고 동남부의 적봉시, 철리목맹(哲里木盟), 길림성 서남부의 백성(白城)과 사평(四平) 남부, 요서의 조양(朝陽), 부신(阜新), 금주(錦州) 및 허북 동북부의 승덕(承德), 당산(唐山), 낭방(廊房)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sup>36)</sup>

36) 楊虎, 1994, 「遼西地區新石器-銅石並用時代考古學文化序列分期」, 『文物』 5, 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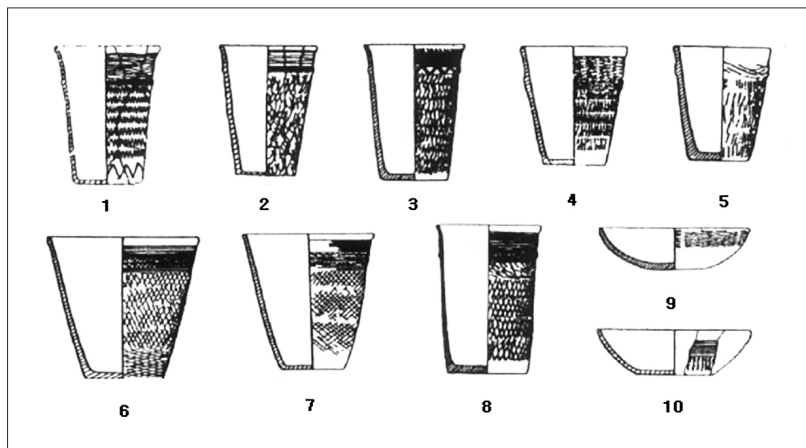
요서지역 최초의 신석기문화는 소하서문화(小河西文化)로 절대연대는 약 8200년 전 이상이다.<sup>37)</sup> 유적의 주요 분포범위는 서랍목문화와 노합하 일대이며 지금까지 모두 40여 곳의 유적이 발견됐다. 당시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을 위주로 생활했는데, 소하서문화에서 처음 출현한 골석 복합용구는 당시의 생산력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하서문화 다음에는 흥륭와(興隆窪), 조보구(趙寶溝), 홍산(紅山), 소하연(小河沿) 문화 등이 약 8200년 전에서 4400년 전까지 이어지며 이외에 서랍목문화 이북의 부하(富河)문화와 연산 남록의 상택(上宅)문화가 지역을 달리하며 발전했다. 당시에 유행한 토기 형식은 평저의 통형관(筒形罐) 위주이며 문양은 압인 ‘之’자문을 보편적으로 시문했다. 같은 시기 요동지역에서는 착인·각획문(戳印·刻劃紋)이 유행하고 길림의 송늪(松嫩)평원에서는 부가퇴문(附加堆紋)이, 흑룡강의 삼강(三江)평원에서는 곤압문(滾壓紋) 등이 유행했다. 이러한 양상을 황하 유역의 승문(繩紋)과 채도 및 화북지역의 타날기법과 비교된다. 또한 토기의 기형에 있어서도 중원지역에서는 관형(罐形)의 삼족기, 권족발(圈足鉢), 원저발(圓底鉢), 우(盂), 지각(支脚) 등이 유행했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러시아 북서부지역에서는 뾰족밑 계통의 토기가 유행하는 등 지역적 차이도 뚜렷하다. 여기에서는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을 탐색하기에 앞서 당시 중원 및 다른 지역과는 명확하게 구분됐던 요서지역 신석기시대 문화양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흥륭와문화

1983~1984년 내몽고 오한기(敖漢旗) 보국토향(寶國吐鄉) 흥륭와 유적을 발굴하면서 명명됐다.<sup>38)</sup> 유적의 분포범위는 북쪽으로 서랍목문화를 지나고 남쪽은

37)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4, 앞의 책; 素秀芬, 2005, 「小河西文化初論」, 『考古與文物』 1; 楊虎·林秀貞, 2009, 「內蒙古敖漢旗小河西遺址簡述」, 『北方文物』 2.

3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5, 「內蒙古敖漢旗興隆窪遺址發掘



〈그림 4〉 흥륭와문화유적 출토 토기류

1·2. 사해, 3·8. 흥륭와, 4·7·9. 백음장한, 5·10. 동채, 6. 남태자

발해와 연산 이남의 난하(灑河) 상류 및 구하(洶河) 유역, 동쪽은 의무려산을 경계로 하며 서쪽은 대흥안령까지이다. 유적의 중심 분포지역은 서랍목문하와 노합하(老哈河), 대릉하 상류 그리고 교래하(敎來河) 유역 일대이다. 주요 발굴 유적으로는 부신 사해<sup>39)</sup>, 임서현 백음장한, 극십극등기 남태자, 오한기 흥륭구 유적<sup>40)</sup> 등이 있다. 이상의 유적에서 확인한 문화양상 및 연대 등은 동질성이 강해서 동일한 고고학문화로 볼 수 있으나 지역과 시기적 차이에 의한 개별적 발전관계가 존재한다. 흥륭와문화의 절대연대는 약 8200~7400년 전 사

簡報, 『考古』 10.

3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8, 「阜新查海新石器時代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遼寧阜新查海遺址 1987~1990 三次發掘」, 『文物』 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查海—新石器時代聚落遺址發掘報告』, 文物出版社.

4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敖漢旗博物館, 2000, 「內蒙古敖漢旗興隆溝新石器時代遺址調查」, 『考古』 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第一工作隊, 2004, 「內蒙古赤峰市興隆溝聚落遺址 2002-2003 年的發掘」, 『考古』 7.

이다.<sup>41)</sup>

홍룡외문화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모래가 섞인 황갈색이며 기벽이 두껍다. 대부분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무덤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토기 기형은 비교적 간단하다. 통형관 위주로 발(圓底鉢)과 완(圈足碗) 등이 소량 확인된다. 문양은 교차문과 ‘之’자문이 많고, ‘人’자문과 승석문(繩蓆紋), 현문(弦紋) 등이 있다. 통형관은 구연부가 이중구연이며 상부 3분의 1 정도 위치에 용기문을 돌렸다. 용기문은 제작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동체와 구연을 따로 만들어 덧붙이기 위한 덧띠로 추정된다.<sup>42)</sup>

홍룡외문화 토기의 문양은 3단계의 발전 과정을 보인다. 1단계는 교차문과 평행단사선문이 유행하며, ‘之’자문은 출현하지 못했다. 2단계는 교차문이 발전해 ‘之’자문이 형성된다. 문양을 시문할 때 양 끝점을 누른 자국[支點窩]이 명확한 것이 특징적이다. 2중구연과 용기문이 선명하며, 부위별로 여러 가지 문양을 함께 시문한다. 3단계는 단순 ‘之’자문 단계로 교차문과 사선문이 없어지고, 전단계에 비해 문양의 간격이 넓고 불규칙해진다.

홍룡외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요서지역에서 최초로 원시농경의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음장한 유적에서 확인한 환호취락을 통해 볼 때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했음도 알 수 있다. 이외에 수렵과 관련된 세석기가 발달했고 사해 유적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옥기가 출토되기도 했다. 환호의 평면 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이며 주거지는 열을 지어 분포한다. 대형 주거지는 140m<sup>2</sup>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방형 위주의 40~30m<sup>2</sup> 전후이다. 홍룡외 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출입구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사다리를 두고 지붕으로 출입을 하는 수렵 민족의 특징과 유사하다. 사해 유적과 백음장한 유적에서는 주거지내 출입시설이 존재한다. 또한 유적 내에서는 돼지머리에 구멍이 뚫린 형태가 자주 발견되어 제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97, 「內蒙古敖漢旗興隆窪聚落遺址 1992年發掘簡報」, 『考古』 1.

42) 郭大順·張星德,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119~120쪽.

홍릉와문화의 무덤은 거실묘(居室墓)와 적석묘의 두 가지 형태가 발견됐다. 먼저 거실묘는 홍류와 유적과 사해 유적에서 확인됐다. 묘주인이 생활하던 주거지 한쪽에 구덩이를 파서 사람과 돼지를 함께 묻는 형식이다. 주거지 모두에서 거실장이 발견되지는 않으며 유적군 혹은 주거지열의 중심부에 위치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거실묘 내에서는 일반 생활용기인 토기류와 석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옥과 조개껍질로 만든 장식품 위주로 수장됐다. 백음장한 유적에서는 상부에 적석시설을 하고 하부에는 석관 혹은 구덩식의 묘실을 둔 적석묘가 발견됐다. 또한 백음장한과 남태자 유적의 주거지 중앙에는 석관을 세운 노지가 특징적이며 홍릉와 유적 등의 구덩식 노지와 비교된다. 사해 유적의 중심부에는 소광장이 존재하는데 그 내부에는 붉은색의 석재를 쌓아서 토룡(土龍) 형태의 적석시설을 두었다. 길이는 19.6m 정도이며 토룡 형태의 적석시설 남쪽에는 무덤과 제사갱이 분포해 있다.

요서지역의 홍릉와문화는 서북부의 백음장한 유형, 동남부의 사해 유형(홍류와 유적과 사해 유적을 포함), 남부는 연산남 유형(상택 유적 제8층) 등으로 구분된다. 소위 말하는 홍릉와문화의 남태자 유형은 백음장한 유형의 전신 유형이다. 양자 간 분포범위가 일치해 남태자 유형은 백음장한 유형에 귀속시킬 수 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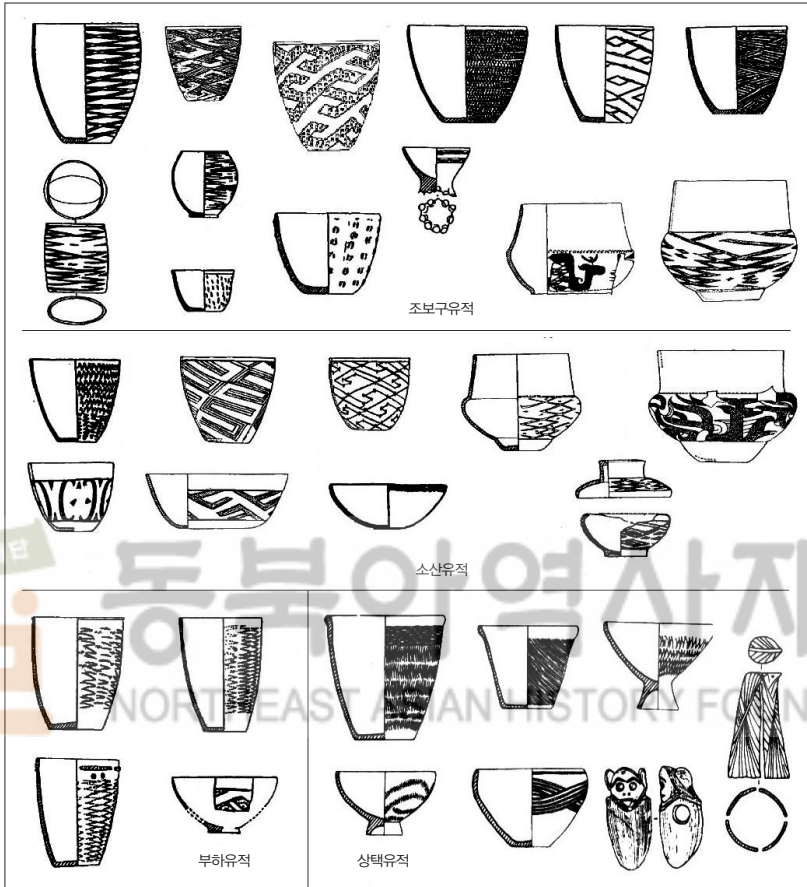
## 2) 조보구문화

1986년 오한기 고가와포향(高家窩鋪鄉) 조보구 유적을 발굴해 명명됐다.<sup>44)</sup> 유적의 분포범위는 내몽고 동남부, 요녕 서부와 하북 북부 일대, 연산 북쪽의 서랍목륜하와 노합하, 교래하, 대릉하 유역 등이며 홍릉와문화보다 동쪽으로 치

43) 索秀芬·郭治中, 2004, 앞의 글, 97~98쪽.

4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8, 「內蒙古敖漢旗趙寶溝一號遺址發掘簡報」, 『考古』 1.

4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9, 「內蒙古敖漢旗小山遺址」, 『考古』 6.



〈그림 5〉 조보구문화 관련 유적 출토 토기

우쳐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주요 유적은 오한기 소산(小山)<sup>45)</sup>, 남태지(南台地)<sup>46)</sup>, 웅우특기(翁牛特旗) 소선덕구(小善德溝)<sup>47)</sup>, 백음장한, 수천(水泉)<sup>48)</sup>,

46) 敖漢旗博物館, 1991, 「敖漢旗南台地趙寶溝文化遺址調查」, 『內蒙古文物考古』1.  
 47) 劉晉詳, 1989, 「翁牛特旗小善德溝新石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監(1988年)』, 文物出版社.  
 48) 索秀芬·李少兵, 1994, 「林西水泉新石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監(1992年)』, 文物出版社.

극십극등기 남태자, 상점(上店)<sup>49)</sup>, 통요시(通遼市) 대심타랍(大沁他拉) 유적<sup>50)</sup> 등이 있다. 조보구문화는 각 지역별로 문화발전 양상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시기적 차이 이외에 지역적 차이로 인한 지방형식으로 모두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래하 유역의 조보구 유형, 대릉하 유역의 소산 유형, 서랍목륜하 유역의 소선덕구 유형, 난하 유역의 서채 유형 등이다.<sup>51)</sup>

조보구문화의 토기는 황갈색의 협사(夾砂) 위주로 소량의 이질(泥質) 홍도(紅陶)가 포함된다. 기형에는 구연부에 붉은색의 띠가 돌아가는 발(鉢)이 많고, 권족기(圈足器), 토기 덮개, 상부는 통형관이며 하부는 발의 형태인 존형기(尊形器) 등이 출현한다. 문양은 압인(壓印) 혹은 각화(刻畫)된 ‘之’자문을 간격이 좁게 가로 방향으로 정갈하게 시문했다. 또한 기하문이 유행하는데, 종류에는 직선과 절형(折形)이 있고 직선에는 능형문이 대표적이며 절형문은 ‘ㄷ’형과 ‘F’형이 있다. 이외에 곡선 쌍구문(雙勾紋)과 동물문양(사슴, 돼지, 새)이 소량 확인됐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의 반지하식이며 출입구가 존재한다. 등고선에 따라 일렬로 배열된 규칙적인 형태를 보인다. 유적에서는 농업용 도구가 다수 출토되며 세석기류가 매우 발달됐다. 유적의 절대연대는 약 7200~6500년 전 사이로 홍룡와문화의 소멸 이후 등장한 부하문화 및 연산남록의 상택문화와 동시에 병존했다.<sup>52)</sup>

부하문화<sup>53)</sup>는 서랍목륜하 이북의 발달된 세석기문화를 특징으로 한 수렵문화이다. 절대연대는 약 7300년 전에 해당하며 조보구문화 및 홍산문화 등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토기는 황갈색 위주의 통형관이 약 90% 이상

49) 克什克騰旗博物館, 1992, 「克什克騰旗上店小河沿文化墓地及遺址調查報告」, 『內蒙古文物考古』 1· 2.

50) 朱鳳瀚, 1979, 「吉林奈曼旗大沁他拉新石器時代遺址調查」, 『考古』 3.

51) 田廣林, 2003, 『中國北方西遼河地區的文明起源』,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19쪽.

52) 董新林, 1996, 「趙寶溝文化研究」, 『考古求知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4,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 1.

이고 소량의 발과 작은 잔, 권족기 등도 확인된다. 문양은 ‘之’자문이 많은데 주로 가로 배열이며 비점(窠點)식의 ‘之’자문이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토기 구연부의 절상 돌대문과 주거지 내부에 석판을 세운 위석식 노지가 특징적이다.

상택문화<sup>54)</sup>는 연산 이남의 난하 상류와 구하 일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상택 유적은 유적내 제4~7층을 기본으로 하며 제8층은 홍룡와문화, 제3층은 홍산문화에 해당한다. 절대연대는 약 7463~6582년 전 사이다. 조보구문화와의 유사점은 토기에 ‘之’자문 등을 새기고 평저발과 홍정발(紅頂鉢)이 유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택문화의 통형관은 구연부에 이중구연인 것이 많고 ‘之’자문 외에 조형문(條形紋)을 확인할 수 있다. 기류에는 고권족(高圈足) 완, 지각(支脚)과 우(盂) 등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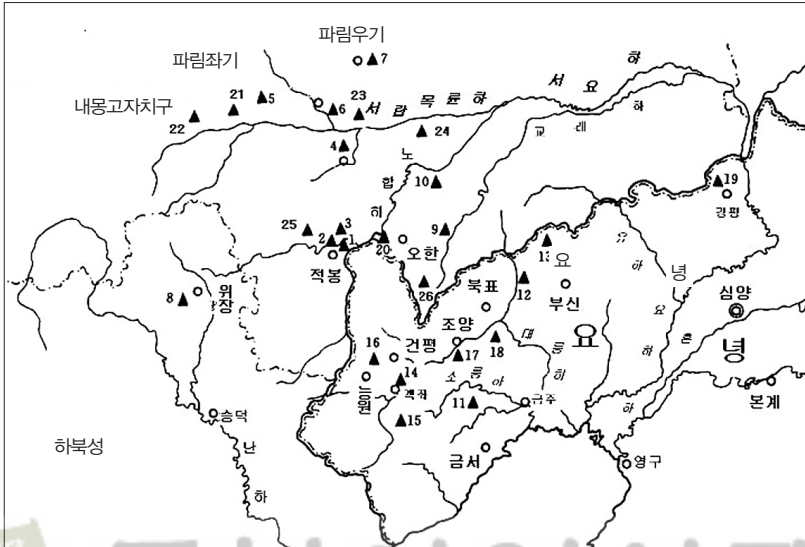
이상의 조보구, 부하, 상택 문화 등은 홍룡와문화라는 공통된 연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전한 동시기의 문화 유형이다. 조보구문화는 서랍목 문하, 노합하, 대릉하, 난하 유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며 부하문화는 서랍목 문하 이북의 산림초원지대 그리고 상택문화는 구하 유역 일대에 근거한다.

### 3) 홍산문화

홍산문화는 1935년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홍산후 유적의 발굴을 통해 알려진 이후 1954년에 정식으로 명명됐다. 이후 약 반세기에 걸쳐 축적된 홍산문화 관련 연구성과는 현재 중국학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홍산문화의 주요 분포범위는 동쪽으로 의무려산을 넘어 하요하(下遼河) 서안에 다다르며 남쪽의 동단은 발해연안에, 서남단은 연산산맥을 넘어 화북평원에까지 이른다. 하북성 장가구(張家口)의 상간하(桑干河) 상류에서 홍산문화와 양소문화가 함께 발견되는 현상으로 보아 이곳을 홍산문화 분포범위의 서남 경계로 볼 수 있겠다. 유적의 주요 분포권은 노합하 중상류에서 대릉하

54) 北京市文物研究所 等, 1989, 「北京平谷上宅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文物』 8,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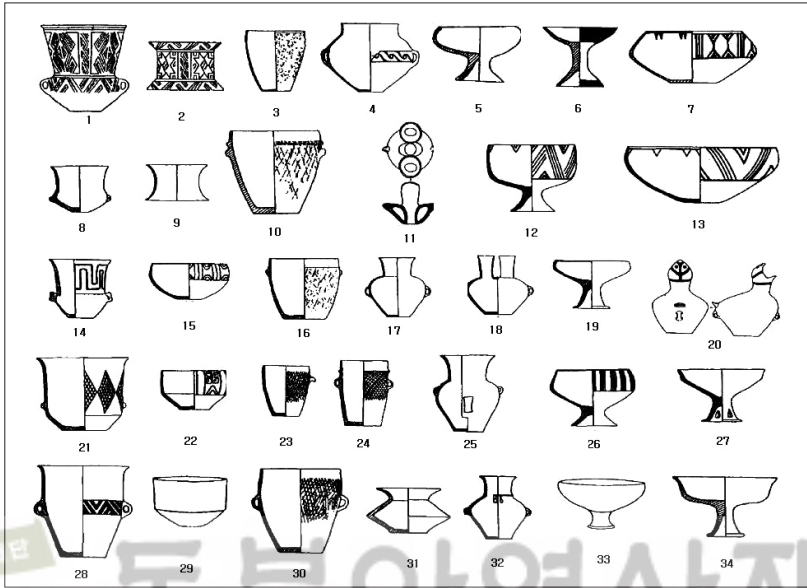
〈지도 2〉 홍산문화 주요유적 분포도

1. 홍산후, 2. 지주산, 3. 서수천, 4. 삼성타랍, 5. 사와자, 6. 나사태, 7. 파림우기, 8. 화화방, 9. 하와, 10. 나만기, 11. 사과둔, 12. 호두구, 13. 북흥지, 14. 동산취, 15. 신영자, 16. 우하량, 17. 십이대영자, 18. 백석수고, 19. 강평, 20. 소하연, 21. 백음장한, 22. 남태자, 23. 홍격력도, 24. 해랍소진, 25. 강가만, 26. 초모산

중상류 지역 사이로 이곳은 전체 홍산문화 유적 분포지의 중심지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홍산문화 유적은 내몽고 적봉 및 오한기 일대에서만 취락 유적 500곳 이상이며 적석총 관련 유적은 전체 홍산문화 유적 분포권 내에서 30곳 이상이 발견됐다. 주요 문화 특징은 단·묘·총을 조합으로 한 유적군과 무덤에 부장된 옥기, 발달된 채도 등이 있다.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대형화된 환호취락과 발달된 농구류의 대량 출토, 조와 기장 등 곡물의 발견 등으로 보아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정착 농경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절대연대는 약 6710~4920년 전 사이이며, 같은 시기 요동 북부에는 좌가산(左家山)

55) 楊虎, 1994, 앞의 글.



〈그림 6〉 소하연문화유적 출토 토기류

1~3. 남태지, 4·7. 상점, 5·6. 강가량, 8~13·15~27. 대남구묘지, 14. 석호산

2기문화, 하요하 유역의 신락(新樂) 하층문화, 요동반도의 소주산(小珠山) 하층문화 등이 병존했다. 당시 중원지역은 앙소문화에 진입한 시기였으며, 황하 중류의 반파(半坡)문화와 묘저구(廟底溝)문화, 황하 하류의 후강(后崗) 1기와 대문구(大汶口)문화, 황하 상류의 마가빈(馬家濱)문화로 대표된다. 장강 유역은 중류의 대계(大溪) - 굴가령(屈家嶺)문화, 하류의 양저(良渚)문화 등이 발달했다.

#### 4) 소하연문화

적봉시 오한기 소하연향(小河沿鄉)·백사랑영자(白斯朗營子) 남태지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명명됐다.<sup>56)</sup> 유적의 주요 분포범위는 서랍목류하 이남지역이며 동쪽으로는 금서(錦西) 일대, 남부는 연산 이남까지 이른다. 발굴조사가 이

루어진 유적에는 임서현 백음장한, 극십극등기 상점, 오한기 석호산(石虎山)<sup>57)</sup>, 대남구(大南溝) 석봉산(石棚山) 유적<sup>58)</sup> 등이 있다.

대남구 석봉산 유적은 전체 소하연문화 중 유구가 가장 밀집되고 면적이 제일 넓은 무덤·유적이다. 적봉에서 서북 30km 지점에 위치하며 1978년 77기의 토갱묘가 조사됐다. 주로 단인장(64기)이며 합장묘는 3기가 발견됐다. 합장묘는 남녀 합장으로 다리부분을 교차시켰고 대부분의 무덤에서 부장품이 확인됐다. 생활용품과 생산공구, 장식품 등이 있으며 토기는 일반적으로 3점가량을 부장했다. 기본조합은 호(壺)·두(豆)·관(罐) 등이며 이 중 호가 주요 기종이다.

무덤 중에는 대형묘가 없으며 부장품의 수량 역시 차별이 거의 없다. 토기 중에는 채도가 많고 실용기가 아닌 부장용으로 만든 동물형 토기 및 부호가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소하연문화의 채도는 홍산문화에 비해 간략화되고 선이 거칠다. 또한 기하문이 많고 평행선문, 삼각문, 반원현문, 팔각성문(八角星紋) 등이 있으며 내채(內彩)도 발견됐다.

생산공구에는 천공석부, 석산(石鏟), 석도(石刀), 석인골도(石刃骨刀), 갈판, 갈봉, 세석기 등이 있으며 대남구 묘지의 70여 개 묘지에서 총 140여 점의 석기가 발견됐다. 주거지는 타원형의 반지하식이며 노지와 주공, 출입구 등이 존재한다. 소하연문화의 절대 연대는 약 5300~4400년 전 사이로 홍산문화와 조보구문화의 요소가 모여서 형성된 독립된 문화로 평가된다.<sup>59)</sup>

56) 遼寧省博物館等, 1977, 「遼寧敖漢旗小河沿三鐘原始文化的發現」, 『文物』 12.

57) 內蒙古昭烏達盟文物工作站, 1963, 「內蒙古昭烏達盟石羊石虎山新石器時代墓葬」, 『考古』 10.

5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1998, 『大南溝—后紅山文化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59) 索秀芬, 2006,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104쪽.

## 2\_ 적석총문화의 출현 배경

전 세계적 분포범위를 보이는 거석문화의 기원은 농경의 발달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농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더불어 정착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거석기념물 축조에 필요한 상당수의 노동력과 경제력은 바로 여기에서 충당했을 것이다. 농경의 출현과 발달은 인류역사에 있어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인류를 문명화단계로 이끌어 주었다. 그렇다면 소위 요하문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출현 배경 역시 이러한 보편성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적석총문화를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던 홍산문화인들의 생업 경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거대한 규모의 적석총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합일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어떠한 배경속에서 형성·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겠다.

흔히 고고학상의 생업경제란 고대사회의 특정 역사 발전단계의 경제활동 방식, 즉 생존기술을 말한다.<sup>60)</sup> 여기에서는 홍산문화 사람들의 생계활동 방식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발휘했던 다양한 활동들과 기술력 등을 포함한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존기술은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먹거리 취득 방법은 채집과 사냥, 어로 그리고 원시농업과 목축 등이다. 처음에는 몇 사람씩 조를 나누어 채집과 사냥 등으로 생활하다가, 경험의 축적을 통해 농경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들은 보다 많은 먹거리를 획득하기 위해 각종 도구들을 개발했고 개인 활동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협동과 단결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러한 증거들은 유적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요서지역 신석기시대 후기의 생산도구는 전기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해지며 무엇보다 농구류의 종류와 수량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으며 집단으로 군락

60) 呂昕娛, 2009, 「紅山文化經濟形態述論」, 『赤峰學院學報』 8, 7쪽.

을 이루어 정착 농경사회를 구성했다.

홍산문화의 생업경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농업을 위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이 병존하는 사회로 후기에 이르면 농업이 채집경제를 완전하게 대체한다는 것이다.<sup>61)</sup> 두 번째는 홍산문화 후기의 농업비중은 경제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으며 농업과 어렵(漁獵)이 병존하는 시대였다는 것이다.<sup>62)</sup> 세 번째는 상술한 두 가지 견해의 절충안으로 홍산 전·중기에는 농업과 채렵(采獵)이 병존하나 후기에 이르면 농업의 비중이 어렵보다 월등히 높아진다는 견해이다.<sup>63)</sup> 이상의 주된 논점은 과연 농업이 홍산문화의 생업경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미 높은 수준의 농경활동이 이루어진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당시 사회의 농경 수준은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생산도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홍산시기의 생산기구 중 농경과 관련된 석기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보습과 석도, 낫, 석부, 자귀, 석착, 석산, 호미, 갈돌과 갈판 등이 있으며 쓰임새에 따라 토지정리용, 굴토용, 수확용, 가공용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토지정리용 도구로는 석부와 석착, 자귀 등이 대표적이며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잡목을 제거하거나 잡초 제거에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굴토용과 수확용 도구는 가장 대표적인 농경도구이다. 굴토용구에는 호미, 석산, 보습 등이 있으며 수확용구에는 석도와 낫이 있다. 이 중 보습과 석도는 홍산문화유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종류로 보습은 현재까지 100점 이상이 출토됐다.<sup>64)</sup> 또한 홍산문화 전기 유적인 서수천 유적에서 출토된 농업용기 중 석도와 보습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0% 이상을 넘어<sup>65)</sup> 이들이 가장

61) 劉國祥, 2006, 「西遼河流域新石器時代至早期青銅時代考古學文化概論」, 『遼寧師範大學學報』 1, 117쪽.

62) 田廣林, 2003, 앞의 글, 78~79쪽.

63) 呂昕媛, 2009, 「紅山文化經濟形態述論」, 『赤峰學院學報』 8, 7쪽.

64) 張興德, 200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38쪽.

6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2, 「赤峰西水泉紅山文化遺址」, 『考古學報』 2.

일반적인 농구류임을 알 수 있다. 굴토용 및 수확용구의 발달은 당시 사회의 농업 의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홍산문화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 중 농구류 외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석기이다. 서수천 유적에서 전체 석기 중 80% 이상이 세석기이며<sup>66)</sup>, 대사타랍 유적에서는 전체 석기 중 3분의 2<sup>67)</sup>, 만덕도 유적에서는 5분의 1<sup>68)</sup>가량을 차지한다. 세석기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많은 수량을 보이는 것은 석촉인데 이들은 사냥 및 어로와 관련된 수렵용구로 볼 수 있다.

홍산문화 전기 사회는 농업과 어렵이 병행된 사회였다. 그러나 이전 시대에 비해 대량 출토되는 농구류와 그 종류의 다양성은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이어 후기에는 돼지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이 보편화되는데 동산취 유적에서 발견된 집돼지의 골격과 홍산문화 유적 곳곳에서 확인되는 돼지를 주제로 한 조각품들은 좋은 증거가 된다.<sup>69)</sup>

홍산문화 후기에 목축업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당시의 발달된 세석기, 즉 수렵문화와 연관지어 해석한 견해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sup>70)</sup> 이 견해에 따르면 극도로 발달된 도구와 사냥기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사람들은 부족한 고기를 충당하기 위해 집에서 돼지 등을 사육하게 됐다는 것이다. 위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목축업은 원시사회의 수렵문화에서 발전했으며 원시농업의 발생과 발전 과정 속에서 성숙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잉여생산력이 필수적인데 초기농경의 빈약한 생활 속에서는 가축에게까지 식량을 제공할 여력은 없었을 것이다. 초기 농경에서 야생동물을 성공적으로 길들여 가축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가축에게 제공해야 할 잉여생산물과 함께 안정된 사육환경이라는 정착 농경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홍산문화 후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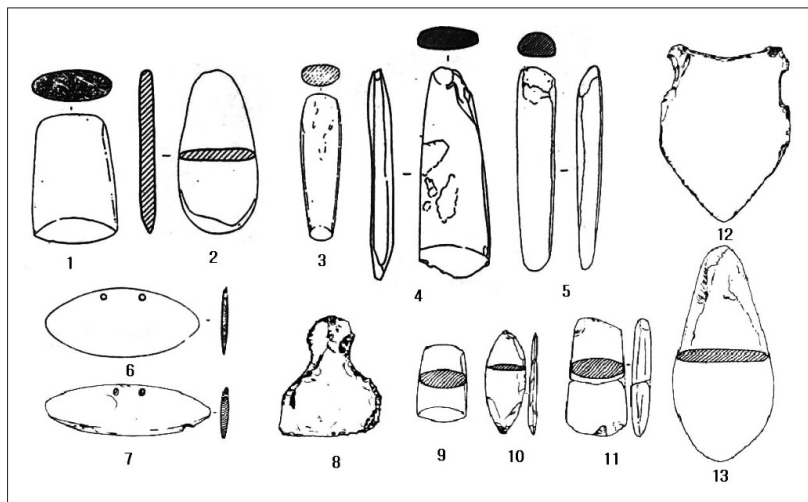
6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2, 위의 글.

67) 朱風瀚, 1979, 앞의 글.

68) 劉振華, 1994, 「內蒙古奈曼旗滿德圖遺址」, 『社會科學輯刊』1994 增刊.

69) 郭大順·張克舉, 1984, 앞의 글.

70) 田廣林, 2003, 앞의 글, 66쪽.



〈그림 7〉 홍산문화유적 출토 석제 농구류

1~6·9. 서수천, 7·8. 해금산, 10·11·13. 홍산후

에서는 이미 가축화한 소, 양, 돼지와 함께 야생동물인 사슴과 노루의 골격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다.<sup>71)</sup> 당시에 이미 가축을 키우는 것이 보편화됐으며 더 이상 사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잉여생산물을 확보한 것이다.

홍산문화를 연구하던 초창기에는 주거 유적 내 퇴적된 문화층이 비교적 얇은 현상에 대해 불안정한 정주생활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강했다.<sup>72)</sup> 여기에는 당시까지 충분치 못한 조사자료의 한계 및 중원 양소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전파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관련 유적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홍산문화 중·후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농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sup>73)</sup>

71) 張興德, 2005, 앞의 책, 39쪽.

72) 徐光冀, 1981, 『紅山文化的發現』, 『新中國的考古收穫』, 文物出版社; 郭大順, 2005, 앞의 책, 22쪽.

73) 易華, 2006, 『紅山文化定居農業生活方式－兼論遊牧生活方式的起源』, 『紅山文化研究－2004年紅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劉國祥, 2006, 앞의 글; 呂昕

그러나 지역적 차이에 따른 생활환경적 요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렵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홍산문화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 및 고정된 생활영역을 가지고 활동한 증거는 적봉 및 오한기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취락유적군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내몽고공작대와 내몽고자치구 오한기박물관 등은 1981~1988년 및 2001년 수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오한기 경내에 분포한 홍산문화 유적 500여 곳을 확인했다.<sup>74)</sup> 이곳에서 발견된 홍산문화 유적은 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는데 하천과 하천 사이의 분수령에서는 유적의 공백지대가 존재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적군은 각 하천별로 대릉하 유역군, 망우하 유역군, 교래하 유역군, 맹극하 유역군, 방하 유역군, 노합하 유역군 등 6개의 대형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군집 내에는 3~5개의 취락유적이 분포하며 가장 많은 것은 약 20개의 유적이 밀집해 있다. 또한 각각의 군집은 포함된 유적의 규모 등의 방면에서도 차이를 보여, 중심유적지와 부속유적지, 중심취락군과 주변취락군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2003년에는 미·중 연합조사단에 의해 내몽고 동부 적봉 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진행되어 석백하, 반지전하, 음하 유역 등에서도 오한기 일대와 유사한 구조의 취락군 분포현상이 발견됐다.<sup>75)</sup> 오한기 및 적봉 경내에서 발견된 취락유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76)</sup>

먼저 각 취락군 내에 분포한 주거유적 간에는 등급별 분화가 이루어졌다. 하나의 하천을 중심으로 군집된 각각의 취락군 내 주거지들은 열을 이루어 분포한다. 이 주거지 열이 모여 취락군을 형성하는데 동일한 하천 유역권에 분포한 유적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다른 하천 유역권끼리의 취락유적 간

娛, 2009, 앞의 글.

74) 邵國田, 1995, 「概述敖漢旗的紅山文化遺址分布」, 『中國北方古代文化 國制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文史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內蒙古自治區敖漢旗博物館, 2005, 앞의 글.

75)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76) 張興德·金仁安, 2006, 「紅山文化聚落的層次化演變與文明起源」, 『理論界』 1.

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한다. 즉 하나의 하천을 중심으로 밀집분포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밀집분포권은 적봉지역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오한기 경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특히 오한기 경내의 취락군에서는 중심취락과 출토유물상의 차이가 있는 유적군이 존재해 특수계층의 등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취락군 내 주거유적 간의 등급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취락군 간 및 밀집분포권 간에도 차별적 양상이 존재해 당시 사회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홍산문화 주거유적군의 규모 차이 및 등급화 현상은 농업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농업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 구조와 가족의 생계방식을 변화시켰고 소규모적이고 독립적이던 가족집단에서 대형화되고 공동체적인 생산노동단위체로의 발전을 가져왔다.<sup>77)</sup> 농업은 인류의 활동을 가족구성원의 먹거리 마련이라는 개별적 활동단계에서 집단 내의 공동체적 사회경제활동으로의 진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인류가 농경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혜택은 잉여생산물의 확보이다. 잉여생산물은 점차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게 했고 여기에서 계급과 계층이 발생했다. 취락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사회구성원 수가 많다는 것이며 보다 넓은 농경지가 필요하다. 반대로 농경지의 확보와 보장된 수확물이 없다면 취락의 규모는 물론 집단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대형 취락군의 존재는 거대화된 농경을 증거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된 생활이 지속됐음을 의미한다.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취락군이 등장할 수는 없다.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력과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게 되고 활동영역 역시 확장됐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맹극하 유역의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해 보겠다. 맹극하 유역에는 모두 10여개의 유적군이 분포해 있으며 하루의 남안에 위치한 빈자(份子) 유적군에는 6곳의 유적이 모여 있다. 빈자 유적군은 동서길이 10km, 남북 너비 약 4km의 강변 퇴적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유적군 중심부에는 면적이 6km<sup>2</sup>에 달하는 대형

77) 呂昕媛, 2009, 앞의 글, 9쪽.

의 중심취락유적[份子地遺址]이 존재하며 그 내부는 다시 몇 개의 소구역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 간에는 약 10m의 공백지대가 존재해, 유적 전체가 규칙적으로 구획됐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형의 유적지에는 대부분 유적 전체를 포괄하는 대형의 환호가 존재하는데 오한기 서대(西臺) 유적이 대표적이다.<sup>78)</sup>

서대 유적에서는 2개의 환호유구가 확인됐다. 그 중 한 개의 둘레는 600m 이상이다. 환호취락은 대형 유적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내몽고 적봉 남부지역의 위가와포(魏家窩鋪) 유적에서 주거지와 소수의 구덩유적을 포함하는 둘레 110m 정도의 환호취락군이 발견된 바 있다.<sup>79)</sup> 홍산문화의 환호 취락은 전단계에 비해 대형화되며 평면 형태는 원형에서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변화된다. 이처럼 대형화된 환호는 더 이상 집단 간의 구분이나 구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환호가 가지는 방어적 기능이 후대의 성벽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홍산문화기의 환호시설이 방어적 기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이 어렵다. 여기에서는 홍산문화의 대형 환호취락을 당시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했다는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요서지역에서 원시농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홍룡와문화부터이다. 이후 조보구문화를 거쳐 홍산문화 단계에 이르면 농경의 수준과 규모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이러한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발달된 농구류와 가축의 흔적 그리고 하천별로 밀집군을 이루며 분포해 있는 대형취락군과 환호취락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에게 물은 생명이고 삶의 원천이다.

78) 楊虎, 1989, 「敖漢旗西臺新石器時代和青銅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監·1988』, 文物出版社.

79) 2008년 내몽고 적봉 남부의 魏家窩鋪 유적에서 28기의 주거지와 다수의 회갱, 제사갱, 토갱묘 등을 포함하는 둘레 110m 이상의 환호취락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내몽고문물고고연구소와 길림대학교 고고학과 변강고고중심에서 발굴조사 및 유물 정리를 진행 중이며, 정식 보고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塔拉·曹建恩·成璟瑯·王春雪, 2012, 「內蒙古赤峰魏家窩鋪遺址2011年發掘成果」, 『中國文物報』第4版.

인류문명의 탄생이 대부분 하천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요하 유역은 풍부한 수원과 산림자원으로 인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 이처럼 유리한 자연환경 속에서 홍산문화 사람들은 요하문명을 이룩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적석총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IV. 적석총문화의 형성과 발전

요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총이 발견된 곳은 백음장한 유적이다. 백음장한 유적은 서랍목류하 이북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소하서-홍릉와-조보구-홍산-소하연 시기에 이르는 문화층이 순서대로 발견되어 요서 지역 신석기문화의 서열을 획기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주목되는 점은 지금까지 홍산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던 적석총문화가 백음장한 유적 홍릉와문화 단계에서 이미 출현했다는 것이다.

백음장한 유적의 적석묘(총)는 구조 및 규모 면에 있어 초기단계의 발생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요서지역에서 적석묘가 처음 출현한 이후 홍산시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1000년 이상의 공백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기는 조보구문화 단계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명확한 형태의 무덤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전·후 단계의 묘제(墓制)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 또한 백음장한 유적의 홍릉와기 적석묘 역시 최소한 두 단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각 단계 사이에는 일정 기간의 공백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백음장한 유적의 분기와 편년에 관해 검토해 보겠다.<sup>80)</sup>

80)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4, 앞의 책; 索秀芬·郭治中, 2004, 앞의 글; 索秀芬, 2006, 앞의 책.

백음장한 유적은 발굴구역에 따라 주거 A·B구, 묘 I~III구로 구분되며 모두 5시기에 걸친 문화층이 확인됐다. 각 시기는 소하서문화, 흥릉와문화, 조보구문화, 홍산문화, 소하연문화 등에 각각 대응되어 요서지역 신석기문화의 순차적인 발전양상을 따른다.

제 I 기, 소하서문화층은 주거지 64호를 대표로 한다. 소수의 주거지와 구덩 유구가 발견됐으며 B구역 능선 제일 높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유적이 위치한 산 정상부의 묘 II 구와 인접한 곳이다. 특징적인 토기로 무문통형관이 있으며 기류가 단일하고 구연부에 얇은 진흙피를 간단하게 붙여서 장식했다. 오한기 천근영자(千斤營子) 유적, 소하서 유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제 II 기, 흥릉와문화층은 갑류와 을류로 구분된다. 갑류는 주거지 63호를 대표로 하며 I 기 유적군과 분포범위가 겹친다. 유적군 내에서는 주거지와 적석묘(총)가 발견됐다. 이 중 적석묘(총)는 묘 I 구에서 1기(5호), 묘 II 구에서 2기(13·16호)가 조사됐다. 갑류의 토기는 교차압인문이 유행했고 ‘之’자문은 없다. 문양 구성은 3단 구분이며 중간 부분에 돌기된 용기문이 없이, 압획(壓劃)된 새끼줄 모양의 띠가 돌아간다. 이러한 요소는 남태자 유적의 흥릉와문화층에서도 발견되어 남태자식(혹은 유형)으로 부른다. 을류는 백음장한 유적의 대표유적군으로 두 지점(A·B구역)의 취락군과 각 취락군 내에 개별적 묘역(묘 I·II 구)이 있다. A·B구 모두 취락을 둘러싸는 환호가 존재하며 주거지들이 열을 지어 순차적으로 분포한다. 토기 특징은 통형관이 비교적 넓어지고 ‘之’자문, 교차문 등 각종 문양이 유행한다. 삼단 문양 구성의 중단에 용기문이 출현하고 그 위에 기하문을 장식했다. 이러한 특징은 흥릉와 유적과 금귀산에서도 발견되어 백음장한식(혹은 유형)이라 통칭한다. 이상 갑과 을류의 유구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 토층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각 유구 내에서 출토된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남태자식이 백음장한식보다 시기상으로 앞선 것으로 편된다.

제 III 기 유구는 조보구문화에 해당하며 A구역 하단부에 분포한다. 역시 갑과 을류로 구분되며 갑류는 조보구, 을류는 서황산 유형으로 귀속된다.

제 IV 기 유구는 홍산문화이다. 전체 유적 내에 주거지와 구덩 유구, 무덤(묘 III구)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연속시간이 길며 유적이 밀집되어 있고 지층

관계가 복잡한 특징을 보인다. 무덤은 모두 6기(14·15·18·21~23호)가 발견됐다. 이 중 4기(14·15·18·21호)는 지세가 완만한 제Ⅲ호 묘구에 위치하며 나머지 2기(22·23호)는 유적 북부의 A구역 동쪽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다시 묘실구조에 따라 적석묘(14·15·18호)와 토광묘(21·23호)로 구분된다. 적석묘는 구덩이를 판 후 석판을 세워서 네 벽을 만들었다. 바닥은 맨바닥이며 상부에는 판석을 덮은 후 다시 적석했다. 내부에서 뚜껑이 덮여 있는 삼족기[鼎] 1점이 출토됐다. 21·23호는 토광묘이다. 이 중 23호는 약 40 전후의 여성이 측신굴지장(側身屈肢葬)됐고, 다리뼈 부근에서 채도편이 확인됐다.

제Ⅴ기 유구는 소하연문화 유적으로 문화층이 얇고, 유구가 적다. 백음장한 유적의 홍릉와기 문화층은 모두 2시기로 구분된다. 전기는 남태자식(Ⅱ기 갑류)이며 후기는 백음장한식(Ⅱ기 을류)으로 구분된다. 전기의 주거지는 원각장방형이며 지표상에 돌을 쌓아 장방형의 노지를 만들고 그 위에 석재를 덮었다. 무덤 역시 돌을 쌓아 만든 적석묘(積石石板墓)이다. 토기의 문양은 3단식 위주이나 2단식도 존재한다. 전기에는 홍릉와문화 토기의 특징인 문양대 중간의 돌기된 용기문이 확인되지 않으며 저부 가까이에는 문양이 없는 공백 부분이 존재한다. 기류는 통형관만 확인되고 이중구연은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전기 문화층(백음장한 Ⅱ기 갑류)과 남태자 유적의 홍릉와문화기 유물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존재해 이를 통칭해서 남태자식(유형)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남태자 유적의 토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에는 이중구연, 3단식 문양 중단부에 용기문류인 삭상조대문(削上條帶紋)이 1~4줄 평행선으로 나타나고, ‘人’자문, 짧은 교차문으로의 변화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또한 ‘之’자문의 초기 형태가 출현하고 기류가 증가한다. 이처럼 새로 출현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남태자식은 다시 2단계로 구분되는데, I 단계는 백음장한 유적 Ⅱ기 갑류와 남태자 유적 I기, II 단계는 남태자 유적 Ⅱ기로 구분된다. 이상에서 확인된 토기 특징을 바탕으로 백음장한 유적과 남태자 유적의 홍릉와문화층, 즉 홍릉와문화의 백음장한 유형<sup>81)</sup>은 전체 3시기로 구분된다.

81) 홍릉와문화의 남태자 유형은 백음장한 유형(혹은 백음장한식)의 전신 유형이기 때

제Ⅰ기는 백음장한 주거지 63호를 대표로 한다. 토기의 문양대는 3단 구분이며 용기문과 이중구연 등이 없고 토기 형태가 길며 교차압인문이 유행, ‘之’자문이 없다. 제Ⅱ기는 남태자 유적 주거지 6·9·23호를 대표로 한다. 3단식 문양 중단부에 용기문이 1~4줄 평행선으로 나타나고 이중구연이 출현한다. 문양은 ‘人’자문과 짧은 교차문으로 변화되며 ‘之’자문의 초기 형태가 등장한다. 제Ⅲ기는 기존의 백음장한 Ⅱ기 을류에 해당하며 백음장한 유적 A·B구 두 개의 취락유적군과 묘Ⅰ·Ⅱ구를 대표로 한다. 토기는 두꺼운 이중구연과 넓은 용기문, 소량의 교차문 외에 수직 횡방향의 압인 ‘之’자문이 유행한다. 무덤은 각 묘구에서 7기씩의 적석묘(積石土坑墓) 14기가 발견됐다. 이상 Ⅰ·Ⅱ기간에는 시간차가 없이 연속되나, Ⅱ·Ⅲ기간에는 일정한 공백기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흥릉와문화 시기의 관련 유적은 모두 자체적인 분기가 이루어져 전체 7단계로 구분되는데<sup>82)</sup> 남태자 유적은 2단계, 흥릉와 유적은 3단계, 사해 유적은 2단계, 백음장한 유적은 2단계 등으로 이를 백음장한 유형과 비교하기 위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흥릉와문화 유적별 분기표

期	段		백음장한 유형의 분기	백음장한 유적	남태자 유적	흥릉와 유적	사해 유적	금귀산 유적
전	전	1	Ⅰ	갑	1단계			
	후	2						1기
중	전	3	Ⅱ		2단계	2기		
		4				3기	1기	
	후	5	Ⅲ				2기	
		6		을				
후		7					F3	

문에 이를 모두 백음장한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索秀芬·郭治中, 2004, 앞의 글, 97~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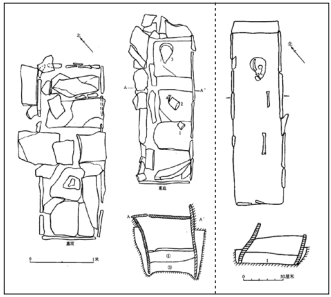
82) 索秀芬·郭治中, 2004, 위의 글, 98쪽.

표에 따르면 전체 흥륜와문화는 전·중·후기의 3시기에 걸친 발전양상을 가지며 백음장한 유적에서는 전기전단의 I기 갑과 중기후단의 Ⅲ기 을단계에 적석묘가 축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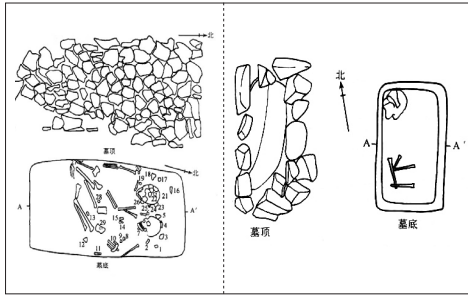
제 I기 갑류의 적석묘부터 살펴보겠다. 모두 3기가 조사됐으며 보고서에서는 적석석판묘로 분류했다. 먼저 장방형의 토갱을 파고 네 벽에 석판을 세운 후 2기(5·13호)는 바닥에 석판을 대었고 1기(16호)는 맨바닥이다. 상부에는 모두 작은 판석 여러 개를 덮었고 장식은 1인 양신직지장, 두향은 동북(13·16호)과 서남(5호)이다. 13호에서 통형관 1점과 타원형의 돌단지[石罐] 1점이 출토됐다. 13호와 16호는 묘Ⅱ구의 원형석권 내부에 공존하며 각각 남녀의 무덤이다. 5호는 묘Ⅰ구의 원형석권 내에 위치한 남성 무덤이다.

Ⅲ기의 을류 무덤은 묘Ⅰ구와 Ⅱ구에서 각 7기씩 모두 14기가 발견됐다. 무덤 형식은 대부분 지표상으로 적석시설이 있고 하부에는 토갱식의 묘실을 둔 적석묘(積石土坑墓)이다. 묘Ⅱ구(9~12·17·19·20호)의 대부분은 적석시설이 파괴되고 토갱만 남아 있으며 12·20호만 지표 적석이 잔존했다. 묘Ⅰ구(1~4·6~8호)에는 모두 적석이 남아 있으며 1·3호는 적석만 있고 하부에 토갱이 없었다. 1호의 적석 중에서는 조개껍데기와 장식품이 섞여 있었다. 묘광의 크기에 따라 적석 범위 역시 다르다. 일반적으로 묘광의 범위가 크면 적석 범위도 크나, 적석범위가 묘광범위보다 작은 것도 있다. 적석더미는 대부분 불규칙한 형태로 장방형(2·20호)도 존재하며, 6호는 타원형으로 길이 1.22~4m, 폭은 0.92~2.8m가량 된다. 묘Ⅱ구의 무덤은 모두 단인장이다. 2기의 어린아이 무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30~50세 사이이다. 묘Ⅰ구의 1호 3호는 토갱과 유골이 없고, 2호묘는 남녀 합장이며, 나머지는 모두 단인장이다. 대부분 1차장이지만 20호는 2차장이다. 묘향은 동북 혹은 서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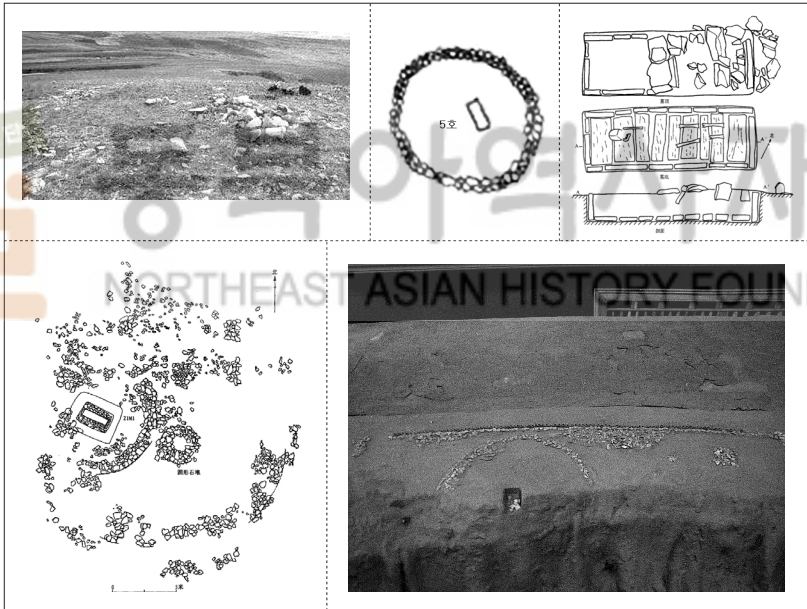
정리하면 백음장한 유적 흥륜와문화기에 축조된 적석묘는 시기상 두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축조 방법 및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I기의 적석묘는 무덤 상부에 적석을 했고 다시 그 주변으로 원형의 돌담시설이 돌아간다. 묘Ⅱ구의 13호와 16호는 이미 대부분의 상부시설이 파괴되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발굴 상황으로 보아 두 기의 무덤 주변으로 하나의 원형석권이 존재하



〈그림 8〉 백음장한 갑류 13(좌) · 16호(우)



〈그림 9〉 백음장한 을류 2호(좌)와 20호(우)



〈그림 10〉 백음장한 갑류 5호 발굴전 모습(상좌) · 상부원형석권(상중) · 하부묘실구조(상우), 우하량 5지점 상층 1호층 평면도(하좌) 및 호두구 유적 복원 모형도(하우, 부산박물관 전시)

는 것으로 보인다. 묘 I 구의 5호 역시 상부에 적석시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원형의 석권이 돌아가는 형태이다. 보존상태가 좋은 5호는 상부구조가 홍산문화의 호두구 유적 및 우하량 5지점 상층 1호층의 원형석권과 매우 유사해 주목된

다<그림 10>. 묘실은 모두 다듬어진 판석을 이어 세웠으며 상부에는 여러 장의 판석을 덮었다.

Ⅱ기는 백음장한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Ⅲ기는 I 기와 상당히 오랜 시간의 공백기<sup>83)</sup>를 두고 이어진다. 땅속에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서 토갱식의 묘실을 두고 상부에는 간단한 구조로 적석을 했다. 제 I 기의 무덤보다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묘 I · Ⅱ구에 위치한 제 I 기 적석묘 주변으로 수기씩 분포한 특징을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백음장한 유적 홍릉와문화기의 적석묘는 동시기의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이다. 특히 백음장한 유형 I 기는 홍릉와문화의 발전단계상 가장 이른 시기로서 해당 유적이 거의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다. I 기 이후 백음장한에서는 별다른 문화현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홍릉와문화기 전체에서 제6단계(표 2 참조)에 해당하는 백음장한 유형 Ⅲ기가 되면 매우 활발한 문화현상이 출현한다. 여기에는 I 기 이후 문화현상이 없었을 가능성과 그 흔적이 매우 적어 다음 시기의 문화층에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

백음장한 유형 Ⅱ기와 Ⅲ기 초반에 해당하는 홍릉와 및 사해 유적에서는 적석묘가 발견되지 않으며 보다 특수한 형태의 무덤이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 한쪽에 토갱을 파고 사람과 돼지를 함께 매장하는 형식의 거실장(居室葬)이 발견됐는데 유적 주변에서는 이외에 다른 형태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주거지에서 거실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이 역시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홍릉와 유적에서는 모두 170기의 주거지가 발견됐고 이 중 30여 기에서 거실장이 이루어졌다. 사해 유적은 55기의 주거지가 확인됐고 이 중 6기의 거실장이 확인됐다. 거실장이 이루어진 주거지는 대부분 취락군 내의 중심부 혹은 주거지 열의 중간에 위치하며 규모와 면적도 일반 주거지에 비해 크

83) 백음장한 유형 제Ⅲ기 주거지 25호의 절대연대 측정값은  $7040 \pm 100$ 년 전으로 홍릉와문화의 상한연대로 추정되는 8200년 전과 무려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백음장한 유형 I 기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값은 보고된 바가 없지만 백음장한 유형 I 기가 홍릉와문화의 전기 유형임을 상기할 때 제 I 기와 Ⅲ기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한다.

다. 거실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하며 거실장 이후 주거지를 폐기할 경우 거실장을 위해 주거지를 새로 만들기도 한다.<sup>84)</sup>

백음장한 유형의 유적에서는 거실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동일 유형의 문화가 지역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초기 단계의 적석묘와 홍릉과 유적의 거실장은 묘구와 주거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음장한 유형 Ⅲ기부터는 주거공간과 묘구의 분리현상이 명확해지는데 여기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죽음 및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홍릉와문화 전기의 적석묘(積石石板墓)와 중기의 거실장 그리고 중후기의 적석묘(積石土坑墓)로의 변화양상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만 백음장한 유적 주거지의 노지가 홍릉와 유적의 토갱식과는 다르게 석판을 세운 형식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백음장한의 노지는 모두 석판을 세웠고 상부에도 석판을 덮는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까지 오직 백음장한 유형에서만 확인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홍릉와에서는 주거지 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거실장이 유행했다. 당시의 묘구가 주거공간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점, 홍릉와 유적의 묘제와 장속 등이 주거지 내부 시설과 상관된 점 등을 통해 본다면 백음장한의 석판식노지와 적석석판묘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백음장한 유형 Ⅲ기에 이르면 주거구와 묘구가 명확하게 분리된다. 환호로 구분되는 2개의 주거구에는 각각 대응하는 2곳의 묘구가 존재하며 각 묘구에는 7기씩의 적석(토갱)묘가 분포해 있다. 제Ⅲ기의 적석(토갱)묘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지 않으며 소량의 옥기와 조개류로 만든 장식품을 위주로 부장했다. 각 묘구에 분포한 7기의 무덤들은 제Ⅰ기의 원형석권 무덤(적석석판묘) 주변으로 규칙적인 배열상태를 보이는데 마치 홍산문화 단계의 중심대묘와 그 주변에 배치한 중·소형 석판묘들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백음장한 유적에서 홍릉와문화가 종결되면서 적석묘 전통도 사라진다. 현재까지 조보구문화에서는 명확한 형태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 1000년

84) 陳葦, 2008, 「從居室墓和石彫像看興隆窪文化的祖先崇拜」, 『內蒙古文物考古』 1.

의 공백기를 두고 홍산문화 단계에 적석묘가 다시 등장한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홍산문화에서 적석묘가 가장 먼저 출현하는 곳 또한 백음장한 유적이다. 백음장한 유적의 홍산시기 묘제는 적석이 없는 순수 토갱묘와 적석석관묘로 구분되는데 유적의 지층관계상 토갱묘가 적석석관묘보다 선행한 양식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홍산문화의 묘제가 토갱묘에서 적석묘로, 다시 적석총으로 변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산문화 적석총의 기원이 토갱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홍산문화의 적석총이 홍룡와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덤의 축조 방법 및 구조는 물론이고 연속된 무덤 간의 주·차관계 및 내부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의 성격까지도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산문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적석총을 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거석묘가 출현한 것은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정착민들이 외부 세력과의 마찰 및 대응 과정에서 축조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거석묘는 단위 사회집단의 영역 표시 일환이며 집단의 공공의례 장소, 집단의 부와 단결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홍산문화의 적석총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홍산문화는 정착농경을 기반으로 채집과 수렵, 목축 등이 복합된 사회임을 살펴보았다. 발달된 세석기에는 수렵적 요소가 강하게 내포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무기로서의 기능 역시 존재하다. 홍산문화기 취락형태는 이미 대형화·밀집화됐으며 각각의 취락에 방어적 성격의 대형 환호가 둘러져 있음은 당시 이미 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도 상징할 수 있다. 세석기 중 유독 화살촉이나 창끝과 같은 살상용 도구가 발달한 점은 단순히 사냥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당시의 사회구조는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존재로 보아 이미 내부적으로 등급화가 이루어진 계층사회임을 알 수 있다. 방어적 성격의 환호시설과 대량으로 발견되는 화살촉 등의 살상용 도구는 집단 간의 경쟁과 마찰을 암시한다. 농업과 목축을 통한 잉여생산물의 확보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으며 점차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집약됐을 것이다.

농경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협동력과 단결을 중요시하며 자연환경의 변화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해 농사의 관건인 일조량과 강수량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들의 영역인 것이다. 요서지역에서 홍룡와문화가 시작된 약 8200년 전부터 홍산문화가 소멸하는 5000년 전까지는 기후가 매우 온난 다습한 대온난기였다. 지금과 비교하면 기온이 약 3° 높았고 강수량도 약 100ml 많았다.<sup>85)</sup> 이러한 대온난기의 시대에도 약 7200년 전과 6300년 전을 전후한 시점에는 각 1차례씩 단기적인 기후의 하강현상이 출현했다.<sup>86)</sup> 그리고 약 5000년 전을 전후한 시점에는 기온이 다시 하강하고 건조해져서 기온이 약 1~3도 낮아진다.<sup>87)</sup> 지금으로부터 약 7200년 전은 홍룡와문화와 조보구문화의 교체기이다. 그리고 6300년 전을 전후한 시점은 홍산 시기의 적석총문화가 형성되며 약 5000년 전은 찬란하게 꽃피웠던 적석총문화가 소멸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고대사회의 기후 변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특히 막 시작된 농경에는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날씨에 대해 신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과정에서 제의와 관련된 각종 의식 및 제단 등이 탄생했을 것이다. 기온과 환경의 변화가 심각했던 때에는 보다 활발하고 간절한 형태의 제의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무덤과 제단적 성격이 결합한 적석총문화가 탄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 차례의 한랭기를 겪은 다음인 약 6000~5500년 전 사이에는 다시 기온의 상승이 이루어진다.<sup>88)</sup>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한 사람들은 다시 안정을 찾고 보다 성숙한 농경사회로 진보했다. 사람들은 신들에게 성의 표현의 수단

85) 張蘭生·索秀芬 等, 1997, 「我國北方農業交錯帶的環境變化」, 『地學前緣』 1, 127~135쪽; 楊志榮, 1999, 『中國北方農業交錯帶全新世環境變化綜合研究』, 海洋出版社, 105쪽.

86) 夏玉梅·李取生 等, 1993, 「東北全新世溫暖期氣候變化的初步研究」, 『中國生存環境歷史演變規律研究』(一), 海洋出版社, 296~315쪽. 당시는 기온이 매우 불안정했으나, 현재보다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다고 한다(索秀芬, 2006, 앞의 책, 13쪽).

87) 李取生·李崇嶺, 1993, 「東北泥炭發育與中全新世降溫事件的初步研究」, 『中國生存環境歷史演變規律研究』(一), 海洋出版社, 204~210쪽.

88) 索秀芬, 2006, 앞의 책, 13쪽.

으로 각종 제단의 축조와 제의행위를 거행했고 생활수준이 높아지자 이러한 성의 표현 방식은 보다 대형화됐을 것이다. 적석총과 대형 제단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의 단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집단 간의 단결력과 유대감이 향상됐으며 집단의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적석총은 단순히 특정계층의 무덤적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의 공공의식을 거행하는 제단 그리고 축조집단의 세력을 과시하는 위세적 성격도 생각할 수 있다.

단·묘·총이 결합된 우하량 유적은 집단 내에서 공동으로 숭배하는 신을 모신 성지로 해석된다. 소수의 특정계층만이 이곳에 묻힐 수 있으며 이들은 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과 사자를 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집단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했음은 당연하다. 또한 거대화된 성지의 규모는 그 집단의 부와 단결력을 표현해 외부세력에게 위압감을 주었을 것이다. 홍산문화인들이 적석총을 축조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백음장한 유적에 살았던 홍산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적석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주거공간과 분리했던 선조들의 묘역은 유적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백음장한의 홍산인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축조함에 있어, 오랜 조상들의 무덤들을 파괴하지 않고 근처의 다른 곳을 묘지로 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매장했으나 점차 생활 환경이 안정되자 그들은 선조들의 무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방에는 선대의 묘역을 신성시하고 숭배함과 동시에 그들을 계승한다는 함의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V. 맺음말

홍산문화는 요서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중심연대는 약 6000~5000년 전 사이이다. 유적의 분포와 밀집현상 및 문화 특징 등으로 미루어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중심지역은 노합하 중상류에서 대릉하 중상류 지역 사이이며 이곳은 전체 분포지의 중심지역이다.

홍산문화의 전기 사회는 농업과 수렵을 병행한 사회였다. 그러나 이전 시대에 비해 대량 출토되는 농구류와 그 종류의 다양성은 농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준다. 후기에는 돼지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이 보편화되며 농구류의 대량 생산, 중심취락과 일반취락군의 분화, 대형 환호취락의 등장 등 발달된 정착 농경문화의 요소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요서지역의 적석총 문화는 이처럼 발달된 정착농경을 바탕으로 형성됐으며 단·묘·총을 조합으로 한 대규모의 적석총 유적군은 당시 사회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당시 사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집단 간의 계층적 구조가 성립된 단계였다. 제사장과 같은 특수한 신분의 존재와 전문 장인이 출현했고 농업에만 종사하는 일반 계층의 사람들과 제사의례 시 동물들과 같이 희생된 존재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석총을 축조하던 사회는 취락 간 빈부의 격차가 존재했으며 각 집단 간에는 고유한 생활영역이 존재했다. 따라서 각 집단 간에는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과 영역을 지키기 위한 초보적 형태의 군사력도 갖췄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홍산문화가 이미 초보적이긴 하지만 문명의 단계에 접근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현재 홍산문화의 사회 성격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중국학계의 입장은 중국문명의 발상지로서의 요하문명과 초기 국가로서의 홍산문화를 실증하는 것이다. 특히 단·묘·총 및 규범화된 옥기제도를 통해 중화문명의 기초가 되는 용사상과 예제의 출현, 나아가 삼황오제의 전설 등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민족 통일국가의 이론적 근거로 홍산문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학계는 중화문명의 기원

으로 평가받는 홍산문화가 이후에 연속되는 제문화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아직까지 홍산문화와 그 이후의 고고학문화는 물론 동시대에 존재한 중원문화와의 연관성조차 검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중원지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명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이 바로 고조선과 홍산문화의 관계이다. 일각에서는 고조선의 선행문화로 이러한 홍산문화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을 홍룡와문화 단계의 백음장한 유적으로 이해했다. 여기에는 동일유적 내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시기의 무덤양식이 동일한 장제와 장속을 채용한 데에 근거했다. 하지만 홍룡와문화와 홍산 시기의 적석총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는 상당수의 이질적 요소가 발견되는데 이는 약 1000년의 시간차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일 것이다. 또한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되는 단·묘·총 조합의 적석총문화는 백음장한 유적의 홍산문화 초기단계 적석묘와 직접적 계승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또한 양자 간의 부장유물을 비롯한 장제와 장속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 현상이 발견된다. 즉 전승관계에 있는 동일 문화권 내 같은 유형의 무덤들 사이에도 지역과 시간차를 두고 그것을 조영한 사람들의 관념체계나 사후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요서지역에서 적석총문화가 소멸되고 요남지역에서 재등장하기까지 역시 약 1000년의 공백기가 존재하며 청동기시대에 고인돌의 등장 이후 점차 쇠퇴했던 적석총문화가 다시 정점에 이르는 시점 역시 약 1000년이 지난 고구려 때이다. 어떠한 이유로 유사한 간격의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방식의 묘제가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일한 구조와 방식의 묘제가 일련의 법칙과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만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비슷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이 만들어낸 우연의 소산물인가, 아니면 어떠한 계승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아마도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의식 문제 나아가 고조선과 홍산문화의 관계 규명과 같이 보다 복잡한 문제와 맞물려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

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축조한 무덤을 분석하고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당시 사회가 점차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수천 년 동안 그 전통이 이어진 적석총 유적의 유형학적 연구와 발전 과정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이 글에서는 시론적으로나마 요서지역 적석총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각각 시기를 달리하는 요서와 요동 지역 적석총에 대해 그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형식 간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양자의 동질성과 상이성, 나아가 계승성 규명 등에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高美璇, 1989, 「試論紅山文化墓葬」, 『北方文物』 8.
- 郭大順·張克舉, 1984, 「遼寧省喀左縣東山嘴紅山文化建築群址發掘簡報」, 『文物』 11.
- 郭大順, 1997, 「紅山文化的‘唯玉爲葬’與遼河文明起源特征再認識」, 『文物』 8.
- 郭大順·張星德,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 克什克騰旗博物館, 1992, 「克什克騰旗上店小河沿文化墓地及遺址調查報告」, 『內蒙古文物考古』 1·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8, 「內蒙古敖漢旗趙寶溝一號遺址發掘簡報」, 『考古』 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9, 「內蒙古敖漢旗小山遺址」, 『考古』 6.
- 內蒙古昭烏達盟文物工作站, 1963, 「內蒙古昭烏達盟石羊石虎山新石器時代墓葬」, 『考古』 10.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1993, 「內蒙古林西縣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7.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克什克騰旗南台子遺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 第1輯.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7, 「克什克騰旗南台子遺址」, 『內蒙古文物考古文集』 第2輯.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04, 『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書』, 科學出版社.
- 蘭豐實, 2006, 「論遼西與遼東南部史前時期的積石塚」, 『紅山文化研究—2004年 紅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方殿春, 1984, 「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玉器墓的發掘」, 『文物』 6.
- 方殿春·劉曉鴻, 2005, 「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積石塚的再一次調查與發掘」, 『北方文物』 2.

- 北京市文物研究所等, 1989, 「北京平谷上宅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文物』8.
- 徐光冀, 1981, 「紅山文化的發現」, 『新中國的考古收穫』, 文物出版社.
- 徐子峰, 2005, 「牛河梁紅山文化積石塚探析」, 『中央民族大學學報』2.
- 索秀芬·李少兵, 1994, 「林西水泉新石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監(1992年)』, 文物出版社.
- 索秀芬·郭治中, 2004, 「白音長汗遺址紅山文化遺存分期探索」, 『內蒙古文物考古』1.
- 索秀芬, 2005, 「小河西文化初論」, 『考古與文物』, 1.
- 索秀芬, 2006,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 田廣林, 2003, 『中國北方西遼河地區的文明起源』,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田廣林, 2004, 「紅山文化“壇·廟·塚”與中國古代宗廟·陵寢的起源」, 『史學集刊』2.
- 朱鳳瀚, 1979, 「吉林奈曼旗大沁他拉新石器時代遺址調查」, 『考古』3.
- 張蘭生·索秀芬等, 1997, 「我國北方農業交錯帶的環境變化」, 『地學前緣』1.
- 張興德, 200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 張興德·金仁安, 2006, 「紅山文化聚落的層次化演變與文明起源」, 『理論界』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64,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2, 「赤峰西水泉紅山文化遺址」, 『考古學報』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5, 「內蒙古敖漢旗興隆洼遺址發掘簡報」, 『考古』10.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97, 「內蒙古敖漢旗興隆洼聚落遺址1992年發掘簡報」, 『考古』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第一工作隊, 2004, 「內蒙古赤峰市興隆溝聚落遺址2002-2003年的發掘」, 『考古』7.
- 陳葦, 2008, 「從居室墓和石彫像看興隆洼文化的祖先崇拜」, 『內蒙古文物考古』1.
- 敖漢旗博物館, 1991, 「敖漢旗南台地趙寶溝文化遺址調查」, 『內蒙古文物考古』1.

- 遼寧省博物館 等, 1977, 「遼寧敖漢旗小河沿三鐘原始文化的發現」, 『文物』 1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6,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墓與積石塚群發掘簡報」, 『文物』 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8, 「阜新查海新石器時代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遼寧阜新查海遺址1987-1990三次發掘」, 『文物』 1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a, 「遼寧牛河梁2地點1號塚21號墓發掘簡報」, 『文物』 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b, 「遼寧牛河梁第五地點一號塚中心大墓(M1)發掘簡報」, 『文物』 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1998, 『大南溝-后紅山文化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遼寧凌源市牛河梁遺址第五地點1998~1999年度的發掘」, 『考古』 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8a, 「牛河梁紅山文化2地點1號塚石棺墓的發掘」, 『文物』 10.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8b, 「牛河梁第十六地點紅山文化積石塚中心大墓發掘簡報」, 『文物』 10.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查海-新石器時代聚落遺址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劉國祥, 2006, 「西遼河流域新石器時代至早期青銅時代考古學文化概論」, 『遼寧師範大學學報』 1.
- 劉晉詳, 1989, 「翁牛特旗小善德溝新石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監(1988年)』, 文物出版社.
- 劉振華, 1994, 「內蒙古奈曼旗滿德圖遺址」, 『社會科學輯刊』 1994 增刊.
- 邵國田, 1995, 「概述敖漢旗的紅山文化遺址分布」, 『中國北方古代文化 國制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文史出版社.
- 楊虎, 1989, 「敖漢旗西臺新石器時代和青銅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監·1988』, 文

物出版社.

- 楊虎, 1994, 「遼西地區新石器—銅石並用時代考古學文化序列分期」, 『文物』 5.
- 楊虎·林秀貞, 2009, 「內蒙古敖漢旗小河西遺址簡述」, 『北方文物』 2.
- 楊志榮, 1999, 『中國北方農業交錯帶全新世環境變化綜合研究』, 海洋出版社.
- 呂昕娛, 2009, 「紅山文化經濟形態述論」, 『赤峰學院學報』 8.
- 呂學明, 2000, 『紅山文化墓葬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熊增龍, 2005, 『紅山文化墓葬制度及相關問題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魏凡, 1994, 「牛河梁紅山文化第三地點積石塚石棺墓」, 『遼海文物學刊』 1.
- 李恭篤, 1986,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遺址試掘報告書」, 『考古』 6.
- 李取生·李崇岭, 1993, 「東北泥炭發育與中全新世降溫事件的初步研究」, 『中國生存環境歷史演變規律研究』(一), 海洋出版社.
- 이성주, 2000, 「지석묘: 농경사회의 기념물」, 『韓國 支石墓 研究 理論과 方法—階層社會의 發生』, 주류성.
- 이청규, 2010,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요서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易華, 2006, 「紅山文化定居農業生活方式—兼論遊牧生活方式的起源」, 『紅山文化研究—2004年 紅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馮文學, 2007, 「對牛河梁紅山遺址第十六地點的考古發見與認識」,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報)』 5.
- 夏玉梅·李取生等, 1993, 「東北全新世溫暖期氣候變化的初步研究」, 『中國生存環境歷史演變規律研究』(一), 海洋出版社.
- 華玉冰·楊榮昌, 1998, 「紅山文化墓葬剖析」, 『青果集—吉林大學考古學系十周年紀念文集』, 吉林大學考古系 編, 知識出版社.
- Renfrew, C., 1976, Megaliths, territories and population, In de Laet, S. J. (ed) *Aculturation and Continuity in Atlantic Europe*, Dissertationes Archaeologicae Gandenses X VI.
- Kinnes, I. A., 1982, Les Fouillages and megalithic origins. *Antiquity* 56.

## [국문 초록]

###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오대양

홍산문화는 요서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중심연대는 약 6000~5000년 전 사이이다. 유적의 분포와 밀집현상 및 문화 특징 등으로 미루어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중심지역은 노합하 중상류에서 대릉하 중상류 지역 사이이며 이곳은 전체 분포지의 중심지역이다. 홍산문화의 전기 사회는 농업과 수렵을 병행한 사회였다. 그러나 이전 시대에 비해 대량 출토되는 농구류와 그 종류의 다양성은 농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준다. 후기에는 돼지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이 보편화되며 농구류의 대량 생산, 중심취락과 일반취락군의 분화, 대형 환호취락의 등장 등 발달된 정착 농경문화의 요소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요서지역의 적석총문화는 이처럼 발달된 정착 농경을 바탕으로 형성됐으며 단·묘·총을 조합으로 한 대규모의 적석총 유적군은 당시 사회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은 홍룡와문화 단계의 백음장한 유적으로 이해했다. 이는 동일 유적 내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시기의 무덤양식이 동일한 장제와 장속을 채용한 데에 근거했다. 하지만 홍룡와문화와 홍산 시기의 적석총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는 상당수의 이질적 요소가 발견되는데 약 1000년의 시간차가 만들어낸 필연성에 근거한다. 또한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되는 단·묘·총 조합의 적석총문화는 백음장한 유적의 홍산문화 초기단계 적석묘와 직접적 계승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또한 양자 간의 부장유물을 비롯한 장제와 장속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 현상이 발견된다. 즉 전승관계에 있는 동일 문화권 내 같은 유형의 무덤들 사이에도 지역과 시간차를 두고 그것을 조영한 사람들의 관념체계나 사후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국문 주제어

홍산문화, 홍릉와문화, 적석총, 요서지역, 신석기시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Stone Mound Tomb  
Culture in the Liaoxi Area of China

Oh Daeyang

Hongsan culture, which flourished approximately 6000~5000years ago, is from the Middle Neolithic Age in the West Liao River area. Considering dispersion, crowding,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mains, it is the central area between the upper and middle sections of the Liao River and the Daling River, which were the main regions of the “Area west of the Liao River” stone mound tomb culture. We can say that this region is the central area of the Hongsan culture remains.

The early period of Hongsan culture was the farming–hunting mixed society. But we can anticipate that farming was more developed than before through the larger amount and diversity of agricultural tools than from earlier periods. In the latter period of Hongsan culture, raising livestock, such as pigs, became more common. There were many factors indicating a more developed sedentary agriculture, such as the large discoveries of developed agricultural instruments, the division of central and ordinary communities, the appearance of a large village with round dugouts, and other objects. This means the stone mound tomb culture in the area west of the Liao River was built upon the base of such a developed sedentary agriculture. And the large scale of the stone mound tomb also suggests that the society in that period was very near to the stage of civilization.

In that society, internal group–strata structures were already

present. There were special social classes (for example, priest), specialized craftsman(for example, potter), and ordinary people who mainly worked in farming. And we may even consider human sacrifice in the sacred rites. In the period of constructing stone mound tombs, there were gaps among each settlement and each group had its own life domain.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an early stage of military power may also be considered. It is also true that though we cannot yet find specific evidence of military power, we can confidently infer it from the social situation in that period.

Thus, these diverse factors offer confidence for the argument that the Hongsan culture was close to civilization though only at a very early stage.

Keywords

Hongsan culture, Xinglongwa culture, stone mound tombs, the Liaoxi area, the Neolithic Age



# ‘중화인민공화국’ 국호(國號) 작명 과정 고찰

## - 특히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

이병호 | 홍콩과학기술대학(HKUST) 강사



### I. 머리말

한 국가의 명칭은 국시(國是)를 가장 간명하게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 태어날 나라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지하듯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주도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공식 출범하였다.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 명칭은 그 자체로 여러 함의를 내포한다.

우선 ‘중화’는 1912년 세워진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다. ‘중화’는 본디 특정 지역이나 종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 유교문명 그 자체를 뜻하는 용어였다.<sup>1)</sup> 이 전통적 호칭을 국명으로 사용한 것은 청말 배만(排滿)사상에 기반

※ 투고일: 2014년 3월 9일, 심사일: 2014년 8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25일  
1) 중화는 中國과 華夏를 조합한 단어로 대략 魏晉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朴漢濟, 2006, 「中華의 分裂과 隣近 各國의 對應 — ‘多重的’ 中華世界의 成立」, 『中國學報』 第54輯, 251~279쪽.

을 둔 한족(漢族) 중심의 민족주의 혁명가들의 구호인 ‘오랑캐를 몰아내어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창립한다’(驅除韃虜, 恢復中華, 創立民國)에서 연유하며, 1907년 5월 장타이엔[章太炎](炳麟, 1869~1936)이 『민보(民報)』에 발표한 「중화민국해(中華民國解)」에서 이론적 뒷받침을 받는다.<sup>2)</sup> 하지만 신해혁명 이후 전개된 국가건설 과정에서 ‘중화’는 특정 민족을 배제하는 배타적 논리에서 벗어나 지형학적으로 결정된 중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집단을 포괄하는 ‘중화민족’이란 개념으로 발전하였다.<sup>3)</sup> 다음으로 ‘인민’이란 용어는 1948년 9월에 내려진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시를 따라 각급 단위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의 이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sup>4)</sup>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마오쩌둥사상에 근거한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를 구현하는 정치공동체임을 표상한다. 특히 ‘국민’이 아닌 ‘인민’을 내세운 것은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만든다.<sup>5)</sup> 마지막으로 ‘공화국’은 세습군주제가 아닌 인민에 의해

2) 1905년 孫文이 결성한 中國同盟會의 강령이다. 민국혁명 이전 章太炎을 비롯한 중국 혁명가들의 反滿主義에 대해서는 이병호, 2008, 「東北工程」前史 — 傅斯年的『東北史綱』비판, 『동북아역사논총』 20호, 249~250쪽.

3) 중화민족과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拙稿 Lee Byung-Ho, 2013, “Imagined Commonalities: Making Sense of China’s Genealogical Nationalism,”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10(2), pp. 87~99.

4) 원문은 我們是人民民主專政, 各級政府都要加上‘人民’二字, 各種政權機關都要加上‘人民’二字. 毛澤東, 1996, 『毛澤東文集』(第五卷), 北京: 人民出版社, 135쪽.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 발언.

5) 여기서 ‘인민’은 단순히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국민’과 분명히 구별된다. 반동적 착취계급으로 분류되는 구성원은 국민에 속하지만 인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사상개조를 통해 새로 거듭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人民政協共同綱領草案的特點」, 『建國以來周恩來文稿』(第1冊, 1949年 6月~1949年 12月),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329쪽.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小花. 이 책에 따르면 國府 하에서 인민은 통상 국민과 비슷하게 사용됐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을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립적인 범주로 정의하였다. 요컨대 ‘국민당과의 대항성을 앞세워 더욱 국민 개념을 배척하려 했던 공산당은 인민 개념을 ‘적배제의

선출된 대표자들이 헌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민주국가라는 의미이다. 후술하듯 '민국'이 아닌 '공화국'으로 정한 것은 마오쩌둥사상의 핵심인 '신민주주의' 강령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가를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세워진 중화민국과 차별화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요컨대 '중화'는 계승하지만 국부(國府)와 달리 '국민'과 '민국'을 각각 '인민'과 '공화국'으로 대체한 것이다.<sup>6)</sup>

오늘날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을 당연시 여기지만 그렇게 결정된 내막은 꼼꼼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국호(國號) 결정 과정은 특히 중공 지도자들의 국가주권에 대한 인식과 변경지역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의 추이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근현대 중국의 국가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중국 본토에서조차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다.<sup>7)</sup> 이 글은 근래에 나온 국명에 관한 짤막한 단편적 논의를 정리해 소개하기보다는, 나라 이름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던 연방국가 건설방안으로부터 단일국가 수립이라는 이행과정을 1921년 중공 창립부터 1949년 9월까지를 아우르는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선 애초부터 중공 지도부가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내정한 것은 아니었다. 중공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에는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93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中華蘇維埃共和國)' 또는 '중화소비에트연방'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대장정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지도력이 확립된 이후에도 국가 명칭은 수차례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공산혁명 성공 이후 세워질 국가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마오쩌둥의 중대선언들 가령 1940년 1월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1945년 4월 「연합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적극 활용했다”(같은 책, 146~147쪽).

6) 이념에 따른 용어 선택의 차이는 한반도에 세워진 두 국가의 공식 명칭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7) 몇 해 전부터 2~3쪽 분량의 단편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 潘煥昭, 2007, 「“中華人民共和國”國名考」, 『黨的文獻』 第3期, 75~76쪽; 宋月紅, 2007, 「“中華人民共和國”國名補考」, 『黨的文獻』 第5期, 68~69쪽; 龍心剛, 2009, 「也談“中華人民共和國”作為國名的原因 - 兼與潘煥昭老師商榷」, 『當代中國史研究』, 第16卷 第1期, 102~105쪽.

정부론[論聯合政府], 1949년 6월 중공 28주년 기념연설인 「인민민주전정론 [論人民民主專政]에서 나라 만들기 과정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국명 문제는 잠정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글에서 밝히듯이 「신민주주의론」에서는 ‘중화민주공화국(中華民主共和國)’으로 칭했고, 이후 「연합정부론」에서는 ‘중화민주공화국연방(中華民主共和國聯邦)’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1948년에 접어들어 비로소 중공 중앙 정치국 문건에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단어의 용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최종 선택하고 대외로 공포한 것은 신정권 수립 불과 몇 주 전인 이듬해 8월에서 9월 초 사이였다.

그렇다면 중공 지도부는 왜 국호 확정을 마지막까지 미룬 것일까? 필자는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민족연방제 실시 여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민족연방을 만든다는 구상은 중공 탄생 당시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당의 노선이며 심지어 정부 수립 예정일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던 1949년 8월 22일 중공 중앙 내부문건에도 나타난다. 사실 국가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를 넘어 민족독립, 민족자치, 평등자결권 같은 민족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였다. 즉 변경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문제였다. 이는 또한 이론적 난제이기도 하였다. 하나로 통일된 단일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사상과 더불어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레닌주의적 민족연방제 노선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었다. 다수의 민족 공화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인 소비에트연방은 다른 아닌 레닌과 스탈린의 민족이론과 정책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명 결정 과정은 『춘추공양전』에서 기원한 중국 전통사상의 핵심인 대일통(大一統) 관념을 따른 단일제와 볼셰비키 방식을 따른 연방제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의 문제이며 소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sup>8)</sup>

8) 먼저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는 다민족 통일국가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Lee, 2013, 앞의 글. 그리고 ‘볼셰비키 방식’에 대해서는 沈憲用, 2000·2001,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中蘇研究』 88호, 111~141쪽. 그가 규정하는 볼셰비키 방식은 러시아 혁명 이후 새로운 국가 형성의 과도기 당시 민족문화적 자치방안보다는 정치적 자결권을 전제로 한 방안을 여러

물론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국 전야 당시의 여러 정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발간된 마오쩌둥 저작집에서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중국 당국은 민족연방제라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왔다. 국가 명칭이 정해진 과정을 포함해 건국 전야의 많은 수수께끼는 1980년대까지 거의 풀리지 않았다. 다만 1990년대부터 건국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중공 지도자들의 회고록이 출판되고 당시 중요 문건들이 속속 공간(公刊)되면서 비로소 국명을 둘러싼 정황들도 조금씩이나마 밝혀지고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8월 22일자 문건은 중공 중앙 문서고[檔案館]에 비장(秘藏)되어 있다가 2008년 『건국 이래 주은래 문고(建國以來周恩來文稿)』가 출간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대륙의 중공 당사(黨史) 연구자들은 다양한 학술성과들을 내놓고 있다.<sup>9)</sup>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당과 국가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학술보국(學術報國)이란 관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의를 요한다.

이 글은 국가 성립 이전 중공 지도부가 사용했던 국가 명칭들을 검토하고 특히 건국 전야에 내려진 몇 가지 중대한 결정들을 고찰한다. 우선 중공 초기부터 1930년대 말까지 보이는 민족자치연방 구성계획을 살핀다. 다음으로 1940년대 마오쩌둥 사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제안된 몇 가지 국가 명칭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건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1948년 후반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약 1년간 국호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과 중공 중앙의 입장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

민족에게 광범위하게 실현시켰다는 점을 의미한다. 민족 '자치권'을 넘어 '자결권'에 방점이 찍힌 볼셰비키 방식의 연방국가 방안은 당시의 지정학적 정세를 고려한 것이며 非러시아 민족들의 사회주의 혁명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9) 특히 王續添, 2013, 「現代中國兩次民族國家構建中單一制選擇之比較—兼論現代中國國家基本制度建設(上)(下)」, 『中共黨史研究』第8期, 68~80쪽, 第9期, 72~84쪽; 陳揚勇, 2013, 『建設新中國的藍圖—《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II. 중화연방공화국: 초기 중공의 입장

혁명이 성공한 다음 세워질 국가 명칭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중국공산당이 공식 출범한 이듬해인 1922년 7월 발표한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선언(中國共產黨第二次全國代表大會宣言)」에 나타난다. 여기서 중공은 다섯 단계의 점진적인 국가 수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내란을 종식하고 군벌을 타도하며 국내 화평을 세운다. ② 국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압박을 뒤엎고[推翻] 중화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달성한다. ③ [동삼성(東三省)을 포함하는] 통일중국본부(統一中國本部)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든다. ④ 몽고, 티베트[西藏], 회교도 지역[回疆]에는 자치를 실행하면서 민주자치방(民主自治邦)으로 만든다. ⑤ 자유연방제를 통해 통일중국본부, 몽고, 티베트, 회강을 아우르는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을 건립한다.<sup>10)</sup>

이러한 중화연방공화국 구성방안은 민족자결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레닌주의 민족이론과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받았던 당시 중공 지도자들이 공유하던 인식이었다.<sup>11)</sup> 가령 리다자오[李大釗, 1888~1927]<sup>12)</sup> 그리

10) 中共中央統戰部 編, 1991, 『民族問題文獻彙編, 1921, 7~1949, 9』,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8쪽.

11) 중공 초기 지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文紅玉·王智, 2010, 「早期中國共產黨聯邦制思想的歷史考察及評析」, 『中共黨史研究』 第3期, 57~66쪽; 陳明明, 2005, 「聯邦制: 中國共產黨早期綱領與政策的一個觀察」, 『浙江學刊』 第4期, 152~162쪽.

12)李大釗의 사상에 대해서는 백지운, 2013, 「민족국가의 개조와 아시아-리다자오(李大釗)의 '연방론' 재독」, 『아세아연구』 제56권 4호, 37~70쪽. 당초李大釗는 '연방'보다는 다소 완화된 개념인 '聯治'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1920년대 들어 보다 분명하게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하였다. 백 씨는 "소비에트연방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작지 않은 흠이지만, 연방에 자유로운 탈퇴 가능성을 명시한 대목은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압제도 없는, 오로지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연방의 설립"이李大釗가 말하는 국가개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같은 글, 65~66쪽). 그런데 그는 이어李大釗가 '잠시' 열었던 연방국가에 대한 비전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잠기게 됐다고 결론을 내린다(같은 글, 68쪽). 하지만李大釗만 자유연방제를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그의 사망 이후 바로 사그라진 것은 더욱 아니었다. 뒤에서 논하겠지

고 쥐추바이[瞿秋白, 1899~1935]<sup>13)</sup> 등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변경지역에 대한 자유연방제 실시와 더불어 하나 주목할 것은 ①에서 ③의 단계를 거쳐 수립될 '통일중국본부'라는 개념이다. 이는 여러 지방 군벌세력으로 쪼개진 중국 내지(內地)의 정치적 분열상태를 종식하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공 지도자들은 천두슈[陳獨秀, 1879~1942]를 필두로 당시 남중국 여러 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성헌(省憲) 제정과 연성자치운동(聯省自治運動)과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sup>14)</sup> 한편 ④의 단계에서 말하는 몽고, 티베트, 회강에 대한 자치방(自治邦) 건설계획은 만한몽회장(滿漢蒙回藏)을 아우르는 쑨원(孫文)의 오족공화론(五族共和論)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몽회장(蒙回藏) 세 민족과 달리 만주족을 위한 자치지역, 즉 만강(滿疆)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의 단계에서 밝히듯이 동북삼성 지역은

만, 중공 지도부는 대체로 1948년경까지 자유연방제 원칙과 소비에트연방과 같은 국가형태 방안을 지지하였다. 소련과 중국을 구별하고 둘 사이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은 건국이 무르익은 시점에야 비로소 분명해진다.

- 13) 1926년 1월 瞿秋白은 레닌주의와 중국혁명에 관해 논의하면서 중국의 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응당 소련을 모범(應當以蘇聯爲模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변경의 피압박 약소민족들은 완전한 자결권을 가지며 만일 이들이 원할 경우 자유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중국혁명에 동참하여 聯盟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장래 혁명정부가 들어설 시기에는 각 민족의 연방공화국(各民族的聯邦共和國)은 혁명정부의 공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瞿秋白의 글 「列寧主義與中國的國民革命」은 당 기관지 『嚮導』에 실렸으며 그 일부는 中共中央統戰部 編, 1991, 앞의 책, 71~72쪽에 수록되었다.
- 14) 文紅玉·王智, 2010, 앞의 글. 그리고 1920년대 연성자치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 Li Chien-nung(李劍農), 1967, “A Federal Government Movement and Melee Among the War Lords,” in *The Political History of China, 1840~1928*,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401~435. Jean Chesneaux, 1969, “The Federalist Movement in China, 1920~1923,” in Jack Gray (ed.), *Modern China's Search for a Political For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6~137. Keith R. Schoppa, 1977, “Province and Nation: The Chekiang Provincial Autonomy Movement, 1917~1927,” *Journal of Asian Studies* 36(4), pp. 661~674. Arthur Waldron, 1990, “Warlordism Versus Federalism: The Revival of a Debate?” *The China Quarterly* No. 121(March), pp. 116~128; 胡春惠, 2011, 『民初的地方主義與聯省自治』(增訂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이미 변강이 아닌 중국 본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다.<sup>15)</sup>

비록 훗날 ‘중화연방공화국’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중공 중앙이 1922년 선언한 영토인식과 민족관념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중공 설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내지’와 ‘변강’을 구별하는 시각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공이 주장하는 ‘자치’라는 개념은 오로지 변강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둘을 조합하면 변경지역에 한정해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한다는 대원칙이 나온다. 이 원칙은 현재 중국 당국이 실시하는 민족구역자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치를 실시할 대상과 자치를 허용할 범위에 있다. 초기 중공의 입장은 대체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실시하던 다수의 민족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 제도를 큰 수정 없이 중국에 적용한 중화소비에트연방 모델이었다. 레닌이 주도하는 볼셰비키 방식을 따를 경우 단순히 ‘자치권’만이 아닌 연방에 대한 가입과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자결권’까지 보장되어야 하고 민족 간 평등권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sup>16)</sup>

이런 관점은 1931년 만들어진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憲法大綱)』에 잘 나타난다. 제14조는 중화소비에트 정권이 중국 경내(境內) 각 소수민족의 완전한 자결권을 승인하고 이들이 중국을 이탈해 스스로 독립된 국가를 세울 권리까지도 용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즉 중화소비에트연방 가입과 이

15) 만주족과 만주지역에 대한 중공의 이런 인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9년 정부 수립 당시에도 만주족은 자신들을 대변할 민족대표를 배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毛澤東 집권기간 내내 이들을 위한 민족자치지역은 설립되지 않았다. 遼寧省에 만주족 자치지방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85년 6월이다.

16)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 지도부는 민족보다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국제주의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당시 변경에서 일고 있던 민족운동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민족의 자결권을 실현해 주는 것이 혁명의 대오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견해를 가졌다. 특히 레닌은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민족단위 정치체가 러시아연방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된 정치적 자결권을 가진 채 연방에 가입하는 ‘동등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레닌의 연방제 구성안을 당내에서 관철시키고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CCCP)이라는 국가연합체로 현실화하는 데는 스탈린이 큰 역할을 하였다. 沈憲用, 2000·2001, 앞의 글, 114~125쪽.

17) 제14조 규정의 일부에 대한 원문은 中華蘇維埃政權承認中國境內少數民族的自決

탈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연방제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몽회장(蒙回藏) 민족은 각자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며 이후 중화소비에트공화국과 연합해 '중화소비에트연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소비에트연방 구성방안은 대장정 직후까지 이어진다. 가령 마오쩌둥은 1936년 7월에 이뤄진 에드거 스노(Edgar Snow)와의 인터뷰에서 혁명 이후 정세에 대해 “외몽고 공화국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중국연방의 일원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회교도들과 티베트인들도 중화연방의 구성부분이 될 자치공화국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8)</sup>

하지만 '민족자결'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은 1930년대 후반부터 항일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민족자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sup>19)</sup> 가령 1937년 7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중공 측에서 사용한 '민족자결권', '연방제', '민족구역자치'에 대한 용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40년까지 민족자결권은 109회(71.7%), 연방제는 13회(8.6%), 민족구역자치는 30회(19.7%)로 나타났으나 1941년부터는 그 상대적 비중이 각각 31.8%, 18.2%, 50%로 바뀌었다.<sup>20)</sup> 이런 분석결과는 당시까지만 해도 민족자결권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연방국가에서 단일국가로 완전히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살펴듯, 민족연방제 방안은 중공 지도부들이 작성한 문건에 나타나듯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막바지까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

權，一直承認到各弱小民族有同中國脫離，自己成立獨立的國家的權利。총 17개 조로 이뤄진 『憲法大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鄭志廷·張秋山, 2011, 『中國憲政百年史綱』, 北京: 人民出版社, 255~264쪽.

18) Edgar Snow, 1968,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Grove Press, p. 444.

19) 이 글에서는 당시 중공의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상론하지 않는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周昆云, 2002, 「民族自決權，聯邦制，民族區域自治—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民族理論思想的再探討」, 毛公寧·王鐵志 主編, 『民族區域自治新論』, 北京: 民族出版社, 99~127쪽.

20) 周昆云, 2002, 앞의 글, 104쪽. 세 가지 키워드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민족구역자치'와 유사한 관련 용어들 가운데 '지방자치'나 '독립자치'같이 그 의미가 상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周씨는 中共中央統戰部 編, 1991, 앞의 책과 『毛澤東選集』 등에 수록된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했다.

### Ⅲ. 중화민주공화국연방: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중공의 입장

마오쩌둥은 1940년 1월 발표한 「신민주주의론」을 통해 혁명 후 세워질 국가 명칭을 “중화민주공화국(中華民主共和國)”으로 정하였다. 그는 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 구성과 정권 구성이 이루어질 ‘중화민주공화국’의 성격을 “신민주주의적 공화국”이자 “신삼민주의공화국(新三民主義共和國)”으로 규정하였다.<sup>21)</sup> 특히 영토주권과 민족 문제와 관련해, 이 선언은 근 10년 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실현되는 신중국 국가의 성격을 밝힌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었다.<sup>22)</sup> 여기서 ‘인민’이 아닌 ‘민주’라는 표현을 쓴 것은 1940년대 초 중공 지도부가 강조한 신민주주의 원칙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다가옴에 따라 변경지역 민족독립과 민족자결권 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자 기존의 ‘중화민주공화국’에 ‘-연방’이라는 꼬리가 붙기 시작하였다. 마오쩌둥은 1945년 4월 24일 중공 제7차 전국대표대회 회의에서 보고한 「연합정부론」을 통해 공산당 세력과 비공산당 세력이 향후 함께 만들어갈 연합정부에 대한 대원칙을 발표한다.<sup>23)</sup> 중공 주도로 만들어질 연합정부 구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변방 토착 민족지도자들의 협력을 얻는 문제였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한 마오쩌둥의 방안은 레닌이 주창한 볼셰비키 방식과 유사하며 앞서 인용한 1936년 인터뷰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각 소수민족이 가지는 자결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제 방안도 아래와

21) 毛澤東, 1948, 『毛澤東選集』 卷二, 東北書店, 244쪽.

22)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Douglas Howland, 2011, “The Dialectics of Chauvinism: Minority Nationalities and Territorial Sovereignty in Mao Zedong’s New Democracy,” *Modern China* 37(2), pp. 170~201. 하지만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듯이 1949년 10월 이후 중국의 입장이 이때 이미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 결과를 1940년 당시의 毛澤東사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고 목적론적(teleological) 해석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23) 1945년 5월 2일 『解放日報』를 통해 처음 대외로 공개되었다.

같이 제안하였다.

신민주주의적인 국가와 정권 문제는 연방이란 문제 역시 포함한다. 중국 경내 각 민족은 당연히 자원(自願)과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중화민주공화국연방(中華民主共和國聯邦)을 조직하고 이 연방의 기초에 연방제적 중앙정부를 조직한다.<sup>24)</sup>

국내 소수민족의 대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각 소수민족이 민족자결권을 가진다는 것과 자원 원칙하에서 한족과 함께 연합해 연방국가를 건립할 권리가 있음을 윤희(允許)한다.<sup>25)</sup>

두 인용문에 나타난 민족연방제 구상은 이후 제2차 국공내전(중국 내 표현은 해방전쟁) 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중공의 입장이었다.<sup>26)</sup> 마오쩌둥은 1948년 9월 중공 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중국 내부의 민족 모순을 지적하면서 민족 간 그리고 민족 내 모순은 10여 개 민족공화국들의 국가연합인 “소련의 방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可以用蘇聯的辦法來解決)”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의 민족연방제 방안을 재확인하였다.<sup>27)</sup> 소비에트연방 모델을 차용한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은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8년 여름 당시 만주지역을 관할하던 가오강[高崗, 1905~1954]이 내몽고 간부들에게 했던 연설에도 등장한다. 소위 ‘동북왕(東北王)’으로 불리던 가오강은 몽고인 중공 지도자 울란후[烏蘭夫]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국 해방 후 내몽고 자치정부의 미래에 대해 “자원과 민주적 원칙에 의거해 중국 경내 각 민족은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을 조성”하

24) 「論聯合政府」 일반강령에 보인다. 毛澤東, 1948, 앞의 책, 313쪽.

25) 「論聯合政府」 구체강령에 보인다. 毛澤東, 1948, 위의 책, 320쪽.

26) 1948년 만주 東北書店에서 간행한 『毛澤東選集』뿐만 아니라 이듬해 6월 新華書店에서 발행한 단행본 「論聯合政府」에도 두 문장은 수정 없이 실렸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출판된 「論聯合政府」에는 연방제 관련 구절들이 삭제되었다. 陳揚勇, 2009, 「《共同綱領》與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 兼談新中國民族區域自治政策的形成」, 『中共黨史研究』 第8期, 15쪽.

27) 毛澤東, 1996, 앞의 책, 145~146쪽. 인용된 발언은 「在中共中央政治局會議上的報告和結論」으로 불리는 연설의 결론 부분이며 9월 13일에 한 것으로 나온다.

며 “내몽고 자치정부는 이 연방의 북쪽 국경지역을 차지하는 중요 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내다보았다.<sup>28)</sup>

1945년 봄 민족연방제를 수용한 마오쩌둥의 연합정부 구성안이 중공 당조직을 대상으로 한 내부발표라면, 이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은 2년 뒤였다. 1947년 10월 10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인민해방군 총사령 주더(朱德)와 부총사령 평더화이(彭德懷) 명의로 발표된 「중국인민해방군선언(中國人民解放軍宣言)」 중 제7조는 “중국 경내 각 소수민족의 평등자치권과 중국연방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9)</sup> 여기서 “자유롭게 중국연방에 가입”한다는 구절은 1949년 9월 이후 공식 출판물에서 깨끗이 삭제되었다.<sup>30)</sup>

요컨대 연방제인가 아니면 단일제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1945년부터 1949년 10월 이전까지는 과도기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는 당시 내몽고에서 시행된 민족자치정부 건설이라는 실험에서도 드러난다.<sup>31)</sup> 이 시기 중공이 직접 통제하던 변경지역은 내몽고 정도였는데 이곳에 설치한 자치정부의 성격은 비독립(非獨立) 자치정부이자 중국 내 진정한 민주연합정부의 일부분이라는 원칙이 관철되었다.<sup>32)</sup> 그렇지만 1947년 5월 내몽고자치정부 수립 이후

28) 高崗의 연설은 1948년 8월 3일에 이루어졌으나 11월 24일자 『人民日報』에 뒤늦게 실렸다. 陳揚勇, 2009, 앞의 글, 16쪽; 陳揚勇, 2013, 앞의 책, 294쪽.

29) 원문은 承認中國境內各少數民族有平等自治及自由加入中國聯邦的權利. 陳揚勇, 2009, 위의 글, 15~16쪽; Zhao Suisheng, 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Dynamics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 175 참고.

30) 가령 1991년 人民出版社에서 간행한 『毛澤東選集』 제4권, 1238쪽에는 “及自由加入中國聯邦的” 10자가 빠져 있다.

31) 내몽고 지역 자치정부 수립에 관한 개괄적인 논의는 李國芳, 2012, 「中共民族區域自治制度的形成－以建立內蒙古自治政府爲例」, 『近代史研究』 第6期, 88~104쪽.

32) 민족정부의 성격과 방안에 관련해 중공 중앙은 1946년 봄에 몽고인 주도의 ‘독립’ 정부가 아닌 중국 내 ‘자치’정부를 세운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 이는 1946년 3월 23일자 「中共中央關於內蒙問題的指示」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1947년 3월 23일자 「中共中央關於內蒙古自治問題的指示」 등의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 中共中央統戰部 編, 1991, 앞의 책, 1034쪽과 1095쪽; 宋月紅, 2008, 「毛澤東

에도 자치정부의 향후 성격은 유동적인 상태로 남았고 특히 민족자치가 허용될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하였다. 여기에는 고도자치가 부여된 연방제 아래의 민족자치정부라는 방안과 중앙정부의 일관된 조정과 통제를 받는 단일국가하에서의 민족구역자치라는 방안이라는 두 가지 노선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오강의 1948년 발언은 전자로 나아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내몽고자치정부'라는 잠정적인 호칭이 현재와 같은 '자치구'로 정해진 것은 신중국 성립 직후인 1949년 12월이다. 내몽고자치구는 성급(省級) 단위로 내려간 1954년까지 상위 행정단위인 6개 대행정구(大行政區)와 동급이었다.<sup>33)</sup> 결국 변경에 대한 중공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만큼 자치정부의 행정적 위상은 하락하였다.

#### IV. '공동강령' 작성과 국호 결정 과정

1948년 국제노동절에 맞춰 발표된 23개 조의 '오일구호(五一口號)'는 신중국 성립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계기였다. 여기서 민주연합정부를 세울 회의기구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 구성이 정식으로 제안되었다.<sup>34)</sup> 더불어 그 해 10월경부터는 신생국가의 임시헌법으로 기능할 건국강령인 '공동강령(共同綱領)'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되었다.<sup>35)</sup> 추진 과정에서 국가

關於新中國實行民族區域自治的決策研究, 『中國藏學』第3期, 132쪽.

33) 오늘날과 같은 성급 단위의 5개 민족자치구라는 행정적 동일은 1965년 9월 티베트가 西藏自治區로 재편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한편 新疆은 내몽고와 티베트와 달리 1884년 세워진 新疆省의 존재에 근거해 건국 당시부터 줄곧 성급 행정단위였다.

34) 여기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라는 의미는 1945년 重慶에서 국민당 정부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新政協은 1954년 공식적인 헌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전인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역할을 임시로 대행하였다.

35) 陳揚勇, 2013, 앞의 책, 28쪽. 건국 전야에 작성된 중공 당내 문건들을 꼼꼼히 살

의 이름에 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대두됐는데 크게 보아 두 가지 논의 지점이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中華[①]國[②]

먼저 ①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다. 기존의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이란 명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해 대략 두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다. 우선 기존 ‘민주공화국’이란 표현을 ‘인민공화국’이란 새로운 용어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와 달리 두 안을 절충한 ‘인민민주공화국(人民民主共和國)’ 혹은 ‘인민민주국(人民民主國)’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음으로 ②의 문제는 국가 공식 명칭에 ‘연방’을 붙일지의 여부이다. 현재까지도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후차오무(胡喬木, 1912~1992)의 회고록이 그의 사후인 1994년에 출간되고 중공 중앙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중앙당안관(中央檔案館)에 소장된 미공개 자료들이 발간되면서 중공 당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일부나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sup>36)</sup>

우선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1948년 가을부터 수차례 사용되어왔다. 특히 그해 말 중공 중앙이 ‘공동강령’의 최초 초안을 기초할 당시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후 신정협(新政協) 준비를 위한 각종 회의와 관련 문건에도 유지되었다. 1948년 10월 말 중공 중앙이 작성한 「중국인민민주혁명강령초고(中國人民民主革命綱領草稿)」가 ‘공동강령’의 최초 초안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모든 민족이 연합해 세울 정부의 이름을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하

핀 陳씨에 따르면 ‘공동강령’이란 표현이 정식으로 처음 내부문건에 등장한 것은 1948년 10월 6일 중공 중앙이 東北局에 내린 전보다. 당시 중공과 정치협상을 할 民主黨派 대표들과 무당파 민주인사들의 일부는 하얼빈에 모여 있었다.

36) 胡喬木, 1994, 『胡喬木回憶毛澤東』, 北京: 人民出版社. 특히 제19장 「共同綱領的制定」; 『胡喬木回憶毛澤東』編寫組, 1994, 「毛澤東與《共同綱領》的制定」, 『當代中國史研究』第1期, 514쪽.

였다.<sup>37)</sup> 그리고 12월 30일 신화사(新華社)를 통해 발표된 마오쩌둥의 신년사 역시 “(1949년에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의 성립을 신고(宣告)하며 공화국의 중앙정부를 조성(組成)한다”고 천명하였다.<sup>38)</sup> 1949년 봄에 작성된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정부조직대강 초안(中華人民民主共和國政府組織大綱草案)」 등의 문건들에서도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 신중국의 국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중공 측과 함께 정협을 구성할 중국민주동맹(中國民主同盟)의 지도자였던 황옌페이[黃炎培, 1878~1965]나 푸단[復旦]대학 교수였던 법학자 장즈량[張志讓, 1893~1978]과 같은 인사들은 여기서 ‘공화’를 뺀 ‘중화인민민주국(中華人民民主國)’이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민주’와 ‘공화’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자 상호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건국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공 지도부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공화’가 아닌 ‘민주’를 빼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1948년부터 중공 중앙의 일부 문건에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 또한 사용되었다.<sup>39)</sup> 이처럼 ‘중화인민민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병용하는 혼선은 1949년 여름까지 이어졌으며 8월에 이르러서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보이보[薄一波, 1908~2007]의 회고에 따르면, 1949년 8월 14일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sup>40)</sup> 그리고 4일 뒤인 8월 18일 마오쩌둥 명의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당시 중공 측이 사용한 명칭은 ‘新疆伊寧特別區人民政府’)

37) 원문은 “소수민족은 자결 및 자치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少數民族有自決和自治之權利)” 이에 근거해 “각 민족이 자유롭게 연합하는 독립, 자유, 민주, 통일 그리고 부강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을 건립한다(建立各民族自由聯合的, 獨立, 自由, 民主, 統一與富強的中華人民民主共和國)”이다. 陳揚勇, 2009, 앞의 글, 17쪽.

38) 胡喬木, 1994, 앞의 책, 554~556쪽.

39) 구체적으로 사용된 용례는 胡喬木, 1994, 위의 책, 563쪽; 宋月紅, 2007, 앞의 글, 69쪽. 胡喬木이 술화하듯 毛澤東은 1948년에 ‘중화인민민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두 명칭을 모두 사용하였다.

40) 薄一波 본인이 참석했던 이날 회의에서는 국호 이외에 정협의 공식 명칭과 개회 시기에 대한 결정도 내려졌다. 薄一波, 1996, 『七十年奮鬥與思考』(上卷),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522쪽.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나온다.<sup>41)</sup>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만일 보이보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이 문건은 중공 중앙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가 명칭을 확정된 사실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중공 중앙의 결정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대략 9월 초였고 이때부터 비로소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호가 공식 문건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중공 중앙 지도부는 1949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당시 北平)에서 열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 수립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전체회의에 제출할 ‘공동강령’ 초안을 완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였다. 이를 위해서 6월 중순에는 정협 전체회의를 준비할 준비회(籌備會)가 베이징에서 만들어졌고 두 달가량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주도로 초안 만들기 작업에 들어간다.<sup>42)</sup> 저우언라이는 초안의 초고를 8월 22일 완성했고 이를 준비회 주임이던 마오쩌둥에게만 전달해 내용 검토를 요청하였다.<sup>43)</sup>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과정에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은 오로지 마오쩌둥 한 사람만 가졌음을 의미한다.

41) 서한의 전문은 馬大正 等, 2006, 『新疆史鑿』, 우루무치: 新疆人民出版社, 114쪽. 여기서 毛澤東은 9월에 열릴 정협 전체회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가 의향을 타진했고 가능하다면 9월 上旬까지 대표단이 베이징에 와주기를 청하였다. 당시 新疆 서북지역에서 제2차 東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이끌던 ‘일리(伊寧 혹은 伊犁)집단’ 지도부는 중공의 초청을 받아들일겠다는 회신을 8월 20일 毛澤東 앞으로 보냈고 23일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일리를 출발하였다. 그런데 소련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던 27일 바이칼 호수 상공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전원 사망하였다. 馬大正 等, 2006, 위의 책, 115쪽.

42) 周恩來가 ‘공동강령’을 起草하는 임무를 맡은 이유는 그가 이를 담당하던 籌備會 산하 第三小組의 조장이었기 때문이다.

43) 中央檔案館에 소장된 鉛印本에 근거한 8월 22일자 「《新民主主義的共同綱領》草案初稿」 전문과 이에 대한 해설은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291~315쪽. 당시 周恩來가 毛澤東에게 한 보고에 따르면, 이 문건은 당초 50부가 인쇄됐으나 毛澤東에게 먼저 전달되었다. 毛澤東의 검토 후 정치국과 기타 주요 간부들에게 발송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314쪽. 이처럼 ‘공동강령’을 확정하는 문제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마오쩌둥은 2주가량 초안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 가필되었다.<sup>44)</sup> 8월 22일자 초고와 9월 5일자 수정된 초안을 대조해보면 바로 이때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우언라이가 작성한 8월 22일자 「《신민주주의적공동강령(新民主主義的共同綱領)》 초안초고(草案初稿)」는 비록 '중화인민공화국'이란 표현을 몇 차례 간헐적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국명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sup>45)</sup> 그런데 일반강령(一般綱領) 부분에서 보이는 “모든 진보민주 역량과 연합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 일은 현 단계 중국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6)</sup> 굳이 “현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할 모종의 단계를 상정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필자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은 일반강령에 나오는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한 지위를 누리게끔 하며, 각 민족의 자치권을 실현하며, 자원과 민주원칙에 의거해 중화各民族연방(中華各民族聯邦)을 조성한다”는 구절이다.<sup>47)</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8월 말까지도 국가 명칭에 '연방'을 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 스스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했고, 이즈음 당의 민족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부장이자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리웨이한[李維漢, 1896~1984]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이때 리웨이한은 소련과 중국의 몇 가지 차이점을 들어 연방제 불가론을 피력했고 마오쩌둥은 이를 받아들인다.<sup>48)</sup> 이 시점부터 단일제(單一制) 국가

44) 胡喬木, 1994, 앞의 책, 559~560쪽.

45)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초안초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총 3건이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앞의 책, 292·293·305쪽.

4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292쪽. 일반강령 부분 첫 단락에 나온다.

4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296쪽. 이와 관련해 총 45개조로 구성된 具體綱領의 제13조는 민족정책을 다룬다. 이 조항은 각 소수민족이 모두 민족자치구를 세우며 민주적인 민족연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304쪽.

48) 필자는 194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통전부 부장을 지낸 李維漢의 민족이론과 민족정책, 특히 그의 연방제 불가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향후 별도의 지면

라는 노선은 확정됐고 이는 현재까지 철저히 고수되고 있다. 앞서 살폈듯이, 1949년 이전 민족연방제와 관련하여 중공 지도부가 했던 발언들은 이후 삭제되었다.

마오쩌둥이 주도적으로 수정한 9월 5일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초안)」에는 8월 22일자 초고에서 사용됐던 “민족자결”이나 “중국각민족연방”과 같은 표현들이 모두 빠졌다. 동시에 저우언라이는 이 수정된 초안의 일부를 고쳤는데 이때 각 소수민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마땅히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해야 한다(應實行民族的區域自治)”는 표현이 추가되었다.<sup>49)</sup> 이로써 민족자결원칙에 의거한 국가연합식 연방제가 아닌 단일공화국 내 구역자치를 실시한다는 중공의 공식 입장은 완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틀 뒤인 9월 7일 저우언라이는 정치협상의 대상이자 연정의 파트너인 민주인사들을 대상으로 「인민정협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關於人民政協的幾個問題]」라는 보고문을 발표한다.<sup>50)</sup> 여기서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 가운데 하나인 국가 명칭 확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sup>51)</sup>

이 조직법 초안에 밝힌 국가제도는 우선 신민주주의 이론을 따르며,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工農연맹에 기초하며, 각 민주계급과 중국 경내 각 민족이 단결하는 人民民主專政의 국가임을 표명한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현재 단지 하나의 문제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國名 문제이다. 현재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의 초안에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의 “민주” 두 자가 빠져 있는데 그렇게 삭제된 원인은 “민주”와 “공화”가 같은 의미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북은 피해야 하니 국가 명칭에는 “공화”라는 두 자를 사용하는 방안이 비교적 좋다

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49) 陳揚勇, 2013, 앞의 책, 299~300쪽.

50) 周恩來, 1984, 「關於人民政協的幾個問題 (1949. 9. 7)」, 『周恩來統一戰線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29~143쪽.

51)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초안은 10일 뒤 9월 17일 열린 정협 籌備 제 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鄭志廷·張秋山, 2011, 앞의 책, 319~320쪽.

고 보인다.<sup>52)</sup>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국명은 “중화민국”이고 이는 공화의 의미를 가지나 다소 불완전한 것이다. …… 현재 우리는 구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마땅히 구별하여야 한다. 신해혁명 시기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에는 오로지 구민주주의만 있었을 뿐이다. 그 후 우리는 不完備된 구민주주의에서 완비된 신민주주의로 진보해왔다. 오늘 국가의 명칭을 국가의 본질에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의 국명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sup>53)</sup>

이는 중공 중앙 측에서 국가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확정됐음을 대외에 알린 선언이다. 건국을 불과 3주 남짓 앞둔 시기에야 비로소 국가 명칭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런데 후차오무의 회고에 따르면, 이 때 국명을 확정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더 격렬한 논쟁을 이끈 사안은 국명의 약칭(略稱) 문제였다고 한다. 원래 1948년 11월 정부조직법 최초 초안에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의 간칭(簡稱)인 중화민국”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sup>54)</sup> 대안으로 ‘중국’으로 줄이자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이는 관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굳이 약칭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종적으로 모든 정협 문건에는 약칭 없이

52) 여기서 “민주”라는 두 자를 삭제하는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인민”이란 용어는 人民民主專政의 개념을 포함하기에 생각됐다는 것이다. 이는 董必武가 1949년 9월 22일에 했던 보고에서 나타난다. 潘煥昭, 2007, 앞의 글, 76쪽. 潘씨는 “인민”은 주권의 소재를 규정하는 國體 문제인 반면 “공화국”은 정부 형태를 의미하는 政體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龍心剛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는 “인민”뿐만 아니라 “공화”라는 개념과도 중복 또는 상호 교차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龍心剛, 2009, 앞의 글, 103~104쪽. 요컨대 周恩來와 董必武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인민”과 “공화” 모두 國體와 관련이 있다. 반면 국호에 ‘-연방’을 포함하는 것은 政體를 정하는 문제다.

53) 周恩來, 1984, 앞의 책, 138~139쪽.

54) 1949년 이전 ‘중화민국’을 사용한 예로는 내몽고 자치정부를 “중화민국의 組成부분”으로 표현한 1947년 7월 16일자 『人民日報』 기사 「內蒙開始創造自由光明的新歷史」를 들 수 있다. 陳揚勇, 2013, 앞의 책, 293쪽에 인용. 이 같은 표현은 당시 蔣介石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에 중공 측이 사용한 약칭으로 보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정식 명칭만이 사용되었다.<sup>55)</sup>

앞에 인용된 연설에서 저우언라이는 이어 국가 이름에 ‘연방’이란 표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다루면서 소수민족 자치 문제와 연방제 불가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안에 당연히 포함되며 그들의 자치권을 승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이 여기에 매우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제도와 관련해 여전히 풀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국가가 다민족 연방제여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起草할 때의 생각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비록 다민족 국가이지만 총 4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는 한족이 최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특징 또한 가진다. …… 우리는 민족자치를 주장하지만 제국주의 세력이 민족 문제를 빌미로 우리를 도발하고 중국의 통일을 이간질하는 것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 모든 민족이 자결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티베트, 대만 그리고 新疆까지 분열시킬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각 민족이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가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연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sup>56)</sup>

이 인용문은 각 민족의 자치권은 인정하되 이를 구현할 제도적 방안으로 연방제가 아닌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한다는 중공 지도부의 결정을 담고 있다. 주지하듯 민족구역자치 방안은 오늘날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통일된 단일공화국 내 자치를 선택한 이상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까지 허용하는 민족자결권은 더 이상 강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1945년 「연합정부론」에서도 나타났던 민족자결권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 입장 또한 급변하였다. 이런 태도 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인 1949년 10월 5일 중

55) 胡喬木, 1994, 앞의 책, 563~564쪽.

56) 周恩來, 1984, 앞의 책, 139~140쪽.

공 중앙이 당시 서남부 변경지역으로 진군하던 인민해방군 제2야전군 사령부로 하달한 전문에 잘 드러난다. 이 문건은 '국내' 민족 문제와 관련해 국가 통일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소수민족 자결권 문제를 더 이상 강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민족자결권'이라는 구호는 제2차 국공내전 시기 국민당의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고 그 당시엔 시의 적절했으나 신중국이 탄생한 이상 더는 강조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sup>57)</sup>

그런데 국가연합식 연방제와 자치공화국 수준의 고도자치 방안을 배제한 중공의 결정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변경을 지배하던 토착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설득과 협상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다소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까지도 인민해방군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티베트지역 지배계층의 의지와는 무관하였다. 정협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온 소수민족 대표는 내몽고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저우언라이는 앞서 살펴본 9월 7일 회의석상에서 이런 현실에 큰 아쉬움을 표시하였다.<sup>58)</sup> 요컨대 신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연합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몹시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변경지역 민족갈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었다.

일단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명이 확정되자 이후 10월 1일 건국까지 약 3주 동안에 그간 남겨져 있었던 과제들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우선 '공동강령'은 두어 차례 추가 수정을 거친 뒤 건국을 이틀 앞둔 9월 29일 정협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sup>59)</sup> 하지만 전체회의가 열리기 불과 4일 전인 9월 17일

5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2, 「中共中央關於少數民族“自決權”問題給二野前委的指示」,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1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4쪽. 이 전문은 민족자결권 대신 중국 각 민족의 우애합작과 상호단결을 특히 강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58) 원문은 民族方面的代表的確是比較少, 這是一件遺憾的事. 周恩來, 1984, 앞의 책, 140쪽.

59) 周恩來는 대략 9월 5일, 11일, 13일에 걸쳐 세 차례 정도 '공동강령'을 수정하였다. 초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對《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草案的修改」을 참고.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앞의 책, 355~368쪽.

까지도 국기(國旗), 국휘(國徽), 국가(國歌)는 정해지지 못했고 이들 문제는 결국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다.<sup>60)</sup> 국기를 오성홍기(五星紅旗)로 확정하는 결정은 전체회의가 마무리되어 가던 9월 27일 통과됐으며 다음날 관련 법령이 회의 주석단에 의해 공포됐고 신화사를 통해 발표되었다.<sup>61)</sup> 이처럼 국가 상징을 정하는 중대 사안들이 불과 열흘 사이에 촉박하게 처리된 이유는 선결과제였던 국가 명칭이 뒤늦게 결정됐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중공 주도의 국가 만들기 과정과 관련해 국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1940년대 후반 나라 이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중공 지도부가 작성했던 각종 문건들을 추적해서 재구성하면 대략 ‘중화민주공화국’,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순으로 변화하였다. 비록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용어가 194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1949년 초여름까지만 해도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협 준비 과정 막바지인 8월 중순부터 9월 초 사이 ‘인민민주’ 혹은 ‘민주공화’라는 표현은 개념의 중복이란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확정되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줄임말로 ‘중화민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다고 여겨진다. 결과로만

6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375~378쪽. 국기, 국휘, 국가에 대한 방안을 정하는 것은 당초 정협 籌備會 第六小組에서 맡은 사안이었다. 鄭志廷 張河山, 2011, 앞의 책, 319~320·332쪽.

6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위의 책, 407~408쪽에 실린 「爲更正《國旗制法說明》給胡喬木的信」을 참고. 周恩來가 胡喬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당시 新華通訊社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본다면 현재의 국가 명칭은 보이보의 회고를 근거로 할 때 1949년 8월 14일 중공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공 지도자들은 국호 문제에 대해 장고를 거듭했으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데 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런 상황은 신해혁명 몇 해 전 혁명 후 만들어질 국가의 이름을 미리 정했던 중화민국 건국 과정과는 크게 달랐다. 장타이옌의 「중화민국해」에 견줄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해(中華人民共和國解)」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산혁명의 승리가 중공 지도부조차 놀랄 정도로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진 데 있다. 건국 1년 전인 1948년 9월까지도 내전의 향방은 불투명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명을 심각하게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당시 중공 당국자들은 중국 전체를 해방하는 데 최소 3~4년 걸린다고 계산하고 있었기에 대륙에서 장제스 정권을 몰아내는 것은 빨라야 1951년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sup>62)</sup> 194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단 4개월 동안 만주지역 점령[遼瀋戰役], 베이징 포위 합락[平津戰役], 중원 석권[淮海戰役]이라는 국공내전 3대 전투의 승부가 정해지면서 중공 쪽으로 대세가 급속히 기운다. 이처럼 신중국 국가 건설이란 현실이 당초 기대보다 몇 해 빨리 다가오자 다급히 국가 이름을 정하는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이란 명칭으로 불렸던 민족연방국가 방안이다. 변경지역 민족들의 자결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인 민족연방제 안은 중공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였다. 건국 전야 당시 소련과의 국경지역으로 그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신강, 그리고 실질적 독립상태였던 티베트는 아직 인민해방군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15개 공화국의 국가연합인 소련의 민족연방제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은 1921년 중공이 결성된 이래 1930년대 말까지 당의 공식 노선이었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 비록 연안[延安]시대에 들어와서 연방제의 핵심이라

62) 陳揚勇, 2013, 앞의 책, 24~25쪽.

할 연방으로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인정하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강조는 점점 줄었지만, 적어도 1948년까지 중공 지도부는 민족 문제에 대한 볼셰비키 방식을 받아들여 각 민족의 자결권과 민족 간 평등권에 입각한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을 세운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연방제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자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 민족자결권에 대한 중공의 입장은 확고한 부정으로 급선화하였다. 민족자결권은 이제 서방 제국주의 세력의 술책이자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변경지역 반동집단의 논리로 매도되었다.<sup>63)</sup> 아무튼 민족 문제를 볼셰비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은 비단 신중국 수립 이전의 중국공산당만이 취한 것은 아니다. 동유럽의 티토는 1945년 11월 소비에트연방 모델을 받아들여 6개 민족공화국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Federal People's Republic of Yugoslavia)을 세웠다.

중공 지도부가 국가 이름에 '연방'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의 향방을 결정지은 중대한 결단이었다. 특히 소련과 유고연방의 해체라는 다민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비교할 때, 변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토주권을 강조한 1949년 중공 중앙의 결정은 강력한 단일제 국가를 수립하는 주춧돌이었다.<sup>64)</sup>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6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 전역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 단일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63) 이런 입장은 1949년 9월 2일자 新華社 社論 「決不容許外國侵略者吞併中國的領土－西藏」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中共中央統戰部 編, 1991, 앞의 책, 1262~1264 쪽에 수록. 이후 1957년 8월 4일 靑島에서 열린 民族工作 좌담회 석상에서 周恩來가 발표한 「關於我國民族政策的幾個問題」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다. 여기서 그는 건국 당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고 민족구역자치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면서 민족분열적 자결권이 아닌 민족통합적 '中華大家庭'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周恩來, 1984, 『周恩來選集』(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247~271 쪽. 현재 중국민족주의의 본질인 '중화대가정'에 대한 논의는 주 3에 인용한 필자의 줄고를 참고.

64) 果洪升 主編, 1997, 『中國與前蘇聯民族問題對比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저자들은 소련의 체제 붕괴와 중국의 체제 유지를 비교하면서 민족연방제의 유무를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명이 정해진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시(國是)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까지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오늘날 중국 변경지역의 민족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자료〉

- 毛澤東, 1948, 『毛澤東選集』, 東北書店.
- 毛澤東, 1996, 『毛澤東文集』(第五卷), 人民出版社.
- 薄一波, 1996, 『七十年奮鬥與思考』(上卷), 中共黨史出版社.
- 周恩來, 1984, 『周恩來統一戰線文選』, 人民出版社.
- 周恩來, 1984, 『周恩來選集』(下卷),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2,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1冊),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建國以來周恩來文稿』(第1冊),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統戰部 編, 1991, 『民族問題文獻彙編, 1921. 7~1949. 9』,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胡喬木, 1994, 『胡喬木回憶毛澤東』, 人民出版社.
- 〈연구논저〉
-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小花.
- 朴漢濟, 2006, 「中華의 分裂과 隣近 各國의 對應-『多重的』中華世界의 成立」, 『中國學報』 54.
- 백지운, 2013, 「민족국가의 개조와 아시아-리따자오(李大釗)의 ‘연방론’ 재독」, 『아세아연구』 56.
- 沈憲用, 2000·2001,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中蘇研究』 88.
- 이병호, 2008, 「『東北工程』 前史 - 傅斯年的 『東北史綱』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20.
- 果洪升 主編, 1997, 『中國與前蘇聯民族問題對比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龍心剛, 2009, 「也談“中華人民共和國”作為國名的原因 - 兼與潘煥昭老師商榷」, 『當代中國史研究』 16.
- 馬大正 等, 2006, 『新疆史鑿』, 新疆人民出版社.
- 文紅玉·王智, 2010, 「早期中國共產黨聯邦制思想的歷史考察及評析」, 『中共黨史研究』 3.

- 潘煥昭, 2007, 「“中華人民共和國”國名考」, 『黨的文獻』 3.
- 宋月紅, 2007, 「“中華人民共和國”國名補考」, 『黨的文獻』 5.
- 宋月紅, 2008, 「毛澤東關於新中國實行民族區域自治的決策研究」, 『中國藏學』 3.
- 王纘添, 2013, 「現代中國兩次民族國家構建中單一制選擇之比較 - 兼論現代中國國家基本制度建設(上)(下)」, 『中共黨史研究』 8, 9.
- 李國芳, 2012, 「中共民族區域自治制度的形成 - 以建立內蒙古自治政府為例」, 『近代史研究』 6.
- 鄭志廷·張秋山, 2011, 『中國憲政百年史綱』, 人民出版社.
- 《胡喬木回憶毛澤東》編寫組, 1994, 「毛澤東與《共同綱領》的制定」, 『當代中國史研究』 1.
- 周昆云, 2002, 「民族自決權, 聯邦制, 民族區域自治 -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民族理論思想的再探討」, 毛公寧·王鐵志 主編, 『民族區域自治新論』, 民族出版社.
- 陳明明, 2005, 「聯邦制: 中國共產黨早期綱領與政策的一個觀察」, 『浙江學刊』 4.
- 陳揚勇, 2009, 「《共同綱領》與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 兼談新中國民族區域自治政策的形成」, 『中共黨史研究』 8.
- 陳揚勇, 2013, 『建設新中國的藍圖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胡春惠, 2011, 『民初的地方主義與聯省自治』(增訂版),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Chesneaux, Jean, 1969, “The Federalist Movement in China, 1920~1923.” in Jack Gray (ed.), *Modern China's Search for a Political Form*, Oxford University Press.
- Howland, Douglas, 2011, “The Dialectics of Chauvinism: Minority Nationalities and Territorial Sovereignty in Mao Zedong's New Democracy,” *Modern China* 37.
- Lee, Byung-Ho, 2013, “Imagined Commonalities: Making Sense of China's Genealogical Nationalism,”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10.
- Li, Chien-Nung, 1967, *The Political History of China, 1840~1928*,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oppa, Keith R., 1977, “Province and Nation: The Chekiang Provincial Autonomy Movement, 1917~1927,” *Journal of Asian Studies* 36.
- Snow, Edgar, 1968, *Red Star over China*, Grove Press.

Waldron, Arthur, 1990, “Warlordism Versus Federalism: The Revival of a Debate?” *The China Quarterly* 121.

Zhao, Suisheng, 2004, *A Nation – State by Construction: Dynamics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국문 초록]

‘중화인민공화국’ 국호(國號) 작명 과정 고찰  
- 특히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

이병호

이 글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립부터 건국 전야인 1949년 9월까지를 아우르는 통시적 관점에서 혁명 이후 세워질 국가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한다. 처음부터 중공 지도부가 현재의 국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중공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에는 ‘중화연방공화국’, 193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또는 ‘중화소비에트연방’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1940년대 후반 국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중공 지도부가 작성했던 각종 문건들을 추적해보면 대략 ‘중화민주공화국’,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연방제 도입에 대한 중공의 태도 변화이다. 변경지역 민족들의 자결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인 민족연방제 안은 중공 지도부가 건국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였다. 비록 1940년대 초부터 이미 연방제의 핵심이라 할 연방으로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인정하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강조는 점점 줄었지만, 적어도 1948년까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중공 지도부는 민족 문제에 대한 볼셰비키 방식을 받아들여 각 민족의 자결권과 민족 간 평등권에 입각한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을 세운다는 주장을 하였다. 중공 내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확정하는 것은 1949년 8월 중순이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은 9월 초였다. 그 몇 주 사이 연방국가 방안은 완전히 폐기됐으며 동시에 연방제 불가론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도 최종 정리되었다. 따라서 국가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의 국호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결정된 과정 그 자체는 건국 이전 중공 지도부

의 국가주권에 대한 인식과 변경지역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의 추이를 잘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근현대 중국의 국가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 국문 주제어

중화인민공화국, 연방국가, 단일국가, 소수민족, 중국공산당, 마오쩌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On Nam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Question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Federation

Lee Byungho

This paper explicates the naming process of the current Chinese state known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title, albeit used sporadically since 1948, was finally decided upon only several weeks before the proclam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October 1, 1949. Determining the official name was further complicated when considering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federal republic as the form of government.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the genealogy of the positio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with reference to adopting a federated state analogous to the USSR. This argument is developed and illustrated through examining the CCP’s proposals on the name of the future revolutionary state from 1922 to 1949. The CCP’s earlier leadership, deeply inspired by the success of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the Soviet model of ethnofederalism, promised a complete right to ethnic-based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which non-Han nationalities should be free to join and secede from a federation. During the Yan’an period, however, the CCP began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rule, while gradually silencing the propaganda of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Yet, despite this subtle shift, the slogan of federation survived as late as mid-1949 as the CCP leaders including Mao Zedong reaffirmed the validity of forging a federal state. A decisive turn occurred when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was imminent and the CCP leaders were preoccupied with drafting the Common Program as well as organizing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By analyzing the different drafts of the Common Program written between late August and September 1949, it appears that Mao Zedong finally abandoned not only a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but also the federal scheme. His final decision evidently reflects the CCP's will to institute a unitary state with regional autonomy at the expense of the Soviet model of ethnofederalism, while the bluepri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China as the official Party line throughout the CCP's early history became the path not taken.



Keyword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ederal state, unitary state, minority nationality, Chinese Communist Party, Mao Zedong

# 일제강점 말기 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

## - 『대구부사(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

정상우 |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중앙에서 지방 통치를 위해, 혹은 재지 지배층들 스스로가 교화를 내세우며 지방 사회에서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향촌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자 지방사를 편찬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접어들어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지방사 편찬사업은 활기를 띠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의 위상과 정체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sup>

이러한 지방사 편찬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읍지류(邑誌類) 간행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6세기 중반 이래 각 지역을 단위로 한 지리지가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에 와서 시·군별로 시·군지 및 향

※ 투고일: 2014년 4월 9일,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8910).

1)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대구광역시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로 그 명칭이 '대구직할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된 1995년, 시청이 주도하여 『大邱市史』를 간행하였다.

토지를 발행하면서도 한동안은 기존의 읍지체제를 답습한 바탕 위에 현재의 시·군 사정을 추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sup>2)</sup>

한편 지방사 편찬의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할 때 조선시대 읍지 간행의 전통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일제 식민지기에 행해진 지방사 편찬이다. 일제시기에도 지방청(地方廳)이나 거류민단(居留民團)과 같은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단체 내지는 향촌의 재지 세력 등에 의한 지방지(地方誌) 편찬이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적 위치상으로는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은 전통사회의 지방사 편찬과 현대의 지방사 편찬 사이의 가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기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기 연구에서 일제의 침략·지배와 이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이라는 구조는 식민지기를 사고하는 가장 익숙한 틀이었다. 이는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을 사고하는 데도 마찬가지였다. 즉 식민지기 일본인에 의한 지방사 편찬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sup>3)</sup> 이때 편찬된 읍지 역시 조선시대의 읍지와는 달리 조선에 대한 자원·자본 수탈 및 식민통치를 위해 각 지역에 관한 자료수집의 방편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반해 당시 지방의 유림들이 편찬한 지지(地誌)는 일제 식민통치에 대해 민족 보존의 입장에서 행해진 소극적 저항이라는 것이다.<sup>4)</sup>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제시대 사학사 전반에 대한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하 일본인 연구자들은 식민통치의 합리화를 위해 한국사를 왜곡하였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둔화시켜 식민통치에 순응케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민족 말살을 획책한 것으로 “고등의 통치술책이자 적극적인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왜곡, 날조”<sup>5)</sup>라는 것이다. 즉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

2) 허홍범, 2003, 「지역사 연구와 사료 : 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48.

3) 최혜주, 201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4) 양보경·김경란, 2001,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5) 박결순, 2004,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168~169쪽.

에 의한 역사 연구에 대한 평가가 지방사 편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식민지기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가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학문이 제도화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침략과 지배를 위한 것이었지만,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경성제국대학과 같은 대학이 설립되어 근대적인 분과 학문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와 같은 역사 편찬기구가 설치되어 제국대학 출신의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의 역사 연구를 위한 사료의 수집과 발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들 연구기관과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유학을 통해 이른바 ‘근대 학문의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지배와 저항’이라는 구도에서는 포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지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sup>6)</sup> 즉 ‘학술’이라는 영역에서 소위 ‘식민지적 근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해명하는 속에서 ‘사학(史學)’ 혹은 ‘역사의 변화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었다. 이렇듯 식민지기 사학사에 대해 침략성과 더불어 근대 학문으로서 사학의 형성이라는 접근은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지방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한편 지방사 편찬이라는 것은 중앙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지방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 의존하는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기는 물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식민지기의 지방사 편찬에 대해서도 당시 중앙의 역사 편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사편수회의 사업도 염두에 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사편수회의 사업은 역사서술을 통해 특정한 역사상(歷

6)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체계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정상우, 2011,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신주백, 2011, 「1930년대 초중반 朝鮮學學術場의 재구성 and 相關한 시론적 탐색: 경성제대 졸업자의 조선연구 태도 및 연구방법과 相關해」, 『역사문제연구』 26; 김종준, 2012, 「일제 시기 ‘역사의 과학화’ 논쟁과 역사학계 ‘관학이카데미즘’의 문제」, 『한국사학보』 49.

史像)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료의 수집과 발간을 통해 역사학이 요구하는 ‘실증성’을 중앙권력이 담보해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제국 일본의 지방사로서 위치지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지적을 상기해 보면<sup>7)</sup> 조선사편수회 사업과 당시 지방사 편찬의 관련성을 연결시켜 보는 것은 지방사 편찬의 양상을 통해 식민지기 역사 편찬사업의 의미를 재고하는 데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43년에 발간된 『대구부사(大邱府史)』는 흥미로운 책이다. 사실 식민지기 대구에 대한 지리지 내지 지방사 편찬은 『대구부사』 편찬 이전에도 이루어져 왔다.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를 필두로 개항 이후 대구에 자리를 잡은 일본인들이 거류민단을 조직한 뒤 편찬한 지방사도 있었고, 대구 지방의 조선인들이 편찬한 읍지(邑誌)도 있다. 또 『대구부사』가 발간되기 불과 6년 전 대구부교육회(大邱府教育會)에서 대구 지방의 청소년 교육을 위해 편찬한 지방사도 있다.

이처럼 『대구부사』 편찬 이전 대구 지방의 역사 편찬은 다양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구부사』가 발간된 것은 이들 중에서 가장 늦은 1943년이었으므로, 이 책은 식민지기 지방사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부사』는 이전 대구 지방의 지방사 편찬과 달리 대구부(大邱府)가 주도한 관찬 지방사라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띠지만 그 발간 시점이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朝鮮史)』가 완간된 이후<sup>8)</sup>라는 점에서 중앙의 역사 편찬과 지방사 편찬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대구부사』의 편찬을 주관한 것이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였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도쿄제대에서 국사학을 전공한 스에마쓰는 조선

7) 정상우, 2011, 앞의 글; 정상우, 2013, 「식민지에서의 제국 일본의 역사 편찬사업 - 조선·대만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60.

8) 총 6편 35권으로 구성된 『朝鮮史』는 1932년 3월 제1편 1권인 ‘三國統一以前 朝鮮史料’의 발간을 시작으로 편수가 완료되는 대로 몇 권씩 발간되었으며 1938년 3월 고종의 즉위부터 청일전쟁 직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권인 제6편 4권이 발간되며 완료되었다.

사편수회 구성과 동시에 조선에 들어와 『조선사』 편찬에 시종일관 간여하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구부사』 편찬 당시에는 이미 경성 제대에 부임해 조선사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던 인물로 당시 조선사 연구에 있어 관학 아카데미즘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43년에 발간된 『대구부사』는 중앙과 지방의 역사 편찬사업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에 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기 전문 연구자에 의해서 지방의 역사적 특색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도 좋은 실례이다.

여기서는 『대구부사』와 이전 대구의 지방사들의 차이점, 중앙의 역사 편찬사업인 조선사편수회와 『조선사』의 상관성에 유의하며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의 최종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대구부사』에서 지방의 특색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 II. 『대구부사』 편찬 이전 대구의 지방사 편찬

대구 지방에 대한 지지(地誌)나 지방사 편찬은 『대구부사』 편찬 이전에도 줄기차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지가 편찬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부터는 지방통치를 위해 지방의 정보를 수집·보관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나 『고려사(高麗史)』에도 지리지가 있다. 그렇지만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는 지방의 간략한 연혁 이외에 지방의 실제 사정에 관한 것은 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대구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도 대구(大丘)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칭과 행정적 변경 사항만을 단 몇 줄로 제시하는 정도이다.<sup>9)</sup> 그렇지만 조선 건국 초기에는 지

방에 대한 중앙의 집권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연혁만이 아니라 각지의 특성을 파악·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지리지의 편찬으로 귀결되었다. 세종대(世宗代) 전국 지리지 편찬에 앞선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편찬과 그에 이은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와 『세종실록지리지』의 간행은 그 결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왕조의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지리지로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편찬과 그 증수(增修)가 이루어졌다.<sup>10)</sup>

이러한 조선 전기의 지리지들에는 대구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른 지방에 대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명칭과 연혁만이 아니라 주요 산악, 지형과 같은 자연지리적 사항부터 경계와 면적, 호수(戶數), 주요 성씨(姓氏), 토성(土性)과 기후, 풍속, 토의(土宜), 도기소(陶器所), 성곽(城郭), 역(驛), 봉화, 제언, 성당(聖堂)·불상(佛上), 둔동(屯洞), 입암(笠岩) 등과 같이 수취나 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한 대구의 전반적인 지역 상황,<sup>11)</sup> 누정(樓亭), 학교, 불우(佛宇), 사묘(祠廟)는 물론 유명한 고적(古跡), 대구를 대표할 만한 명한(名宦), 인물, 효자, 열녀 및 제영(題詠)과 같이 문화적 시설물들이나 충효와 같은 성리학적 가치와 공간들에 대한 사항까지 전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편목(編目)에 따라 지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서 대구의 사정을 전하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고 200여 년이 흐른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나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것으로 전해지는 『경상도읍

9) 『三國史記』卷 第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一 新羅 良州 壽昌郡; 『高麗史』志 11 地理 慶尙道 京山府.

10) 조선 초기 지리지 편찬에 관해서는 정두희, 1976,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 (1), (2), 『歷史學報』 69, 70; 이태진, 1979,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역사적 성격」, 『震檀學報』 46·47 합집; 서인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혜안.

11)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慶州府 大丘郡.

12) 『新增東國輿地勝覽』卷26 慶尙道 大丘都護府. 『新增東國輿地勝覽』역시 이보다 100년 전에 간행된 『世宗實錄地理志』에서 전하는 建治沿革, 屬縣, 鎭管, 官員, 郡名, 姓氏, 形勝, 山川, 土產, 城郭, 烽燧, 驛院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성리학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이 부가된 양상이다.

지(慶尙道邑誌)』(1832), 또 이를 저본으로 편찬된 『영남읍지(嶺南邑誌)』(1871, 1895)의 대구조와 1899년과 1907년에 편찬된 『대구부읍지(大邱府邑誌)』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sup>13)</sup>

조선시대에 지속된 관찬 지리지·읍지 편찬과 더불어 『대구읍지(大丘邑誌)』라는 이름으로 사찬(私撰) 읍지도 수차례 간행되었다고 한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정조 19년(1795) 경상감영에서 『오경백선(五經百選)』을 교정하였다고 알려진 대구 출신의 우재악(禹載岳)이 대구 지방의 읍지를 편찬하였으며, 1910년에도 대구 지방의 유생들에 의해 읍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전하지 않고 1899년의 읍지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구(戶口),宦蹟(宦蹟) 등 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1871년과 1895년에 편찬된 『영남읍지』와 동일하다고 한다.<sup>14)</sup>

이처럼 대구에 대한 지지(地誌)·읍지 편찬이 조선초 물질적·사회적으로 지방에 대한 통치를 위해 중앙에 의해 이루어진 이래로 관찬의 지지 편찬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사찬 읍지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선초에 이루어진 편찬의 체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개항과 식민지화에 따라 대구에도 일본인들이 유입·정착해 거류민단을 조직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대구의 지방사가 편찬되었다. 조선 각지에 조

13) 참고로 『輿地圖書』의 大丘都護府의 編目은 다음과 같다. 坊里, 道路, 建治沿革(屬縣, 新屬縣, 鎭管), 郡名,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學校, 壇廟, 公廡, 堤堰, 倉庫, 物産, 驛院, 木匠, 烽燧, 樓亭, 寺刹, 古跡, 名宦, 人物, 孝子, 烈女, 題詠,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1832년 편찬된 『慶尙道邑誌』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며(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風俗, 坊里, 戶口, 田賦, 軍額, 城池, 林藪, 倉庫, 軍器, 關防, 鎭堡, 烽燧, 學校, 壇廟, 塚墓, 佛宇, 公廡, 樓亭, 道路, 橋梁, 島嶼, 堤堰, 場市, 驛院, 牧場, 形勝, 古蹟, 土産, 進貢, 俸廩, 宦蹟, 科擧, 人物, 題詠, 碑板, 冊板) 1871년과 1895년에 각각 편찬된 『嶺南邑誌』는 『慶尙道邑誌』를 저본으로 하는 만큼 동일하다. 한편 1899년과 1907년에 편찬된 『大邱府邑誌』의 경우 모두 『嶺南邑誌』를 옮겨 놓은 것인데 1899년판은 戶口, 宦蹟, 營先生, 邑先生과 같은 몇 개조에 변화가 있고, 1907년판은 마지막에 邑誌補闕이라는 編目이 설정되어 1895년 이후 大邱府의 變化를 沿革, 各衙門補闕(地方隊, 電報司, 警務署, 郵遞司), 官職, 戶口, 田賦에 걸쳐 실고 있다.

14) 國立大邱博物館 편, 1994, 『嶺南의 名儒와 壬辰倭亂』, 국립대구박물관, 36쪽.

직되었던 거류민단은 강점 이후 식민통치를 위해 지방제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1914년 4월 1일을 기해 모두 철폐되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 각지의 거류민단은 자신들의 연혁과 행적을 정리하는 역사서를 간행하였고, 대구의 거류민단 역시 1915년 『대구민단사(大邱民團史)』를 편찬하였다.<sup>15)</sup> 『대구민단사』에는 당시 경상북도장관(慶尙北道長官) 이진호(李軫鎬), 대구부윤(大邱府尹)이었던 다케사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 대구거류민단(大邱居留民團)의 마지막 민단장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저자인 미우라 쇼이치로[三浦庄一郎] 등 4명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편찬 동기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편찬의 동기는 그 간행시기에서도 추측되듯이 거류민단의 폐지이다. 당시 대구부윤 다케사키는 그 편찬에 대해 1914년 4월 1일을 기해 부제(府制)가 시행되어 거류민단이 철폐됨에 따라 1914년 3월 민단에서 민단사 편찬을 마지막으로 결의하였으며, 이 사업을 대구부가 승계해 완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6)</sup> 또 대구의 최근사를 설명하며 “경부간(京釜間)의 요로(要路)로 경북(慶北)의 중추(中樞)이지만 원래는 한연낙막(寒煙落莫)의 일황촌(一荒村)이었다. 그렇지만 근자(近者) 10년 동안 남선(南鮮)의 일대도읍(一大都邑)이 되었다”<sup>17)</sup> 혹은 “적막(寂寞)한 일촌락(一村落)에 지나지 않았던 대구(大邱)는 근사(近事南鮮)의 도시(都市)로서 점차 세인(世人)의 주의(注意)를 환기(喚起)하고 있다”<sup>18)</sup>며 근대도시로서 대구의 성장을 지적하고 있다. “한연낙막의 일황촌”이자 “적막한 일촌락”이었던 대구의 근대도시화를 이끈 것은 물론 일본인들, 특히 “대구거류민단(大邱居留民團)의 공적(功績)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sup>19)</sup> 즉 대구거류민단이 “맹렬히 민정(民政)의 발전을 도모한 것은 용감한 국

15) 1910년대 전반 居留民團에서 해당 지방사를 편찬한 것으로는 『京城發達史』(경성, 1912), 『平壤發展史』(평양, 1914), 『日鮮通交史』(부산, 1915), 『元山發展史』(원산, 1915), 『大邱民團史』(대구, 1915) 5종이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혜주, 앞의 글, 168~171쪽.

16) 大邱府 編, 1915, 「序(大邱府尹 竹崎六次郎)」, 『大邱民團史』.

17) 大邱府 編, 1915, 「序(慶尙北道長官 李軫鎬)」, 『大邱民團史』.

18) 大邱府 編, 1915, 「序(大邱府尹 竹崎六次郎)」, 『大邱民團史』.

19) 大邱府 編, 1915, 「序(慶尙北道長官 李軫鎬)」, 『大邱民團史』.

민성(國民性)을 발휘한 것”으로, 이에 “공공사업(公共事業)에 공헌(貢獻)한 사적(事蹟)”을 정리한다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목적에서 편찬된 『대구민단사』는 ‘제1장 민단제전(民團制前)의 대구(大邱)’를 필두로 2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up>21)</sup> 1893년 처음으로 대구에 들어온 2명의 일본인, 히자쓰키[膝付]와 무로[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후 대구거류민단의 성립 과정 및 성립 이후 각종 활동과 대구의 발전상을 각종 도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에 일본인이 유입된 이래 이들에 의한 대구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구민단사』는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대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바로 제4장의 ‘대구관계사(大邱關係史)’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는 고대 이래 대구의 역사를 개관한 것인데 그 분량은 10페이지 정도로 많지 않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는 삼한(三韓) 중 진한(辰韓)에 속”하고, “한무제(漢武帝) 때 조선을 병탄(併呑)해서 사군(四郡)으로 만들고, 소제(昭帝)에 이르러 이부(二府)로 통합하였으며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삼국이 정립되었을 때 신라의 영역이었다는 등 고대의 대구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다. 이후 “조선은 그 지세(地勢)로 인해 삼국시대부터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구주(歐州)의 발칸 반도와 같아서, 각자 그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 강국의 원호(援護)를 받았던, 소위 사대주의(事大主義)의

20) 大邱府 編, 1915, 「序(前 民團長 菊池謙讓)」, 『大邱民團史』. 여기서 菊池謙讓은 居留民團의 池積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꼽고 있다. ① 市街의 整理, ② 上水道 設치, ③ 共同墓地 設치, ④ 産業의 發達, ⑤ 公衆 오락의 淸新과 祖國의 精神의 發흥을 위한 公園과 神社의 建립, ⑥ 食民지 敎育의 發達, ⑦ 交通의 發達.

21) 250여 쪽인 『大邱民團史』는 다음과 같은 2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民團制前の大邱 / 2. 本紀 / 3. 吏員及議員 / 4. 大邱關係史 / 5. 上級及關係官廳 / 6. 財政 / 7. 敎育 / 8. 衛生 / 9. 宗教 / 10. 市區改正 / 11. 交通運輸附上下水道 / 12. 金融機關 / 13. 勸業施設 / 14. 農業 / 15. 工業 / 16. 商業 / 17. 市場 / 18. 公園及名蹟 / 19. 赤十社及愛國婦人會 / 20. 裁判警察及守備 / 21. 商業會議所 / 22. 新聞及通信 / 23. 通信機關 / 24. 輸移出入 / 25. 民團廢止と府制施行及學校組合成立 / 附錄.

인습(因襲)이 오래되었”다며,<sup>22)</sup> 이후 한국사의 전개를 강대국에 의한 사대의 과정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본사(本史, 『대구민단사』 : 인용자) 편찬(編纂)에 있어 신라(新羅) 발전(發展)의 역사(歷史)는 대구민단(大邱民團) 최고(最古)의 전자(前者)로서 참고”가 되고 “특히 조선(朝鮮)의 발달(發達)은 신라조(新羅朝)에 가장 그 공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백사백물(百事百物)이 증명한다”며, 종교, 문학, 요업(窯業), 주조(鑄造), 조각, 기직(機織), 조선(造船), 우경(牛耕), 잠업(蠶業), 차(茶), 목축, 상업, 노예, 순사(殉死), 상복(喪服), 능묘(陵墓), 의관(衣冠)에 관한 신라의 발달을 약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서술이 나타나는 것은 저자가 현재의 대구가 신라에 속하였던 곳이어서 신라의 역사를 약술하는 것이 대구의 역사를 개관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이것은—그 서술내용의 왜곡이나 진위는 차치하고라도—신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간략한 정리이지 대구의 역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즉 『대구민단사』는 민단 폐지를 맞아 대구에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민단의 폐지까지 20년, 특히 대구거류민단이 설립된 1906년부터 폐지까지 8년여의 기간을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대구의 근대도시화를 이끈 주체를 거류민단으로 표상되는 재조일본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공적을 정리·과시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대구민단사』가 활용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주된 근거로 활용되는 것들은 “경상북도청(慶尙北道廳), 대구부청(大邱府廳), 대구경찰서(大邱警察署), 대구상업회의소(大邱商業會議所), 조선민보사(朝鮮民報社)” 등의 자료들, 바로 “관공서(官公署) 기타 공기관(公機關)의 기록 및 메이지[明治] 39년(1906) 이래의 신문기사”와 당국자나 관계자 내지는 당시의 거류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sup>24)</sup> 대구의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

22) 大邱府 編, 1915, 『大邱民團史』, 65~66쪽.

23) 大邱府 編, 1915, 『大邱民團史』, 70~75쪽.

24) 大邱府 編, 1915, 「例言」, 『大邱民團史』.

이 아니었다.

한편 『대구민단사』의 편찬을 맡은 것은 미우라 쇼이치로였다.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이런 이름으로 발표된 글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역사를 전공한 학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서(自序)'에서 밝힌 편찬을 맡게 된 경위는 매우 단순하다. 대구부윤과 친분이 있었으며 자신이 "민단법(民團法) 실시 당시부터 시종 대구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부윤이 자신에게 편찬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5)</sup> 강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의 사정에 대해 알려진 성과가 많지 않던 때, 그것도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은 인물에 의해 편찬된 『대구민단사』의 수준에서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나 전문적인 집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4장 '대구관계사(大邱關係史)'의 서술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15년에 간행된 『대구민단사』는 그 편찬의 동기나 목적, 내용은 물론 저자나 사용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대구 지방의 역사서라기보다는 강점을 전후한 수년간 일본인에 의한 대구 '발달'의 실황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대도시 대구의 탄생에 일본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과시해 거류민단 폐지 이후에도 대구에서 일본인의 위상을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서술된 것이라 하겠다.

『대구민단사』가 간행된 이후로도 대구부 혹은 대구상업회의소와 같은 관공서나 대구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일본인들에 의해 대구의 지역사정을 알리는 지방지들이 1920~1930년대에 꾸준히 편찬되었다.<sup>26)</sup> 이러한 지방지들은 편찬의 시차는 있지만 대구의 발전상, 경제적 상황, 일본인들의 공헌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편찬의 목적이나 사용한 자료의 성격 등이 대동소이하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말 세계적인 경제대공황과 사회주의 사상의

25) 大邱府 編, 1915, 「自序」, 『大邱民團史』.

26) 1915년 『大邱民團史』가 간행된 이후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最近大邱要覽』(1920, 大邱商業會議所), 『慶北沿線發展誌』(1931, 遼捨藏), 『大邱物語』(1931, 河井朝雄), 『大邱府勢一斑』(1936, 大邱府).

전개에 대한 대책으로 ‘향토교육(郷土教育)’을 강화하였다. 즉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향토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배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향토에 헌신하도록 요구해 더욱 궁핍해진 농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향토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부속되고, 국가에 의해 조직된 향토였다. 향토교육이 경제적 궁핍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기된 만큼 그 주요한 내용은 근로와 직업 의식의 주입을 필두로 하여, 이를 향토에 적용하기 위한 향토 조사, 교과 교재의 향토화, 향토실의 설치와 운영, 향토교육강습회 또는 향토교육전람회의 개최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각 지방의 교육회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향토교육 강화 시책은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된 1932년부터 강화되었는데,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분야는 향토조사였으며, 그 결과물은 향토지(郷土誌)로 편찬되었다. 향토지는 해당 지방의 지리 및 역사, 산업 등 각 방면에 걸친 사항들을 조사해 편찬한 것으로, 주로 1932년부터 편찬되기 시작해 이른바 ‘황민화(皇民化) 교육’이 강조되며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는 1938년 이전까지 간행되었다고 한다.<sup>27)</sup>

이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향토교육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향토지가 편찬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1937년 『대구독본(大邱讀本)』이 간행되었다. 대구부 교육회(大邱府教育會)에서 발간한 이 책은 서문에서 “청소년(靑少年) 자녀(子女)에게 우리들의 향토(郷土)인 대구(大邱)를 이해시켜 향토를 애호(愛好)하는 마음을 기르고, 나아가 장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意志)를 도야(陶冶)하기 위해 편찬(編纂)되었다”며 중등학교 하급 학년 학생, 고등소학교와 심상소학교, 보통학교 상급 학년의 아동들에게 과외(課外)로 읽히기 위해 평이한 문장으로 쓰여진 보조교재임을 밝히고 있다.<sup>28)</sup>

27) 1930년대 향토교육의 전개에 대해서는 문지은, 2010, 「1930년대 郷土教育論의 展開와 日帝의 郷土教育 施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였다. 한편 향토지는 주로 각지 지방청의 學務課나 教育會의 주관하에 지역 학교의 지리·역사교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해 편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한다.

28) 大邱府教育會, 1937, 「はしがき」, 『大邱讀本』.

총 21장으로 구성된 『대구독본』은 대구 지방의 역사, 지리, 산업, 행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주요 인물 등을 망라하고 있다.<sup>29)</sup> 당시 향토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은 경제적 궁핍의 해결을 위해서였던 만큼 『대구독본』에는 대구 지방의 역사적 연혁과 대구 출신 위인의 행적과 같은 역사적 내용만이 아니라 대구의 공간적 구성과 주요 시설, 특산물이나 산업과 같은 자연지리·인문지리·경제지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80연대가 군기(軍旗)를 하사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 시가지에서 벌인 분열식(分列式)의 모습을 소개하는 부분(16. 軍旗祭)과 대구신사(大邱神社)에서 열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 추제(秋祭)를 설명하며 일본의 주요 축제일을 제시하는 장(9. 秋祭)과 같은 것은 중일전쟁 직전 운운이 감도는 가운데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낸다.

하지만 대구의 지방색은 대구의 공간적 구성과 산업에서가 아니라 이를 시간의 축에 위치시키는 역사적 설명을 통해 부각된다. 고대 이래 현재까지 대구의 역사적 변천을 개괄한 연혁을 비롯해 대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정조대(正祖代) 대구 판관이었던 이숙(李淑)(11. 李公隄)과 서거정(徐居正)(12. 徐居正) 및 달성(達成) 서씨(徐氏)의 유래를 소개하는 장, 칠성암(七星巖) 및 대구 지방의 효자 김연묵(金鍊默)과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는 장(13. 傳説二つ), 대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달성공원(達城公園)이나 약령시(藥令市)를 소개하는 장(3. 達城公園, 9. 藥令市)은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대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한다거나 그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sup>30)</sup> 대구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대구의 역사

29) 『大邱讀本』은 다음과 같은 2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大邱の沿革 / 2. 大邱市街の展望 / 3. 達城公園 / 4. 夏の大邱 / 5. 大邱の郊外 / 6. 大邱苹果 / 7. 工業三つ / 8. 市場 / 9. 藥令市 / 10. 大邱驛 / 11. 李公隄 / 12. 徐居正 / 13. 傳説二つ / 14. 衛生施設 / 15. 大邱府政 / 16. 軍旗祭 / 17. 寺院と教會 / 18. 公設運動場 / 19. 秋祭 / 20. 秋夕 / 21. 我等の覺悟.

30) 『大邱讀本』에는 역사적 기원 내지 경과를 드러내는 부분이 많다. 일례로 대구 하면 떠오르는 특산물인 사과[苹果]의 경우에도 영국인 선교사 플레처가 1892년(明治25年) 대구에 선교활동을 오면서 사과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이 대구의 사과재

를 제시해 지방색을 드러내고 공통의 기억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대구의 고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대구독본』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은 원래 임나(任那)가 지배하였지만 일본 게이코(景行)천황 당시 임나 혼자 힘으로 신라를 대적하기 어려워 조정(朝廷)의 보호를 요청한 결과 진구[神功] 황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고, 대구지방에는 장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며 진구황후의 삼한정벌과 대구를 연결짓고 있다.<sup>31)</sup> 이후 시기 대구의 역사는 신라 말 왕건과 견훤의 전투가 대구 지방에 있었던 것이 주요 사건으로 거론되지만 고려시대에는 대구가 그다지 떨쳐지지 못하였다고 간단히 언급한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행정적으로 도호부(都護府)가 되는 과정이 짧게 정리되고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軍)이 대구에 입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1895년과 1914년의 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대구도호부(大邱都護府)가 대구군(大邱郡)으로, 다시 대구군이 대구부(大邱府)로 변모한 것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sup>32)</sup>

대구의 지방색을 역사 속에서 찾는 이러한 서술은 전문 연구자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명확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논증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대구의 역사를 정리하며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이나 임진왜란을 거론하는 것은 이전 『대구민단사』와 같은, 대구의 발전에 있어 일본인 혹은 식민통치기구의 역할을 과시하기 위해 간행되었던 저술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면모라고 하겠다. 후술하듯이 이러한 양상은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식민지기 대구에서는 관공서나 일본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에 의해서도 읍지가 편찬되었다. 바로 1924년에 간행된 『대구읍지』가 그것이다. 이는 그 형태와 내용상 앞서 언급한 조선 후기와 한말에 편찬되었던 관

배의 기원이라는 것이다(大邱府教育會, 1937, 『大邱讀本』, 19쪽). 이러한 방식으로 대구를 대표할 만한 것들로 대구의 지방색을 드러내는 것들을 서술할 때 역사성을 띠도록 서술하고 있다.

31) 大邱府教育會, 1937, 『大邱讀本』, 2쪽.

32) 大邱府教育會, 1937, 『大邱讀本』, 3~4쪽.

찬·사찬 읍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조선시대 중앙에서 편찬한 지리지나 대구부읍지 등과 마찬가지로 ‘위치(位置)’, ‘계성(界城)’, ‘건치연혁(建置沿革)’, ‘형승(形勝)’, ‘공해(公廩)’, ‘성씨(姓氏)’, ‘고적(古蹟)’, ‘환적(宦蹟)’ 등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점이 과거의 것들과 동일하다.<sup>33)</sup> 내용 역시 19세기의 읍지나 1907년의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위치’, ‘계성’, ‘건치연혁’, ‘형승’, ‘성씨’, ‘고적’, ‘환적’, ‘인물’ 등의 항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는 「범례(凡例)」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1910년에 간행되었던 읍지를 저본으로 삼아 이후 1924년까지의 변화를 추가하는 형태로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추가할 경우 ‘증(增)’, ‘속(續)’ 두 자로 구분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항목에서도 ‘호구(戶口)’의 아래에는 ‘구시호구(舊時戶口)’를, ‘조세(租稅)’의 아래에는 ‘구시조세(舊時租稅)’와 ‘구시군병(舊時軍兵)’, ‘관직(官職)’에는 ‘구시관직(舊時官職)’과 ‘구시관직연혁(舊時官職沿革)’, ‘공해(公廩)’에는 ‘구시공해(舊時公廩)’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34)</sup> 특히 ‘위치’를 ‘동경 128도 36분 북위 35도 50분’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나 ‘호구조(條)에 병합(併合) 당시의 ‘내지인(內地人)’, ‘지나인(支那人)’, ‘미국인(米國人)’, ‘불국인(佛國人)’, ‘영국인(英國人)’의 호수(戶數)와 인구(人數)를 다루고 있는 것, ‘공해’조에 도청(道廳), 경무부(警務部)·헌병부(憲兵部), 복심법원(覆審法院)·지방법원(地方法院), 부청(府廳), 경찰서(警察署), 감옥(監獄), 경부철도역(京釜鐵道驛), 우편국(郵便局)·세관출장소(稅關出張所), 자혜의원(慈惠醫院), 측후소(測候所), 농공은행(農工銀行), 거류민단역소(居留民團役所), 조선은행지점(朝鮮銀行支店), 근업모범장(勸業模範場), 조선과견대 사

33) 1924년에 간행된 『大邱邑誌』에서 설정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조선시대 지리지와 유사하다. 位置 / 界城 / 建置沿革(所合諸古縣沿革) / 形勝 / 山川 / 土產 / 面里 / 風俗 / 戶口(舊時戶口) / 租稅(舊時租稅) / 舊時軍兵 / 舊時城堡 / 官職(舊時官職, 舊時官職沿革) / 公廩(舊時公廩) / 學校 / 市場 / 橋梁 / 道里 / 祠廟(舊時壇祠) / 院祠 / 陵墓(古代陵墓) / 姓氏 / 古蹟 / 亭樹(廢亭樹) / 宦蹟 / 僑寓 / 人物部 - 科宦, 儒行, 忠義, 文苑, 蔭德, 孝子, 列女, 司馬傍目 / 寺刹(廢寺刹) / 勝地詩選.

34) 「凡例」, 『大邱邑誌』.

령부(朝鮮派遣隊 司令部)·조선과건대 제2연대·제3연대·제9연대 제10중대, 헌병분대(憲兵分隊)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개항과 근대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문물의 도입 및 사회 변화, 무엇보다도 식민지화에 따른 통치 기구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화 이후의 변화는 본문에서 서술하고 ‘증(增)’ 혹은 ‘속(續)’을 덧붙여 추보(追補)한 부분은 ‘인물부(人物部)’의 ‘유행(儒行)’, 충의(忠義), ‘문원(文苑)’, ‘음덕(蔭德)’, ‘효자(孝子)’, ‘열녀(列女)’ 등의 항목이 주를 이룬다. 추가된 인물들을 보면 강점 당시 어려운 동민(洞民)의 호세(戶稅)를 대납해 준 인물의 예처럼 시기적으로 1910년 이후의 행적 때문에 추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1876년의 빈민 구제라든가 심지어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이유로 추보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강점 이후 뛰어난 행적을 보인 인물을 덧붙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sup>35)</sup>

이러한 읍지 편찬을 주도한 것은 서석태(徐錫台), 이종희(李宗熙)라는 인물인데,<sup>36)</sup> 이들이 읍지를 편찬한 목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단 서석태의 경우 읍지 편찬을 즈음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당시 대구를 대표해서 발기인으로 추천받기도 하였고,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와 ‘당국(當局)’의 관련 속에서 대구향교(大邱鄕校)의 명륜당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간여하였다는 점과 1927년 도의원(道議員)으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된다.<sup>37)</sup> 이종희는 경북의 유림(儒林)을 대상으로 10여 일간 일본을 시찰케 해주는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sup>38)</sup>을 볼 때 대구 지방의 유지층이자 유림세력임을 알 수 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유교의 진흥을 통해 봉건적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새로운 사조의 창궐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독부가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나 유도진흥회와 같은 유림단체를 결성·후원하는 한

35) 「忠義」·「蔭德」, 『大邱邑誌』.

36) 「凡例」, 『大邱邑誌』. 徐錫台, 李宗熙가 주도하고 당시 達城郡守였던 金在煥이 동의해 읍지가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37) 「民大發起人 - 다섯 곳에서 또 선발」, 『東亞日報』 1923. 2. 21; 「社會主義者라고 設立者 認可를 不許 - 마침내 당국의 지정대로 다른 사람으로 선정 신청」, 『東亞日報』 1924. 6. 7; 「當選된 道議員 - 慶尙北道」, 『東亞日報』 1927. 4. 3.

38) 「慶北儒林視察團 - 往復 11日間 豫定」, 『每日申報』 1927. 3. 25.

편 지방민 통제를 위해 향약(鄕約)을 연구·보급하였던 점을 상기할 때,<sup>39)</sup> 대구 지방의 유림이자 유지로서 총독부에서 후원하는 ‘유도진흥회’에 간여하며 ‘내지시찰단(內地視察團)’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당국’과도 관련이 짙던 서석태, 이종희가 당시 총독부의 대유교정책(對儒敎政策)에 호응해 편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 지방의 지방사·지지(地誌) 편찬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1943년에 간행된 『대구부사』는 이전에 간행된 이러한 지방사들과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어느 지점에서 차별되는 것일까?

### Ⅲ. 『대구부사』의 편찬과 특징

#### 1. 『대구부사』의 편찬과 구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1943년 『대구부사』가 간행되었다. 대구부(大邱府)에서는 이미 거류민단의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대구민단사』를, 또 대구부의 현황을 알리는 『대구부세일반(大邱府勢一斑)』을 간행한 적은 있지만 ‘부사(府史)’라는 이름을 내건 책자를 발간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대구부에서는 『대구부사』의 편찬을 위해 1935년부터 준비작업으로 사료수집을 개시하였고, 1937년부터는 ‘황기 2600년(1940) 기념사업’으로 공식화하며 향후 3년간 작업을 통해 1940년 출간을 목표로 진행하였다.<sup>40)</sup> 하지만 『대구부

39) 조선총독부의 對儒敎政策과 鄕約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유준기, 2001,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 친일화정책과 유림계의 대응」, 『韓國史研究』 114; 류미나, 2007,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박경하, 2006, 「日帝下 官學者의 鄕約研究의 性格」, 『歷史民俗學』 22.

40) 大邱府 編, 1943, 「序」, 『大邱府史』, 2쪽; 「大邱府史編纂」, 『每日申報』 1938. 11.

사』는 1943년이 되어서야 발간되었다. 이렇게 사업이 3년이나 지연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비슷한 시기 전주부(全州府)에서 발간한 『전주부사(全州府史)』의 경우에도 1936년부터 편찬을 개시하였지만 1936년 8월에 있었던 ‘대홍수(大洪水)’와 1937년 ‘지나사변(支那事變) 발발(勃發)로 인한 서무(庶務)의 망살(忙殺)’로 편찬이 지연되었음을 꼽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41)</sup> 『대구부사』 역시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한 행정상의 문제로 편찬이 늦어졌다고 짐작된다.

한편 도청 혹은 부청(府廳)이 주도해 ‘도사(道史)’나 ‘부사(府史)’를 발간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전주부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대구부사』가 발간된 1943년 이전에도 산견된다. 『인천부사(仁川府史)』(1933), 『경성부사(京城府史)』(1934), 『군산부사(群山府史)』(1935), 『평안북도사(平安北道史)』(1938) 등은 그러한 것이며, 출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부산부사(釜山府史)』 역시 1936년 편찬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있다.<sup>42)</sup> 지방청에서 발간한 이러한 ‘부사’ 내지는 ‘도사’의 편찬 목적 역시 1차적으로는 지방청의 치적을 과시해 식민통치의 성과를 선전하고, 또 이를 통해 지방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대구부사』 발간 목적에서도 드러난다. 『대구부사』는 서두에서 ‘대구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구 인사(人士)의 향토사로서, 위정(爲政)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대구부사』를 엮었다고 밝히고 있다.<sup>43)</sup> 특히 곳곳에서 발견되는 ‘조선의 웅도(雄都)로서 약진하는 대대구(大大邱)’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의 세(勢)와 시정의 효과를 선전·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사 편찬에 대해 한 재조일본인은 “조선시정(朝鮮施政) 30여 년,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方面)의 시설이 향상 발전하는 것에 따

29.

41) 全州府 編, 1943, 「例言」, 『全州府史』, 1쪽.

42) 「釜山府史 - 調査全部完了」, 『釜山日報』 1936. 11. 20. 또 이때 편찬된 『釜山府史』의 원고를 1984년 부산의 민족문화사에서 간행하였으며, 2년 후에는 영인본(경인문화사)이 나오기도 하였다.

43) 大邱府 編, 1943, 「著者の序」, 『大邱府史』, 2~3쪽.

라 각 지방(地方)도 개성(個性)이 존중되고 새로운 의식에서 각각 지방적(地方的) 역할, 향토적(鄉土的) 색채가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행정관청(地方行政官廳)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차원에서 부사(府史), 연혁사(沿革史)의 필요가 인정되어 근년(近年) 각지에서 지방사(地方史) 편찬계획(編纂計劃)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며, 조선통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행정관청’에서 지방사를 편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從來 朝鮮의 地方史나 鄉土誌는 그 地方의 개척자, 선각자 내지는 신문기자 등의 손으로 된 것이 많았다 …… 그러나 최근 유력한 都邑에서는 地方史 編纂에서 從來의 단순한 향토소개에 그치지 않고, 史的變遷過程에 있어서 향토의 위치를 究明하는 데에 뜻을 두고, 編纂者를 선정하는 데에도 가능한 史學家나 經驗者 등의 專門家에게 위촉하고, 상당한 시간을 두어, 기초자료의 수집, 퇴고에 만전을 기하여 史料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귀중한 地方史가 연이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sup>44)</sup>  
(밑줄은 인용자)

즉 식민통치의 장기화에 따라 지방청에서 편찬을 주관하던 지방사지류의 특징으로 ‘사적변천과정(史的變遷過程)’에 대한 규명을 통해 지방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과 그 편찬을 ‘사학가(史學家)나 ‘전문가(專門家)’에게 의뢰한다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료(史料)를 활용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실제로 지방청에서 간행한 지방사를 보면 당대 명망있는 역사학자가 관계한 경우가 많다. 1926년부터 편찬이 진행된 『경성부사』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한 각종 조사사업과 역사교과서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경성제대 개교 이래 예과(豫科) 교수 및 학부 개설 이후 조선사학(朝鮮史學) 제2강좌를 담당한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고문(顧問)으로 참여하였고, 또 『대구부사』 간행 이전

44) 久慈畔二郎, 1941, 「地方文化の記録 - 朝鮮の郷土誌・地方史誌」, 『朝鮮行政』 226,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編, 41쪽.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지방청이 편찬한 지방사라고 할 수 있는 『평안북도사』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을 총괄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직접 편찬을 맡았다. 이러한 흐름은 『대구부사』에도 연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구부사』 편찬을 위한 사료 수집은 193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를 총괄 하였던 것이 바로 이나바였다. 이후 편찬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시 경성제대 조교수로서 조선사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던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주임을 맡고, ‘문학사(文學士) 춘산(春山) 촉탁(囑託)을 조수(助手)로’ 삼아 편찬을 개시하였다고 책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sup>45)</sup> 여기서 ‘춘산’은 이인영(李仁榮)으로 경성제대에서 조선사학을 전공한 인물이다. 이처럼 『대구부사』는 당대 역사학계의 거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편찬을 총괄하였던 스에마쓰는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의 제자로 조선사편수회 설립과 함께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조선에 부임한 이래 경성제대 부임 전까지 편수회에 재직하며 『조선사』 편찬에 깊숙이 간여하였다.<sup>46)</sup> 이러한 스에마쓰가 『대구부사』 편찬이 본격화된 이래 시종일관 그 편찬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인영 역시 대학시절부터 고서(古書) 수집에 열을 올려 고서와 고활자본(古活字本)을 구입한 것으로 유명하다.<sup>47)</sup> 이처럼 『대구부사』는 사학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도 자료에 대한 조예가 깊고, 또 스에마쓰의 경우 조선사편수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그곳의 자료활용 역시 자유로운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대구부사』는 전문가들에 의해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서도 이전에 간행된 대구의 지방사지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대구부사』는 과거 편찬되었던 지방사지류와 비교해 볼 때 세 배 가까이 분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구성의 독특함에서 연유한다. 『대구부사』는 각각 독립적이며, 분량이나 체제상 개별 도서로 출간해도 무방한 3개의 부분-‘연혁편(沿

45) 大邱府 編, 1943, 「著者の序」, 『大邱府史』, 2~3쪽.

46) 정상우, 2011, 앞의 글, 221~224쪽.

47) 李仁榮에 대해서는 金成俊, 1999, 「鶴山 李仁榮의 歷史意識」, 『國史館論叢』 84를 참고하였다.

革編)’(295쪽), ‘부정편(府政編)’(233쪽), ‘특수편(特殊編)’(256쪽) - 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부분 가운데 두 번째 ‘부정편’은 이전 지방사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부정편’은 대구부청 설립 이래 『대구부사』 편찬 당시까지의 발전상을 주로 관공서에서 발간한 통계나 자료를 근거로 행정적 변화를 비롯해 교육, 관공서, 산업, 신사, 군사시설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sup>48)</sup> 이는 일본인이나 식민통치로 인한 대구의 변화를 ‘발전’으로 정리하였던 『대구민단사』나 『대구부세일반』 등의 책들과 간행 목적·활용한 자료의 성격면에서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구부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혁편’과 ‘특수편’이다. 그렇다면 이전 지방사지나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지방의 지방사지에서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연혁편’이나 ‘부정편’처럼 편명(編名)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특수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지금의 논문집과 가까운 것이다. 즉 ‘대구’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개

48) 『大邱府史』의 제2부에 해당하는 府政編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1章 府制實施以前の大邱(第1節 大邱府廳の設立と初期の施政方針, 第2節 大邱居留民團の諸事業) / 第2章 府制の實施(第1節 行政區域の劃定, 第2節 大邱居留民團の廢止, 第3節 學校組合及び府協議會の設置, 第4節 學校費令の施行) / 第3章 改正府制の實施(第1節 府會の成立, 第2節 教育部會の設置, 第3節 町組合制の實施) / 第4章 昭和十三年度の府域擴張(第1節 府域擴張の理由, 第2節 新編入區域の狀況) / 第5章 府財政の推移(第1節 一般會計(一), 第2節 一般會計(二), 第3節 學校組合, 第4節 學校費, 第5節 第一部特別經濟, 第6節 第二部特別經濟, 第7節 鄉校財産, 第8節 特別會計) / 第6章 大邱神社の創立 / 第7章 軍事·司法·警察(第1節 歩兵第18聯隊の設置, 第2節 大邱覆審法院·大邱地方法院の沿革, 第3節 大邱警察署の沿革) / 第8章 教育機關の充實(第1節 專門學校, 第2節 中等學校, 第3節 初等學校, 第4節 私設學術講習會) / 第9章 産業の發達(第1節 農業, 第2節 工業, 第3節 商業, 第4節 貿易, 第5節 金融) / 第10章 上水道·衛生施設(第1節 上水道の敷設と擴張, 第2節 衛生施設) / 第11章 社會事業の整備(第1節 府立圖書館, 第2節 公設市場, 第3節 公設住宅及び公設洗濯場, 第4節 公設水泳場及び綜合運動場, 第5節 公設代書及び公益質屋, 第6節 兒童保護感化及び免囚保護, 第7節 人事相談所及び職業紹介所, 第8節 公會堂, 第9節 恩賜救療竝に實費診療, 第10節 軍事救援, 第11節 府廳内に事務所を有する諸團體, 第12節 方面委員制度) / 第12章 言論機關の發達.

별 연구를 진행하고, 각각의 연구결과를 묶은 것이다. 그런데 ‘연혁편’이나 ‘부정편’은 편찬자가 선임되고 별다른 변화없이 순조롭게 편찬된 반면 ‘특수편’은 그 편찬에 진통과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구부는 애초에 완성을 전망하였던 1940년 5월 중순경 ‘연혁편’, ‘부정편’, ‘특수편’의 3편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대구부청 회의실에서 관계 관민(官民) 유력자를 초대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신문기사에는 ‘특수편’의 저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경성제대 교수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이병도(李丙燾), 송석하(宋錫夏) 등의 이름이 확인된다.<sup>49)</sup> 그렇지만 『대구부사』는 주지하듯이 그로부터 3년이나 흐른 1943년(3월)에 이르러서야 출간된다.<sup>50)</sup> 그 사이 ‘특수편’의 필진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편’에서 이들의 논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총 10편의 논문이 실린 ‘특수편’의 필진과 논문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대구부사』 ‘특수편’의 저자 명단만을 보면 과연 이것이 식민지 조선의 한 지방사의 저자 명단인가 싶을 정도로 당대 학계의 거물들을 망라하고 있다. 당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와 대구를 관련지어 한 편의 논문을 써서 게재한 것이다. 그 중에는 대구 지방을 넘어 한국사 전반을 해명하는 데에 중요한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부사』 ‘특수편’은 지방사를 넘어서 ‘사학적으로 귀중한 논고(論考)’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sup>51)</sup>

반면 ‘연혁편’은 과거 편찬된 지방사지류에서 다른 지방의 역사적 변천이나 주요 사건을 정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데, 『대구부사』의 세 편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38년 11월에 편찬이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된다.<sup>52)</sup> 그런데 과거 간략

49) 「大邱府史 三編 完成, 史學的으로 貴重한 考證」, 『東亞日報』 1940. 5. 17.

50) 1943년 3월에 발간된 『大邱府史』의 서문은 ‘한때 일부 인쇄되기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던 것이 이번에 출간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한때’는 바로 신문기사가 실린 1940년 5월 중순경으로 추정된다(大邱府 編, 1943, 「序」, 『大邱府史』, 2~3쪽).

51) 「大邱府史 三編 完成, 史學的으로 貴重한 考證」, 『東亞日報』 1940. 5. 17.

52) 「大邱府史編纂」, 『每日申報』 1938. 11. 29. 이에 따르면 府政編 역시 1938년 말

〈표 1〉 『大邱府史』 '特殊編'에 실린 논문과 저자 관련 사항

논문명	저자	저자 관련 사항
大邱盆地の地形	多田文男	東京帝國大學 教授
石器時代の大邱	有光教一	朝鮮總督府 博物館長
大邱の支石墓	藤田亮策	京城帝國大學 教授
大邱の古墳	齋藤忠	朝鮮總督府 囑託. 1938년 총독부에서 행한 조사사업에 참여하고 보고서로 '大邱府附近に於ける古墳の調査'를 제출
大邱附近の方言	小倉進平	京城帝國大學 教授
大邱戸口帳籍に就いて	四方博	京城帝國大學 教授
大邱刊行の朝鮮本	春山仁榮	李仁榮의 창씨명. 京城帝大 졸업
慕夏堂金忠善に關する史料に就いて	中村榮孝	朝鮮總督府 編修官. 『朝鮮史』 조선전기 부분 (제4편) 편찬 총괄
大邱經濟の現狀とその今後の課題	小田忠夫	京城帝國大學 教授
大邱地名語原考	末松保和	京城帝國大學 助教授

※ 中村과 末松의 논문은 기발표 논문이다. 中村의 경우 같은 제목으로 1933년 5월 『靑丘學叢』 12호에 실었던 것이며, 末松의 경우 「日韓關係」, 『日本歴史』, 1933; 「新羅의 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 43-12, 1932; 「梁書新羅傳의 譯評について」, 『靑丘學叢』, 25, 1936. 세 편의 논문 내용을 취사선택해 작성한 것이다.

하게 정리되던 것이 독립된 하나의 편목으로 구성되고, 그 분량도 세 편 중 가장 길어진 점은 눈에 띈다. 이는 '사적변천과정'을 중요시하였다는 1930년대 중후반 이래 지방청에서 편찬한 지방사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으로, 대구의 지방색을 드러내는 데 있어 역사적 과정을 중요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구부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구의 역사를 정리하였는가?

편찬이 끝날 예정이었다.

## 2\_ 역사적으로 고증된 대구의 특징

스에마쓰 야스카즈와 같은 당대 거물급 학자를 기용한다는 것은 바로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지방사를 편찬하겠다는 것인데, 스에마쓰와 같은 역사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혁에 대한 서술이라 하겠다. 그러한 만큼 ‘연혁편’은 『대구부사』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한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연혁편’은 ‘부정편’의 이전 시기, 한국사의 시작 이래 강점 이전까지 대구에 대한 통사라 할 수 있다.

한편 스에마쓰는 고대사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조선사편수회 재직 시절 고대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영·정조대(英·正祖代)의 『조선사』를 직접 편수하였으며, 『조선사』 편찬의 초기부터 발간까지 모든 부분에 깊숙이 간여하여, 조선의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인물이다.<sup>53)</sup> 뿐만 아니라 『대구부사』 편찬을 즈음해서는 고대에서 강점까지에 이르는 조선의 통사를 무려 21회에 걸쳐 강연하기도 하였다.<sup>54)</sup> 즉 스에마쓰는 고대사를 넘어 역사 편찬을 경험하였으며 통사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였다. ‘연혁편’의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대 구분과 관계된 용어들이 그러하다. 위에서 언급한 강연에서 스에마쓰는 시대 구분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그는 기본적으로 왕조 중심의 시대 구분을 하면서도 삼국시대 이전을 ‘고조선시대(古朝鮮時代)’와 ‘낙랑삼한시대(樂浪三韓時代)’로 구분하였다.<sup>55)</sup> 사실 이러한 구분법과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스에마쓰 특유의 것으로, 『대구부사』에서도 “반도문화사(半島文化史)의 제1기는 ‘고조선시대’”이며 제2기는 ‘낙랑삼한시대’라는 동일한 표현과 구분법이 등장한다.<sup>56)</sup> 이처럼 『대구부사』에는

53) 정상우, 2011, 앞의 글, 134~146쪽.

54) 당시 末松保和의 강연은 조선총독부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잡지 『朝鮮行政』에 1937년 9월부터 1939년 7월에 걸쳐 22회로 나누어 연재되었다. 총 21개의 강의 가운데 고대사(통일신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1강에서 5강까지로, 그의 주전공인 고대사를 벗어난 시기의 내용이 훨씬 많다.

55) 末松保和, 1937, 『朝鮮史』(1), 『朝鮮行政』 1-9, 帝國地方行政學會, 204쪽.

56)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2쪽.

〈표 2〉 『大邱府史』 ‘沿革編’의 목차와 활용 자료

‘沿革編’의 목차	활용한 자료
第1章 李氏朝鮮時代以前の大邱 (～조선왕조 개창 이전) 第1節 啄國と達句火  第2節 新羅末の王位繼承の亂と大丘の戰 第3節 公山桐敷の戰  第4節 蒙古軍の侵掠と倭寇の難	魏志 韓傳, 日本書紀, 高句麗 好太王陵碑, 眞鏡大師塔碑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大邱府邑誌,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之碑文  慶尙道地理志, 東國李相國集,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章 李氏朝鮮時代前期の大邱 (조선왕조 개창～임진왜란 이전) 第1節 縣より郡へ  第2節 社會の創設 第3節 郡より都護府  第4節 日鮮關係と大丘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高麗史地理志, 世宗實錄, 太宗實錄, 東國輿地勝覽, 輿地勝覽, 凝溪先生實記, 別洞集, 嶺南人物考 世宗實錄, 文宗實錄  世祖實錄, 經國大典,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世宗實錄, 攷事撮要, 成宗實錄, 大邱府邑誌
第3章 李氏朝鮮時代後期の大邱 (임진왜란 ~ 동학농민전쟁) 第1節 壬辰の役と慶尙監營の設置  第2節 藥令市の起源  第3節 祠廟書院の勃興 第4節 府域伸縮  第5節 邑城の修築と監營の重建 第6節 行政の紊亂	朝鮮國城城之繪圖, 宣祖實錄, 大邱府邑誌, 西征日記, 懲愆錄, 唐將書帖, 增補文獻備考, 大邱府邑誌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8輯 『朝鮮の市場』, 仁祖實錄, 典客司日記, 接待事目錄抄  大邱府邑誌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宣祖實錄, 肅宗實錄, 大邱府邑誌  英祖實錄, 日省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沿革編의 目次	활용한 자료
第4章 李氏朝鮮時代末期の大邱 (청일전쟁~1907년) 第1節 大邱理事廳及び大邱居留民團の設置 第2節 居留民團の活動 第3節 改革政治と大邱	朝鮮内地親告書
附錄 1. 慶尙道監司任遞表 2. 大邱守令任遞表	

※ 이 표는 1943년 출판된 『大邱府史』(大邱府 編)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스에마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스에마쓰는 총 4장 17절로 『대구부사』 ‘연혁편’을 구성하였는데, 그 목차와 활용된 자료는 <표 2>와 같다.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가 시대 구분의 기점으로 전기, 후기, 말기로 구분되어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말기로 구분된 4장의 경우 “고종(高宗) 즉위후 한일병합에 이르는 50년간”이라고는 하지만 청일전쟁을 즈음해 대구에 처음으로 2명의 일본인(膝付, 室)이 들어온 이후 강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조선(新朝鮮)이 개화되는 진통기로 환언하자면 조선에서 일본세력의 수립과정 기간”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관청으로 이사청(理事廳)의 설치와 일본인 유입에 따른 거류민단 설립의 전사(前史), 그리고 이들에 의한 대구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것으로,<sup>57)</sup> 과거 대구지방을 소개하는 지방사지들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대구부사』 ‘연혁편’이 과거의 지방사지류와 차별되면서도 편찬의 역점이 두어진 곳은 조선왕조의 개국에서 동학농민전쟁까지를 다루는 2장과 3장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구부사』 ‘연혁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대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에마쓰는 대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때에 대해 북쪽에는 낙랑군(樂

57)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187~188쪽.

浪郡)이, 한강이남 및 낙동강 연안에는 한족(韓族)이 할거하며 삼한(三韓)이 병존하던 “낙랑삼한시대(樂浪三韓時代)”라며, 고대 대구는 삼한시대의 진한(辰韓), 변한(弁韓) 경계상의 탁국(啄國)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58)</sup> 그런데 이 탁국이 주목되는 것은 진구 황후가 삼한을 정벌할 당시 평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후 게이타이[繼體] 천황 때 탁국은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그 후 일본 조정에서는 오랫동안 탁국 등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신라의 침략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와 그 소멸에 대한 것이다. 『대구부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임나(任那)”는 삼한의 대명사로, 신라가 진한·변한을 복속하였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임나 침식(任那侵蝕)”이었기 때문에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해 “임나부흥(任那復興)”을 기도하는데, 최초의 시도가 바로 탁국의 부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탁국은 낙동강의 중상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곳에 위치한 임나의 가장 중요한 일국(一國)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상 대구는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과 임나일본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신라와 일본의 각축이라는 한·일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sup>59)</sup>

『대구부사』에 따르면 대구는 신라에 병합되어서도 신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신문왕(神文王) 때는 탁국으로의 천도가 시도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처럼 대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대구와 관계되는 사적(事蹟)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바로 제42대 흥덕왕(興德王) 사후 일어난 왕위계승의 난(亂)에서 대구가 관군과 적군의 격전장이 된 것과 공산동수(公山桐藪,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 부근)에서 벌어진 왕건과 견훤의 회전(會戰)이 그것이다. 이는 대구가 신라의 서울 “경주 방위의 제일선”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구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sup>60)</sup> 이와 같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구를 부각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58)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1~4쪽.

59)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5~8쪽.

60)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10~16쪽.

대한 서술에서도 드러나는데,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강조이다.

한편 『대구부사』 ‘연혁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바로 2장과 3장은 과거 조선시대 편찬된 지리지나 읍지에서 다루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한다. 조선왕조의 건립 이후 과거 속현(屬縣)이었던 대구가 세종(世宗) 1년에 군(郡)으로 승격된 전후 사정을 설명한 2장의 1절, 또 2장의 3절에서 세조(世祖) 12년에 도호부(都護府)가 설치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한 것이나 대구도호부 관할 구역의 변화를 다루는 3장 4절 등에서 설명하는 행정적 변화는 조선시대의 읍지나 지리지에서도 주요하게 취급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3장의 3절과 5절과 같이 사묘(祠廟)와 서원(書院), 성곽(城郭)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것들이다.

이와 같이 『대구부사』는 그 연혁을 설명해서 과거 조선시대의 지리지나 읍지에서 다루던 것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 또 강점 이후 『대구부사』 편찬 이전에 간행되었던 지방사지에서 다루지 않거나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던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강조이다. 『대구부사』에서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점은 바로 임진왜란인데, 2장의 말미 나오는 ‘일선관계(日鮮關係)’에서 대구의 위상을 언급한 이후 임진왜란으로 연결되는 체제이다. 3장 ‘이씨조선시대 후기의 대구’의 시작인 ‘壬辰の役と慶尙監營の設置’는 다른 절에 비해 세 배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저자의 표현대로 “대구가 이 전역(戰役)에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졌는가”<sup>61)</sup>를 서술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부사』에서는 임진왜란에서의 대구를 서술하기에 앞서 “조선 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소장으로서 된 ‘조선국성성지회도(朝鮮國城城之繪圖)’”를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이 그림에 “평안(平安, 平壤)성 이북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의 모양이 일일이 그려져 있”는 것만 보아도 “秀吉(토요토미 히데요시: 인용자)의 외정목적(外征目的)이 정명(征明)이었음을

61)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85쪽.

알 수 있다”<sup>62)</sup>며 임진왜란을 명(明)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사를 이른바 ‘사대주의’의 측면에서 대외의존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일본 또는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던 당시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관과 『대구부사』가 편찬되던 당시, 바로 중일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한다.<sup>63)</sup> 그렇다면 임진왜란에서 대구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전쟁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大丘는 이 전쟁에서 彼我 軍士들의 往來가 頻繁하였으니 대구가 1592년(宣祖 25년) 4월 20일 小西行長의 제1군에게 점령당하고 …… 宣祖 26년(1593) 5월 征朝軍 전부가 부산 방면으로 撤退할 때까지 大丘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日本軍이 撤退하자 明軍의 선봉장 李寧은 병마 1000명을 이끌고 즉시 대구로 오고 …… 이렇게 大丘를 근거지로 明朝軍은 남부의 일본군과 대치하였으며 전라·충청도로의 진격을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宣祖 27년(1594) 가을 劉挺이 軍兵을 데리고 일단 귀국할 때까지 1개여 년 동안 八蒿 혹은 陝川으로 왕래하였으나 주로 大丘에 주둔하였다. 이때부터 대구의 지리적 중요성이 明朝軍兵에서 인정된 것이 특히 주목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 될수록 대구 부근 주민의 피해가 더욱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즉 兵士 등의 식량을 공급해야 하였고, 특히 藩邦再造란 이름 아래 저지른 明軍의 暴虐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하여간 대구가 중요시된 결과로 이곳에 慶尙道觀察使營(監營)의 설치를 보게 된 것이다.<sup>64)</sup>

대구는 임진왜란 당시에도 여전히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침공 초반부터 일본군은 대구에 주둔하였으며, 1년 후 명과의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물러간 직후부터는 명의 군대 역시 1년 여간 대구

62)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85쪽.

63)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기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주로 대외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만 집중되었다. 정상우, 2011, 앞의 글, 90~92쪽.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大邱府史』가 출간된 것은 1943년이지만, 沿革編이 완성된 것은 1938년 11월 이전으로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때다.

64)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106~108쪽.

에 주둔하며 충청과 전라도로 진입하려는 일본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감영(監營)이 설치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 대구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대구 일대의 조선인에 대한 명군(明軍)의 학대가 심하였다고 하며, 임진왜란에서 조선인을 힘들게 하였던 것은 침략한 일본군이 아니라 명군이었던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에도 과거 임나일본부의 주요국이었던 탁국을 두고 일본과 신라가 다투었듯이 일본군과 명군도 대구를 발판삼아 전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였다며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구의 특성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대구부사』 ‘연혁편’에서 역사상 대구가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는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 또 가장 큰 사건으로 특필된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와의 연관성은 앞서 살펴본 『대구독본』에서도 거론된 것이다. 그 외에도 왕건과 견훤의 전투 역시 『대구독본』에서 짧게 언급된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1930년대 접어들어 이전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대구의 등장과 그 특성을 일본사와의 관련성, 특히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과 임진왜란을 통해 파악하는 가운데 왕건과 견훤의 전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가미하는 서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구부사』가 『대구독본』과 차별되는 지점은 바로 ‘사료’이다. 비슷한 내용을 짧은 분량에 기술한 『대구독본』에 비하면 『대구부사』는 이 내용이 40여 페이지를 상회한다. 이렇게 분량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사료들을 제시하며 고증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대구부사』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부사』는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에서 주로 다룬 사항, 강점 이후 관청이나 재조일본인이 편찬한 지방사지에서 강조한 사항들, 또 1930년대 중후반 대구지역 청소년 교육용 교재로 제작된 『대구독본』과의 공통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대구부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전의 지방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면모가 기술되고 있다. 바로 2장의 마지막 절인 ‘일선관계의 대구(日鮮關係と大邱)’나 3장

의 2절인 ‘약령시의 기원(藥令市の起源)’과 같은 부분이 그것이다.

먼저 제2장의 4절인 ‘일선관계의 대구’는 절(節)의 이름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대구의 위상을 조선 전기의 ‘일선관계’에서 찾는 것이었다.<sup>65)</sup> 이 절은 먼저 조선왕조의 개창과 ‘일선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선왕조의 개창 즈음 일본은 아시카가[足利] 막부의 중앙집권이 실현되고, 조선 정부의 군비충실과 경제적 회유책으로 인해 고려 말 이래의 왜구의 습격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역을 위해 상경하려는 일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대부담이 늘어나자 조선 정부는 그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고, 그 중 하나가 상경도로(上京道路) 및 상경인수(上京人數)와 그 접대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세종 14년(1433) 상경 시역로(驛路)의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해 3포(浦)에서 각각 3로(路)로 갈라져 상경하는 상경도로가 규정되었는데, 대구는 3포 중 하나인 부산포(釜山浦)에서 서울에 이르는 중로(中路)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로 - 상경도로에 위치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 아시카가 장군이나 여러 다이묘(大名)의 사자(使者)에 대해 반드시 연향(宴享)을 차려 환대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규정은 대체로 임진왜란 전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sup>66)</sup>

이와 더불어 대일 관계에 있어 성종(成宗) 3년 이래 17년까지 약 15년간 이루어졌던 왜물고(倭物庫)를 통한 무역 역시 지적한다. 세조 말년 조선과 일본 상인들 간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사무역을 모두 금지하고 관무역만 허용하게 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일본 상품을 구입해 창고에 수납한 후 수시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구입한 일본 상품을 수납·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가 ‘왜물고’인데, 이것이 바로 대구의 속현인 화원현(花園縣)에 설치

65) 이 부분에 앞선 제1장의 4절에서는 각각 2개의 사료를 제시한다. ① 고려 말 蒙古軍이 당시 대구지방까지 침범해 들어온 일과 ② 대구는 내륙이지만 왜구가 대구까지 공격하였다는 것을 짧게 서술하며 일본과 대구의 관련성을 언급한다(大邱府編, 1943, 『大邱府史』, 28~29쪽.). 고려 말 왜구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하는 2장 4절의 ‘日鮮關係と大邱’는 내용과 서술상 제1장 4절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66) 大邱府編, 1943, 『大邱府史』, 69~72쪽.

되었던 것이다. 『대구부사』에서는 당시 호조(戶曹)의 제급절목(題給節目)이나 일본과의 사무역 재개와 관련된 각종 논의들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며, 대구의 속현인 화원현의 '왜물고[花園倉]'를 통해 당시 한·일관계까지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sup>67)</sup>

이처럼 조선 전기의 대구를 '일선관계'에서 조망하려는 태도는 조선 후기에 도 드러난다. 바로 제3장의 2절 '약령시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다. 대구의 약령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구지방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조선통치를 위해 조선의 상황(商況)과 시장(市場)에 대해 파악할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1924년에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8집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에 실려 있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약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구 약령시는 “이조 효종(孝宗) 시대에 국산을 지나(支那)에 공상(貢上) 하기 위해 각 지방의 특산품을 조사해 춘추(春秋) 2기(期)에 그것을 경성(京城)에 보”낼 당시 “남선지방(南鮮地方)에서는 많은 약재가 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한약”이었고, 관찰사가 있던 대구로 먼저 이들 물산이 모였으며, “그 가운데 우량한 것을 골라 공헌하고 남는 것을 서로 교환 또는 매매하게 된 것”<sup>68)</sup>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효종대 한·중관계의 맥락에서 약령시의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대구부사』에서는 대구의 약령시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일선무역(日鮮貿易)'이 부활한 결과라며, 『조선의 시장』의 견해를 “확실한 문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속전(俗傳)으로, 이를 지지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sup>69)</sup> 이후 『대구부사』는 “확실한 문헌”들을 제시하며 약령시를 한·일관계사의 맥락으로 집어넣는다. 즉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쓰시마[對馬] 번주(藩主)로 하여

67)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74~82쪽.

68) 朝鮮總督府 庶務部 調査課, 1924, 『朝鮮の市場』, 137쪽.

69)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114쪽.

금 조선으로부터 다수의 약재를 구하게 하였다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인조대(仁祖代) 문헌을 장황하게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이상 언급된 바에 의해 大邱의 藥令市가 이미 이 즈음(仁祖 16~19年)부터 열렸다고 斷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藥令市 開催를 촉진한 要素가 여기 있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從來의 藥令市 起源에 관한 支那朝貢說을 부정하고 여기서 日鮮貿易說을 提唱하는 所以이다.<sup>70)</sup>

이처럼 『대구부사』에는 조선시대 이래 대구지방에서 편찬되었던 지방사지류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이전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한·일관계사의 맥락에서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조선 전기 조일무역(朝日貿易)에서의 상경로나 왜물고, 조선 후기의 약령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구가 처음으로 포착되는 사건으로 거론되는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이나 『대구부사』에 특필된 임진왜란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한·일관계사의 맥락에서 대구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 3\_ 『대구부사』에 활용된 사료들

한편 『대구부사』 ‘연혁편’은 ‘특수편’과 더불어 편찬 당시부터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 이유는 사료의 활용 때문인데,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이를 “이조실록(李朝實錄)을 중심으로 한 완벽품이며 세계학계에 자랑할 수 있다”고까지 격찬하였다.<sup>71)</sup>

『대구부사』는 연구서처럼 일일이 각주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사료를 이용할 경우 그 출전을 반드시 밝히고 있다. 각 장·절별로 활용한 사료를 정리한 것이 <표 2>의 우측 항목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90년대 이후 대구에

70)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124쪽.

71) 「大邱府史 三編 完成, 史學的으로 貴重한 考證」, 『東亞日報』 1940. 5. 17.

서 일본 세력의 부식을 다루는 제4장을 제외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지리지 등과 같은 한국 측 사료만이 아니라 『위지(魏志)』나 『일본서기』, 또 앞서 언급하였던 ‘조선국성성지회도’ 등과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료도 활용되었다. 즉 스에마쓰로 대변되는 전문 학자들을 기용해 이룬 성취는 바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료의 활용이었다. 사실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이나 임진왜란과 관계된 사항은 1937년에 간행된 『대구독본』에도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대구독본』은 이러한 내용을 단 몇 줄로 선언적으로 정리한 데에 비해 『대구부사』는 방대한 사료를 활용해 이를 실증하고, 논리를 조직해 낸다는 점에서 이전의 서술을 뛰어넘는다.

〈표 2〉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구부사』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에서 다루던 사항들, 강점 이후 재조일본인이나 부청(府廳)에서 자신들의 업적이나 부세(府勢)를 과시하기 위해 편찬하였던 지방사지에서 다루던 부분을 일정 정도 포괄하고 있다. 대구의 행정적 위상 변화를 정리하는 제2장의 1절과 3절, 제3장의 4절, 서원에 대한 서술인 제3장의 3절, 성곽과 관청과 관계된 제3장 5절은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에 빠지지 않고 파악되던 사항이며, 제4장은 강점 이후 재조일본인들이나 부청에서 발간하였던 지방사지류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節)들은 사료의 활용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4장의 경우, 다른 장들이 꼼꼼히 활용한 사료의 근거를 제시한 데 비해, 활용한 자료도 거의 없으며 무성의할 정도로 활용한 자료의 출전도 밝히지 않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대구민단사』로 대변되는 재조일본인이 서술한 지방사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sup>72)</sup> 이를 통해 볼 때 제4장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도 떨어지고 사학적이 아닌 태도로 서술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72) 제4장에서 그나마 활용한 자료로 제시한 ‘朝鮮內地親告書’는 熊本縣 출신인 岡崎唯雄이 189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大邱市場을 조사하고 돌아가서 기술한 것이다.

또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의 항목들을 다루는 장들은 대체로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지리지나 1907년의 『대구부읍지(大邱府邑誌)』를 주된 자료로 삼아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구 지방의 지방사를 편찬하면서 그 실증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 과거 편찬되었던 지리지와 읍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정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강점 이래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통치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구관조사사업(舊慣調査事業)을 벌였는데, 그 일환으로 주요 서적에 대한 정리·발췌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정확한 연대가 확인되지 않지만, 1913년에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주요 정리 대상은 『조선왕조실록』을 필두로 『승정원일기』, 『일성록』과 같은 관찬 편년사료,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같은 주요 법전들이었다. 이러한 사료에 대한 정리와 발췌는 1915년 역사 편찬 사업으로서 ‘반도사 편찬’이 개시되면서 조선시대의 관찬 편년사료를 넘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고대사 관련 자료나 고려사와 각종 지리지뿐만 아니라 사찬의 개인문집들로도 확대되었다. 또 사료의 수집과 정리는 1922년 이래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를 거치며 『조선사』 편찬으로 수렴되었으며,<sup>73)</sup> 편수회에서는 『조선사』 편찬을 위해 더 많은 사료를 수집·정리하였다.

『대구부사』 편찬을 담당한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이러한 조선사편수회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그 활용이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인물이다. 실제로 『조선사』에는 대구와 관련된 5개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5개의 기사는 모두 조선시대의 것으로 시기 순으로 보면 ① 대구현(大丘縣)이 군(郡)으로 승격된 것을 알리는 세종 원년 5월 26일 경오(庚午), ② 대구가 도호부가 되는 세

73) 이에 대해서는 金泰雄, 1993,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정상우, 2012,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의 편찬과 사건선별기준에 대해, 『史學研究』 107, 310~319쪽. 당시 정리 및 발췌 항목은 제도적인 측면의 것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日本, 野人, 明·淸·元, 기타 外國 관계사항(貿易 포함)이었다.

조 12년 정월 15일 무오(戊午), ③ 영조 9년 12월에 대구에서 벌어진 괘서사건(掛書事件)과 괘서를 붙인 장본인 서무필(徐武弼)의 국문(鞫問)을 전하는 영조 10년 정월 2일 기묘(己卯)와 6일 계미(癸未), ④ 대구의 축성(築城)을 전하는 영조 12년 정월 22일 정사(丁巳), ⑤ 전주, 함흥, 평양, 대구를 부사(府使)로 한다는 영조 31년 9월 7일 무인(戊寅)이다. 『조선사』에서는 이 사건들을 전하며, 그 근거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 조선 후기라 할 수 있는 영조대의 경우 『승정원일기』까지 제시하였다.<sup>74)</sup> 『조선사』에서 전하는 사건은 주로 대구의 행정적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모두 『대구부사』에도 실려 있다. 또 영조대의 괘서사건 역시 『대구부사』 ‘연혁편’ 제 3장 제6절 조선 후기 혼란상을 이야기하는 ‘행정의 문란’에서, 그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전하기 위한 근거 자료도 『조선사』와 『대구부사』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부사』는 『조선사』에서 활용한 자료에 『여지승람』의 대구 관련 사항, 19세기 말 20세기 초 반복적으로 간행된 읍지의 내용이 더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구부사』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사편수회와 『조선사』로 대변되는 중앙의 역사 편찬이 있는 것이다.<sup>75)</sup>

이는 『대구부사』 ‘연혁편’에서 활용한 다른 자료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사편수회 혹은 그 이전부터 정리·발췌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과 같은 관찬 편년사료·법전류, 조선시대 간행된 각종 지리지와 읍지 외에 『대구부사』 ‘연혁편’에서 사용한 사료는 20종으로, 다음과 같다.

74) 대구와 관련된 『朝鮮史』의 기사가 실려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朝鮮史』 第4編 第2卷, 291쪽; 『朝鮮史』 第4編 第4卷, 729쪽; 『朝鮮史』 第5編 第8卷, 393~394쪽; 『朝鮮史』 第5編 第8卷, 493쪽; 『朝鮮史』 第5編 第9卷, 493쪽.

75)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외에 조선시대 중앙에서 발간한 지리지로서 『大邱府史』에서 많이 사용한 『慶尙道地理志』와 그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 『慶尙道續撰地理誌』는 1938년 중추원에서 색인을 첨부한 교정본을 발간하였다. 식민지기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는 같은 건물에 있었으며, 도서를 함께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출판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들 지리지 역시 활용이 매우 용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魏志 韓傳, 日本書紀, 高句麗 好太王陵碑, 眞鏡大師塔碑,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之碑文, 東國李相國集, 凝溪先生實記, 別洞集, 嶺南人物考, 攷事撮要, 朝鮮國都城之繪圖, 西征日記, 懲毖錄, 唐將書帖, 典客司日記, 接待事目錄抄 (밑줄은 조선시대 관련 자료)

이 가운데 고대사에 해당하는 문헌자료 4종(『위지』 ‘韓傳’, 『일본서기』, 『삼국사기』, 『삼국유사』)은 『조선사』의 해당 부분 제1편과 제2편에서 무수히 활용된 자료들이며, 고대사 전공자로서 『조선사』를 편찬한 스에마쓰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다. 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문헌자료 3종(『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이상국집』) 가운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역시 『조선사』의 해당 부분인 제3편에서 무수히 활용되었으며, 『동국이상국집』 역시 『조선사』 제3편의 4권에서 자주 활용된 자료이다.

한편 『대구부사』 제1장(고대·고려시대)에서는 3개의 금석문을 활용하였다. 바로 고구려 호태왕릉비, 진경대사탑비, 고려태사장절신공충렬지비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호태왕릉비 역시 『조선사』 제1편 1권에 활용되고 있으며, 진경대사탑비의 경우 조선총독부에서 1919년에 발간한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에 실려 있는 것으로, 역시 중앙의 사료편찬과 정리사업의 결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였다. 고려태사장절신공충렬지비는 왕건과 견훤의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 죽은 신숭겸(申崇謙)을 기리기 위해 17세기 초에 세워진 것인데 보존상태가 좋아 당시에도 대구의 역사 편찬에 있어 직접 보고 활용하기 쉬웠던 것이다.<sup>76)</sup>

나머지 조선시대 관련 자료 10종 역시 조선사편수회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76)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之碑는 申崇謙 전사 후 700여 년이 흐른 조선 宣祖 38年 (1605), 申崇謙의 외손인 柳永詢이 慶尙道觀察使 兼 大邱都護府使로 부임한 이후 申崇謙의 靈을 위로하기 위해 表忠祠를 세우고 그곳에 세운 碑이다(大邱府編, 1943, 『大邱府史』, 21~22쪽, 126~127쪽). 이러한 사정은 『大邱府邑誌』도 전하고 있다. 이 碑가 있는 表忠祠는 현재 ‘대구시도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 있고, 碑 역시 잘 보존되어 있다.

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서 서술한 ‘조선국성성지 회도’이다. 이는 원래 쓰시마[對馬島] 종가(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편수회에서 1926년에 구입한 것으로, 당시 조선사편수회에 소장되어 있음을 『대구부사』에서 밝히고 있다.<sup>77)</sup> 현재 조선사편수회에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는지를 전해주는 목록이나 자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부사』에서 연혁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가 모두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소장·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단,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조선사』와 그 편찬과정에서 중요성이 인정된 20종의 사료를 영인한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을 통해서이다. 『조선사』 편찬에 이용한 자료와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한 자료라면 조선사편수회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조선국성성지회도’를 제외한 9종의 자료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명(明)의 장군들이 영의정 류성룡(柳成龍)에게 보낸 서장(書狀)을 정리·첨장(整理·貼裝)한 ‘당장서첩(唐將書帖)’의 경우 1934년에 이미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료총간』의 네 번째 책으로 발간하였던 책이다. 한편 그 외의 『별동집(別洞集)』,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고사촬요(故事撮要)』, 『서정일기(西征日記)』, 『징비록(懲毖錄)』, 『전객사일기(典客司日記)』, 『접대사목록초(接待事目錄抄)』는 모두 『조선사』 편찬을 위해 활용되었거나 조선사편수회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자료들이다.<sup>78)</sup>

77)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85쪽.

78) 이 자료들을 정상우, 2011, 앞의 글, 188~215쪽에 실려 있는, 『朝鮮史』에서 전거로 제시한 사료들의 목록과 대조해 본 결과, 이 자료들이 『朝鮮史』에 인용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자료명	『朝鮮史』에서 활용한 編卷	자료명	『朝鮮史』에서 활용한 編卷
別洞集	第4編 1, 2, 4卷	西征日記	第4編 9卷
嶺南人物考	第4編 6, 9, 10卷	懲毖錄	第4編 9, 10卷
故事撮要	第4編 1, 2, 5, 6, 7, 8, 9, 10卷 第5編 1卷	接待事目錄抄	第5編 1, 2, 3, 4, 5, 6卷

『典客司日記』의 경우 『朝鮮史』에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중추원의 조

즉 『대구부사』에서 대구의 연혁을 정리하기 위해 활용한 대부분의 자료는 조선사편수회와 『조선사』로 대변되는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사업과 이를 위한 사료의 수집·정리 작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1943년에 대구부(大邱府)에서 편찬한 『대구부사(大邱府史)』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의 지방사지 편찬과 『대구부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이래로 중앙에서 지방통치를 위해 수차례 지지(地誌)를 편찬하고 읍지(邑誌)를 편찬해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구 역시 그 행정적 위상, 호구, 토지, 시설물, 인물 등에 대한 사항이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사찬 읍지도 편찬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사지류의 편찬은 강점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주로 지방청이나 대구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 많았다. 이는 이른바 ‘근대 도시’로 일신한 대구의 면모를 조명하면서 그러한 ‘발전’을 이끈 원인으로 식민통치나 재조일본인의 노력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방사 편찬과 더불어 1930년대에 접어들어 대구 지방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독본류의 간략한 교육용 교재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대구 지방의 특징들을 기원이나 역사적 경과를 통해 보여주면서, 대구를 임나 일본부나 임진왜란과 같은 사건과 관련짓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지방의 유

---

사자료와 조선사편수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충추원 컬렉션’에 그 일부가 ‘朝鮮史編修會’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조선사편수회 당시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凝溪先生實記』는 현재 원본은 규장각뿐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조선사편수회 당시부터 있던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지이자 ‘당국(當局)’과 연결된 유림들이 총독부의 유교정책에 호응해 전통시대의 것과 비슷한 체제와 내용의 읍지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1930년대 중반 이래 조선총독부의 지방청에서는 전문 역사가를 기용해 ‘도사(道史)’, ‘부사(府史)’를 발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구부 역시 조선사 편수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경성제대의 조교수 스에마쓰 야스카즈에게 의뢰해 1943년 『대구부사』를 간행하였다. 이 『대구부사』는 과거 대구의 지방사 편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과거의 지방사지류를 이어가면서도 양과 질 모두에서 압도하였다.

『대구부사』는 ‘연혁편(沿革編)’, ‘부정편(府政編)’, ‘특수편(特殊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식민통치기구인 대구부 설치 이후 대구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는 ‘부정편’은 식민통치 이후 대구부에서 발간한 『대구부세일반(大邱府勢一斑)』이나 대구의 일본인들이 편찬하였던 중종의 지방 안내서를 잇는 것으로,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한편 『대구부사』는 편찬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는 ‘연혁편’과 ‘특수편’ 때문이었다. 사실 스에마쓰와 같이 당대 저명한 학자의 기용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으로 『대구부사』가 단순히 대구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적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저자의 명성에서 오는 학적 권위가 극대화된 부분이 ‘특수편’이다. ‘특수편’은 스에마쓰뿐만 아니라 당대 내노라하는 10명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관련지어 대구를 분석한 논문을 한 편씩 실고 있는 것으로, 그 중에는 기발표된 글들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학계의 검증을 마친 것들이었다.

한편 편찬을 담당한 스에마쓰의 역량이 가장 현저히 드러나는 것은 ‘연혁편’이다. 과거 지방사지에서도 대구의 역사를 정리하였지만, 간략히 선언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대구부사』에서는 3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해 대구의 특성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역사가로서 스에마쓰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의 행정적 변화, 성곽과 서원과 같은 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들은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으로 대변

되는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읍지들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강점 초기부터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를 거치며 정리·발췌되어 있는 것이었다. 또 『대구부사』가 편찬되기 직전에 나왔던 『대구독본(大邱讀本)』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던 진구[神功] 황후의 삼한정벌(三韓征伐)을 역사상 대구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위치지우며 중국이나 일본의 자료들을 활용해 ‘실증’을 시도하였다. 이는 『대구부사』 ‘연혁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시대의 대구에 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임진왜란 당시 대구의 상황 역시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징비록(懲毖錄)』, 『당장서첩(唐將書帖)』 등과 같은 한국의 자료를 넘어 ‘조선국성성지회(朝鮮國城城之繪)’와 『서정일기(西征日記)』와 같은 일본 측 자료까지 제시하며 장황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과 임진왜란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구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일관계사의 측면에서 대구를 포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부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조선 전기의 대구를 ‘일선관계(日鮮關係)’상 일본인들의 상경로(上京路)와 무역 창고로서 부각하는 것이나 조선 후기 대구에서 나타나는 약령시(藥令市)에 대해서도 당시까지의 통설이던 ‘지나조공설(支那朝貢說)’을 부정하고 ‘일선무역(日鮮貿易)’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 역시 『고사촬요(故事撮要)』, 『전객사일기(典客司日記)』, 『접대사무록초(接待事目錄抄)』와 같은, 특히 조선시대 대외관계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즉 『대구부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구의 역사적 특성은 바로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그 특성 역시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부각되었다. 이때 대구는 ‘조선의 대구’라기보다는 ‘한·일관계 속의 대구’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제국의 대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구부사』는 대구를 역사적으로 ‘제국의 대구’로 위치 짓는 데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대구의 위상은 어떻게 보증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양한 사료의 활용에 의해서였다. 『대구부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꼼꼼한 사료의 활용을 통해 대구를 한·일관계사의 맥

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구부사』에서 이용된 사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대부분이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정리·발간한 사료들이라는 점이다. 즉 조선사편수회와 『조선사』로 대변되는 중앙의 역사 편찬사업은 『대구부사』와 같은 지방사의 ‘실증성’을 보장하는 아카이브로서 작용하였으며, 조선사편수회의 작업을 통해 ‘실증’된 『대구부사』는 대구를 ‘제국의 대구’로 몰아갔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자료〉

-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邱府邑誌』, 『嶺南邑誌』, 『大邱邑誌』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行政』(帝國地方行政學會 編), 『朝鮮史』(朝鮮史編修會 編)  
 朝鮮總督府 庶務部 調査課, 1924, 『朝鮮の市場』.  
 大邱府 編, 1915, 『大邱民團史』.  
 大邱府 編, 1936, 『大邱府勢一斑』.  
 大邱府教育會, 1937, 『大邱讀本』.  
 大邱府 編, 1943, 『大邱府史』.  
 全州府 編, 1943, 『全州府史』.

### 〈연구성과〉

- 國立大邱博物館 편, 1994, 『嶺南의 名儒와 壬辰倭亂』, 국립대구박물관.  
 金成俊, 1999, 「鶴山 李仁榮의 歷史意識」, 『國史館論叢』 84.  
 金泰雄, 1993,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류미나, 2007,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문지은, 2010, 「1930년대 郷土教育論의 展開와 日帝의 郷土教育 施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걸순, 2004,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박경하, 2006, 「日帝下 官學者의 郷約研究의 性格」, 『歷史民俗學』 22.  
 서인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혜안.  
 양보경·김경란, 2001,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유준기, 2001,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 친일화정책과 유림계의 대응」, 『韓國史研究』 114.  
 이태진, 1979,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역사적 성격」, 『震檀學報』 46·47합집.  
 정두희, 1976,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1),(2), 『歷史學報』 69, 70.

-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혜주, 201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 허홍범, 2003, 「지역사 연구와 사료 : 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4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ABSTRACT]

Compilation of Local History and Construction of the Local  
in the Last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With Special  
Emphasis on *Daegubusa*(大邱府史)(1943)

Jeong Sangwoo

This paper examines local history compil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rough *Daegubusa*(大邱府史, *The History of Daegu*), a text published in 1943.

Since the Joseon perio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yangban(在地士族) had compiled local histories for governing local society and ensuring their superiority in these areas. The local history of Daegu was also compiled during the Joseon period. Its main contents are administration, population, land, significant installations, and famous persons in Daegu. Even after Korea became a colony, local history continued to be compiled in Daegu, but this was undertaken primarily by Japanese who had settled in Daegu. Such compilation was to say that the development of Daegu owes to Japanese and colonial rul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mid-1930s many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Government-General of Chōsen(朝鮮總督府) had published local histories to call in historians. Daegu-bu(大邱府) invited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 who was a professor at Keijō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and deeply involved in the Association of the Compilation of Korean History(朝鮮史編修會), to compile *Daegubusa*. This book, while covering the local history of the past, has

attracted academic attention in two ways. One is that famous scholars, represented by Suematsu, were assembled. The other is that they utilized reliable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Joseon wangjo sillok*, 朝鮮王朝實錄).

*Daegubusa* presented Empress Jingu's(神功皇后) "Sankan seibatsu" (三韓征伐, or the conquest of the Three Han) as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Daegu, and explained the history of Daegu in the relationship with Japan from its origins to the Joseon period. In other words, *Daegubusa* imparted new meaning to Daegu as "Daegu in Korea – Japan relations" and "Daegu in the empire," not as "Daegu in Korea."

The new meanings for Daegu have been demonstrated by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historical materials cited in *Daegubusa* have one point in common. This is a result of the Government – General's investiga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Chōsenshi*(朝鮮史), which was compiled by the Association of the Compilation of Korean Histor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 General's investiga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ensured the "scientific objectivity" of local history such as *Daegubusa*. And *Daegubusa*, whose text was based upon the historical materials summarized by the central authority, depicted Daegu as "Daegu of the Japanese Empire."

#### Keywords

*Daegubusa*(大邱府史), Daegu during the Japanese Empire,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 Association of the Compilation of Korean History(朝鮮史編修會), *Chōsenshi*(朝鮮史)

# 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홍승현 | 서강대학교 사학과 대우교수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2012년 6월 5일자 광명일보(光明日報)가 보도한 중국문화부의 발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장성(長城)에 관한 관념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총 길이 2만 1196.18km, 관련 시설 4만 3721곳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는 '만리(萬里)'라고 통칭되던 장성에 관한 수식을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그 소재지도 동으로는 흑룡강성(黑龍江省)에서 서로는 신강(新疆) 위구르자치구까지로, '동 산해관(山海關) 서 가옥관(嘉峪關)'이라는 기존 관념을 넘어 확대되었다.

이렇게 장성의 길이가 확장되고, 소재지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기존 장성 개념의 변화다. 기존 장성은 산해관에서 가옥관까지 이르는 벽의 연속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장성을 장체(牆體: 장성의 본체, 즉 기존 장성으로 표현되던 담 또는 벽), 성보(城堡: 성이나 주위에 쌓은 둔병지 또는 거주지), 관애(關隘: 관문 혹은 요새), 봉화대(烽火臺), 적루(敵樓: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설치한 성벽의 망루)를 모

※ 투고일: 2014년 4월 9일, 심사일: 2014년 7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25일

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장성은 하나의 벽이 아닌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방어물 전체를 이르는 개념이 되었다.<sup>1)</sup> 따라서 벽이 연속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장성의 시설물이라면 모두 장성으로 파악해, 장성의 길이를 확장하고 소재지도 확대하였다.

둘째, 발표 당시 중국문화국이 사용한 용어가 ‘역대장성(歷代長城)’이기 때문이다. 발표에서 중국문화국은 ‘역대장성’이라 하여 중국사에 등장하는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한족왕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해도,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장성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추정되는 노변강토장성(老邊崗土長城)과 발해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단강변장(牧丹江邊牆)도 역대 장성에 포함되어 범위가 흑룡강성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동북공정의 연장’, ‘고구려사 빼앗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흥분했고, 동북공정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전면적인 대응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은 이 발표가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2005~2014)’의 중간보고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무엇보다 ‘장성보호공정’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그에 따른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경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필자 역시 이미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sup>2)</sup> 종래의 글이 주로 요동(遼東)지역에 분포한 연진(燕秦)장성 및 한(漢)장성에 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면적인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성보호공정’의

1) 중국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完整的綜合性軍事防禦體系’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梁建宏, 2010, 「甘肅境內長城保護工作回眸」, 『絲綢之路』 6, 37쪽.

2) 홍승현, 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사업이 어떤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사업이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이른바 중국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장성학'<sup>3)</sup>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 받은 중국학계의 장성학 연구의 경향을 살펴 고자 한다. 국가에 의해 연구의 주제와 범주가 확정되고, 막대한 연구비가 지원된다면 연구는 자연히 특정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일련의 연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앞으로 중국 장성학이 가게 될 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이 글의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장성보호공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장성 개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가 장성 조사와 보호의 핵심 주체가 된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장성 연구가 시 차원, 혹은 시박물관 차원의 현장조사에 근거했던 이유를 알려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성 연구의 범주가 규정됨으로써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개략을 서술하고자 한다.

'장성보호공정'으로 인해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는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국가정책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III장에서는 그 결과물이 어떤 경향을 띠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장성 연구의 지역적 경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북지역 장성 연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무래도 장성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는 서쪽지역 장성 연

3) 중국학계에서 '장성학'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94년 장성국제학술대회로 생각된다. 여기서 羅鐵文과 董耀會는 1979년 國家文物事業局 주제로 개최된 長城保護研究工作 좌담회를 계기로 장성에 대한 연구가 지난날 장성의 연혁, 건축 및 보수·현존상황, 진행방향 및 유적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장성을 매개체로 하는 정치, 경제, 군사, 민족, 교통, 지리, 문화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종합적인 장성 연구, 즉 '장성학'으로 이름하였다. 羅鐵文·董耀會, 1995, 「長城學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25쪽. 실제로 현재 중국의 장성 연구는 장성의 개념, 구성성분, 역할 등에서 벗어나 장성과 연동된 강역 문제, 경계 문제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동지역의 장성 연구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 고대사 연구에서 장성 연구의 비중과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장성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구와 그 선도 복잡하고 많이 훼손되어 방향을 분명히 파악하기 힘든 동쪽지역 장성 연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차이의 확인을 위해 동북지역 장성 연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장성 연구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이 장성을 매개로 한 역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II. 중국 정부의 ‘장성보호공정’

2004년 장성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2004年度世界瀕危遺產名錄]’에 올라가면서, 중국 정부는 장성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이다. 2005년 말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9개 분야의 장성 보호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장성보호공정총체공작방안(長城保護工程總體工作方案)>(이하 <보호방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보호방안>의 주요 내용

- ① 장성 기반의 파악: 장성 자원 조사의 실시, 장성 문물 기록 보고서의 작성
- ② 총체적인 계획의 편성: <장성보호총체규획(長城保護總體規劃)>의 편성, 보호범위와 규제지구의 확정
- ③ 관련 법규의 제정: <장성보호관리조례(長城保護管理條例)>의 제정, 관련 법규의 완비
- ④ 장성 보호 관리체제의 정돈: 장성 보호 관리체제의 정돈, 명확한 장성 보호 책임선의 확정
- ⑤ 장성 보호에 관한 선전 실시: 장성 보호에 관한 철저한 선전과 교육 실시
- ⑥ 장성 및 그 보호 관리를 위한 연구 강화: 장성 보호를 위한 과학적 연구의 강화와 ‘장성 및 그 보호 관리 연구’ 과제의 완성

- ⑦ 장성 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보수계획의 수립: 과학적인 장성 보호와 수선계획의 제정, 중점 구간 유적에 대한 수선방안 편성과 중점 부위의 응급처리 공사의 완성
- ⑧ 장성 파괴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집행: 법률에 근거한 관리 감독의 강화, 장성 파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 ⑨ 장성 보호를 위한 경비 증대: 장성 보호 작업에 대한 경비 증대<sup>4)</sup>

이 장에서는 위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최근 장성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_ 장성 개념의 확정

먼저 ①의 '장성 기반의 파악'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장성의 규모·구성·방향 및 시대·관리상황·환경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과학적이고도 완전한 '장성 문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2006년 감숙(甘肅)·하북(河北) 두 성(省)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2007년 전국에 분포한 장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먼저 명(明)장성에 대해 실시되었다. 51개 조 448인이 투입된 대대적인 조사 후 명장성의 분포지역은 요녕(遼寧)·하북·북경(北京)·천진(天津)·내몽고(內蒙古)·섬서(陝西)·영하(寧夏)·감숙·청해(青海)의 10개 성·자치구·직할시 등이고, 총 길이는 8851.8km로 보고되었다. 그 동쪽 끝은 요녕성 호산(虎山)으로, 서쪽 끝은 감숙 가옥관(嘉峪關)으로 확정되었다. 진한(秦漢)장성 및 여타 시기 장성에 관한 조사는 2009년에 93개 조, 922명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이들 장성은 흑룡강(黑龍江)·북경·하북·산서(山西)·내몽고·요녕·산둥(山東)·하남(河南)·섬서·감숙·영하·호북(湖北)·청해·신강(新疆) 등 14성 179개 현(縣)에 걸쳐 분포한 것

4)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保護工程(2005~2014年)總體工作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9~14쪽. 「長城保護工程總體工作方案」이 제출된 것은 2005년 11월이다.

로 조사되었고, 그 중 진한장성은 1만 442km, 기타 시대의 장성은 1만 1469km로 보고되었다.<sup>5)</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장성이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이하 <조사방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조사방안>에서 규정한 장성 구성

- 장성 본체: 성벽 및 성벽 상의 시설, 적대(敵臺)·마면(馬面) 등
- 부속 시설: 장성과 함께 방어체계를 이루는 관련 시설, 관보(關堡)·봉화대(烽火臺) 등
- 관련 유적: 성벽 양측으로 장성 방어체계와 관련 있는 유적, 호구(壕溝), 당마장(擋馬牆), 품자교(品字窖), 역참(驛站), 창저(倉儲), 거주지(居住地), 전와교(磚瓦窖), 채석장(採石場), 적신(積薪) 등

사실상 군사 방어시설 전체를 장성이라고 보고 있는 이 규정은 『장성자원조사공작수책(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이하 『수책』)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 법규인 <장성보호관리조례(長城保護管理條例)>(이하 <보호조례>)의 규정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장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례> 2조는 장성을 “장성의 장체(牆體)(즉, 성벽), 성보(城堡), 관애(關隘), 봉화대(烽火臺), 적루(敵樓) 등을 포괄한다”<sup>6)</sup>고 규정해, 장성 및 그 부속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방안>에서는 ‘관련 유적’이라는 항목을 넣어 특정 군사시설을 장성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놓았다. 물론 사료에도 장성이 길게 연결된 장벽 뿐 아니라 방어용 토담이나 흥벽과 같은 장애물이나<sup>7)</sup> 성채 또는 요새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sup>8)</sup> 이처럼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성

5) 이상의 내용은 중국 국가문화유산연구소 직속기관인 中國文化遺產研究院의 홈페이지(www.cach.org.cn)에 수록되어 있는 <長城資源調查項目>의 ‘長城資源調查工作的緣起’, ‘長城資源調查工作概況’, ‘秦漢及其他時代長城資源調查工作’, ‘長城資源調查工作的進展情況’, ‘明長城資源調查工作的主要成果’ 등을 참조해 작성하였다.

6)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保護條例』,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3쪽. “本條例所稱長城, 包括長城的牆體·城堡·關隘·烽火臺·敵樓等”.

벽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방어시설이 존재하거나 관련 유적이 있으면 장성을 추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벽의 경우도 토장(土牆), 석장(石牆), 전장(磚牆)뿐 아니라, 산험장(山險牆), 산험(山險), 목장장(木障牆), 호참(壕塹) 등으로 구별하고 다시 그것을 방법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장의 경우 다시 향축(夯築), 퇴토(堆土), 홍류가사(蘆葦加沙), 토배루체(土坯壘砌)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장성을 흙[土], 돌[石], 벽돌[磚]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던 것과는 달리 <조사방안>에서는 산험장, 산험, 목장장, 호참도 장성의 종류로 포함한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그 중 산험장과 산험은 자연물을 이용한 것으로 과연 이것을 인간이 수축한 장벽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이견이 존재한다.<sup>10)</sup> 한편 호참이나 계호(界壕)는 참호로 지금까지 장성으

7) 사료에는 방어용 토담, 홍벽과 같은 외부에 대한 엄호물 또는 장애물의 역할을 담당한 塹, 長塹, 方城 등이 등장한다. 차례대로 『史記』卷15, 「六國年表」, “塹洛, 城重泉”; 『北齊書』卷4, 「文宣帝紀」, “冬十月丁酉, 帝至平州, 遂從西道趣長塹”; 『漢書』卷28上, 「地理志上」, “楚葉公邑. 有長城, 號曰方城”.

8) 성채나 요새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塞·塞垣·塞圍, 長城塞·長城障塞·長城亭部 등이 등장한다. 차례대로 『史記』卷110, 「匈奴列傳」, “於是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 『後漢書』卷90, 「鮮卑列傳」, “天設山河, 秦築長城, 漢起塞垣, 所以別內外, 異殊俗也”; 『魏書』卷4下, 「世祖紀」, “丙戌, 發司·幽·定·冀四州十萬人築畿上塞圍, 起上谷, 西至于河, 廣袤皆千里”; 『晉書』卷42, 「唐彬傳」, “復秦長城塞, 自溫城泊于碣石”; 『通典』卷178, 「州郡八古冀州」, “東北到長城障塞一百十里”; 『史記』卷88, 「蒙恬列傳」, “吾適北邊, 自直道歸, 行觀蒙恬所爲秦築長城亭障, 塹山堙谷, 通直道, 固輕百姓力矣”.

9) 『全遼志』卷2, 「邊防志·障塞」에서는 山險에 대해 “山險無牆”, “險山無牆”이라고 하여, 장성과는 다른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10) 景愛는 장성은 人工建築物이어야 하기에 山險이나 山險牆은 장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사카쿠라 아쓰히데(阪倉篤秀) 역시 직접적으로 장성이 인공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황화가 굴절해서 동으로 향하기 직전에 河岸이나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洛水의 西岸에 인력을 가해 낙차가 생기도록 깎아낸 塹洛 長城(魏의 공격을 막기 위해 戰國時期 秦이 낙수의 서쪽에 쌓은 장성으로 알려져 있음)에 대해 장성 수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景愛, 2010, 「長城的內涵及其相關問題」, 『東北史地』6, 23쪽; 阪倉篤秀, 2004, 「長城的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40~41쪽.

〈표 1〉 〈조사방안〉에서 규정한 장성 성벽 분류

구분	내용	분류	비고
토장	축성 시 성벽 외관을 주로 흙으로 쌓은 성벽	夯築: 흙을 다져 세운 성벽	
		堆土: 흙을 쌓아 세운 성벽	
		紅柳(蘆葦)加沙: 渭城柳와 갈대 등의 식물을 진흙, 모래와 섞어 쌓아 올린 성벽	
		土杯壘砌: 굽지 않은 흙벽돌로 쌓은 성벽	
석장	축성 시 성벽 외관을 주로 돌로 쌓은 성벽	毛石干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큰 돌을 사용해 쌓아 올린 벽	
		土石混築: 흙과 돌을 혼합해 쌓은 벽	
		砌築: 가늘고 긴 돌이나 가공한 돌을 이용해 쌓은 벽	
전장	축성 시 성벽 외관을 주로 벽돌로 쌓은 성벽	包土: 벽의 내부를 흙을 다져 만들고, 외부를 내화 벽돌로 싸서 쌓은 벽	
		包石: 벽의 내부를 흙과 잘게 부순 돌로 만들고, 외부를 내화 벽돌로 싸서 쌓은 벽	
		磚石混砌: 가늘고 긴 돌로 기초를 놓고, 가늘고 긴 돌과 가공한 돌로 어느 높이까지 쌓은 후 윗면을 다시 내화 벽돌로 쌓아 성벽의 상층을 구성한 벽	
산험장	지세가 험한 곳에 사람이 가공해 장애물을 만들 것		산을 깎아 만든 鑿削牆, 산을 갈라 만든 劈山牆
산험	지세가 험한 要害處에서 성벽과 함께 방어체계를 이루고 있는 산, 하류, 계곡과 같은 자연물		
목장장	목제 울타리를 이용해 제작한 벽		
호참/계호	벽과 참호로 조합된 방어체		漢代의 壕塹, 金代의 界壕

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특히 한대(漢代)의 호참은 이전 시기 연구에서 장성이 아닌 참호로 규정되었다.<sup>11)</sup> 금대(金代)의 계호 역시 북위(北魏), 요(遼)의 호참과 같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재료 면에서 목축장은 목제 울타리를 이용해 수축한 장벽을 말한다.<sup>12)</sup> 지금까지 중국학계는 목책은 장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특히 경애(景愛)는 장성을 흙·돌·벽돌을 쌓아 만든 연속된 군사 방어물로만 이해하였다.<sup>13)</sup> 국내에서도 목책으로 경계를 세운 요동변장(遼東邊牆)은 장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연구가 발표되었다.<sup>14)</sup> 그러나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목책을 장성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중국 측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 2\_ 관련 법규의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③ 관련 법규 제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법규라는 것은 <보호조례>를 말한다. <보호조례>는 2006년 10월 국가국무원령 476호로 제정되고 그해 12월 1일자로 시행된 장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다.<sup>15)</sup> <보호조례>는 모두 31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1) 吳祁驥, 1990, 「河西漢塞」, 『文物』 2.

12)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資源調查名稱使用規範」,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42쪽.

13)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 上海人民, 26쪽. 景愛는 '長城의 定義에 關해(關於長城的定義)'에서 장성을 '土·石·磚을 쌓아 구축한 연속된 벽'이라 규정하였다. 그는 2010년에도 동일한 주장을 발표하였다. 景愛, 2010, 앞의 글, 21쪽.

14) 남의현, 2012. 6. 12, 「중국의 역대 長城 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3쪽. 남의현은 요동변장은 벽돌로 축조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요동변장은 강과 산 등 자연적인 협세를 주로 이용하면서 적이 들어올 만한 중요한 길목과 거점에 작은 규모의 성인 쌓을 설치하고 그곳에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남의현, 2011,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시대 성격 연구-변경시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34.

15) 「長城保護條例」, 3~8쪽.

### 〈보호조례〉 중 지방정부 관련 조항

- 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장성은 장성의 성벽, 성보, 관애, 봉화대, 적루 등을 포괄한다.
- 5조: 장성 소재 현급(縣級) 이상 지방정부는 장성 보호 경비를 재정 예산에 책정해야 한다.
- 6조: 국가는 장성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제도를 시행한다.
- 8조: 국무원 문물 주관부서, 장성 소재 현급 이상 지방정부 및 문물 주관부서는 장성 보호에 출중한 공헌을 한 조직 및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 9조: 장성 소재 성(省)·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11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장성보호총체규획〉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장성 보호범위와 규제지역을 확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 15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 구간 보호 담당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

관련 법규의 제정은 정부의 책임으로 장성 조사와 보호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는 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또는 위대한 인류유산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방정부가 이후 장성 보호에 필요한 예산항목을 책정하게 된 것은 체계적인 장성 보호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장성의 보호범위와 규제지역을 확정해야 한다는 11조와 장성 보호를 전달할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15조 역시 앞으로 장성이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날로 파괴되고 있는 장성의 상황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조와 같이 법률에 의해 장성의 개념이 규정됨에 따라, 학문적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문제도 야기하였다. 즉 학문 대상으로서의 장성은 장성학이라는 특정 학문 분야를 성립시켰는데, 장성이 학술적 근거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법률적으로 규정되면서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힘들

게 된 것이다.<sup>16)</sup>

장성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이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9조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내의 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해당 지역 내의 장성이라는 것은 11조에 의해 그 해당 지역 지방정부가 획정한 것이다. 이것은 장성 혹은 장성선의 확정을 해당 지역정부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장성 조사가 장성선을 확정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된 것이다. 학문적 객관성 담보라는 점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우리는 “국무원 문물 주관부서, 장성 소재 현금 이상 지방정부 및 문물 주관부서는 장성 보호에 출중한 공헌을 한 조직 및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는 8조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 국가 방침에 따라 장성의 존재와 장성의 보호가 개인 또는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적인 자금지원<sup>17)</sup>과 더불어 “국가는 장성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제도를 실행한다”는 6조의 규정 또한 장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연히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장성에 대한 조사와 구간의 확정이 진행되었다. 최근 장성에 대한 중국 측 연구가 팽창한 것과 그 결과들의 대다수가 시정부 혹은 시박물관 차원의 조사보고인 것은 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sup>18)</sup>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지역별로 장성의 흔적을 찾고, 연장된 장성을 자신들의 경내로 끌어들이는 조사와 연구들을 검증 또는 통합하는 학계의 시스템을

16) 2조에 의해 1994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長城國際學術研討會’에서 彭曦가 주장한 “장성은 城(牆)·烽(燧)·障(塞)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중국학계의 장성 관련 연구에서 장성에 대한 이견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일률적으로 장성을 선이 아닌 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현재 중국학계에서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 보는 연구자는 景愛가 유일하다시피 한 상태다.

17) <보호방안> 9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장성 현지 조사에 인민폐 6,000만 위안을, 장성 연구에 2,000만 위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방안>에 따르면 조사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18) 자세한 사항은 홍승현, 2012, 앞의 글.

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있을 것이다. 연구자마다 주장하는 장성선 중 무엇이 올바른 장성의 방향인지, 그들이 장성선을 확정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타당한지를 지방정부가 검증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이것이 장성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우려하며, 장성 연구에 대한 학계의 자정작업을 요청하게 되는 이유다.

### Ⅲ. 장성 연구의 신경향

장성 조사 및 연구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은 장성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장성 연구를 ‘장성학’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학문 분야로 육성하였다.<sup>19)</sup> 특히 재정적 뒷받침은 이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장성 관련 석·박사논문 중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배출한 천진대

19) 중국 정부는 장성 관련 연구 분야를 ① 중국 역대 장성 연구, ② 장성 보호 이론과 정책, ③ 장성 보호 기술로 다각화해 연구를 추동하였다. 그로 인해 역사학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장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단적인 예로 2012년 장성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역사학 분야의 연구보다 건축학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解丹, 「金長城軍事防禦體系及其空間規劃布局研究」, 天津大 박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王琳峰, 「明長城薊鎮軍事防禦性聚落研究」, 天津大 박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張玲, 「秦漢關隘制度研究」, 河南大 박사학위논문(中國古代史); 王力, 「明長城大同鎮軍事聚落整體性研究」, 天津大 석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王洪超, 「長城的攝影藝術語言表達」, 太原理工大 석사학위논문(設計藝術學); 白貴斌, 「苔蘚及地衣對涼州明長城的保護作用研究」, 蘭州大 석사학위논문(建築與土木工程); 聶倩倩, 「長城與秦朝政治經濟再研究」, 蘇州大 석사학위논문(中國古代史); 李晴, 「宋明兩代軍事堡寨研究」, 天津大 석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庄和鋒, 「明長城山海關防區防禦體系與軍事聚落研究」, 天津大 석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劉壯, 「明代永平府境內軍事聚落地理初步研究」, 中央民族大 석사학위논문(歷史地理學).

(天津大) 건축과의 경우 정부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2007~2010년 國家自然科學基金資助項目 및 國家教育部高等學校博士學科點基金資助項目).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규정한 연구범위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물들을 제출하게 하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구비의 역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천진대의 결과물들은 동일한 프레임을 이용해 지역을 달리한 연구들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 성과물들의 내용이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정부 관할의 장성 조사 활동 또한 연구의 방식과 내용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역사학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장성 조사 활동은 지역 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자연히 그 정보들은 새로운 연구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조사가 매뉴얼에 따라 규정된 양식을 채용해 진행된 터라, 그것을 이용한 연구들 역시 일정한 모식(模式)에 따라 서술되었다.

특별히 그것을 규정한 것은 다음의 지침들로 생각된다. 우선은 <전국중점 문물보호단위기록당안공작규범(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記錄檔案工作規範)>, 즉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하는 규범이다. 여기서는 문물조사 후 작성하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고서 중 문자 부분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일람〉

- ① 전국 중점 보호 단위 등기표, ② 지리 위치, ③ 자연 및 인문환경,
- ④ 역사 연혁, ⑤ 기본 상황의 묘사, ⑥ 가치 평가, ⑦ 관련 연구의 상황,
- ⑧ 지난 시기 행해진 조사·발굴·보호 사업·전시의 상황, ⑨ 보호의 범위·새롭게 규제할 지역과 항목의 상황, ⑩ 보호 표지의 설치 상황,
- ⑪ 보호 기구의 상황, ⑫ 안전 보위 사업의 상황, ⑬ 부속 문물의 등기표, ⑭ 중요 문물 소장(所藏) 등기표, ⑮ 고목(古木)과 명목(名木) 등기표<sup>20)</sup>

20) 國家文物國, 1991,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保護範圍·標志說明·記錄檔案和保管機構工作規範」 4장 15조.

보고서 중 도상(圖像)과 관련해서는 지형도·지질도·문물분포도·보호범위 및 규제지역도 등은 물론, 발굴평면도·유적분포도·단면도·지층도 등을 포괄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진은 전경사진을 비롯해 유적의 외·내경 사진, 부속유물의 사진, 중요 문물 및 고목과 명목의 사진을 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조사를 규정한 것은 『수책』에 수록되어 있는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長城資源調查名稱使用規範)>과 <장성자원조사문물편마규획(長城資源調查文物騙馬規劃)>이다. 각기 조사 시 사용하는 명칭과 분류 시 번호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문건이다. 특히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 안에는 재료 및 측정방법에 따른 성벽의 분류와 그에 따른 명칭·설명, 성벽시설의 구분과 명칭·설명, 관보(關堡) 시설에 대한 분류와 명칭·설명, 봉화대 시설에 대한 분류와 명칭·설명, 기타 관련 시설의 분류와 명칭·설명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근간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동일한 용어를 이용해 비슷한 전개의 글이 나오게 된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1\_ 현장조사 결과 보고성 연구

최근 장성 연구의 경향 중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문헌에 근거한 연구가 드물고,<sup>21)</sup> 현지 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의 보고성 연구가 대량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문헌을 바탕으로 시대별 축조연대와 그 방향 및 기점을 규명하려던 초기 장성 연구<sup>22)</sup>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1950~1970년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해도 그것은 문헌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21)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성 관련 연구 중 장성 관련 문헌 고증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세 건을 제외하곤 찾아보지 못하였다. 尙珩, 2009, 「山西明長城文獻綜述」, 『滄桑』 6; 董焱, 2011, 「北京古長城文獻考察」, 『社科縱橫』 26; 董焱, 2011, 「延慶縣長城的考察」, 『教育科學』 3.

22) 王國良, 1930, 『中國長城沿革』, 上海: 商務印書館.

주된 내용은 역시 각 장성의 축조연대를 확정하는 것이었다.<sup>23)</sup>

한편 이전 시기의 현장조사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1980년대 이후 2000년대의 현장조사는 국가의 지원이나 단위의 지원에 힘입어 보다 활기를 띠게 된다. 이 당시 장성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문헌사료 분석 위주의 장성 연구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sup>24)</sup>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특히 방향에 관한 연구가 대중을 이루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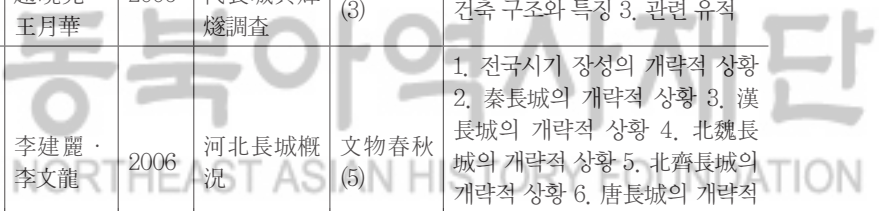
그러나 '장성보호공정'이 발표된 이후인 2005년부터는 이와는 달리 장성 구조에 대한 연구가 대중을 이룬다. 지금까지 장성 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 학계의 연구가 주목된다.<sup>26)</sup> 그 중에서 모미야마 아키라[糴山明]의 연구는 장성을 이루고 있는 수(燧)·후관(候官)·관성(關城)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sup>27)</sup> 물론 중국 측에도 장성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장성을

- 23) 비교적 일찍 장성과 관련해 고고학적 현지 조사의 내용을 연구에 사용한 修桂臣이나 李文信의 경우 모두 현지 조사의 결과를 문헌 자료의 증명이라는 한정된 방법으로만 사용하였다. 修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の東北疆域」, 『考古學報』 1; 李文信, 1979a,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李文信, 1979b,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下」, 『社會科學輯刊』 2.
- 24) 이것은 1979년에 國家文物事業管理局이 內蒙古 呼和浩特市에서 長城保護研究工作 좌담회를 개최한 것에 힘입은 것이다. 좌담회는 ① 지금까지의 산발적·개인적·지역별 고고학 발굴성과를 종합해, ② 문헌 연구에 머물렀던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받았다. 羅哲文·董耀會, 1995, 「長城學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25쪽.
- 25) 이러한 현상은 1979년 長城保護研究工作 좌담회의 결과가 2년 뒤 출판된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에서부터 보인다. 여기에 실린 戰國時期부터 明代까지 장성에 관한 글들은 대체로 각 지역 장성의 유적을 소개하고, 그를 따라 방향을 확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성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찾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홍승현, 2012, 앞의 글, 357쪽, 주 63.
- 26)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米田賢次郎, 1953, 「漢代の邊境組織—隧の配置について」, 『東洋史研究』 12-3; 大庭脩, 1954, 「漢代の關所とパスポート」, 『秦漢法制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永田英正, 1964, 「居延漢簡烽隧考」, 『東方學報』 36; 富谷至, 1990, 「漢代邊境の關所—玉門關の所在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48-4; 吉村昌之, 1998, 「居延甲渠塞における部隧の位置」, 『古代文化』 50-7; 糴山明, 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東京: 中央公論新社; 吉川佑資, 2011, 「居延漢簡にみえる候長と候史」, 『古代文化』 63-2.

〈표 2〉 2005년 이후 발표된 현장조사 보고성 연구 성과<sup>29)</sup>

지역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 제목	수록지	내용
감숙성 (甘肅省)	1	潘玉靈 · 梁建宏	2009	簡論甘肅境內長城牆體類型	絲綢之路 (165)	1. 夯築牆을 쌓은 지역 2. 堆築牆을 쌓은 지역 3. 砌築牆을 쌓은 지역 4. 山險牆 지역 5. 木障牆 지역 6. 山水險 지역 7. 壕塹 구축 지역
	2	王希偉	2012	甘肅早期秦長城調查所見關堡略論	西安財經學院學報 (25)	1. 關堡의 개략적 상황 2. 관보의 설립과 형태 3. 관보-장성의 중요 군사 방어체계
영하 자치구 (寧夏自治區)	3	寧夏文物考古研究所 · 內蒙古鄂托克前旗文化局	2006	寧夏靈武市長城調查與試掘	考古與文物(2)	1. 明長城의 개략적인 위치 상황 2. 관보의 구성 성분의 특징 3. 명장성 내측의 濠塹 4. 명장성 내측의 봉화대 5. 명장성 외측의 '品'字形坑 6. 外長城의 개략적 상황 7. 內長城의 개략적 상황 8. 장성 試掘點 9. 靈武市 내 隋長城에 대한 서술
	4	馮國富 · 海梅	2009	固原戰國秦長城調查	寧夏師範學院學報 (30-4)	1. 장성 및 부속물의 개략적 상황 2. 지역별 장성 성벽의 상황
	5	馬蘭英	2011	略談固原境內現存古長城及其構築方式	絲綢之路 (201)	1. 固原 경내 古長城에 대한 개략적 소개 ① 戰國時期 秦長城 ② 宋長城 ③ 명장성 2. 축성의 방식 ① 夯築 ② 塹險 ③ 砌壘
	6	張榮萍	2011	固原市原州戰國秦長城調查與發掘	寧夏師範學院學報 (32-4)	1. 장성의 분포 지역 2. 장성의 보존 상태 3. 장성 수축의 특징 4. 장성선 부근에서 채집한 유물 5. 장성 발굴의 연혁
	7	周佩妮	2011	寧夏境內現存長城構築方式探析	絲綢之路 (205)	1. 명장성의 유적 ① 西長城 ② 舊北長城 ③ 北長城 ④ 陶樂長堤 ⑤ 東長城 ⑥ 固原內邊, 2. 명장성의 구축 방식 ① 挑挖壕塹 ② 苟拉壕 ③ 深溝高壘 ④ '品'字形窖

지역	연번	연구자	발표 연도	논문 제목	수록지	내용
섬서성 (陝西省)	8	陝西省考古研究院·榆林市文物考古勘探工作隊·神木縣文管辦	2011	神木縣西溝秦長城遺址發掘·調查報告	考古與文物(3)	1. 西溝瓜地渠 유적지의 발굴 상황 2. 과지거 유적지 남북 연장 단락의 발굴 조사 3. 출토, 채집한 유물
하북성 (河北省)	9	吳克賢	2005	撫寧境內明長城敵臺建築形制	文物春秋(3)	1. 撫寧 경내 磚砌 敵臺에 대한 개략적 상황 2. 적대 형태에 대한 소개 3. 열 개 대표 적대에 대한 구조 분석
	10	田淑華·趙曉光·王月華	2006	承德地區漢代長城與烽燧調查	文物春秋(3)	1. 장성의 방향과 봉수의 분포 2. 건축 구조와 특징 3. 관련 유적
	11	李建麗·李文龍	2006	河北長城概況	文物春秋(5)	1. 전국시기 장성의 개략적 상황 2. 秦長城의 개략적 상황 3. 漢長城의 개략적 상황 4. 北魏長城의 개략적 상황 5. 北齊長城의 개략적 상황 6. 唐長城의 개략적 상황 7. 金長城의 개략적 상황 8. 명장성의 개략적 상황
	12	鄭紹宗·鄭立新	2009	河北古長城沿革考略(上·下)	文物春秋(3·4)	1. 전국시기 燕·趙長城의 연혁과 상황 2. 전국시기 中山長城의 연혁과 상황 3. 진장성의 연혁과 상황 4. 한장성의 연혁과 상황 5. 蔚縣 後漢長城의 연혁과 상황 6. 북위장성의 연혁과 상황 7. 북제장성의 연혁과 상황 8. 隋長城의 연혁과 상황 9. 金代 界壕의 연혁과 상황 10. 명장성의 연혁과 상황
	13	于曉磊	2009	北朝長城現況調查	中國文化遺產(1)	1. 北朝長城의 연대와 기점과 종점 2. 북조장성 유적의 자연·인문 환경 3. 북조장성의 유적 건축 특징



지역	연번	연구자	발표 연도	논문 제목	수록지	내용
하북성 (河北省)	14	趙宏利 · 朱波 · 劉麗	2009	北朝長城東部遺迹綜合考察與分析課題研究	中國文化遺產(5)	1. 유적 조사 및 연구의 목적 2. 조사 진행 과정 3. 조사의 결과 ① 북조장성 동쪽 끝 유적과 명장성 간의 관계 ② 북조장성 동쪽 끝 유적의 보존 현황과 문제
	15	于任杰 · 佟淑華 · 劉朴	2012	關於河北明長城的幾個問題	文物春秋(3)	1. 河北 명장성의 개략적인 상황 2. 장성 축적의 역사적 배경 3. 장성의 건설과 구조 4. 역사 속 장성상의 군사 활동 5. 역사 속 장성상의 방어 활동
내몽고자치구 (內蒙古自治區)	16	甄自明	2010	鄂托克前旗明長城初探	內蒙古文物考古(6)	1. 鄂托克前旗 지역의 명장성 분포 2. 명장성의 건축 형식, 3. 명장성의 보존 현황 4. 명장성의 수축과 관찰 5. 악타극전기 명장성의 역사상 중요한 방어 작용
하남성 (河南省)	17	張新斌	2005	中原古長城若干問題的初步研究	中原文物(2)	1. 中原 古長城의 지구별 분포와 개략적 상황 2. 중원 고장성의 유형과 연대 3. 문헌에 반영된 중원 고장성 관련 중요 문제
	18	李典芬	2007	河南省戰國魏韓邊界長城遺迹的實地考察	中原文物(5)	1. 分境嶺의 현재 상황 2. 분경령 관련 유적 3. 韓魏 分경령=邊界장성
	19	申文 · 程要遠	2011	新鄉地區北部戰國時期長城遺址考察	絲綢之路(215)	1. 장성의 분포 및 방향, 2. 장성 축조 기술과 보존 현황, 3. 장성 관련 시설, 4. 장성 유적의 방어 방향과 국가별 소속, 5. 장성 유적의 연대
산서성 (山西省)	20	何德亮	2009	中國歷史上最古老的長城—齊長城	中原文物(2)	1. 齊長城 건설의 역사적 배경 2. 제장성의 방향 3. 제장성 건축의 형식과 특징 4. 제장성의 구성 5. 孟姜女 전설
	21	劉媛	2010	大同長城的概念和範圍	文物世界(5)	1. 大同長城의 개념 2. 대동장성의 시간 범위 3. 대동장성의 공간 범위 4. 대동장성의 구성 5. 대동장성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적 기능

대(臺), 장(鄣), 성(城)으로 구분하고 있는 항춘송(項春松)과 포니아림(布尼阿林)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28)</sup> 하지만 이들 중국 측 연구는 장성 그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장성 구조물의 유적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소략하게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 중에는 장성 그 자체, 구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것은 대부분 특정한 지역, 특정 구간의 장성 구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지역별로 존재하는 장성 본체, 즉 성벽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행해졌던 것의 결과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장성 본체 및 그 부속물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의 경험들에 의해 ‘~조사’ 혹은 ‘~조사와 발굴’이라는 논문이 대량 생산되었다. 심지어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시대별 장성의 축성방법만을 분석한 글도 있고, 특정 장성의 부속물 중 관보(關堡)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봉수(烽燧)만 고찰 대상으로 삼은 연구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보인다.<sup>29)</sup>

### 1) 장성에 대한 보고

우선 이 중에서 전형적인 조사 보고성 글을 하나 살펴보자. 영하자치구 고원시의 진장성에 대한 6 장채핑(張彩萍)의 글은 분포지역, 장성 보존의 상황, 장성 축조의 특징, 장성 연변에서 획득한 유물에 대한 소개, 발굴 상황에 대한 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분포지역에서는 장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장성은 감숙(甘肅) 정녕현(靜寧縣)에서 영하(寧夏) 서길현(西吉縣)으로 진입한 후 북으로 진행해 장대향(將臺鄉)을 지나 동으로 마련향(馬蓮

27) 粗山明, 1999, 앞의 글, 45~78쪽.

28) 項春松, 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址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布尼阿林, 1981,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查報告」, 『中國長城遺址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29) 동북 지역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살펴볼 것이기에, 여기서 吉林省과 遼寧省의 연구들은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鄉)으로 들어간다. 마련향으로 들어간 장성은 파도구(巴都溝)를 거쳐 원주구(原州區) 장이번서보(張易樊西堡) 남측을 지나 홍장촌(紅莊村)에 진입하고, 다시 첩첩구(疊疊溝)를 지나 손가장(孫家莊) 남쪽에 도달한다. 여기서 동쪽으로 꺾어져 해자협하(海子峽河)를 지나 북쪽으로 꺾어져 명장(明莊)·해보(海堡)·곽장(郭莊) 북측을 지난다. 해보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외역(外域)은 청수하(淸水河)를 따라 남하해 사와(沙窩)에 이르고, 내역(內域)은 청수하를 건너 사와에 이르러 외성과 만난다. 이후 이가탑산(李家塔山)을 지나 하천향(河川鄉)으로 들어갔다 북으로 맹원향(孟原鄉)을 지난 후 북쪽으로 꺾어져 영하정내를 빠져나가 감숙진(甘肅鎮)으로 진입한다. 꽤 자세한 방향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방향을 증명하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성의 서쪽 지역이 동쪽보다 비교적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을 심분 이해해도, 장성 방향 확정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 이미 확정된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노선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인지, 혹은 노선 확정이 이미 장성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장성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제시된 것이 없다.

다음 보존상황에 따라 장성을 4종류로 구별하였다. 첫 번째는 장성 성벽 상부가 훼손된 것 외에는 기단이 완전히 보존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고정(苦井)·장성(長城)·명장(明莊)·해보(海堡)·옥보(王堡) 구간의 11.713km가 그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이 구간에는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48개의 돈대(墩臺)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장성의 높이는 2~5m이고, 장성 위로 연속된 돈대의 높이는 5~20m에 달한다. 기본 넓이는 6~12m<sup>2</sup>이고, 판축으로 달구질한 한 층의 높이는 6~8cm이다. 장성 내측은 완만한 비탈로 오르고 내리는 데 편하도록 설계되었고 외벽은 치솟아 적을 방어하기 편하게 되었으며, 벽면은 150~250m 간격으로 돌출되어 있다. 둘째는 장성 성벽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다. 셋째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구간, 마지막으로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구간이다. 연구는 각 구간에 대해 첫 번째 구간과 같이 구체적 구간의 길이, 남아 있는

돈대의 수, 남아 있는 장성의 성벽 높이, 판축으로 달구질한 층의 높이, 돈대의 높이, 돈대 사이의 거리 등의 수치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장성 축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성지(城址), 성장(城障), 봉화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비교적 큰 네 개의 성지는 장이번서보촌(張易樊西堡村), 첩첩구구(疊疊溝口)의 손가장 남측, 장성촌(長城村) 엄가장(嚴家庄) 동측, 청수하 서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장이번서보촌의 성지를 예로 들어 보면, 규모는 남북으로 250m 동서로 폭은 240m이고, 성의 동쪽 벽과 남쪽 벽은 이미 도로가 되었으며 하구(河溝)는 파괴되었다. 북쪽에 남은 담의 길이는 150m, 서쪽에 남은 담의 길이는 164m이며, 남은 담의 높이는 1.5~2.5m이다. 기저부의 넓이는 8㎡, 판축으로 달구질한 한 층의 높이는 6~8cm이다. 성호(城壕)의 폭은 20m이고, 그 밖은 평지다. 나머지 세 성지에 대해서는 장이번서보촌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기초 조사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네 번째, 장성선 부근에서 발굴한 유물로는 평기와(板瓦), 반원통형 기와(筒瓦), 와당(瓦當), 문양이 들어간 벽돌들을 보고하고 있다. 각각의 문양, 남아 있는 정도, 크기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굵은 끈 문양의 평기와(粗繩紋板瓦)- 표본은 잔편(殘片), 볼록한 면은 세로 및 사선의 굵은 끈 문양의 꾸밈이 퍼져 있고, 직경은 4mm다. 오목한 면은 사선의 굵은 끈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잔편의 길이는 27cm, 폭은 17cm, 두께는 1.5cm다.” 다른 여타의 유물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장성 단락의 발굴 연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장성은 2005년 10월, 은천(銀川)~무한(武漢) 간 고속도로가 고원시(固原市) 원주구(原州區) 개성진(開城鎮, 원 서郊鄉) 명장촌(明莊村)의 전국(戰國) 진(秦) 장성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는 장성 단락 중에서 먼저 발굴 조사한 명장촌 서쪽 측면의 경우 장성이 끊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약 120m였고, 방향은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발굴 조사는 장성 횡단면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내측 성벽의 남은 높이는 3.25m, 외측 성벽의 남은 높이는 3.2m, 기저부의 폭은 8.23m, 정상부의 폭은 4.1m, 호구(壕溝)의 폭은 11.1m, 바깥 방축은 2.5m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연구는 통상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발굴보고서에 가깝다. 2005년부터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발굴보고서로 대체된 상태라, 연구의 양적 팽창을 일괄해서 연구 질의 심화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물론 현대식 기기가 동원되고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어 종래 장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보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4 풍국부(馮國富)·해매(海梅)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연구자는 고원시 서길현(西吉縣), 원주구, 팡양현(彭陽縣) 세 지역에 존재하는 전국시기 진장성의 분포, 잔존 장성 길이, 잔존 장성 요소, 좌표, 훼손 정도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 장성의 세세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조사 결과가 아닌 조사의 목적과 조사 과정의 상황, 조사 후 발표한 결과물에 대한 소개만으로 구성된 연구도 존재한다. 14 조굉리(趙宏利) 등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 글은 2004~2006년 국가문물국 과제였던 <북조장성동부 유적종합고찰여분석(北朝長城東部遺迹綜合考察與分析)> 프로젝트의 목적·연도별 작업 및 진행상황·제출한 문건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성 연구들은 국가에 의해 확정된 장성 개념이나 구성요소를 확대 재생산해, 장성의 성격을 고정화한다는 역할 수행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 2) 장성 구성요소에 대한 보고

장성의 구성요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하나를 살펴보자. 관보(關堡)에 대한 연구인 2의 황희위(王希偉)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감숙성 조현(洮縣), 위원현(渭源縣), 농서현(隴西縣), 통위현(通渭縣), 진원현(鎭原縣), 환현(環縣)에 존재하는 진장성에 부속된 33개의 관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보는 관과 보의 합성어로, 관은 성(城)이나 돌레가 있는 둔병지로 구(口)라고도 칭한다고 한다. 보 역시 성이나 돌레가 있는 둔병지 또는 거주지를 의미한다. 이들 관보는 성장(城障), 장성(障城), 진성(鎭城), 장채(障塞), 채(寨), 수보(戍堡), 변보(邊堡), 군보(軍堡), 둔보(屯堡), 민보(民堡) 등으로 불린

다.<sup>30)</sup> 이것은 장성 방어체계 중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규정된 것이나, 장성 본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다. 요컨대 장성의 직접 부속물이 아니지만 새로운 장성 규정에 의해 장성으로 파악된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은 33개의 관보에 대해 공통적으로 위치, 형태, 면적의 내용을 기술하고 훼손 상태와 남아 있는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원현 백초과보(白草城堡)를 보자. “백초과보는 방라진(榜羅鎮) 탄구촌(綻溝村) 하가평사(何家坪社) 남쪽 69m 고성구(古城溝) 북쪽 언덕 수원처(水源處)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모양은 불규칙한 평면으로, 그 면적은 3만 5000m<sup>2</sup>이다. 장성의 본체, 즉 성벽은 남아 있지 않다. 주위의 지세는 평탄하고, 남쪽으로 고성구(古城溝)와 인접해 있다.” 우려했던 것처럼 장성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성벽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군사 시설물이 있는 곳은 장성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벽이 없는 장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보고는 적대(敵臺)나 봉화대와 마찬가지로 관보 역시 일정한 규율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설명한다. 지형 및 지세를 고려하고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게 설립되었다고 한다. 관은 일반적으로 ① 산등성 마루 정상, ②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설치했는데, 전자는 시야의 확보를 위함이고 후자는 교통의 요지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관은 장성벽 내측에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곳에 위치했다고 전한다. 보는 ① 산등성 마루 정상, ② 하천의 가장자리, ③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설치되었다. 보를 산등성 마루 정상에 설치한 것은 관과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에 유리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천 가장자리는 장성과 근접한 곳으로, 이곳에 설치한 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으로 군사의 주둔, 방수(防守), 순라(巡邏)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하천이 교차하는 곳의 보가 상대적으로 큰데, 이것은 생활 거주, 둔병, 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은 장성을 본체의 벽, 적대, 봉화대, 장장, 관, 보 등으로 구성된 한 계통의 방어체제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국가문물국과 측회국(測繪局)이 발행한

30) 〈長城資源調查名稱使用規範〉, 44쪽.

『수책』의 방침에 근거해 변화된 장성관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완정(完整)하면서도 하나의 계통을 이룬 장성의 각 시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방어체계로 완성된다. 우선 벽은 방어체계의 핵심인 울타리로서, 적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대는 망을 보거나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데, 전시(戰時)에는 방어진지(防禦陣地)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때 주로 지형이 높은 것을 이용해 아래에 있는 적을 대적한다. 봉화대 역시 망을 보거나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관은 병사를 배치시켜 수비를 담당하게 하거나 요충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지휘의 중심이 소재해 그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한다. 보는 둔병 및 장병들의 생활거주 공간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관(관성)은 일본 측 연구를 통해 장성의 구조물로 이해되기는 했지만,<sup>31)</sup> 장성선으로부터 훨씬 안쪽에 위치한 취락지구인 보가 장성의 구조물로 거론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sup>32)</sup> 그러나 그러한 시각은 명장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변화된 장성관 때문에 모든 시기 장성에 이러한 입장이 투영된다. 따라서 보까지 장성에 포함되었고, 최근의 연구들은 관보를 장성 방어체계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왕희위는 관보의 존재를 근거로 장성이 단순한 성벽이 아닌 계통적인 전략 방어물임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 3) 장성 축성방법에 대한 보고

이번에는 축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장성의 범주를 확정하는지를 살펴보자. 5 마란영(馬蘭英)의 연구는 고원지역 내 존재하는 전국시기 진장성, 송장성, 명장성의 축성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참협(塹險)이란 방식이다. 연구자 자신이 설명하듯이 참(塹)이란 ‘굴(掘)’, ‘산삭(鏟削)’, ‘참삭

31) 糶山明, 1999, 앞의 글, 69~78쪽.

32) 藤井尙夫, 2008, 「明朝の國境防衛を担った二種の築城 長城と關城」, 『歴史群像』 90. 후지이 히사오는 명대 장성에 국한한 것이기는 했지만 명의 군사 방어체계를 장성과 관성의 이중적 체제로 보았다.

(塹削)을 의미한다. 모두 파내거나 긁어내는 것, 혹은 퍼내거나 깎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성이라면 달구질하거나[夯], 쌓거나[築], 최소한 걸쳐 올리는 것[砌]으로 이해하였다. 파내는 것[掘, 塹, 鏟]이나, 깎아 내는 것[鏟, 削]은 흔히 참호를 파거나, 자연에 다소의 힘을 가해 자연 방어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長城資源調查名稱使用規範)>을 보면 산험장(山險牆)과 관련해서는 깎아 내는 것을, 호참(壕塹)/계호(界壕)와 관련해서는 파내는 것[塹]을 축성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연구는 바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참(塹)을 장성 수축의 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3)</sup> 국가의 규정이 구체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며 확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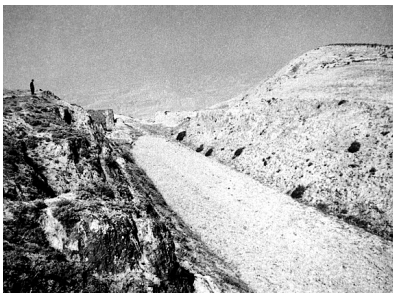
수축방법에 관한 글을 하나 더 살펴보자. 7 주패니(周佩妮)의 글이다. 영하 경내 명장성의 유적을 조사하고 각 장성의 구축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축성 방식 외,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독특한 축성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축성 방식'은 항축(夯築), 참험(塹險), 누체(壘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역적 독특함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구축방식은 무엇일까? 글에서는 그것을 모두 네 가지로 소개한다. ① 도알호참(挑挖壕塹), ② 구랍호(苟拉壕), ③ 심구고루(深溝高壘), ④ '品'자형교(字形窞)가 그것인데, 모두 참호를 파는 것과 관련 있다.

첫 번째 도알호참은 '구덩이 따위를) 준설하다'의 의미로 장성 외측에 호구(壕溝)를 준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원시 동심현(同心縣) 경내 향석구

33) 이것은 제일 처음 史念海이 제기한 것이다. 그는 『史記』, 『蒙恬列傳』의 장성 수축 기사인 “塹山堙谷”을 근거로 塹을 장성 수축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魏의 공격을 막기 위해 戰國時期 秦이 洛水의 서쪽에 쌓은 장성을 塹洛長城이라 하였다. 이 견해는 이후 彭曦에 의해 지지되나, 중국학계에서 塹을 장성 수축의 방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던 것 같다. 대표적으로 甌燕의 경우 ‘塹洛’에는 장성 수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史念海, 1981, 「黃河中游戰國及秦時諸長城遺迹의 探索」,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彭曦, 1996, 「秦簡公“塹洛”遺迹考察簡報」, 『文物』 1; 甌燕·葉萬松, 1997, 「“上郡塞”與“塹洛”長城辨」, 『考古與文物』 2. 최근에는 史黨社가 사념해와 팽희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는 반대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史黨社, 2003, 「陝西渭南地區의 秦魏長城及城址考察」, 『秦文化論叢 10』, 西安: 三秦.

(響石溝) 하마관성(下馬關城) 성벽 외측에 있는 호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폭과 깊이가 모두 수십m라고 한다. 다음 구랍호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도랑과 도랑 사이를 인공의 호(壕)로 연결해 만든 방어물을 의미하는데, 영하자치구 내 명장성 유적 중 비교적 독특한 축성방식이라 전하고 있다. 현재 고원시 염지현(鹽池縣) 내 행수만(杏樹灣) 산험장(山險牆)과 이가반(李家畔) 산험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등성이를 따라 인공으로 판 해자가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방어물이 된 것이라 한다. 심구고루는 성벽을 쌓고 그 바깥에 해자를 파는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성벽을 보다 높게 쌓은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마지막 품자형 구멍[品字形窟]은 장성 바깥에 '品'자형으로 구덩이를 판 것인데, 그 배열이 '品'자의 모양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세가 평평해 기마부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곳에서 기병에 대한 방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흔히 함마갱(陷馬坑)이라 불린다. 현재 영무시(靈武市) 임하진(臨河鎮) 횡산촌(橫山村) 장성 바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방어물들은 모두 적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파내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참호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영무시 경내에서 발견된 '品'자형 교의 경우 장성으로부터 1300m나 바깥에 위치해 애초에 장성의 부속물로 건설된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글에서는 이것을 장성 축조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장성의 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고원시 염지현 내 구랍호



〈그림 2〉 영무시 경내의 품자형 교(窞)

실제로 이 '品'자형 교의 경우 2004년 영하문물고고연구소(寧夏文物考古研究所)와 내몽고약탁극전기문화국(內蒙古鄂托克前旗文化局)에 의해 진행된 영무시 고장성 조사 발굴 시에 처음 보고된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표 2>의 연번 3인 「영하영무시장성조사여시굴(寧夏靈武市長城調查與試掘)」이다. 이 글에서 '品'자형 교는 장성의 부속시설로 확정되지 않았다. 글은 장성의 부속시설로 봉화대, 돈대, 성보 및 구학(溝壑)의 지도(地道)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2011년이 되면 파내는 것(塹)도 장성의 축조방법으로 이해되며, 교 역시 장성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내몽고에서도 발견된다. 16의 견자명(甄自明)의 글은 약탁극전기 지역의 명장성에 대한 보고 사례다. 글 중에서 견자명은 '명장성의 건축형식'이란 표제 하에 장성을 장체(牆體), 즉 성벽, 적대, 봉화대, 호구, 함마갱(=品字窟)으로 구분하였다.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에 따르면 호구와 함마갱은 장성 유적이 아닌 기타 관련 유적일 뿐이다. 그러나 보고를 통해 연구자는 호구와 함마갱을 장성 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연물을 장성으로 파악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1의 반옥령(潘玉靈)과 양건굉(梁建宏)의 글이다. 요해처에 인공의 힘을 가해 만든 산협장은 물론이고, 자연지물 그대로를 의미하는 산수협(山水險)까지를 장성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체(山體), 하류(河流), 구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그 구체적인 예로 가옥관 부근을 흐르는 토뢰하(討賴河)를 지목한다. 기련산(祁蓮山)으로부터 발원해 가옥관 부근에서 U자형으로 크게 만곡(彎曲)하는 토뢰하는 현재 토뢰하대협곡으로 불리며, 바로 옆에 봉화대에는 '천하제일돈(天下第一墩)'이란 명패가 붙어 있다. 글에서는 이것을 천험(天險)과 장성 구성요소의 이중 방어선이라 부르면서, 하류 자체를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 4) 새로운 장성 연구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새로운 장성 연구의 특징은 지금까지 장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장성선의 방향을 비롯해 기단(起端) 및 종단(終端)의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34)</sup> 대신 장성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장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군사적 방어물들을 장성 혹은 장성 관련 시설로 이해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장성 관련 시설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수책』에서 장성 관련 시설로 규정한 것 중에 품자교(品字窖)와 호구(壕溝)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연구들이 품자교도 호구도 장성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관련 시설로 되어 있으나, 연구자들은 앞다투어 이것들을 장성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자들의 성과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하나의 정설로 확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애(景愛)의 주장이 주목된다.<sup>35)</sup> 경애는 장성 연구가 장성이란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연속된 성장(城牆), 2.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시설, 3. 인공의 건축물, 4. 흙·돌·벽돌로 쌓은 담장.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면 『수책』에서 장성으로 규정한 산험장, 산험은 물론이고 목장장이나 호참/계호 등도 모두 장성이 될 수 없다. 물론 경애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장성의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경애의 주장은 학술계에서 더 이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학술적 문제조차 되지 못하게 되었다. 공권력에 의해 다양한 학술적 의견이 사라지게 된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학술적 문제가 외면된 것이다.

사실 『수책』의 규정때문에 장성의 범주를 확정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수책』은 호참과 계호는 장성의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품자교와 호구는 장성 관련 시설로 규정한다. 땅을 파서 군사적 방어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설들이 각기 다르게 규정된 것이다. 자연히 연구자들은

34) 물론 요동 지역의 경우 장성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진행 방향이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방향과 기점, 종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장을 달리해 살펴보고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겠다.

35) 景愛, 2008, 앞의 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좀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호한 규정에 의해 폼자교와 호구를 장성으로 이해하게 된다. 장성에 대한 규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의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사실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점의 연속으로 볼 것인가는 장성과 관련한 오래된 논쟁거리였다.<sup>36)</sup> 그리고 장성을 점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연구자들 역시 장성의 범주를 봉수나 장새(障塞)에 국한했지, 호참이나 계호를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sup>37)</sup> 장성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학술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장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술적으로 장성의 개념을 토론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성의 부속시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 장성에 부속시설로 규정된 것은 봉수와 성보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애는 모든 군사시설을 장성의 일부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 경계한다. 즉 군사시설물 중에는 장성과 관련이 있는 시설도 있지만, 독립적인 군사시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봉수의 경우 군사적 연락을 담당하는 용도가 아닌 변군(邊郡)과 중앙정부 사이의 연락을 위해 설치된 것이 있어, 장성과는 무관한 봉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sup>38)</sup> 즉 장성을 점의 연속으로 파악하기에 장성선이 없어도 많은 봉수들이 장성의 일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성과 무관한 봉수들도 장성선의 일부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봉수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봉수의 위치일 것이다. 보통 봉수의 경

36) 1994년 개최된 長城國際學術研討會에서 陳可畏는 장성을 연속된 담장으로 이해해 塞와 障을 장성에서 제외하였다. 이와는 달리 彭曦는 벽과 烽燧, 障塞 모두를 장성으로 이해해 다른 입장을 주장하였다. 陳可畏, 1995, 「論戰國時期秦·趙·燕北部長城」,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102쪽; 彭曦, 1995, 앞의 글, 277쪽.

37) 장성을 점의 연속으로 본 彭曦의 주장을 지지했던 閻忠 역시 障塞, 塞 모두가 장성의 다른 이름이라며 지상에서 위로 쌓은 건축물을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184쪽.

38) 景愛, 2007, 「關於長城附屬設施調查的有關問題」, 『中國文物科學研究』 3, 48쪽. 경애는 이 글에서 초기 장성선 상에는 봉수와 屯兵을 위한 설비가 없었다고 보았다. 47~49쪽.

우 장성 내측에서 보고되는데, 종종 장성 외측에 있는 봉수들 역시 구분 없이 보고되고 있다. 장성 내측과 외측의 봉수에 대한 구분과 역할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봉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장성으로 간주되는 장성 외측에 설치된 많은 참호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장성의 범주 및 장성선 확정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장성 외측의 시설물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sup>39)</sup>

그렇다면 기존에 장성으로 분류되지 않던 군사 시설물들을 장성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국가에 의해 장성의 규정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경에는 이외에도 각 지방마다 관광사업의 필요가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파악하였다. 요컨대 금대(金代)의 계호가 금장성(金長城)이 됨으로써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대부분의 군사 시설물을 장성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인 장성선의 확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정부에 의해 장성선이 확정되는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성이 지방정부 자원에 의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장성은 연구의 대상이 아닌 다양한 경제적 이윤의 원천으로 떠올랐던 것이다.<sup>40)</sup> 또한 방금

39) 사실 이보다는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료에서 보이는 外徼(『漢書』卷95, 「朝鮮傳」)라든지, 塞外에 설치된 城·障·列亭 등(『漢書』卷94 上, 「匈奴傳」)은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일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40) 최초의 장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장성은 산동성 전역에 뚜렷한 모습을 보이며 남아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일찌감치 논의되었다. 따라서 산동성의 학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제장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선전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글 중에는 19 何德亮의 글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글은 제장성의 역사적 배경, 방향, 건축의 형식과 특징, 제장성 구성 요소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보고성 연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술적인 보고라기보다는 제장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는 느낌이 강하다. 특별히 제장성이 최초의 장성임을 강조하며, 제장성에 얽힌 전설에 대한 소개, 즉 孟姜女 전설에 대한 서술은 이 글이 제장성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장성 보호와 더불어 관광자원으로서 장성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장성에 대한 지역별 선전 작업이 강화된 것이 이러한 글의 출현을 촉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언급한 것처럼 강역 확정의 필요 역시 장성의 범주를 확대 적용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2\_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장성 연구에 관련한 내용 중 새로운 분야로 떠오른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규정한 장성 관련 연구는 ① 장성 그 자체에 대한 연구, ② 장성 보호 이론과 정책, ③ 장성 보호

〈표 3〉 2004년 이후 발표된 장성 보호 이론과 기술에 관한 중요 연구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 제목	수록지	내용
1	張華松	2004	濟南境內齊長城的歷史地位及其旅遊資源的保護與開發	山東教育學院學報(102)	1. 濟南 경내 齊長城의 역사적 지위와 의의 ① 제남 제장성의 분포지역 ② 제남 제장성 축성시기 ③ 제남 제장성의 전략적 가치 ④ 제남 제장성의 의의 ⑤ 제남 제장성의 보존 상황 ⑥ 후대 제남 제장성의 이용 ⑦ 孟姜女 전설, 2. 제남 제장성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 ① 보호방안 ② 관광 지구 및 개발방안
2	趙海英	2005	甘肅境內戰國秦長城和漢長城保護研究	蘭州大學博士學位論文(地質工程學)	1. 甘肅 경내 장성 분포와 보존상황 ① 장성의 연혁 ② 장성의 분포 ③ 장성 보존상황, 2. 장성 건축구조와 건축공사의 특징 ① 건축구조 ② 건축구조의 시대별 특징 ③ 공사의 특징, 3. 주요 훼손 상황과 원인 ① 훼손의 유형 ② 감숙 경내 장성의 훼손유형 ③ 훼손의 원인 ④ 원인의 분석, 4. 장성 유적 강화 실험, 5. 장성 유적 강화기술
3	李最雄·趙海英·韓文峰·王旭東·譔文武	2006	甘肅境內長城保護研究	敦煌研究(100)	1. 甘肅 경내 장성의 현황 ① 戰國 秦長城 ② 漢長城 ③ 明長城, 2. 장성의 건축 양식, 3. 장성 부근의 환경 ① 건축상의 특징 ② 기후 조건 ③ 지형과 지질, 4. 훼손의 유형과 정도, 5. 장성 보존을 위한 실험, 6. 보존 작업의 기술, 7. 보존 작업의 사례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제목	수록지	내용
4	劉朴	2007	關於長城保護的幾點思考	中國文物科學研究(1)	1. 장성 훼손 상황 2. 장성 훼손의 원인 분석 1-무분별한 개발 3. 장성 훼손의 원인 분석 2-무분별한 등정 4. 장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필요성
5	趙海英 · 李最雄 · 韓文峰 · 孫滿利 · 王旭東	2007	甘肅境內長城遺址主要病害及保護研究	文物保護與考古科學(19-1)	1.甘肅 경내 장성 유적의 분포 및 보호 상황 2. 주요 훼손 상황 3. 보호 강화 실험 4. 실험의 실례
6	邸璋	2007	漢長城玉門關段遺址保護規劃研究	西安建築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都市計劃與設計)	1. 漢長城 玉門關段의 역사 및 변천 2. 옥문관단 유적의 고고연구와 보호 연혁 3. 옥문관단 유적의 가치 4. 옥문관단 유적의 현황 조사와 평가 5. 옥문관단 유적의 보호 대책 6. 옥문관단 유적 보호계획
7	韓建成	2009	甘肅山丹境內明長城遺存及勘察保護	絲綢之路(157)	1. 山丹 경내 明長城의 연혁 2. 산단 경내 명장성의 건축 구조와 건축 공법 3. 산단 경내 장성 유적의 현황과 훼손 원인 4. 산단 경내 장성 보호 강화 조치를 위한 건의
8	徐路 · 楊強義 · 劉煒 · 王菲 · 水碧紋	2010	陝西省榆陽區長城主要病害及保護對策	內蒙古文物考古(2)	1. 榆陽區 明長城 주변 환경 2. 유양구 장성 유적 분포와 축조 기술 3. 유적 훼손 및 원인 4. 보호대책
9	梁建宏	2010	甘肅境內長城保護工作回眸	絲綢之路(6)	1. 甘肅 경내 장성의 방향 및 분포 2. 축성 방식 3. 장성 훼손요인 4. 역대 감숙 경내 장성 조사의 연혁 5. 감숙성 내 장성 보호단 위 지정 경과 6. 장성 보호의 전망
10	楊丙君	2010	陝北地區秦漢長城保護管理研究	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考古學及博物館學)	1. 陝北地區 秦漢長城의 상황 ① 진한장성의 연혁 ② 한장성의 지역적 분포 ③ 보존 상황 및 훼손 원인 2. 진한장성 보호 관리 상황 ① 지역별 관리 기구의 현황 ②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③ 진행된 보호조치 3. 보호 관리에 대한 전망과 대안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제목	수록지	내용
11	楊永生	2011	簡析酒泉境內長城資源的文化價值與保護對策	絲綢之路 (215)	1. 酒泉市 경내 역대 장성 조사 및 분포 상황 2. 경내 장성의 문화적 가치 3. 주천시 경내 장성 보호 상황 4. 장성 보호 대책
12	劉媛	2011	大同長城保護與利用的現存問題	文物世界 (6)	1. 최근大同 장성 보호 작업의 성과 2. 앞으로 주력해야 하는 보호 작업의 내용 1-정밀한 장성에 대한 조사 3. 앞으로 주력해야 하는 보호 작업의 내용 2-사람에 의한 장성 훼손 방지 4. 앞으로 주력해야 하는 보호 작업의 내용 3-맹목적인 장성 이용 금지
13	蒲天彪	2011	青海省境內明長城保存現狀分析與保護對策	文物 (9)	1. 장성 주변 환경의 특징 2. 보존 상황 3. 훼손의 정도와 특징, 그 위험 4. 보호 대책
14	劉媛	2012	大同長城保護與利用現存問題的原因分析	文物世界 (2)	1.大同 장성 보호의 어려움 2. 조사의 불안전함과 지형을 고려한 과학적 지도의 결핍 3. 장성 이용 및 장성 부근 지역 개발의 요구 4. 계획의 불안전성 5. 비용과 인원의 부족 6.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
15	曹象明·周典·于洋	2012	長城沿線城堡保護與發展策略探析—以山西省平型關關堡爲例	華中建築 (4)	1. 장성과 연선 城堡 간의 관계 2. 평형관 관보의 개략적 소개 3. 평형관 성보 내부 공간의 분석 ① 군사 시설 공간 ② 문화 시설 공간 ③ 민간 거주 시설 및 기타 공간 4. 장성 연선 성보 훼손 문제 5. 장성 연선 성보의 보호와 발전 대책
16	蒙寶玲·譚文武	2012	古浪境內長城遺存的病害分析及保護加固措施建議	赤峰學院學報(自然科學) (28-4)	1 古浪縣 경내 장성의 분석 ① 장성의 분포와 방향 ② 장성의 보호 상황 2. 장성 축성 방식의 분석 3. 장성의 중요 훼손 정도 분석 4. 장성 보호 조치
17	甄自明·李綠芬	2012	伊金霍洛旗秦昭襄王長城的概況保護與開發	鄂爾多斯文化 (6)	1. 伊金霍洛旗 경내 秦昭襄王時期 장성의 개략적 소개 ① 장성의 현 상황 ② 보호 방안 2. 장성의 개발

기술에 관한 연구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성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성 보호 이론과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표 3>은 그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구성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해당 지역의 장성 분포 현황을 개괄하고 장성의 훼손 정도를 분석하며, 그에 따른 보호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 하나를 살펴보자. 6의 양건평(梁建宏)의 글은 감숙성 경내에 분포하고 있는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다. 내용은 위에 간략히 제시한 것처럼 감숙 경내 장성의 방향 및 분포, 축성방식, 장성 훼손요인, 역대 감숙 경내 장성 조사의 연혁, 감숙성 내 장성 보호단위 지정 경과, 장성 보호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감숙 경내 진장성의 진행 방향 및 분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감숙성 내에는 전국시기 진장성, 한장성, 명장성이 분포하고 있는데, 진장성은 정서시(定西市) 임조현(臨洮縣)에서 시작해 위원(渭源) → 농서(隴西) → 통위(通渭) → 정령(靜寧)을 거쳐 영하자치구(寧夏自治區) 서길(西吉)로 들어가 고원(固原)과 팡양(彭陽)을 지나, 다시 감숙 진원(鎭原)으로 들어간다. 모두 세 개 시 여덟 개 현에 분포하고, 길이는 약 600km에 달한다. 하서회랑(河西回廊)을 통과하는 한장성은 난주시(蘭州市) 서고구(西固區) 하구향(河口鄉)으로부터 시작해 영등(永登) → 천축(天祝) → 고랑(古浪) → 양주(涼州) → 민권(民勤) → 영창(永昌) → 산단(山丹) → 감주(甘州) → 임택(臨澤) → 고태(高台) → 금탑(金塔) → 옥문(玉門) → 과주(瓜州) → 둔황(敦煌) 등을 통과한다. 모두 여섯 개 시 열일곱 개 현에 분포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2000km다. 아홉 개 시 스물네 개 현에 분포되어 있는 총 길이 1738km의 명장성은 진행 방향이 다소 복잡하다. 가옥관으로부터 시작해 숙주(肅州) → 금탑 → 고태 → 임택 → 감주 → 산단 → 영창 → 민권 → 양주로 이어지고 무위(武威)시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고랑 → 천축 → 영등 → 서고(西固) → 고란(皋蘭) → 안녕(安寧)을 지나 난주시에 이른 후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청해성(青海省)과 황하(黃河)에 도달한다. 다른 한 갈래는 무위시에서 영하자치구로 들어간 후 다시 감숙성으로 나와 정원(精遠)을 지나 황하 남쪽 기슭을 타고 유중(榆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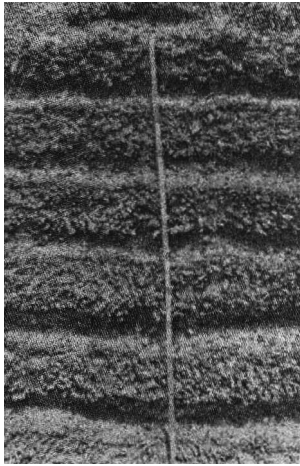
→ 고란 → 성관(城關) → 서고를 지나 하주(夏州) 영정현(永靖縣)에 도달한다.

감숙성 경내 장성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지제의(因地制宜)'의 원칙에 따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축조되었다. 재료와 관련해 보면 감숙성 내 장성은 대부분 황토를 달구질해 쌓은 토항축(土夯築)이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라 홍류(紅柳) 또는 위성류(渭城柳)나 갈대 등을 사용하거나 돌맹이 사이에 모래를 섞어 넣어 쌓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석축(石築)은 적고 토장(土牆)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벽은 높게는 3~5m에 이르는 것도 있으나, 간신히 지면에 유적만을 남기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성벽 부근에는 호참(壕塹)과 봉수, 관보, 산수험 등이 어우러져 잘 갖추어진 종합성 군사 방어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느 지역 장성처럼 감숙성 경내 장성들도 자연과 인간 활동에 의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 시급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훼손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원인으로서는 ① 바람(예: 山丹 지역 장성), ② 비(예: 臨洮 일대 장성), ③ 하수(河水)와 홍수(예: 감숙 동부와 서부 지역 장성), ④ 쥐에 의한 훼손, ⑤ 지진(예: 하서회량 지역 장성)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장성선 부근에서의 농업 활동을 비롯해 장성선 부근 거주지 건설, 취토(取土)·취전(取塹), 방목, 무분별한 관광 등 다양하다고 전하였다.

양건평의 글은 장성의 훼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훼손에 대한 보호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훼손된 장성에 대한 보호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글 중 가장 전형적인 글은 2의 조해영(趙海英)의 글과 3의 이최웅(李最雄) 등의 글, 그리고 5의 조해영 등의 글이다. 대체로 연구진이 중첩되며 모두 조해영이 참여한 연구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조해영의 경우 2005년 난주(蘭州)대학에서 지질공정학(地質工程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성 보호라는 연구 영역은 역사학이나 박물관학에 국한되지 않고 공학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주가 확대된 것이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선 감숙성 경내 장성의 연혁과 분포 상황 및 장



〈그림 3〉 갈대와 모래·자갈을 엮 갈려 쌓은 감숙 경내 한장성의 단면

사용되었는데, 한장성이 분포한 하서회랑 주위에선 장성을 축조할 흙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장성은 갈대류와 모래·자갈 등으로 번갈아 층을 이루며 축조되었다. 매 갈대층의 두께는 평균 20cm 정도이고, 모래와 자갈층의 두께는 10cm 정도다.

이러한 감숙성 내 장성들은 양건평의 지적처럼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특히 진장성의 경우 달구질한 층의 밀도가 최소치  $1.28\text{g}/\text{cm}^3$ , 최대치  $1.75\text{g}/\text{cm}^3$ , 평균  $1.5\text{g}/\text{cm}^3$ 이고, 한장성의 경우 최소치  $1.27\text{g}/\text{cm}^3$ , 최대치  $1.88\text{g}/\text{cm}^3$ , 평균  $1.6\text{g}/\text{cm}^3$ 로 일반적인 흙을 소재로 한 유적에 비해 풍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기후 조건의 경우 감숙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건조해 장성 보존에 유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종종 발생하는 폭우는 장성 보호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특히 달구질해 축조한 진장성의 피해가 심해 현재 진장성의 붕괴 속도는  $5\text{g}/\text{min}$ 인 한장성에 비해 빠른  $10\sim 20\text{g}/\text{min}$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훼손의 상황은 1. 표면 풍화, 2. 구멍이 생기는 침식, 3. 갈라져 생기는 틈, 4. 붕괴, 5. 사람에 의한 훼손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표면 풍화는

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한 후, 역대 장성 건축구조와 축성기술 등에 대해 서술한다. 예를 들어 전국시기 진장성은 판축(板築) 기술을 사용해 단마다 달구질하는 방식으로 축성하였다. 측량 결과 달구질한 한 층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8\sim 10\text{cm}$ 이고, 두꺼운 층은  $12\text{cm}$ 에 달한다. 사용한 판의 길이는  $3\text{m}$ 가량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판과 판 사이의 접봉선(接縫線)이 보이기도 한다. 달구질할 때 사용한 돌망치는 직경 약  $10\text{cm}$ 의 원형이며, 달구질의 심도(深度)는 약  $0.5\text{cm}$ 다. 이와는 달리 한장성은 주로 위성류나 갈대 등이

다시 ① 표면의 벗겨짐, ② 균열, ③ 벗겨져 떨어져 나감, ④ 푸석푸석해짐, ⑤ 침식, ⑥ 생물에 의한 풍화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훼손의 상황은 감속성 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장성의 보호를 주장하는 1 장화송(張華松)의 글에서도, 섬서지역의 장성 보호를 주장하는 9 서로(徐路) 등의 글과 10 양병군(楊丙君)의 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산서(山西)와 청해(青海)의 상황을 전하는 12 유원(劉媛)과 13의 보천표(蒲天彪)의 글도 마찬가지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장성들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그 본래의 모습을 심각하게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보호방법이라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질공학자 전공자인 조해영의 글들이 좀 더 구체적인 수칙과 방법을 제시하며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굽지 않은 흙벽돌을 이용한 지반 강화방법이 있다. 이것은 굽지 않은 흙벽돌을 사용해 유적의 토양과 최대한 근접한 분토를 제작해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략 함염량(含鹽量) 0.50% 이하, 함수량(含水量) 3.0%, 간밀도(dry density)  $1.70\text{g}/\text{cm}^3$  이하의 상태로 만들어 지반을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압축한 주강재료(注漿材料)를 이용한 지반 강화 방법[靜壓注漿加固地基]<sup>41)</sup>이다. 즉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축이나 볼트를 이용한 조이는 방법[錨杆錨固]이 있고, 네 번째로는 갈라진 틈새로 PS 재료의 그라우트 재료를 주입하는 방법[裂隙注漿], 다섯 번째로는 면에 그라우트 재료를 침투시키는 방법[表面滲透注漿], 마지막으로 작은 못으로 조인 후 그라우트 재료를 주입하는 방법[錨釘錨固注漿]을 제시하고 있다.

조해영 등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의 실례를 들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감속성 둔황시 나포박(羅布泊) 부근의 광창봉수(廣昌烽燧) 유적지와 감속

41) grouting 공법을 말한다. 토목공사에서 漏水防止 공사나 土質安定 등을 위해 지반의 갈라진 틈이나 空洞 등에 충전재를 주입하는 일을 말하며, 또한 그때 주입하는 주입제도 그라우트 또는 그라우트제라고 한다.

성 정서지구(定西地區) 위원현(渭源縣) 북채향(北寨鄉)의 마가산단(馬家山段) 장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유적에는 흙벽돌을 이용한 지반 강화방법과 축과 볼트를 이용한 조이기 방법, 그리고 표면에 PS성 그라우트를 침투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해 장성 보호의 현저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역사학이나 박물관학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제시했으나 공학 분야에서 장성 보호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생산해 낸 것은 이 분야 최대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_ 건축 및 토목공학의 장성 연구

장성 보호와 관련해 지질공학 분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그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최근 눈에 띄는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자들의 장성 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성과라는 점에서 경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필자가 열람하지 못한 자연계 연구 성과 안에는 더 많은 공학계통 연구자들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들 공학 분야의 장성 연구는 앞으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학 분야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일괄해 보았다.

〈표 4〉에서 우리는 우선 현재 천진대학 건축학원의 박사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옥곤(張玉坤)이라는 공통 저자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들 연구는 지도교수와 그에게서 학위를 받은 지도 학생들의 공동연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루고 있는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해 진행한 연구답게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들은 모두 명대 구진(九鎮) 장성 주변에 설치되었던 군보의 건축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중 1의 글은 2005년이라는 발표 시점이 말해주듯이 이들 연구 중 가장 먼저 발표된 결과로 이후 등장하는 연구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자. 연구자들은 우선 명대 장성을 장성 성벽과 그에 부수되어 있는 구축물로 이루어진 선이라는 점에 반대한다. 이들은 장성을 사병들이 주둔할 수 있는 둔병지, 즉 군보(軍堡)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표 4〉 2005년 이후 발표된 건축 및 토목공학 분야의 중요 장성 연구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제목	수록지	내용	연구비
1	張玉坤·李嚴	2005	明長城九邊重鎮防禦體系分布圖說	華中建築(2)	1. 九邊重鎮 방어체계의 대략적 상황 2. 구변 증진 방어체계의 분포 ① 분포의 범위 ② 분포의 밀도 ③ 軍堡의 분류 ④ 軍堡와 村堡의 관계 ⑤ 군보 지역의 선택과 지형의 관계 3. 장성 군사 방어체계의 보존 상황	“中國北方堡寨聚落研究及其保護利用策劃”國家自然科學基金資助項目
2	劉珊珊·張玉坤	2011	明遼東鎮長城軍事防禦體系與聚落分布	哈爾濱工業大學學報(13-1)	1. 遼東鎮 장성 군사 방어체계 ① 요동진 군사 관리제도의 변천 ② 요동진 군사 취락 분포의 증차 2. 요동진 장성과 군사 취락의 변화 ① 요동진 建鎮 연혁과 통할 범위 ② 요동진 築壘의 체계와 특성 3. 명대 요동진 장성 군사 취락의 특징 ① 요동진 장성 군사 취락 건설의 연혁 ② 요동진 장성 군사 취락의 공간 분포	國家教育部高等學校博士學科點專項科研基金新教師基金(2007) 建設部科學技術項目(2008) 國家教育部高等學校博士學科點專項科研基金新教師基金(2008)
3	王琳峰·張玉坤	2011	明長城薊鎮戍邊屯堡時空分布研究	建築學報(S1)	1. 명장성 '九邊' 방어체계 중의 薊鎮의 위상 2. 계진 방어 범위의 변화와 屯堡의 建置 3. 계진의 방어체계와 屯堡의 역할 4. 계진 屯堡 공간 분포와 특징	國家教育部高等學校博士學科點基金項目(2008) 國家高等學校博士學科專項研基金“新教師基金”項目(2009)
4	李哲·張玉坤·李嚴	2011	明長城軍堡選址的影響因素及布局初探	人文地理(118)	1. 軍堡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군보 지역 선택과 지형 관계 분류 및 분석	建設自然科學技術項目(2008) 國家自然科學基金項目 教育部博士點新教師基金項目(2008)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제목	수록지	내용	연구비
5	李嚴·張玉坤·李哲	2011	長城并非線性－衛所制度下明長城軍事聚落的層次體系研究	新建築 (6)	1. 衛所制 군사 관리제도 하의 장성 군보의 층차 2. 명대大同鎮 山西鎮 군사 취락의 공간 분포 3. 군사 취락 건축의 특징 ① 鎮城 ② 路城 ③ 衛城 ④ 所城 ⑤ 堡城	國家自然科學基金資助項目(青年基金) 教育部高等學校博士學科點基金項目(2008) 2010年度河北省社會科學學術發展研究課題: 河北省新農村建築中古代村堡保護問題研究(2010)
6	曹象明·周典·于洋	2012	長城沿線城堡保護與發展策略探析－以山西省平型關關堡爲例	華中建 築(4)	1. 장성과 연선 성보 간의 관계 2. 平型關 관보의 개략적 소개 3. 평형관 성보 내부 공간의 분석 ① 군사 시설 공간 ② 문화 시설 공간 ③ 민간 거주 시설 및 기타 공간 4. 장성 연선 성보 훼손 문제 5. 장성 연선 성보의 보호와 발전 대책	

방어물로 간주한다.<sup>42)</sup> 이때 둔병지는 크기에 따라 큰 차례로 진성(鎭城), 노성(路城), 위성(衛城), 소성(所城)과 보성(堡城)으로 구별된다.

명왕조의 병제(兵制)인 도사위소제(都司衛所制)는 각 성에 도지휘사사(都

42) 명대 장성을 장벽과 그에 부속된 關城으로 보는 입장은 이미 일본에서 제출된 바 있다. 藤井尙夫, 2008, 앞의 글.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장성의 출입구에 설치한 것으로 關所의 기능을 담당하고, 關門의 방어와 관리를 수행하는 小城을 의미한다. 이들은 장성과 일체화된 것으로 100~200m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다. 한편 장성과 일체화된 소규모의 관성 이외에 수개의 관성을 총괄하는 대형의 관성이 장성으로부터 10km 전후에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대형 관성은 병사들의 주둔지이자 군사지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안에는 주로 병사의 숙소와 종교시설인 廟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指揮使司)가 통령하는 위소(衛所)를 설치하고, 중앙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에 소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사들은 모두 별도의 호적(戶籍)에 속해 군호(軍戶)로 불렸는데, 이들은 대대로 세습되었으며 각 호마다 1인의 군사, 즉 정정(正丁)을 감당하였다. 이 군사들은 설치된 각 진(鎭)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구에 배치되었다. 진 휘하에는 참장(參將)이 관할하는 노(路)가 있었고, 노는 위(衛)를 관할하였다. 위는 5개의 천호(千戶)를 관할했으며, 천호는 10개의 백호(百戶)를 관할하였다. 다시 백호는 다섯 소기(小旗)를 관할하는 총기(總旗) 둘과 병사 100명을 관할해, 도합 1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진은 장성을 따라 9개가 설치되어 방어구역을 이루게 되는데, 이른바 9진이다. 9진의 관할 범위와 관할군 보를 표로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연구에 따르면 보(堡)와 보 사이는 수도와의 거리에 따라 규정되어, 수도에서 가까운 진일수록 보도 밀집되어 분포했고 관구 수 역시 많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수진(延綏鎭)의 경우 평균 40리마다 보가 설치된 것과는 달리 대동진(大同鎭)은 30리마다 설치되었고, 요동진(遼東鎭)은 20~30리마다 설치되었다. 군보는 장성과의 거리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전선(前線)의 보자(堡子), 후방의 군사 주둔의 보자와 유격보(遊擊堡)가 그것이다. 전선의 보자의 경우 장성선 위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장성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일반적으로 몇 리를 넘지 않는다. 군사 주둔용의 보자는 비교적 큰 규모로 거리는 몇 리에서 몇 십리까지 다양하고, 대략 주위 3~4리의 크기다. 유격보는 임시적 성격의 보자로 크기는 비교적 작고, 각 보와 보 사이에 설치되었다. 군보는 일반적으로 앞뒤로 험한 지형을 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역, 높은 산이나 요충지, 골짜기 사이 분지, 앞이 트인 사막 등에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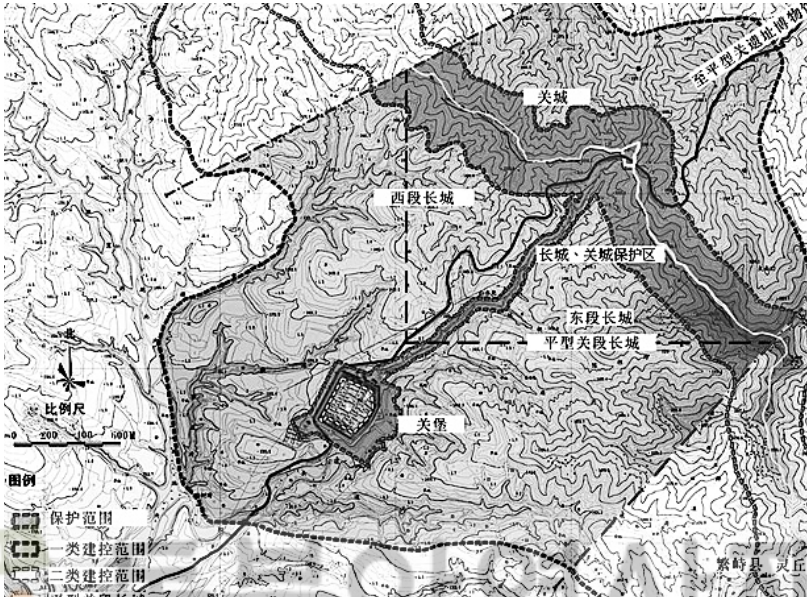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은 특정 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성 연선에 위치한 아홉 개

43) 이 표는 張玉坤·李嚴, 2005, 「明長城九邊重鎭防禦體系分布圖說」, 『華中建築』 2, 119쪽의 <표 2> '九鎭的轄區範圍和管轄軍堡數量統計表' 중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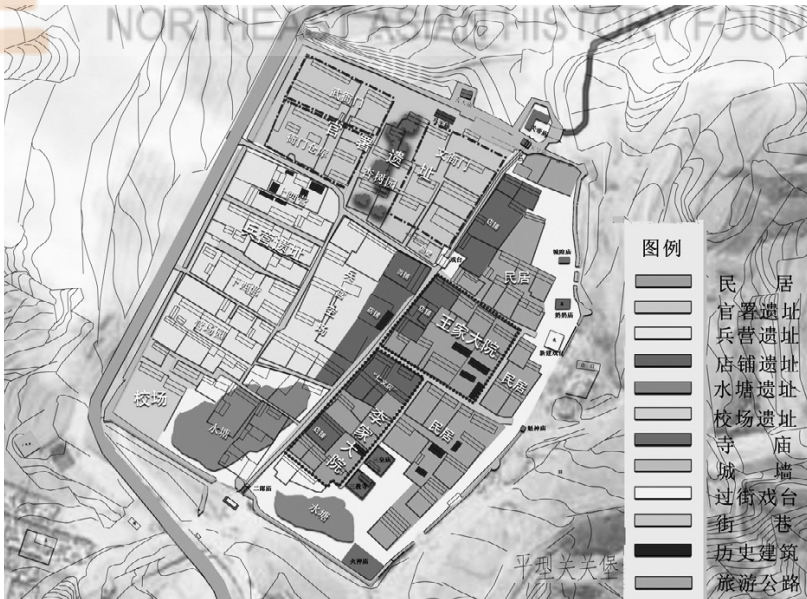
〈표 5〉 9진의 관할범위와 관할군보

鎮名	주둔지	관할구역	路城	軍堡 및 중요 關口 수
遼東鎮	遼寧省 遼陽市 (後 北鎮)	鳳凰城(남)~山海關(서) 총 길이 1950여 리	5路: 南路前屯城, 西路義 州城, 北路開原城, 中路 와 廣寧分司城, 東路와 暖 陽城堡	軍堡 150여 개 關城 11座
薊鎮	河北省 唐山市	起山海關(東)~居庸關 灰嶺 口(서) 총 길이 1200여 리	3路: 東路副總兵駐建昌 營, 中路副總兵駐三屯 營, 西路副總兵駐石匣營	군보 및 關堡 약 270개 關口 약 126개
宣府鎮	河北省 宣化市	居庸關 四海冶(동)~西洋河 (서)총 길이 1023리	6路: 東路, 下北路, 上北 路, 中路, 上西路, 下西路	군보 60여 개 관구 약 12개
大同鎮	山西省 大同市	鎮口臺(동)~鴉角山(서)총 길이 647리	8路: 新坪路, 東路, 北東 路, 北西路, 中路, 威遠 路, 西路, 井坪路	군보 약 60개 관구 약 44개
山西鎮	山西 偏關縣	山西 保德 黃河 기슭→偏關 →老營堡→寧武→雁門關→ 平型關→龍泉關→固關→黃 榆嶺총 길이 1600여 리	6路: 東路, 西路, 太原, 中路, 河曲縣, 北樓口	
延綏鎮	陝西省 榆林市	清水營(동)~花馬池(서)총 길이 1760여 리	3路: 東, 中, 西路	군보 36개 관구 약 24개
寧夏鎮	寧夏省 銀川市	大鹽池(동)~蘭靖(서) 총 길이 2000리	5路: 東, 西, 南, 北, 中路	군보 38개 관구 약 13개
固原鎮	寧夏省 固原縣	陝西省 靖邊과 榆林鎮 접경 (동)~達臯蘭과 甘肅鎮 접 경총 길이 1000리	5路: 下馬關路, 靖虜路, 蘭州路, 河州路, 芦塘路	군보 35개 관구 약 10개
甘肅鎮	甘肅省 張掖市	甘肅 蘭州市(동)~嘉峪關 (서) 총 길이 1600여 리	4路: 庄浪路, 涼州路, 肅 州路, 大靖路	군보 72개 관구 약 15개
총계	9鎮	총 길이 1만 2700여 리	45路	

의 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는 이러한 장옥곤·이엄(李嚴)의 1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진의 상황을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의 유산산(劉珊珊)·장옥곤의 글은 요동진의 상황을, 3의



〈그림 4〉曹象明 등이 구성한 평형관 장성과 관보의 배치



〈그림 5〉曹象明 등이 구성한 평형관 관보의 내부구조

왕림봉(王琳峰)·장옥곤의 글은 계진(薊鎮)의 상황을, 5의 이엄·장옥곤·이철(李哲)의 글은 대동진(大同鎮)과 산서진(山西鎮)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따라서 글은 각 진의 연혁과 관할범위, 각 진 관할 군보의 분포상황, 각 진 장성 건축의 층차(진성, 노성, 위성, 소성, 보성) 등에 대해 서술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명장성에 관한 문헌에 의한 장성 방향의 확인, 장성의 동쪽 종점의 확정, 축성 방식과 장성 구성 요소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와는 달리 장성을 중심으로 관성(關城)들을 배치한 종합적인 성격의 명대 변경 수비 체계를 복원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천진대학의 연구 결과물은 아니지만 참고로 제시한 6 조상명(曹象明)·주전(周典)·우양(于洋)의 산서성(山西省) 평형관(平型關) 관보(關堡)의 구조를 분석한 글은 건축학 계열의 연구들이 명대 장성의 구조연구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명대 장성의 성격, 즉 ‘안정적종합성군사방어체계(完整的綜合性軍事防禦體系)’라는 장성의 성격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다.

#### Ⅳ. 동북지구 장성 연구의 특징

앞장에서 2005년 이후 제출된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경향과는 달리 요동지역 장성 연구의 경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여전히 방향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별도로 요동지역 장성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지구의 장성 연구 거의 대다수는 연(燕)·진(秦)·한(漢)장성의 방향과 장성의 동쪽 끝 지점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명(明) 장성에 비해 이 시기 장성들의 경우 서쪽과는 달리 남아있는 유적이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기후가 건조해 그 유적과 유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서쪽과는 달리 동쪽의 경우 그 실체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불완전한

유적들이 많아 진행 방향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국시기 연장성, 진장성, 통일 진장성, 한장성 등이 엉켜 있어 정확한 방향 확정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문헌 기록 역시 방향 확정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게다가 이곳의 특수한 환경, 요컨대 고구려와 대치하고 때로는 고구려에 의해 영위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장성의 방향과 장성의 끝 지점 확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동북지역의 장성 방향과 관련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은 연·진·연진·한장성의 동쪽 끝을 모두 요녕성 북표, 즉 요서에서 찾았다. 물론 이와는 달리 고고 발굴성과를 이용해 장성을 요동으로 연장하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sup>44)</sup> 그 근거에는 성지(城址)뿐만이 아닌 전국시기 농기구·명도전(明刀錢)·철도끼 등까지 포함되어, 그것만으로는 장성을 요동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연구자들은 장성을 요동으로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염충(閻忠),<sup>45)</sup> 유자민(劉子敏),<sup>46)</sup> 손걸(孫杰),<sup>47)</sup> 소경전(蕭景全)<sup>48)</sup> 등 연구자들에 의해 장성은 북표를 넘어 부신(阜新)으로 연장되었고, 심지어는 압록강, 혹은 한반도 서북부까지 장성을 연장하는 연구자도 등장하였다.<sup>49)</sup>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 유력한 장성선은 창무현(彰武縣)까지의 선이었다. 자연히 이후 연구는 창무현으로부터 장성을 동쪽으로 연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2007년 1 허지국(許志國)의 연구는 창무현 이전까지는 연·진·한 장성선의 확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요동지역의 연·진·한 장성선은 현지조사의 부족을 비롯한 기타 원인에 의해 최종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그간 조사 발표된 철령과 개원(開原) 지역의 전국시

44) 馮永謙·何溥濤, 1986, 『遼寧古長城』, 瀋陽: 遼寧人民.

45)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46) 劉子敏, 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5.

47) 孫杰,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2.

48)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63.

49) 劉子敏, 1996, 위의 글; 孫杰, 1997,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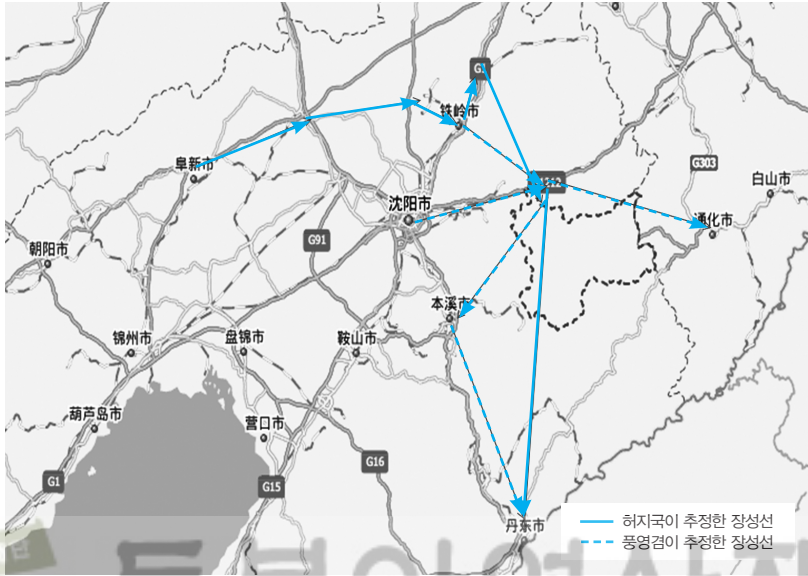
〈표 6〉 2005년 이후 동북지구에서 발표한 중요 장성 연구 성과

지역	연번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제목	수록지	내용
요녕성	1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博物館研究(98)	1. 과거 遼東 경내 燕秦長城에 대한 현지 조사 상황 및 확인된 진행 방향 2. 鐵嶺 경내 장성 유적의 성격 3. 開原 부근 장성 유적 4. 연진장성의 위치와 방향 5. 이후 연진장성 방향 확정을 위한 提言
	2	馮永謙	2010	東北燕秦漢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遼寧考古文集(2)	1. 河北 內蒙古 遼寧省지역 東漢長城 燕北內線長城 燕北外線長城의 상황 2. 요녕성 沈陽 鐵嶺 지역 장성의 상황 3. 요녕성 撫順 本溪 丹東 지역의 장성 상황 4. 明代 사용된 古長城
	3	裴耀軍	2010	遼北地區燕秦漢時期遺存的發現與研究	遼寧考古文集(2)	1. 戰國~漢代 유적의 발견과 분류 ① 지방성 유적 ② 중원 문화의 특징을 띠는 유적 2. 발견된 유적 관련 문제 ① 특징 ② 연대 ③ 族屬 ④ 遼東 소재 燕秦長城의 방향과 형식
	4	許志國	2010	遼北燕秦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研究	遼寧考古文集(2)	1. 과거 遼東 경내 燕秦長城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확인된 방향 2. 鐵嶺 경내 장성 유적의 성격 3. 開原 부근 장성 유적 4. 연진장성의 위치와 방향 5. 이후 연진장성 방향 확정을 위한 提言
길림성	5	李樹林 · 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5)	1. 遼東 장성의 구축 형식과 障塞 城址에 대한 통계와 총괄 분석 2. 요동 장성의 추축 형식과 군사루 장세 시설에 대한 통계와 분석 3. 요동 장성의 중추적 행정류 성지의 통계와 분석
	6	李樹林 · 李妍	2011	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	社會科學戰線(10)	1. 通化 白山地區 현장 고고 조사 성과 2. 유적의 유형별 분류와 표본 유적의 소개
	7	李樹林 · 李妍	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3)	1. 새로 발견한 障塞 유적지 ① 烽燧望候址 ② 障候城堡 ③ 漢代 建築址 2. 재조사시 확인된 중요 장세 유적지 ① 障候城堡 ② 關隘 3. 발견 유적의 특징

기와 한대 중요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즉 철령현 신대자(新臺子) 구대(丘臺) 유적, 법고현(法庫縣) 엽무대진(葉茂臺鎮) 석장자촌(石樁子村)의 마안산(馬鞍山) 유적, 철령현 아길진(阿吉鎮) 홍산촌(紅山村) 취제수참(嘴提水站) 유적 등과 철령현진 서보(西堡) 등에서 나온 병기, 도폐, 자기편, 명도전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철령지구의 장성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요북지구에서 장성의 정확한 위치 추정은 힘들지만, 발굴의 상황과 문헌기재에 의해 장성이 요북을 지나갔음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개원시 경내 삼가자향(三家子鄉)부터 중고전가구(中固展家溝) 일대까지 확인되는 '토룡(土龍)'과 개원 동부 시하곡지(柴河谷地) 및 그 양측 산상(山上)에서 발견된 돈대(墩臺)와 봉화대 등을 통해 철령을 통과한 장성이 개원을 지났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최종적으로 개원을 지나 장성이 동남쪽으로 굴절해 신빈(新賓)과 관전(寬甸)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허지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을 주장하는 이는 풍영겸(馮永謙)이다. 그는 2의 글에서 부신을 나온 장성이 창무와 법고를 지나 철령시 관할의 개원으로 들어갔다고 보았다. 그 역시 허지국이 근거로 든 삼가자향의 토룡을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철령지구를 나온 장성의 유적은 무순(撫順)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유적은 두 방면에서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심양시로부터 시작해 무순현을 지나 순성구(順城區) → 동주구(東州區) → 신빈현 → 통화현(通化縣)에 이르는 한대 봉수 유적지고, 다른 하나는 무순 남부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봉수 유적지다. 풍영겸은 이 중 남북으로 이어진 봉수 유적지를 근거로, 장성은 본계로 이어져 관전을 지나 압록강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지도에 표현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러나 허지국도 풍영겸도 이 지역에서 명확한 장성 유적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원에서 재지인들이 '토룡'으로 부르는 한 줄의 토강(土崗)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봉수와 절기, 도기편, 화폐 몇 종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허북이나 내몽고, 요서지역과는 달리 장성선의 발견이 아닌 추정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림 6〉 허지국과 풍영국의 장성 방향 추정도

한편 허지국과 풍영국이 추정한 장성선이 주로 철령을 지나 신빈 → 관전 → 압록강이라는 요녕성 내에서의 방향을 갖는 것과는<sup>50)</sup> 달리 최근에 이수림(李樹林)은 연·진·한 장성을 길림성까지 연장해 그 방향을 확정하고자 한다.<sup>51)</sup>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인 7의 글을 살펴보자.

그는 최근 진행한 통화시 현장조사에서 1차 시기에 봉수 척후(斥候)시설인

50) 현재 중국학계의 가장 유력한 요동지구 장성의 방향은 북표 → 부신 → 창무 → 법고 → 개원 → 신빈 → 관전 → 압록강 노선이다.李文信, 1979a, 앞의 글, 150쪽. 이 노선은 1979년李文信이 주장한 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51) 李樹林 이전 길림성으로 장성의 진행 방향을 추정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5년 張博泉은 창무 → 법고 → 遼河 → 길림 → 琿春이라는 진행방향을 주장했고, 1996년 劉子敏은 철령 → 무순 大伙房水庫 이동 → 渾河·蘇子河 → 太子河 → 관전 → 압록강이라는 진행방향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蕭景全은 두 주장 모두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考』, 長春: 吉林人民, 47~48쪽; 劉子敏, 1996, 앞의 글, 134~135쪽; 蕭景全, 2000, 앞의 글, 78쪽.

봉수망후(烽燧望墩) 유적지인 연강포권구봉돈(沿江廳圈溝烽墩), 경생동산봉대(慶生東山烽臺), 금두서강봉돈(金斗西崗烽墩), 삼합보서산봉대(三合堡西山烽臺), 통화현(通化縣) 대무산봉후군(大茂山烽墩群), 하남구구봉대(河南溝口烽臺), 여명동산봉후(黎明東山烽墩), 만만천적대평봉대(灣灣川滴台嶺烽臺) 등의 8곳과 병사를 주둔시키거나 군량을 저장하고 전시에는 방어작전을 실시하는 소형 성보(城堡)인 장후성보(障候城堡) 유적지인 삼합보평정상성지(三合堡平頂山城址), 여명북산장성(黎明北山障城), 여명남산장후(黎明南山障墩), 입봉장보(砬縫障堡) 등 4곳을 발견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대의 건축 유적지로는 요상건축지(窯上建築址)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2차 조사 시기에는 장후성보(障候城堡) 유적지인 통화현 남대장성(南台障城), 통화현 태평구문장성(太平溝門障城), 통화현 의목수장성(依木樹障城), 통화현 소도목산장성(小倒木山障城), 통화현 소남구장참(小南溝障塹), 통화시 화수하구장성(樺樹河口障城), 통화시 왕팔발자장참(王八脖子障塹) 등 7곳을 발견했고, 교통의 요충지에 세워진 관애(關隘)로 통화시 이도구문관애(二道溝門關隘), 통화시 석호관애(石湖關隘) 등 2곳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이들 유적지는 통화시 혼강 중류 지역에 밀집되어 장새군(障塞群)을 이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한다. 첫째, 장새군 유적지가 매우 밀집되어 있다. 현재 발견된 독립 봉후 유적 17곳과 의심지역 10여 곳, 장보(障堡) 유적지 11곳과 의심 지역 2곳, 관애 유적지 2곳 이외에도 통화시에는 대형 행정류(行政類) 군현(郡縣) 성지(城址)가 3곳이 있어 총 40여 개의 유적지가 존재한다. 포괄하지 않은 부속 유적들과 아직 진행하지 못한 조사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제외한다 해도 기존에 발견된 장새군에서 이와 같이 분포가 조밀한 곳은 드물다고 한다. 둘째, 장새군 유적지가 하나의 선상에 존재한다. 장새는 모두 강 양쪽 기슭을 따라 고산준령 혹은 평원의 물길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평균 2.5~3km마다 위치하고 있다. 셋째, 건축형식의 다양함이다. 이들 장새는 지형의 제약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축조되었다. 넷째, 연대의 측면에서 질적인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유적지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그릇과 기와 등 유물은 전형적인 중원문화의 기물이며 각종 건

축 풍격과 종합해보면 이들 장새의 연대는 전국시대 중·후기에서 전한(前漢) 중기로 추정된다. 또한 고구려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이 유적지를 고구려 혹은 요금 시기의 유적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수림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사료에 등장하는 전국시기 연소왕, 진 시황, 한무제 시기에 요동지역에 건설된 장성으로 추정하였다.

아직 지방지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역시 보도된 것도 없다는 연구자 자신의 고백처럼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고고학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현장조사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 작성된 글을 보면 장성은 길림성 안에서 무수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학계의 연구가 대부분 길림지역에서 장성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또한 사료를 통해서도 이 지역의 장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시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장성은 현장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림의 다른 글 역시 사료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길림성 경내에 존재하는 연·진·한장성의 구조를 분석한 5와 6의 글을 살펴보자. 이수림은 통화·백산지역 장성의 특징을 점대점(點對點 : 군사거점들 간에 서로 바라보며 책응하는 것)·점대면(點對面 : 즉 작은 군사거점들이 큰 행정성지를 호위하고, 대성은 작은 거점을 지원하는 것)·점면선(點面線 : 즉 작은 군사거점들과 큰 군사요새가 하나의 방어선을 구성하는 것)이 결합된 일종의 '개방형' 구조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점선식(點線式)' 장새(障塞)를 중심으로 하며, '선단식(線段式)' 단원(短垣)과 '선조식(線條式)' 장원(長垣)을 보조로 삼아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장성의 주요 건축시설로는 주체성 군사류 장새와 중추성 행정류 성지가 있고, 아울러 많은 부속성 보장류(保障類) 유적지가 배합되어 있다. 요컨대 이른바 '장새장성(障塞長城)'인 요동장성은 봉후·관애·성지를 위주로 하는 시설을 가리키는데, 군사방어 혹은 공격과 변군(邊郡)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한 장성 형식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수림은 통화와 백산 지역에서 체계가 완전(完整)하고 유형이 풍부하며 특징이 선명한 전국·진·한 시기 주체성 군사류 장새시설(봉후·관애·장참

등) 53좌(座)와 중추성 행정류 성지(도성·군성·현성 등) 7좌와 부속성 보장류 유적지(戍卒居址·遺物窟藏·冶鐵作坊 등) 117처를 발견했고, 이 유적지가 서쪽으로 요녕성 신빈현 연·진·한 요동장성의 “열수(列燧)”와 하나의 선을 이루어 동쪽으로는 압록강 북안에서 장백현(長白縣) 마룩구진(馬鹿溝鎮) 북산(北山)의 장참(障塹)과 연결하고, 서남쪽으로는 관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령강 장성과 마주해서 총 길이 약 1081km의 완전한 방어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이 길림성 지역의 어떤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성 군사류 장새시설의 전형적인 봉후 유적은 통화현 쾌대무진(快大茂鎮) 무산공원(茂山公園) 남랍두봉대(南砲頭烽臺)라고 했고, 특수한 전략적 지위를 지닌 군정합일의 성지로서 규모에 따라 대·중·소 3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중추성 행정류 성지 중 대형 성지는 둘레가 2753.5m인 통화시 자안산성(自安山城)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형 성지는 둘레가 1000~2000m 사이로 집안시 양민고성(良民古城)을, 소형 성지는 둘레가 1000m 이하로 통화현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 부속성 보장류 유적지는 수졸거주지(戍卒居住地)·촌락(村落)·묘장(墓葬)·농경어렵(農耕漁獵, 屯田)·동광(銅鑛) 채굴과 동철야금(銅鐵冶金)·고도(古道)·관잡(關卡) 등의 유적지군을 말하는데, 장성 수비의 후방지원 시설과 변민의 생활시설로 이해하였다. 수졸거주지로는 통화시 왕팔발자장정유지(王八脖子障亭遺址)를 예로 들었으며, 사민실변(徙民實邊) 정책에 의해 조성된 촌락으로는 통화현 금두향(金斗鄉) 서가유지(西街遺址)를 예로 들었다. 고도와 관잡은 장성과 병행해 각 군현성지·장새거점·사민촌락을 연결했던 교통로를 가리킨다고 보았는데, 특히 관잡은 고도 위의 산곡애구(山谷隘口)·강하요진(江河要津) 등 교통 장악을 위한 관문시설로 보았다.

이러한 이수림의 연구는 앞선 진행 방향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다수 포함한다. 우선 장성에 변군의 행정관리 기능을 부여한 것이 그렇다. 사실 장성을 완전한 종합성 방어체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는 명대다. 그러나 명대 역시 군사류 시설에 행정류 성지가 부속된 것

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그런데 이수림은 전국 시기, 혹은 진·한 시기 장성이 이미 완전한 종합성 방어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민실변 정책에 의해 조성된 촌락의 실재 여부다. 현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한 시기 사민실변은 무제 시기에 3·4회 실시된 것이 전부다. 그런데 그 사민실변은 모두 서북변에 국한되어 실시된 것으로만 확인된다.<sup>52)</sup> 따라서 통화현 금두향 서가 유적지에 있다는 사민실변에 의한 촌락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 있었던 교통로인 연(燕)의 ‘진번도(眞番道)’와 ‘조선도(朝鮮道)’를 살펴보자. 이수림은 이 ‘진번도’와 ‘조선도’가 양평성(襄平城)에서부터 연장성을 따라 변성(邊城)인 진번(이수림은 현재 장백고성으로 추정)·조선(현 평양으로 추정)에 이르는 길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진(秦)의 ‘상장도(上障道)’와 ‘하장도(下障道)’는 집안시 국내성(國內城) 아래 토성에서 장백고성(長白古城)까지의 노선과 국내성 아래 토성에서 단동 애하첨고성지(纓河尖古城址)까지의 노선으로 보았다. 또한 전한의 ‘현도정(玄菟亭)’을 양평성에서 현도군(玄菟郡)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그러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진번도와 조선도의 경우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장새를 쌓았다”,<sup>53)</sup> “연왕 노관(盧綰)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위만(衛滿)이 망명했는데 무리 천여 인을 모아 북상투를 들고 만이(蠻夷)의 옷을 입고 동으로 도망해 변경을 나가 패수(溟水)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거주했다”<sup>54)</sup>는 사료다. 그러나 이들 사료를 통해 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도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서』 「지리지」에는 현도군 내 서개마현(西蓋馬縣)을 왕망(王莽) 시기에 ‘현도정’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sup>55)</sup> 고의적인 오독(誤讀)의

52) 金翰奎, 1982,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서울: 一潮閣, 164쪽.

53) 『史記』 卷105, 「朝鮮列傳」, “自始前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54) 『史記』 卷105, 「朝鮮列傳」,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秦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溟水, 居秦故空地上下郡”.

55)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사례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 정부의 통시대적인 장성 규정을 고의적 또는 임의적으로 고장성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정부의 장성 규정에는 분명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선이 아닌 점으로 장성을 이해한 것은 사료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라는 점에서 학술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지형과 재료에 따라 장성의 구조와 위치에는 차이가 있기에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장성의 내용을 시대를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명대 장성에서 보이는 특징을 요동지역 고장성에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장성 규정이 요동에 대한 한의 철저한 군현(郡縣) 지배를 증명하는 근거로 이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장성학'의 미래를 위해

이상과 같이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장성보호공정'과 그에 따른 중국 장성 연구의 경향들을 정리해 보았다. 2005년 이후 확연히 늘어난 장성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에 의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특히 대대적으로 수행된 전국 장성 자원조사라는 이름의 현장조사의 보고서적 특성을 띠는 연구들이 대중을 차지하기에 오히려 지난 시기에 비해 장성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감소한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국가에 의해 장성의 개념과 범주가 확정되면서 장성의 기본요소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불가능해진 것은 '장성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오히려 해악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王莽曰玄菟亭”.

그 결과 많은 보고성 연구들에서는 국가의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른 내용들이 발견된다. 2005년 이전 산험(山險)과 수험(水險)을 장성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2005년 이후 연구에서는 산·수험이 모두 장성으로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달구질하거나 쌓는 것이 아니라 참호를 판 결과인 장참(長塹)은 물론이고 심지어 장성 주변에 설치된 폼자형 함마갱(陷馬坑)마저도 장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지역과 조직의 이해에 장성학이 비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성 개념과 범주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토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현재 국가에서 확정된 개념과 범주의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할지도 모르겠다. 학술계에서 국가가 정한 개념과 범주를 교정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상황상 힘들다면 최소한 확정된 개념을 시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시대의 장성이 성벽과 그에 부수된 군보를 포함하는 종합성 방어체계가 아님에도 시대를 초월해 명대 장성의 특성을 다른 시기 장성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예를 길림성의 장성 연구에서 보았다. 길림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고대 장성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지역의 필요에 의해 장성선을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을 넘어, 사료의 오독을 불사하면서까지 연·진·한 장성을 종합성 방어체제로 이해하고 있다. 시대별 장성의 상을 복원하는 것이 장성학 연구에서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는 예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별 장성의 상을 복원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장성이 어떻게 당대인들에게 인식되었는가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도 필요하다. 변화된 장성 개념과 범주로 인해 군사 시설물 대부분이 장성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연구자의 경고처럼 군사 시설물 중에는 장성과 관련이 있는 시설도 있지만, 독립적인 군사시설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봉수의 경우 변군(邊郡)과 중앙정부 사이의 연락을 위해 설치된 것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봉수를 통해 장성선을 확정하려는 노력에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아 있는 봉수 유적지도 거의 훼손된 요동지역의 경우 봉수의 시대를 확

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장성의 구성요소인지를 파악하려는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처음 방어시설로 출현했지만,<sup>56)</sup> 교통로상의 숙박시설로,<sup>57)</sup>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sup>58)</sup> 변화한 정(亭)을 봉수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장성 연구에서 최근 현장조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문헌사료에 입각한 장성 방향의 확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성이 타 집단에 대한 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를 통해 당시 모든 집단 간의 역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모든 집단의 역관계를 통해 장성선의 확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장성선의 확정과 지나친 지역이기주의·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에 근거한 장성 방향의 확정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이 홀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아직도 방향에 관해 이견이 분분한 북조 장성에 대한 문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장성학이란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분야다. 필자 역시 장성학 자체가 한국 역사학계 안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장성이 방어체제이기에 앞서 변경지역의 거점으로, 혹은 시대에 따라 국경선의 역할을 했다면 이를 통해 고대 중국의 변경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장성을 소재로 제국의 변경사회를 조망하려는 노력이 진작부터 시작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sup>59)</sup> 또한 중국의 경우 장성을 소재로 영역의 확정을 시도하고 변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장성이 보여줄 수 있는 역사의 단면이 있다면 역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6) 『韓非子』, 「內儲說上七術」, “吳起爲魏武侯西河之守. 秦有小亭臨境, 吳起欲攻之”.

57) 『史記索隱』卷79, 「范雎列傳」, “三亭, 亭名, 在魏境之邊, 道亭也, 今無其處. 一云魏之郊境, 總有三亭, 皆祖餞之處”.

58)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1978,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 “爰書. 某亭校長甲·求盜才(在)某里日乙·丙, 縛詣男子丁, 斬首一, 具弩二, 矢廿. 告日云云”.

59) 籾山明, 1999, 앞의 책.

## 참고문헌

### 〈사료〉

- 『左傳』, 1997, 上海: 上海古籍.
- 『韓非子』, 1997, 『諸子百家經典集粹』(合肥: 黃山書社) 所收.
- 『史記』, 1998, 北京: 中華書局.
- 『漢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後漢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魏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北齊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隋書』, 1998, 北京: 中華書局.
- 『括地志』, 1982, 北京: 中華書局.
- 『全遼志』, 1995, 『遼海叢書』(沈陽: 遼瀋書社) 所收.
- 『彰德府志』, 1967, 臺北: 學生書局.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1978,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

### 〈정부발행물〉

-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保護工程(2005~2014年)總體工作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保護條例」,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資源調查名稱使用規範」,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 〈연구서 및 연구논문〉

- 甄自明, 2010, 「鄂托克前旗明長城初探」, 『內蒙古文物考古』 6.
- 甄自明·李綠芬, 2012, 「伊金霍洛旗秦昭襄王長城的概況·保護與開發」, 『鄂爾多斯文化』 6.
-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 上海人民.
- 景愛, 2007, 「關於長城附屬設施調查的有關問題」, 『中國文物科學研究』 3.
- 景愛, 2010, 「長城的內涵及其相關問題」, 『東北史地』 6.

- 甌燕·葉萬松, 1997, 「“上郡塞”與“塹洛”長城辨」, 『考古與文物』 2.
- 金翰奎, 1982,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서울: 一潮閣.
- 吉川佑資, 2011, 「居延漢簡にみえる候長と候史」, 『古代文化』 63-2.
- 吉村昌之, 1998, 「居延甲渠塞における部隧の位置」, 『古代文化』 50-7.
- 羅哲文·董耀會, 1995, 「長城學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 남의현, 2011,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34.
- 남의현, 2012, 「중국의 역대 長城 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大庭脩, 1954, 「漢代の關所とパスポート」, 『秦漢法制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 董焱, 2011, 「北京古長城文獻考察」, 『社科縱橫』 26.
- 董焱, 2011, 「延慶縣長城的考察」, 『教育科學』 3.
- 藤井尙夫, 2008, 「明朝の國境防衛を担った二種の築城 長城と關城」, 『歴史群像』 90.
- 寧夏文物考古研究所·內蒙古鄂托克前旗文化局, 2006, 「寧夏靈武市長城調查與試掘」, 『考古與文物』 2.
- 李樹林·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5.
- 李樹林·李妍, 2011, 「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 『社會科學戰線』 10.
- 李樹林·李妍, 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3.
- 李晴, 2012, 「宋明兩代軍事堡寨研究」, 天津大學碩士學位論文.
- 馬蘭英, 2011, 「略談固原境內現存古長城及其構築方式」, 『絲綢之路』 201.
- 蒙寶玲·譚文武, 2012, 「古浪境內長城遺存的病害分析及保護加固措施建議」, 『赤峰學院學報(自然科學版)』 28-4.
- 米田賢次郎, 1953, 「漢代の邊境組織-隧の配置について」, 『東洋史研究』 12-3.
- 潘玉靈·梁建宏, 2009, 「簡論甘肅境內長城牆體類型」, 『絲綢之路』 165.
- 裴耀軍, 2010, 「遼北地區燕秦漢時期遺存的發現與研究」, 『遼寧考古文集』 2.
- 白貴斌, 2012, 「苔蘚及地衣對涼州明長城的保護作用研究」, 蘭州大學碩士學位論文.
- 富谷至, 1990, 「漢代邊境の關所-玉門關の所在をめぐる-」, 『東洋史研究』 48-4.
- 史念海, 1981, 「黃河中游戰國及秦時諸長城遺迹의 探索」,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史黨社, 2003, 「陝西渭南地區的秦魏長城及城址考察」, 『秦文化論叢 10』, 西安: 三秦.
- 尙珩, 2009, 「山西明長城文獻綜述」, 『滄桑』 6.
- 徐路·楊強義·劉煒·王菲·水碧紋, 2010, 「陝西省榆陽區長城主要病害及保護對策」, 『內蒙古文物考古』 2.
- 陝西省考古研究院·榆林市文物考古勘探工作隊·神木縣文管辦, 2011, 「神木縣西溝秦長城遺址發掘·調查報告」, 『考古與文物』 3.
- 聶倩倩, 2012, 「長城與秦朝政治經濟再研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63.
- 孫杰,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2.
- 申文·程要遠, 2011, 「新鄉地區北部戰國時期長城遺址考察」, 『絲綢之路』 215.
- 梁建宏, 2010, 「甘肅境內長城保護工作回眸」, 『絲綢之路』 6.
- 楊丙君, 2010, 「陝北地區秦漢長城保護管理研究」, 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
- 楊永生, 2011, 「簡析酒泉境內長城資源的文化價值與保護對策」, 『絲綢之路』 215.
-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 永田英正, 1964, 「居延漢簡烽燧考」, 『東方學報』 36.
- 吳克賢, 2005, 「撫寧境內明長城敵臺建築形制」, 『文物春秋』 3.
- 吳祁驥, 1990, 「河西漢塞」, 『文物』 2.
- 王國良, 1930, 『中國長城沿革攷』, 上海: 商務印書館.
- 王力, 2012, 「明長城大同鎮軍事聚落整體性研究」, 天津大學碩士學位論文.
- 王琳峰, 2012, 「明長城薊鎮軍事防禦性聚落研究」, 天津大學博士學位論文.
- 王琳峰·張玉坤, 2011, 「明長城薊鎮戍邊屯堡時空分布研究」, 『建築學報』 S1.
- 王洪超, 2012, 「長城的攝影藝術語言表達」, 太原理工大學碩士學位論文.
- 王希偉, 2012, 「甘肅早期秦長城調查所見關堡略論」, 『西安財經學院學報』 25-2.
- 于任杰·佟淑華·劉朴, 2012, 「關於河北明長城的幾個問題」, 『文物春秋』 3.
- 于曉磊, 2009, 「北朝長城現況調查」, 『中國文化遺產』 1.
- 劉朴, 2007, 「關於長城保護的幾點思考」, 『中國文物科學研究』 1.
- 劉珊珊·張玉坤, 2011, 「明遼東鎮長城軍事防禦體系與聚落分布」, 『哈爾濱工業大學學報』 13-1.
- 劉媛, 2010, 「大同長城的概念和範圍」, 『文物世界』 5.
- 劉媛, 2011, 「大同長城保護與利用的現存問題」, 『文物世界』 6.
- 劉媛, 2012, 「大同長城保護與利用現存問題的原因分析」, 『文物世界』 2.

- 劉子敏, 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5.
- 劉壯, 2012, 「明代永平府境內軍事聚落地理初步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 李建麗·李文龍, 2006, 「河北長城概況」, 『文物春秋』 5.
- 李文信, 1979a,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 李文信, 1979b,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下」, 『社會科學輯刊』 2.
- 李樹林·李妍, 2011, 「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 『社會科學戰線』 10.
- 李樹林·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5.
- 李巖·張玉坤·李哲, 2011, 「長城并非線性—衛所制度下明長城軍事聚落的層次體系研究」, 『新建築』 6.
- 李逸友, 2001, 「中國北方長城考述」, 『內蒙古文物考古』 1.
- 李典芬, 2007, 「河南省戰國魏韓邊界長城遺迹的實地考察」, 『中原文物』 5.
- 李哲·張玉坤·李巖, 2011, 「明長城軍堡選址的影響因素及布局初探」, 『人文地理』 118.
- 李最雄, 2006, 「甘肅境內長城保護研究」, 『敦煌研究』 100.
- 初山明, 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東京: 中央公論新社.
- 張玲, 2012, 「秦漢關隘制度研究」, 河南大學博士學位論文.
- 張新斌, 2005, 「中原古長城若干問題的初步研究」, 『中原文物』 2.
- 張玉坤·李巖, 2005, 「明長城九邊重鎮防禦體系分布圖說」, 『華中建築』 2.
- 張榮萍, 2011, 「固原市原州戰國秦長城調查與發掘」, 『寧夏師範學院學報』 32—4.
- 庄和鋒, 2012, 「明長城山海關防區防禦體系與軍事聚落研究」, 天津大學碩士學位論文.
- 張華松, 2004, 「齊南境內齊長城的歷史地位及其旅游資源的保護與開發」, 『山東教育學院學報』 102.
- 邱璋, 2007, 「漢長城玉門關段遺址保護規劃研究」, 西安建築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 田淑華·趙曉光·王月華, 2006, 「承德地區漢代長城與烽燧調查」, 『文物春秋』 3.
- 鄭紹宗·鄭立新, 2009, 「河北古長城沿革考略(上)」, 『文物春秋』 3.
- 鄭紹宗·鄭立新, 2009, 「河北古長城沿革考略(下)」, 『文物春秋』 4.
- 趙宏利·朱波·劉麗, 2009, 「北朝長城東部遺迹綜合考察與分析課題研究」, 『中國文化遺產』 5.
- 曹象明·周典·于洋, 2012, 「長城沿線城堡保護與發展策略探析—以山西省平型關關堡為例」, 『華中建築』 4.

- 趙海英, 2005, 「甘肅境內戰國秦長城和漢長城保護研究」, 蘭州大學博士學位論文.
- 趙海英, 2007, 「甘肅境內戰國秦長城和漢長城保護研究」, 『岩石力學與工程學報』 26-1.
- 周佩妮, 2011, 「寧夏境內現存長城構築方式探析」, 『絲綢之路』 205.
- 陳可畏, 1995, 「論戰國時期秦·趙·燕北部長城」,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 佟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1.
- 彭曦, 1995, 「十年來考察與研究長城的主要發展與思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 彭曦, 1996, 「秦簡公“塹洛”遺迹考察簡報」, 『文物』 1.
- 布尼阿林, 1981,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蒲天彪, 2011, 「青海省境內明長城保存現狀分析與保護對策」, 『文物』 9.
- 馮國富·海梅, 2009, 「固原戰國秦長城調查」, 『寧夏師範學院學報』 30-4.
- 馮永謙, 2010, 「東北燕秦漢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遼寧考古文集』 2.
- 馮永謙·何溥溥, 1986, 『遼寧古長城』, 瀋陽: 遼寧人民.
- 何德亮, 2009, 「中國歷史上最古老的長城—齊長城」, 『中原文物』 2.
- 韓建成, 2009, 「甘肅山丹境內明長城遺存及勘察保護」, 『絲綢之路』 157.
- 項春松, 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解丹, 2012, 「金長城軍事防禦體系及其空間規劃布局研究」, 天津大學博士學位論文.
-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博物館研究』 98.
- 許志國, 2010, 「遼北燕秦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研究」, 『遼寧考古文集』 2.
- 홍승현, 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 〈전자자료〉

- ‘長城資源調查工作的緣起’, 〈長城資源調查項目〉, [www.cach.org.cn](http://www.cach.org.cn).
- ‘長城資源調查工作概況’, 〈長城資源調查項目〉, [www.cach.org.cn](http://www.cach.org.cn).
- ‘秦漢及其他時代長城資源調查工作’, 〈長城資源調查項目〉, [www.cach.org.cn](http://www.cach.org.cn).
- ‘長城資源調查工作的進展情況’, 〈長城資源調查項目〉, [www.cach.org.cn](http://www.cach.org.cn).

‘明長城資源調查工作的主要成果’, 〈長城資源調查項目〉, [www.cach.org.cn](http://www.cach.org.cn).  
‘國家文物局〈長城保護·管理和研究現狀的調查及對策研究〉課題紹介’, [www.thegreatwall.com.cn](http://www.thegreatwall.com.cn).  
〈2010年度教育部哲學社會科學研究重大課題攻關項目評審結果公示一覽表〉, [www.baidu.com](http://www.baidu.co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Protection Project of the Great Wall and  
New Trend in Its Study

Hong Senghyu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the purpose of the Great Wall Protection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2005, and identify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he study of the Great Wall in the academic world.

The Great Wall Protection Project was initiated to prevent serious damage to the Wall and to provide scientific protection. However, the project's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Great Wall were determined by the state. Because of that, it became impossible for academic debate regarding the Great Wall to take place. As a result, a majority of studies published since 2005 have uniformly enlarged and reproduced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at Wall specified by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position of regarding the Great Wall as a "complete comprehensive military defense system" has been reinforced. However, as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the Great Wall differ according to period and region, it would be necessary to build a concrete image of the Great Wall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Liaodong region, where the ruins of the Great Wall are imperfect, the line of the Great Wall is seriously distorted by regional selfishness and political purposes. In addition, there was a problem in the direction of the Great Wall which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researchers in the region. There is also a growing, and strengthening, trend of understanding the Great Wall in all times as the border. If the Great Wall is recognized as the border, the determined line of the Great Wall will have a sense of meaning as boundaries beyond the meaning of restoring the reality of the Great Wall. That is the reason for raising the need to explore the colorful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Great Wall of China.

#### Keywords

the Great Wall, Great Wall Protection Project, complete comprehensive military defense system, Great Wall Studi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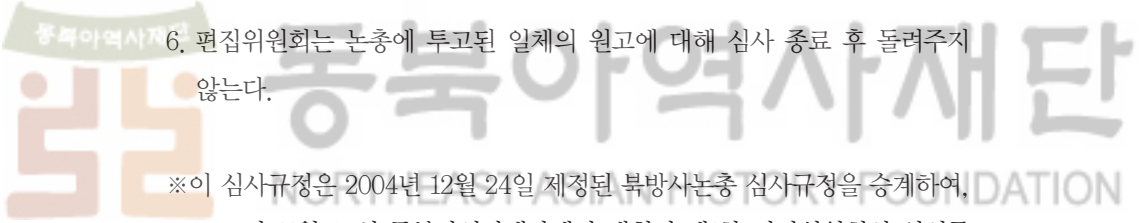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禽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동북아역사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5호(2014. 9)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4년 9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9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